月刊 建築士 1994년 3월호
통권 299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6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March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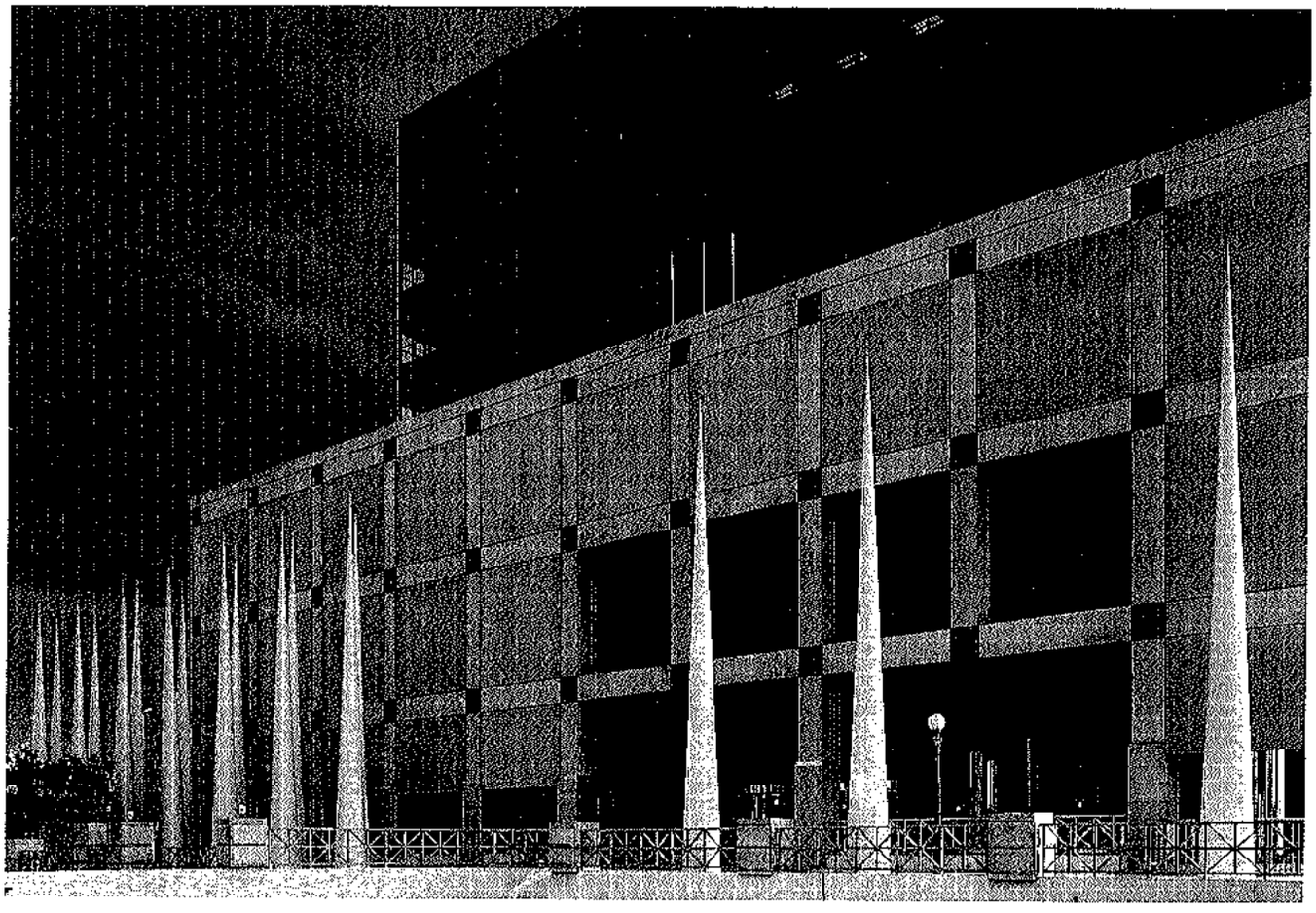

논단
건축사 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김태웅
칼럼
표류하는 건축문화/이용흠
일하며 생각하며
7+7+7년의 흐름속에서/김선양
회원작품
천성빌딩/김관석
]/김창수+박승+한상묵
]실/조남국
]택
/최동규

특집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기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2)/이근창
건축직 공무원-그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대책/윤혁경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1)/박효순
현상설계
KBS 수원방송센터
법령 · 자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2)

J
540.5
대92ㄱ
299

3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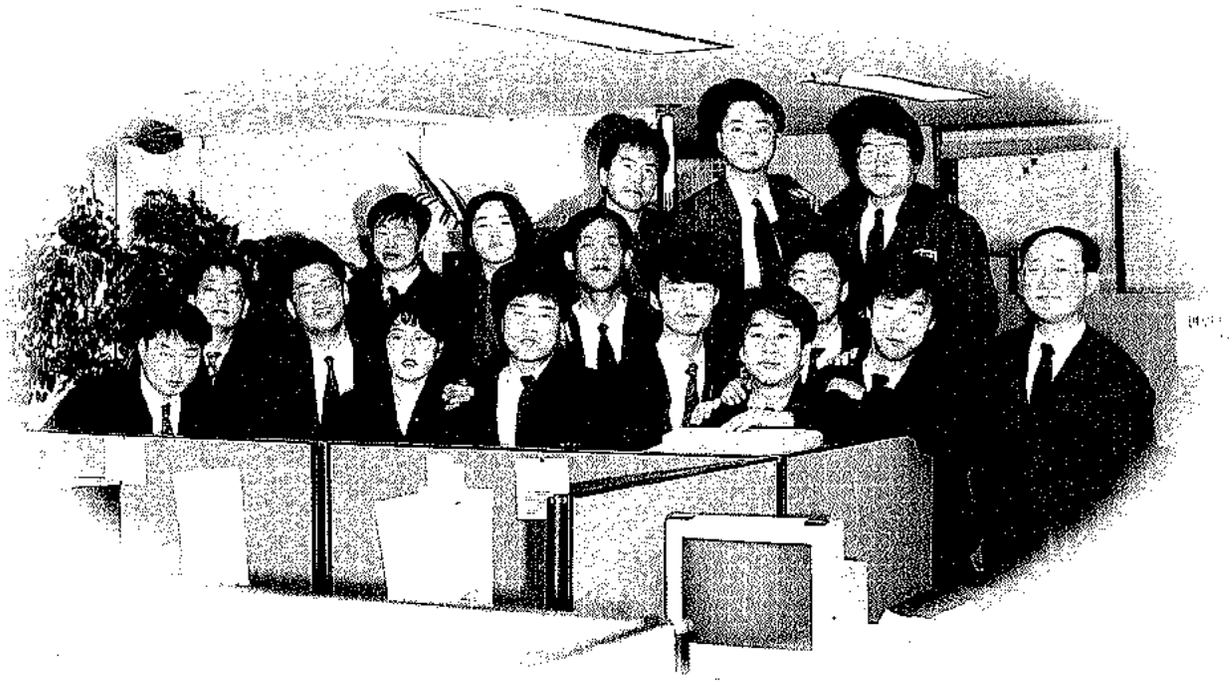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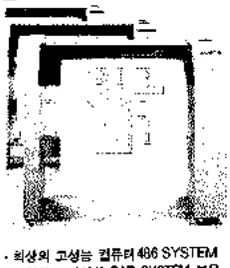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ER 등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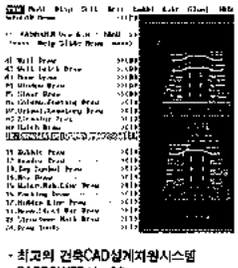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전한글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편람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용역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타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으로한 교육
- 체계적인 단기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알선

아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아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AutoCAD용 건축설계 지원 프로그램
CADPOWER Vec 7.0 발표회
- 장소 : KOEX 4층 대회의실
- 일시 : 1994. 3. 7(월) 오후 1 : 30~4 : 00

(주)건축CAD기술연구소

건축 CAD 전문회사
주식회사 건캐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 584-6480, FAX 587-1803
CAD연구소 : 풍원빌딩 5층
전화 : 598-1486, 1487

아름다운 공간에는 어디에나 벽산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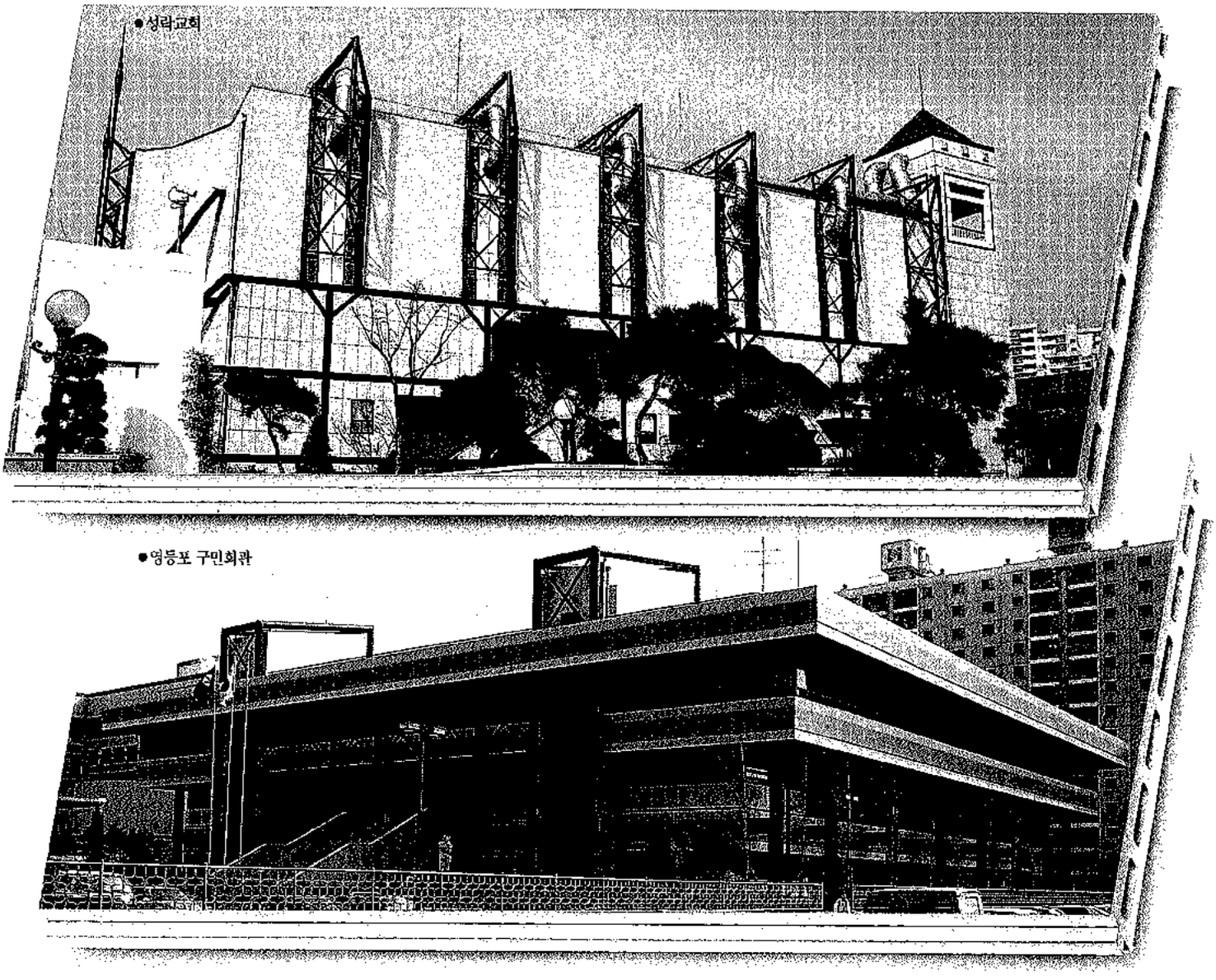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패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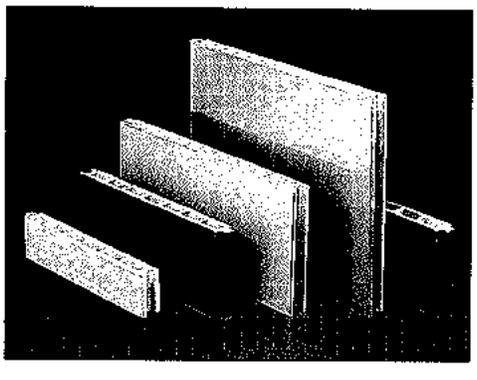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한 벽산 베이스패널은 경량의 조립식 패널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2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패널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패널

벽산 베이스패널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주식회사 벽산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합인슈건설

더욱 큰 도약을 위해!
10년간 아끼던 대명건업이란 이름을 뒤로 하고, 1993년 12월 15일 연합인슈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도전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연합인슈건설 –
시공 건축물의 A/S 제도, 공정준수 운영 등의 선진 건축 개념의 도입과, 신건축공법 개발을 통한
보다 앞선 시공력으로 전문 시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갈 것입니다.
새로워진 이름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도약할, 그 힘찬 의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연합인슈건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 빌딩
TEL : (02)2222-710 FAX : (02)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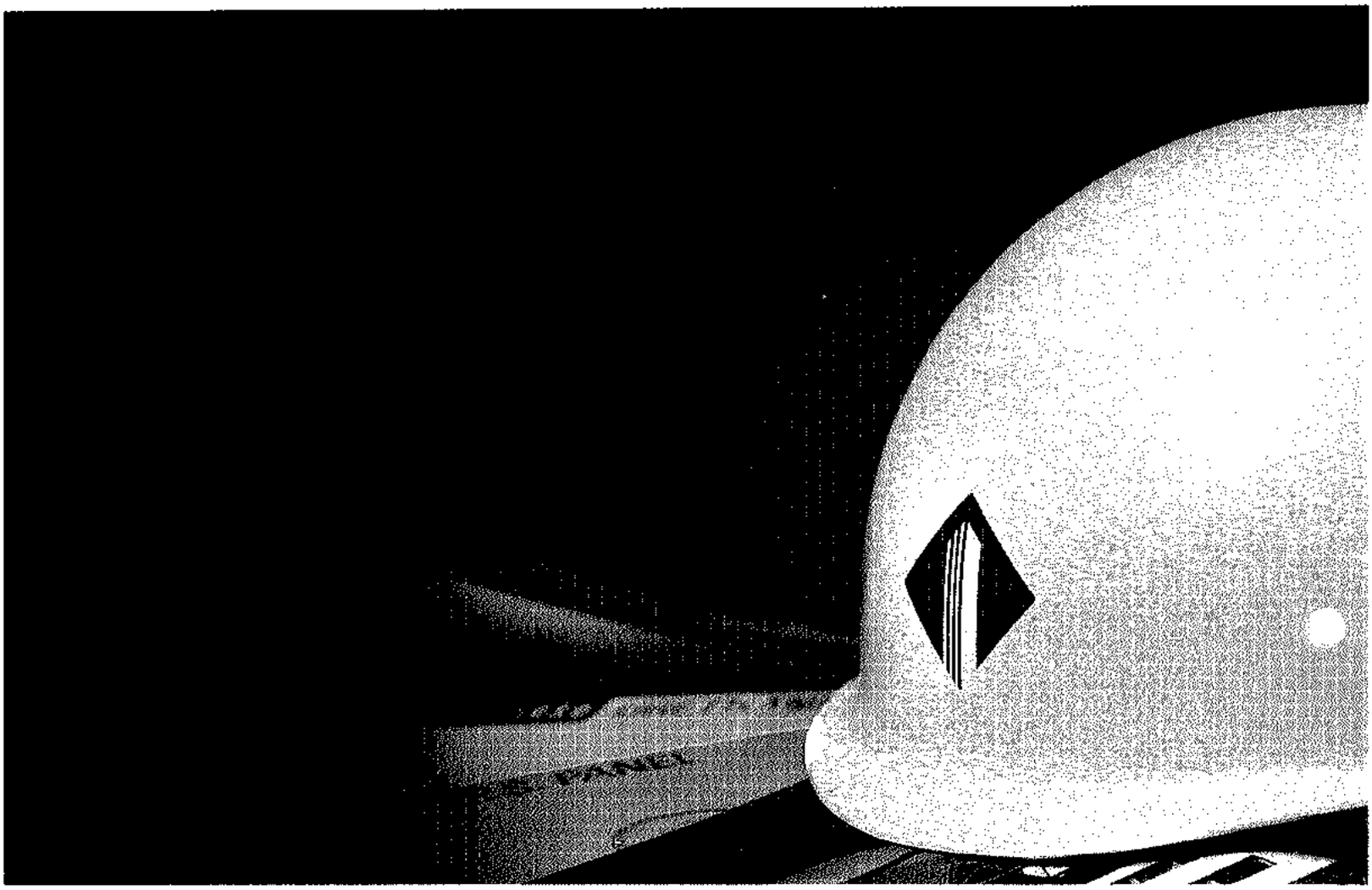

입고는 즉시
출고는 40초

삼성셔틀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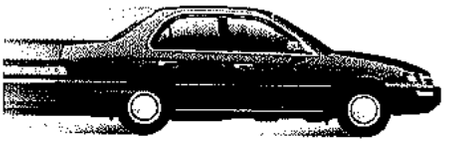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깹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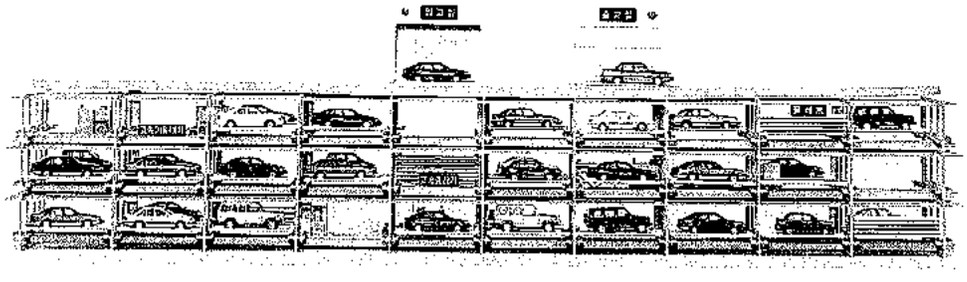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SAMSUNG

삼성중공업

■ **영업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4 동성빌딩 5층 (02)561-9414~6 FAX. (02)561-8918 ● **창원공장** : (0551)60-6553 FAX. (0551)60-6768 ● **부산지점** : (051)811-1266~73 FAX. (051)811-1274
● **대구지점** : (053)742-8870~2 FAX. (053)742-8873 ● **광주지점** : (062)366-2177~9 FAX. (062)366-3990 ● **대전지점** : (042)254-7768~9 FAX. (042)255-7309

SUN FRC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항 목		결 과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kg/cm²)		254
압축강도(kg/cm²)		663
휨강도(kg/cm²)		407
충격강도(kg cm/cm², Charpy)		9.0
밀도(g/cm²)		1.762
흡수율(%)		0.01
경도(Durometer, H_DD)		93
내열성(100℃, 2hr)		이상없음
내약품성	a. 10% 황산	이상없음
	a. 10% 염산	이상없음
	a. 10% 질산	이상없음
	a.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a.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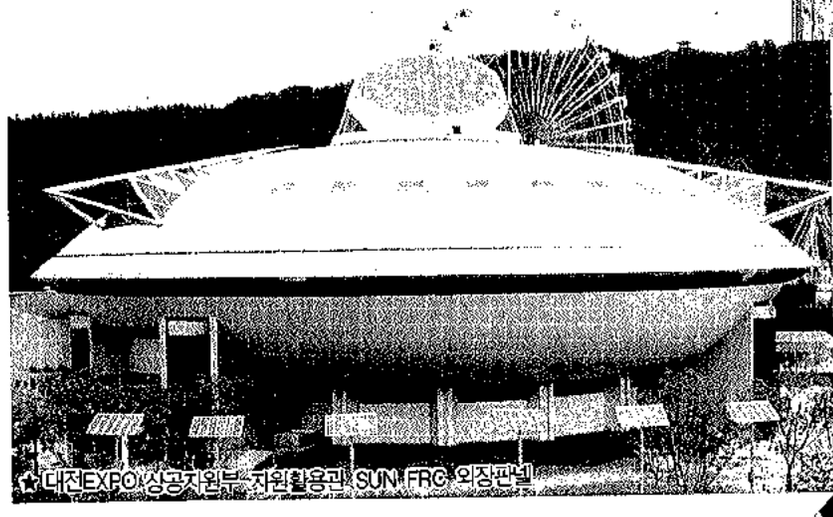

☆대전EXPO 상공지원부 자원활용관 SUN FRC 외장판넬

☆SUN FRC 지구관 세라믹 영상인공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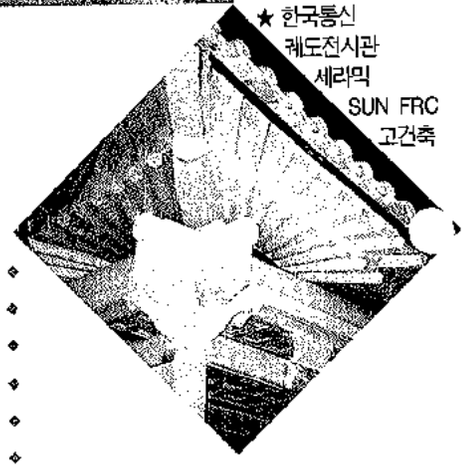

★ 한국통신 궤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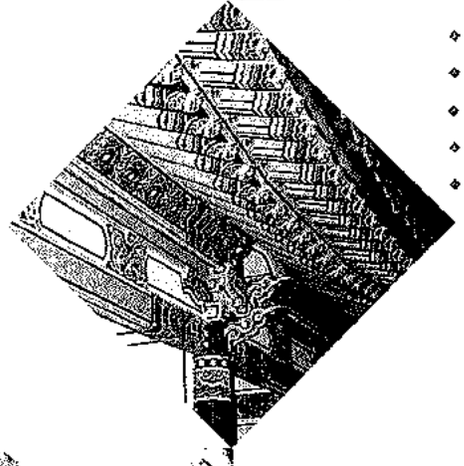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sim10^{-6}$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시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제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가격 : 물가자료 75쪽 참조

주식회사 태양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8 중앙B/D 1302호
Tel : (02) 555-3453 (代) Fax : (02) 555-3452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납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재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서일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장점

■ **얇고 단단하다.**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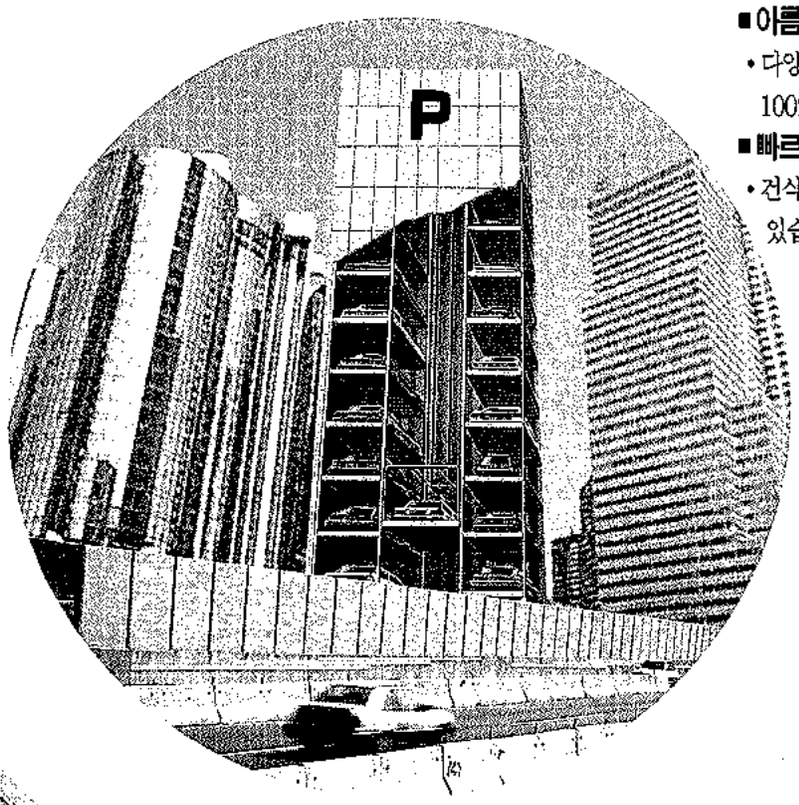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 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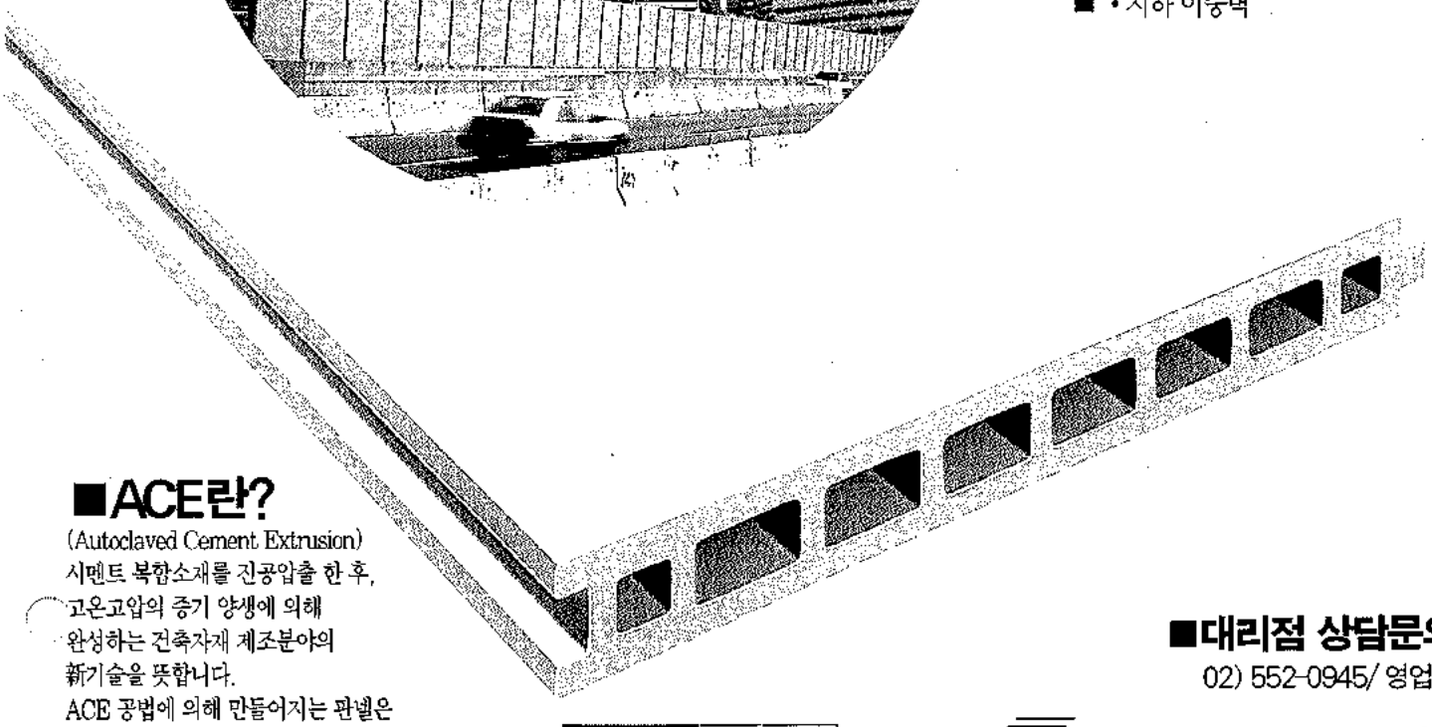

■ACE란?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 기관인 당검사소에서 보증함.
한국화학시험검사소
TEL (02)634-0034

주식회사 서일건영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552-0945
공장: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252-3 (0446)877-2916

●계열사 제품: 서일 암스트롱, 주일 세라멘트 문·창틀, 주일 레미콘, 주일 열수축튜브

차례/1994년 3월호 통권 299호

논 단

건축사 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金泰雄 **10**

칼 럼

표류하는 건축문화／李龍欽

94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인사(2)

文淑卿／全相佰／趙成龍 **14**

일하며 생각하며

7+7+7년의 흐름속에서／金善洋 **16**

회원작품

천성빌딩／金寬錫 **18**

삼성레포츠센터／金昌壽+朴昇+韓相默 **24**

지하철종합사령실／趙南國 **28**

해태사옥／林龍澤 **34**

성북동 S씨주택／崔東奎 **38**

스 케 치

D교회 작업의 흔적들／崔英集 **40**

기 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2)／李根昌 **42**

특 집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沈愚甲／崔命喆／金瑛燮／沈榮燮／

朴商浩／趙仁哲／鄭奇溶／金鐘圭 **45**

회원광장

건축부조리, 그 원인과 대책／元鍾一 **65**

기 고

건축직 공무원—그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대책／尹赫敬 **68**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1)／朴孝洵 **76**

현상설계

KBS 수원방송센터 **86**

기획연재

영국의 건축(1)／金龍昇 **98**

법 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04**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118**

자 료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2)/黃龍顯 **121**

통 계

1993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6**

협회소식 **128**

發 行 人：吳雄錫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 員 長：李俊憲
委 員：吳龍夫, 李柱勳, 金相景, 梁海潤, 崔泰容, 李 馥, 金宗植
編輯·取材：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大韓建築士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070
電 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錄：1967年 3月 23日
U. D. C.：69／72(054－2)：0612(519)
印 刷 人：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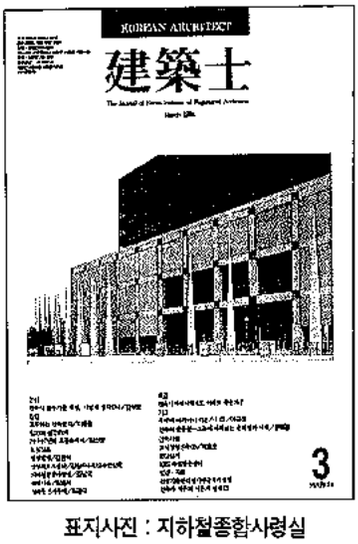

표지사진：지하철종합사령실
(설계／조남국)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송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3-6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충무로2가1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89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6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2-2275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847-18, 28 (051)634-4973~9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753-898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876-0458 ·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666-6153 · 고양분회/고양군원당주교38 불락16롯트,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0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90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CONTENTS VOL.299. MARCH 1994

PLATFORM

This is What I think – Revised of a Standard Architect Emolument / Kim, Tae-Woong 10

COLUMN

Pondering Architecture Culture / Lee, Yong-Heum 12

Greetings of KIRA Committee Chairmen(2)

Moon, Suk-Kyeong / Cheon, Sang-Baek / Cho, Seong-Yong 14

ESSAY

7+7+7 Years Go By / Kim, Sun-Yang 16

WORKS

Cheonseong Building / Kim, Kwan-Suk 18

Samsung Leports Center / Kim, Chang-Soo, Park, Seung & Han, Sang-Mook 24

Integrated Control Center of the Subway / Cho, Nam-Guk 28

Haitai Co. LTD / Im, Yong-Taek 34

Seongbuk-dong S's Residence / Choi, Dong-Kyu 38

SKETCH

D Church Project / Choe, Young-Jeap 40

FEATURE

What Should Be Changed?(2) / Lee, Keun-Chang 42

ISSUE

The Betterment Direction of Architect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45

Shim, Woo-Kap / Choi, Myeong-Churl / Kim, Young-Sub / Shim, Young-Sub / Park, Sang-Ho / Cho, In-Churl / Cheong, Ki-Yong / Kim, Chong-Kyu

PLAZA

Architecture Irrationality – a Cause and Alternative 65

CULTURE

Problem and Alternative seen by Architecture Office / Yoon, Hyeok-Kyeong 68

ARCHITECTURE TRAVEL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 / Park, Hyo-Soon 76

COMPETITION

Suwon Broadcasting Center, KBS 86

REPORT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 / Kim, Yong-Seung 98

LAWS & ORDINANCES 104

MATERIALS

Architect's Tax Affairs Theory and Practice (2) / Hwang, Yong-Hyun 121

STATISTICS 126

KIRA NEWS 128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 / Lee, Joo-Hoon / Kim, Sang-Kyeong / Yang, Hae-Yoon / Choi, Tae-Yong / Lee, Bok / 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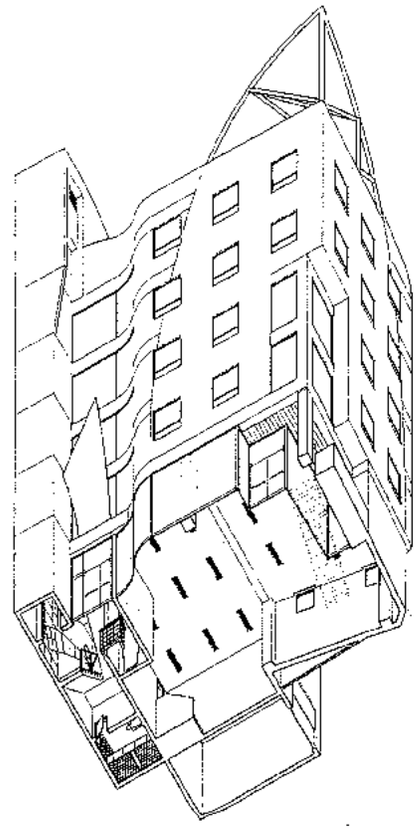

(0391)41-7371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흥리960-12, (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복대로37|6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국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0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류빌딩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796 · 군산분회/군산시선창동35-4, (0654)43-3816 · 남원분회하정동106-2, (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선회관), (062)346-7567,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51-11(06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52-7023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6317~8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801-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망3동341-12, (0572)34-5560 · 점촌분회/점촌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중방동85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창구동26-10, (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745-64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금동91-6, (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0-6, (064)62-2233

건축사 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This is What I think—Revised of a Standard Architect Emolument

金泰雄/경북건축사회 회장
By Kim, Tae-Woong

지난해 연말에 개정 공고된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 개정에 대해 그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열악한 보수기준과 경직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현직의 회원 전체가 실감해 왔으며, 꾸준히 그 부분의 개정과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었다.

이 요구사항들 중의 하나로 이번에 건축사 보수요율이 다소 현실화된 것 같다.

이번 설계·감리 업무 및 보수기준의 대폭적인 내용변경과 인상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한 의견과 느낀 점을 제시코자 한다.

•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인상배경

건축사 보수기준이 1975년에 개정된 이래 18년 동안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었고, 물가억제정책에 밀려 정당한 보수기준과는 관계없이 물가의 계수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불합리한 결정의 누적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를 가진 보수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우수한 설계와 정당한 감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이상상황(異常狀況)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우리 회원들의 자세도 냉정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건축사들을 중요한 사정(司正)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정 쇄신위원회,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실방지대책반에서 오히려 건축사 보수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할 말은 태산같으나 말을 해도 협의(協議)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본 협회의 위상(位相)이 자탄의 지경에 이른 감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 주변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방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쌍무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차원 높은 관계의 전개를 바란다.

• 건축에 관련된 제도 건축주, 건축사, 건설업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자.

건축주, 건축사, 건설업체의 삼위일체의 원만한 이해와 협조, 국가의 훌륭한 제도의 정립 위에 훌륭한 건축이 창출된다는 원칙은 기본이다.

건축주의 이기심, 시공자의 무분별한 덤핑수주, 시공의 책임감이 결여된 이윤추구에 의한 대다수의 불법시공과 위법건물이 발생함에도 그 발생에 따른 사후책임은 형평에 어긋나게 건축사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요구하여 왔다. 건축주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건설업자는 책임이 없는 무등록자이거나 건축사법과 형평이 어긋난 건설업법에 의해서 구제(?)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어느 정도 현실화된 설계·감리보수를 바탕으로 건축사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불법건축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전기(轉機)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건축을 더 높은 차원의 원상회복의 기회로 삼자.

건축사 보수기준의 현실화의 목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보수기준의 개정과 이로 인한 불법건축 양산의 근원적인 방지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건축주의 이기주의가 법과 규정을 무너뜨리고, 무면허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제도적 모순을 악이용한 무분별한 이윤추구, 제도권 속의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국가건설의 주역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절실한 상황들을 외면한 채 건축을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균형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대내적으로 우리 회원들은 시대상황들을 지혜롭게 직시하고 오늘의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협회도 이러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전국 회원들에게

“

이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이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받아 들이는 혜안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이라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속에 살아 간다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맑은 눈매와 뜨거운 용기로 이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고 후배들에게 훌륭했던 선배들로 기억되는 빛나는 세대로 남기를 바란다.

”

정확한 방향 제시와 확고한 의지, 강력한 추진력의 발휘를 촉구한다.

또한 건축에 관련된 전 분야가 협조하고 균형되게 발전되어 정의(正義)가 발현되도록 건축관계당국자들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도 정책수단으로 우선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질 때, 이러한 저차원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의 원숙한 성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훌륭한 건축 속에서 드높은 이상과 존엄 속에서 살다가 후세(後世)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 훌륭한 건축들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남고, 건축을 통하여 심오한 철학과 꿈, 경륜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조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 자강(自强)과 자중자애(自重自愛)의 계기로 삼자.

전국에 있는 4천여명의 우리 회원들은 지금까지의 관행(慣行)과 의식(意識)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훌륭한 설계와 책임있는 감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들이 이 조국에 보편적으로 건축되는 새로운 이정표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수 많은 지난날의 난제들을 되돌아 보면서 서글퍼지는 지난날의 관행과 의식을 넘어 서자.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의 연찬과 탁마를 통한 자강(自强)과 자중자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지난날의 저차원의 일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원래 건축사의 위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에 개정 공고된 건축사 보수요율의 개정은 위와 같이 상당한 내용과 영향이 우리 건축사계에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제도의 정착(定着) 여부가 앞으로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번의 보수요율이 잘 정착되고 발전된다면 지금까지의 건축사 내부의 모순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 모색되리라 예측된다.

올바른 설계와 감리를 통하여 건축의 질적인 발전을 기하여 우수한 건축의 창출이 가시화(可視化)되고, 경제적인 건축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예견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사무소 운영에 급급했던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본 협회의 분발을 다시 촉구한다.

우리 회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애로와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다.

이때에 본 협회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신속하게 만들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어려운 때 일수록 그 조직의 지도자를 쳐다보고 방향설정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끝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점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 협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히 발전되어야 하며 협회의 발전 동기는 우리 회원들의 발전과 보호에 있으며, 더 나아가 이 국가의 건축문화 창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의 건축을 책임질 우리 회원들의 의무는 너무나 막중하기에 이에 상응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따른 조치들 중에 이번 건축사 보수요율 인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이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받아 들이는 혜안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이라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속에 살아 간다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맑은 눈매와 뜨거운 용기로 이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여 후배들에게 훌륭했던 선배들로 기억되는 빛나는 세대로 남기를 바란다.

표류하는 건축문화

Wandering Architecture Culture

李龍欽/(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 사무소
by Lee Yong-Heum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성경 로마서 1장 20절)

이 성경 구절은 인간과 만물은 신이 창조한 "작품"이며 그 작품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창조주(작가)의 성품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오묘하고 신비한 인간과 삼라만상은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작가)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구현된 위대한 작품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확산되어야 하겠다.

인간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렀을까?

다시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성구에서 인간만이 유독 신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확실히 규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신은 그의 위대한 창조능력, 창조성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인간만이 예술과 건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창조주는 창조를 끝마치고 남은 창조의 분야를 다 인간에게 맡기시고 안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역사의 전면에는 인간이 창조, 즉 창작의 주체로서 떠 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와 더불어 문화, 예술은 존재해 왔으며 작가들은 창작활동을 부단히 해내려 왔다. 창작의 동기에 대한 당위성과 뿌리를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으로부터 찾아 보았다.

인간의 역사에서 예술과 건축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마디로 정치의 시녀노릇을 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다. 그에 따라서 작가들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쟁이라는 호칭에서 엿볼 수가 있듯이 비천한 직업인으로 취급된 것이다.

우리의 1세기 전만 하더라도 행세하는 집안에서 예술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부모가 결사적으로 말린 것은 흔한 얘기였다.

신이 창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래로부터 얼마나 찬양하였던가? 신의 창조성과 인간의 창작성! 우리 건축사 존재의 당위성의 근원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은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의 위대한 창조에 동참시키신 것이다. 창조의 완결에 인간의 영역을 남겨 놓으신 것이다. 그 영역을 담당할 구체적 직업인이 우리 건축사인 것이다.

"신의 창조의 동참자." 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바람나는 정의인가? 신의 창조에서 갑자기 건축과 건축사의 존재 의의를 찾아 본 것은 그다지 큰 논리의 비약은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급변하는 세계" 이제 새삼스럽게 "급변" 운운하는 것은 별로 신선하지 못하기까지 하다.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동시대의 위대한 "징조"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면서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역사로 미루어 보아 새시대를 잉태하는 시기를 말세라고 하며, 그때는 커다란 혼란과 극도의 타락성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동시대상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과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너무나 흡사한 징후들을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새시대의 도래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래하는 새시대는 인류가 희구해 오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피안의 세계" 등으로 불려오던 이상사회가

“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간, 인종간, 종교간의 담이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념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우리 건축사는 미래를 맞이할 대안이 있는가? 우리는 건축을 신과 인간의 새로운 정의에서부터 다시 정립하고, 건축사의 직업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재고할 때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되어야만 한다. 인류역사 전체가 이 한 방향으로 돌진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속한 과학의 발달, 예술세계의 발전, 정보 및 매스컴의 세계화, 철학, 종교, 사상의 자유와 냉전 시대의 종말, 그리고 93년 말의 UR(우루과이라운드) 대타결 등 국가간, 인종간, 종교간의 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 세대의 혼란, 타락상에 대한 인류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치체계와 이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고, 인류의 위기를 구할 대안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은 지구촌 전체의 인간을 물질적 풍요의 측면에서 행복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다.

비약해서 결론을 내려 보면 새시대, 즉 이상사회가 도래했을 때의 인간 삶의 중심은 “예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식주로서 표현되는 물질생활이 해결된 터 위에서 인간은 본연적이면서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며 삶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앞둔 이때 우리 건축사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한 시대가 예비되어 있음을 엄숙히 바라보아야 겠다. 역사상 처음으로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되어 삶의 중심으로 떠 오른 예술, 그리고 건축, 우리 건축사들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계는 조타수를 잃고 방향을 몰라 원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건축사가 새 역사의 주역으로 나설 차례인 것이다. 그 간의 한을 멋지게 승화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누구보다 먼저 새 시대의 방향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건축의 새로운 정의,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 법과 제도의 문제, 작가정신에 대한 제고 등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93년에는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겼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Movement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용기에 다같이 찬양을 보내야 하겠다. 다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고 풀어야 할 지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주역이 되어서 해야 한다.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자손만대의 터전을 이 시대의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누구나 공감하면서 구경꾼이 되느냐 또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은 이 나라 건축문화에 심대한 우려를 끼치고 있다. 감리가 설계의 연장이며 설계의 영역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기초개념도 혼란되고 있다. 93년에도 그간 시행되어오던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의 설계, 감리의 이원화 문제가 타결되어, 뜻있는 작가들이 다시 자기작품의 완결에 장인정신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조각가가 기초 스케치와 도면만 그리고 그 이후의 작업을 타인에게 맡겨서 작품을 제작한다면 그 조각에 그 작가의 개성과 예술성이 그대로 표현될 것인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 법에 대한 제 모순성을 원초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건축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건축설계를 돈으로 보는, 이권으로 보는 풍토가 사라져야만 한다.

우리는 건축을 신과 인간의 새로운 정의에서부터 다시 정립하고, 건축사의 직업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재고할 때,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4년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2)

文淑卿
여성분과 위원회 위원장

언제나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올해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민주화, UR 협상, 건축사법 개정 등등…

이러한 충격들로 지난 한 해 동안은 폭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듯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나날이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 거센 혁명(?)들은 그 동안 무사안일에 빠져 나태해진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새로운 각오로 올해를 맞이한다.

여성 분과의 존재가치 자체에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소임을 맡게되어 책임이 무겁다.

여권신장이니 남녀평등 운운하는 전근대적인 부르짖음은 전문 건축인으로서 성 차별이 없고 능력 위주의 동등한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다.

아직까지는 협회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치는 왜소하다. 80년도 이래 여성 건축인의 수적 증가는 물론 건축각계에서 활약하는 여성 건축인이 많고 보면 그 질적 증가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감지 하여야 한다.

이런 후배 건축사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소리를 갖는 창구 역활을 하고 싶다.

설계의 전문화·분업화에서의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은 무엇인지?

UR 협상에 따른 외국 여성 건축사와의 상호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화의 흐름에 우리 여성 건축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全相伯
재건축 심의위원회 위원장

모든일이 공정, 정확, 신속하여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공동주택의 재건축진단 및 심의는 이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 행위는 민이 발의하여 관에 승인을 청원하는 민원(民願)사법으로서 현재의 건축물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제조건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가려내는 구조진단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대로 공정, 정확, 신속성을 확보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년부터는 진단 및 심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①각 시도의 재건축진단업무는 그 소속 건축사회의 회원이 전담한다.

②심의위원은 진단인을 겸하지 않고 심의만 전담한다. 대형재건축프로젝트에 한하여는 기회공정성이 문제의 진단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전원이 연 1~2회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진단성과의 심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키 위하여 진단업무집행요령, 구조 체크 리스트 판정방법 등을 상술한 진단업무 가이드 북을 빠른 시일내에 발행, 배포한다.

④재건축진단업무를 담당할 건축사는 조사시험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노후불량이라고 판단되는 구조사항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실증하여 제시토록 유도하고 보고서는 될 수 있는대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⑤부적격 민원사항은 국가자원 낭비의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출장확인, 예비심의, 본심의를 통한 판단 과정에서 정확하고 과감하게 가려 내도록 한다.

작년도 건축사협회가 접수한 재건축진단요청 건수는 총 121건이었으며 부적격 23건, 심의통과 75건, 계류 23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금년들어 진단기관의 수는 우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위시하여 민간 17기관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이 가세됨으로 총 50여군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우리의 기술과 권위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더욱 요망된다.

趙成龍
21세기 준비위원회 위원장

언제나처럼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완전히 천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새해 첫날 신문 일면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동해 바다의 해돋이 사진에서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말이다. 사실은 새해라는 것은 관념상의 외미일 뿐이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그 버릇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일년처럼 기간을 정하여 놓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같다.

건축사협회가 지난 한 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모두 말한다. 점점 어려워지고 다변화하는 상황속에서 바깥으로부터의 압력과 내부로부터의 분란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늘 겪었던 일이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그 동안 터지지 않아서 표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몸이 아프면 숨기지 말고 광고를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속상처를 감싸고 있게 되면 점점 더 썩게 된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 같이 내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로가 트여져야한다. 누구나 자유의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설사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룹이나 학연, 지연같은 따위의 속절없는 것에 얽매여 세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전체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에게 당장 이득이 된다고 하여 앞뒤 가릴 것 없이 군중심리로 덤벼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코 잘못이 없어야 하고, 그것도 사회 정의에 맞아야만 된다. 설계감리 분리업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시비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건축사의 직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통하여 책임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일 것이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엘리트 의식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탁월한 건축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건축이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과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건축사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본다. 부실이니 위법이니 하는 것은 모두 이 기능이 미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적 기능이다. 건축은 어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문화의 지표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움막을 짓는 원시적인 행위로부터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면서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고 점점 커지게 되었다. 윤리나 규범이 생기고 집짓는 것도 일정한 틀에 의하여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고유한 풍토와 의식습관, 기술 수준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면서 자연히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거나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건축과 그 집합인 도시에 나타난다.

너구나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국제화, 개방화가 그것이다. 이즈음에 우리가 이 문화적 기능을 무시하고 단지 집짓는 것을 기술의 문제로만 인식할 때 우리는 큰 코 다칠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송두리째 드러 내 주어야만 할 지도 모른다. 흔히들 우리는 예술인 인체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에 속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이 예술적인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 건축, 이 위상이 아직도 미미한 것은 바로 이 민족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부족한 때문이다. 이 자존심이야말로 문화적 기능을 거의 도외시하여 한낱 기술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역할을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도시) 환경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보자. 이 세가지 기능이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 질 때 그 건축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 우리의 수준을 높게, 어떤 때는 너무 낮게 잡았다. 이제 그 수준을 적정선으로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우리가 맞부딪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특별히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다른 쪽이 불편하게 된다.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변하지 않는 원칙을 정하여 놓고 그에 따라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면 돌파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군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 사회제도와 여러가지 상황의 개선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화에 대비한 여러가지 준비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개발하고 축적하는 일, 정보를 공개하는 일 모두 사협회가 앞장서서 권장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때 다음 세기 우리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을 것이다.

7+7+7년의 흐름속에서

7+7+7 Years go by

金善洋/(주)한종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Yang

며느리가 한 30년후쯤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기준하여 흔히 사람의 한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내가 면허를 받은 후 모시던 소장님의 파트너로 일하던 때부터 정확히 12년째되는 해에 우리 직원이 내옆에 나란히 등록을 하게 되었으니 건축사의 한세대는 한 10년쯤으로 해둔다면 넌센스는 아닐까.

보조원 7년, 파트너 7년 그리고 독립 후 7년을 경험한 후 금년에 건축사 15년째를 맞으며 그때마다 느꼈던 생각들이 조금씩 깨달음으로 귀결지어지는 것들은 어쩌면 모든 건축사 중에 중간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시점에 인생이란 원의 중심점에 서서 현재를 딛고 과거를 거울삼아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조원과 파트너 그리고 동료건축사들을 향해 평소의 생각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메모를 전해 본다.

보조원들에게

20여년전 일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의 분위기와 같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모든 여건이 불리했던 그 시절엔 국민 전체가 다 그랬지만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엊그제 직원채용을 위하여 몇몇 희망자와 면접을 하면서 다들 잘 생긴 얼굴로 분명하게 말하고 꽤 높은 연봉을 희망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한편 바로 안정이 되는 건설회사나 기업쪽보다 고생스러운 설계쪽의 동지라는 공감대에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을 상기하며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신입사원의 티는 1년내에 벗어버려라.

건축사가 양산되는 시점에서 일배우는 기간을 빼면 사무실에 기여하는 시간은 물론 실무경험도 별로 없이 건축사가 되고 만다. 아무쪼록 시간을 아껴서 한사람 한사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경쟁에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많은 급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임을 받는 것이다.

흔히 급여가 작은 것이 불만인 직원이 의외로 많다. 굳이 변명한다면 타 사무소의 급여를 자기직원만큼 모르는 소장이 겪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무실과의 조건이 다를 수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 보지도 않고 급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린다면 나무는 보고 산을 보지못한 것과 같다.

"닭은 분명히 계란보다 먼저인 것을 깨달으라."

셋째, 이상에 맞는 곳은 없다.

우리 사무실에는 야근을 위해 정해놓은 식당이 있는데 직원들이 좋다고 정해 놓고 한 1년 이상이 지나면 불평들이 생긴다. 본인의 입맛이 달라진 것이 원인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무실은 없다. 다만 나의 역할을 기다릴 뿐이다.

이웃 일본의 평생직장 개념을 반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넷째, 직급에 맞게 커라.

신입사원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대인관계를 즐기거나 책임자가 관청이나 건축주를 만나기 꺼려 한다면 각자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경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역할을 거역하지 않아야 전체의 조직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쪽에서 자라라.

산문이나 정당도 여야가 있듯이 조직사회도 나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람의 집단은 항상 10~20%는 부정적인 자가 있게 마련이며 그들이 제거되면 또 다른 자가 그 위치에 선다고 한다. 소규모 사무실은 가정과 같은 것이어서 온 식구가 가장편에 있는 가정은 화목한 것처럼 항상 긍정적 자세로 근무하기 바란다.

여섯째, 회사의 분위기에 책임을 져라.

분위기에 대한 불만은 말단에서뿐 아니라 책임자한테서도 간혹 말이 나온다. 다시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 안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누가 분위기를 콘트롤 하는가. 바로 나는 직원수분의 1만큼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곱째, 시험준비는 평소에 하라.

“

건축사 15년째를 맞으며 돌이켜 볼 때 인생이란 현재를 딛고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차게 개척할 주체는 보조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운영하는 건축사 모두가 결국 한 사람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랑스러운 한 마음이 되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

1월부터 발표도 안한 시험준비를 하기위해 회사를 쉬고자하는 자들이 나온다. 회사에서 반대하면 그만두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한국만이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입사시점에서부터 시험공부를 시작하라. 하루도 안쉬어도 합격되는 비결이다. 두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자가 훨씬 위 차원에 서는 자이며, 사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인 것이다.

파트너들에게

면허를 따면 운동장의 백넘버를 붙인 축구선수처럼 항상 공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면허인데도 상사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나는 세장에 갖힌 새로 착각하여서는 안된다. 높게 나르기 위하여 더 낮게 움츠러들 줄 알고 때를 만날 때까지 시험걱정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많은 건축사의 배출로 인해 더욱 많은 인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마디를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항상 겸손하라.

면허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오는 시험이 바로 교만이다.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위에서 먼저 알고 경계하게 된다. 내가 직원들속에 있느냐, 군림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오는 것이다.

둘째,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막 끝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이 아닌 실무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쌓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을 실감케 된다.

셋째, 서투른 상사도 나의 스승이다.

모든 상사가 다 나보다 유능할 수 없다. 상사보다 나은 후배가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일 못따는 상사,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한 상사 등도 유능한 상사못지 않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분일 뿐이다.

넷째, 총체적인 경험을 쌓아라.

지금까지는 설계 위주의 경험만 하였으나 이제는 수주활동에서부터 사무실 운영, 세무관계 등과 직원관리 등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시기는 합격이 아니고 자립능력이 갖춰진 후에 하라.

잘 아는 외국의 건축사무소에서 몇년전 IBC 현장을 도왔던 유능한 간부를 만났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1급 건축사 직원이었다. 노하우의 축적은 바로 국력이다. 개업식은 쉬우나 자립능력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여섯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무실의 고객, 나의 친구, 친척, 우리 직원, 협력회사들이 바로 나에게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할 때 언젠가 나에게도 즐거운 마음이 깃들기 때문이다.

일곱째, 돈 앞에서 무조건 굴복하지 말라.

덤핑설계, 면허대여, 브로커 밑에서 일하는 등의 많은 유혹 앞에서 잘 판단하여 평생 따라다닐 나의 이미지에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이 붙지 않도록 노력하자.

건축사들에게

파리의 뽕삐두 미술관에서는 2000년까지 남은 초시계가, SBS 방송국 옥상에는 남은 날짜가 노랑 전광판에 반짝인다.

무언가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섬찟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건축사와의 경쟁과 공동의 적인 종합건설업 면허와 해외건축설계의 국내진출이 어떻게 보면 나 하나와 전세계와의 경쟁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 해외로 진출하는 유능한 한국의 건축인들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당면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이 세대를 맞아 우리 각자는 집안단속부터 잘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조원이나 파트너들 그리고 운영하는 건축사 모두가 결국 한사람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사랑스러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천성빌딩

Cheonseong Building

金寬錫/건축사사무소 아르텍
Designed by Kim, Kwa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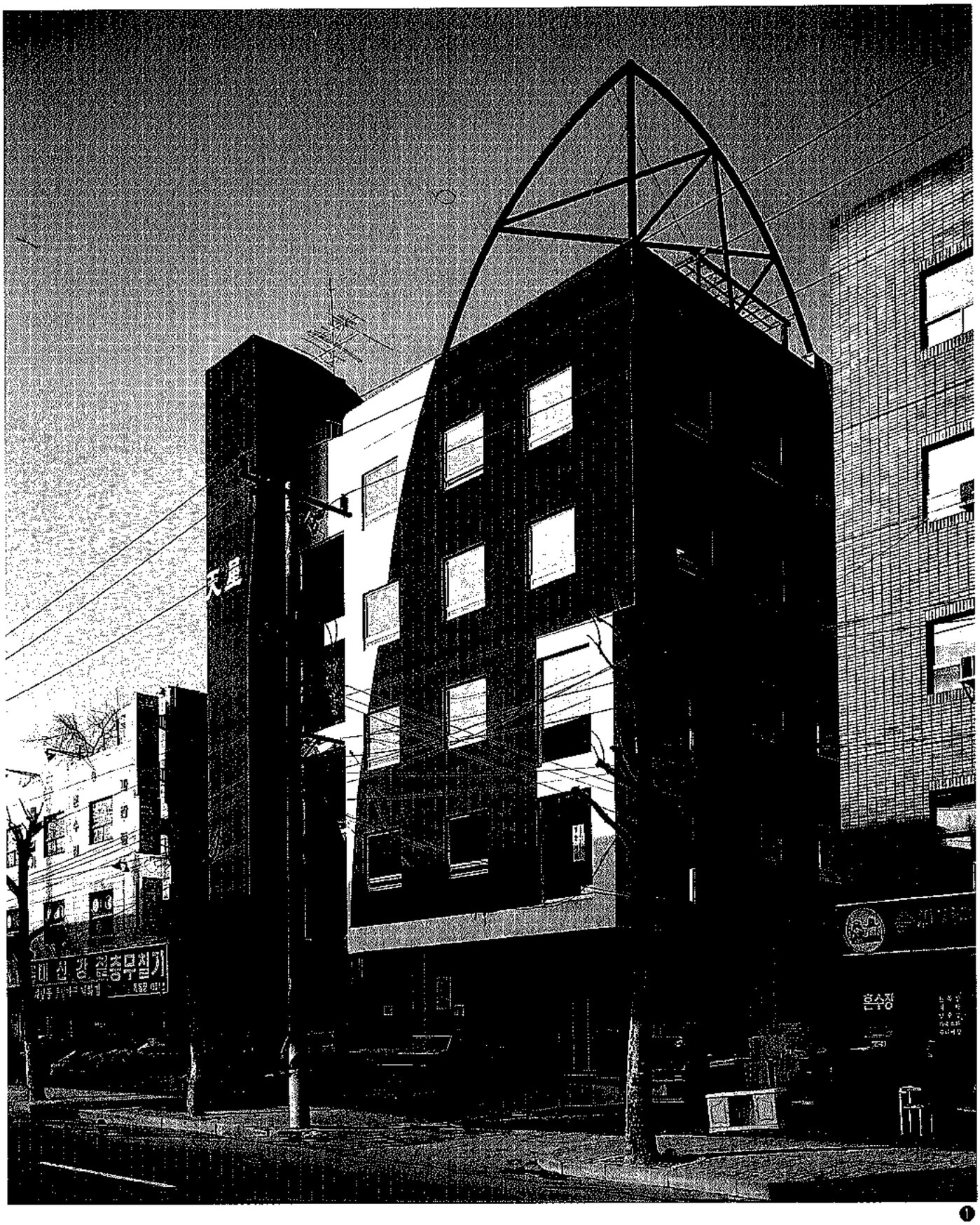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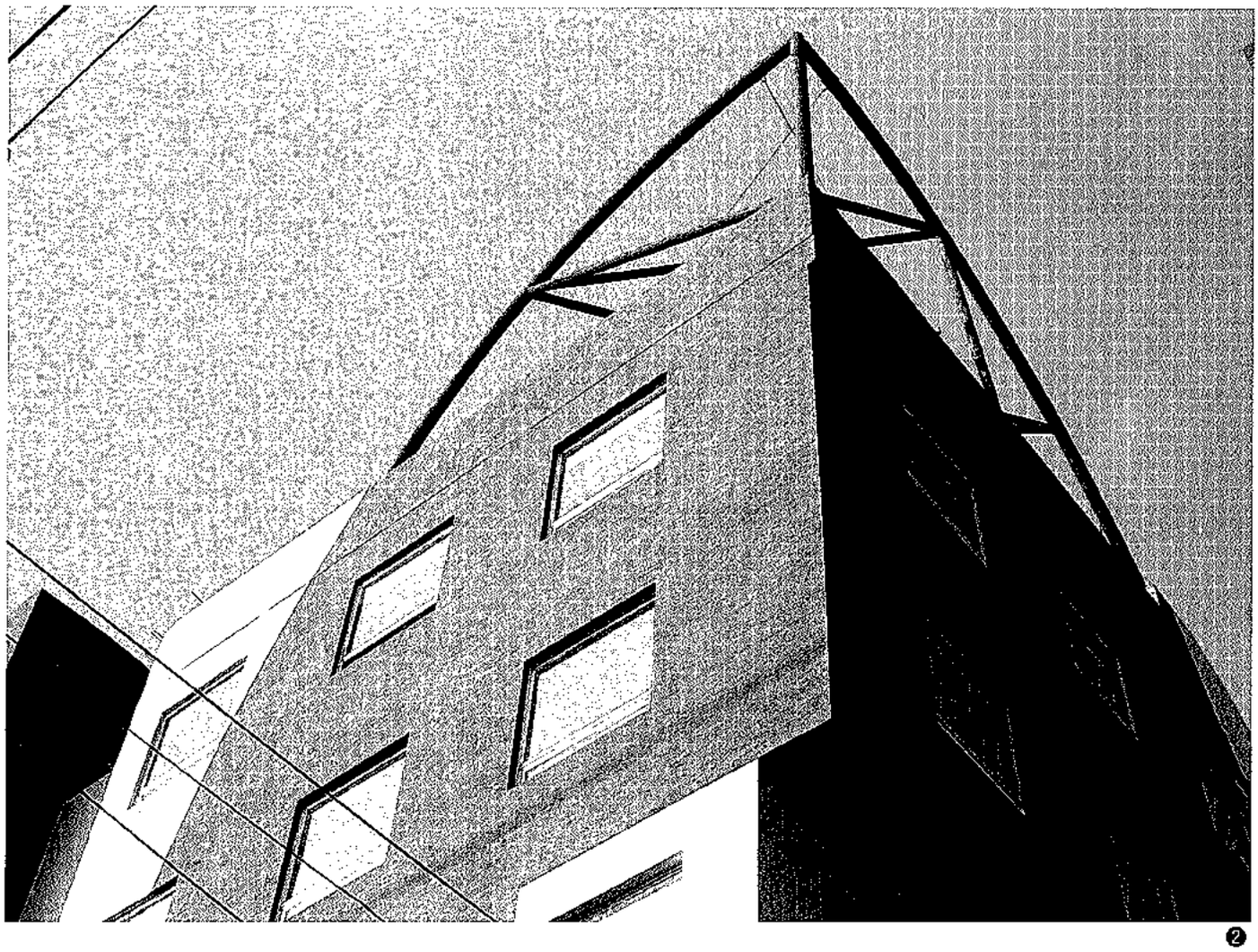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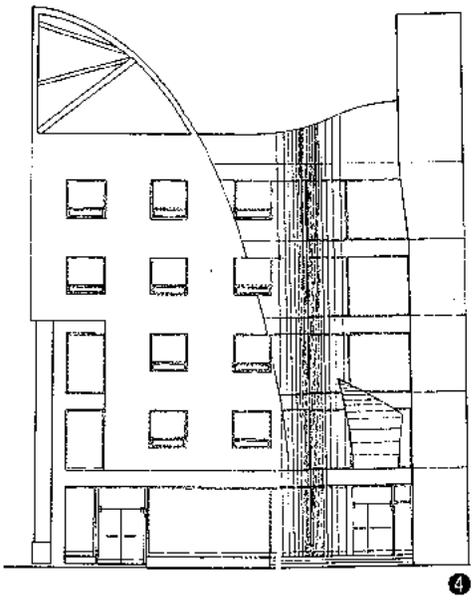

❹

❶ 동남측 전경
❷ 남동측 상부 상세
❸ 1층 계단실 상세
❹ 정면도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220-182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제2종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354.00㎡
건축면적 / 176.87㎡
연면적 / 1157.41㎡
건폐율 / 49.66%
용적률 / 217.4%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외부마감 / 일자도료코팅(외벽단열시스템)
설계담당 / 김영곤, 윤연자, 오창룡, 장성렬 (CAD), 차주영, 박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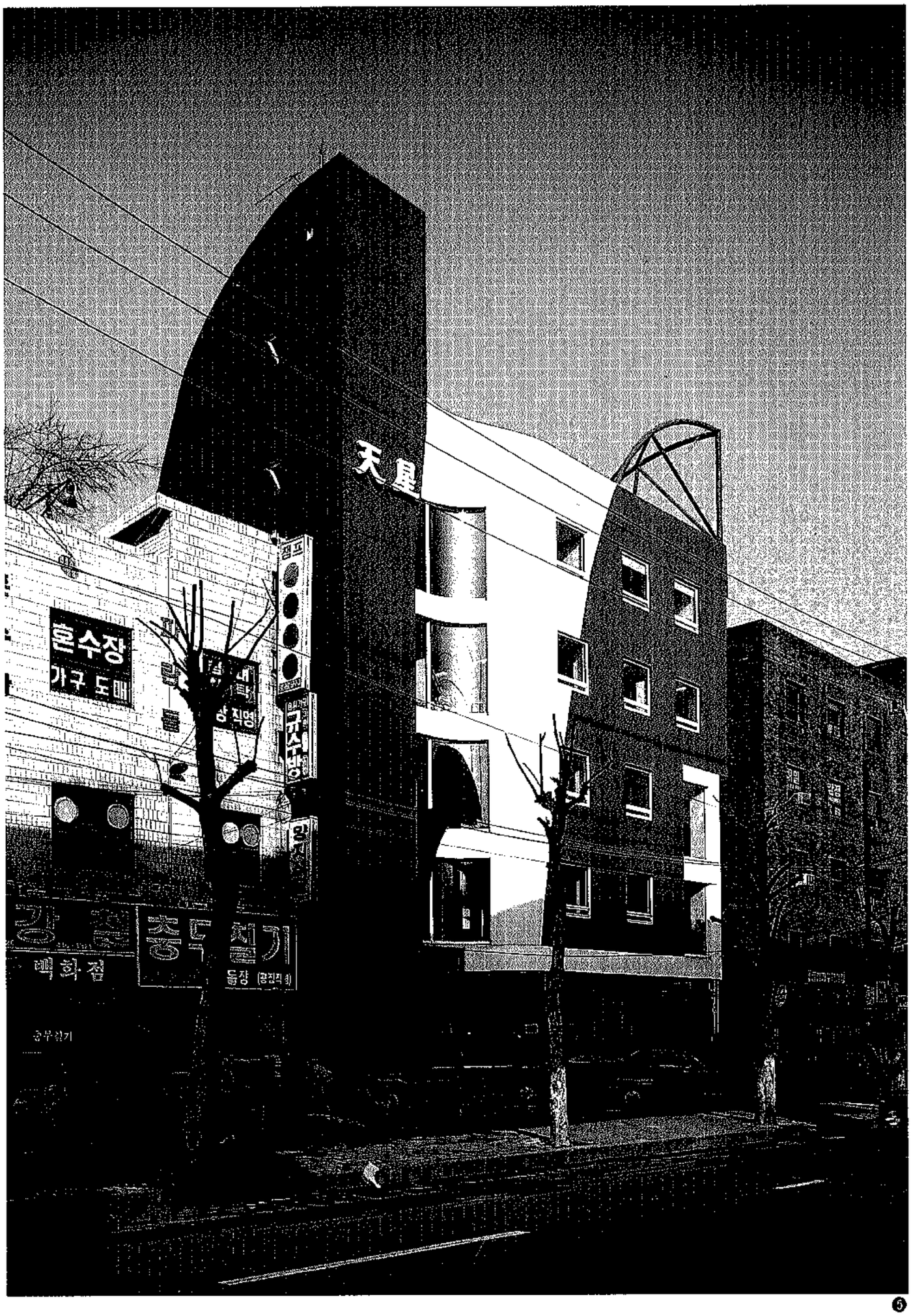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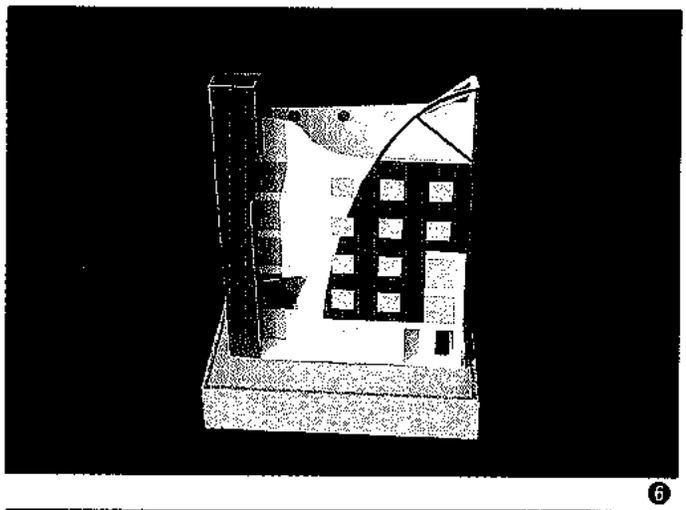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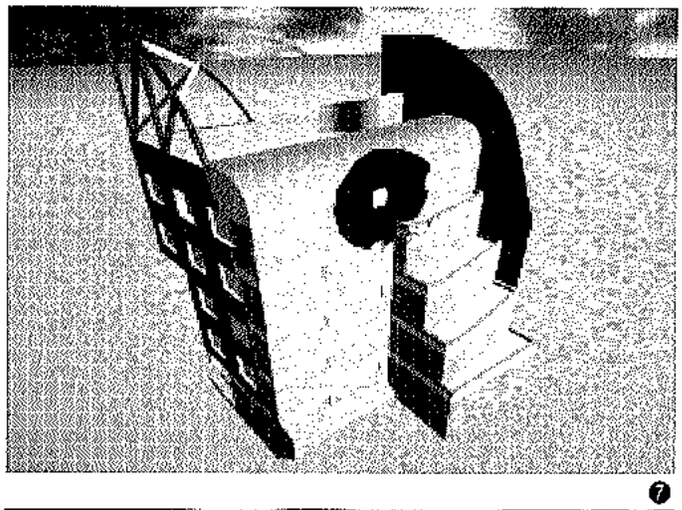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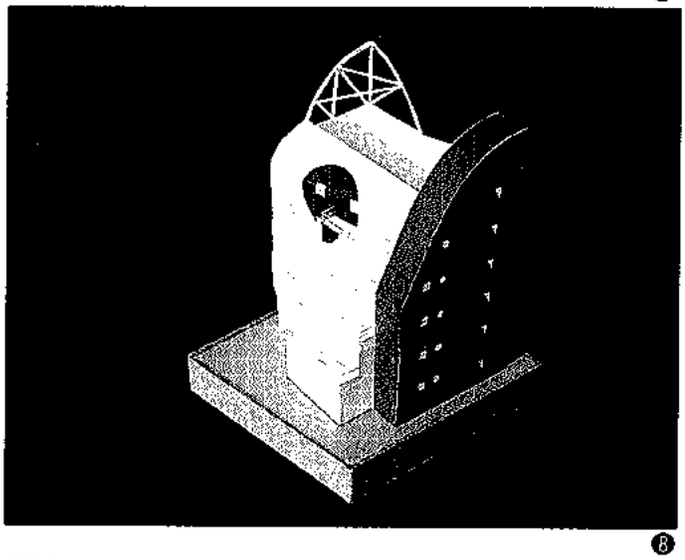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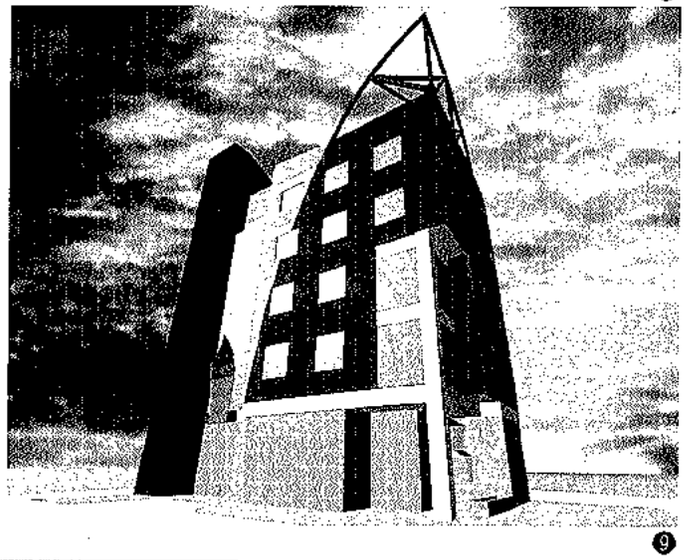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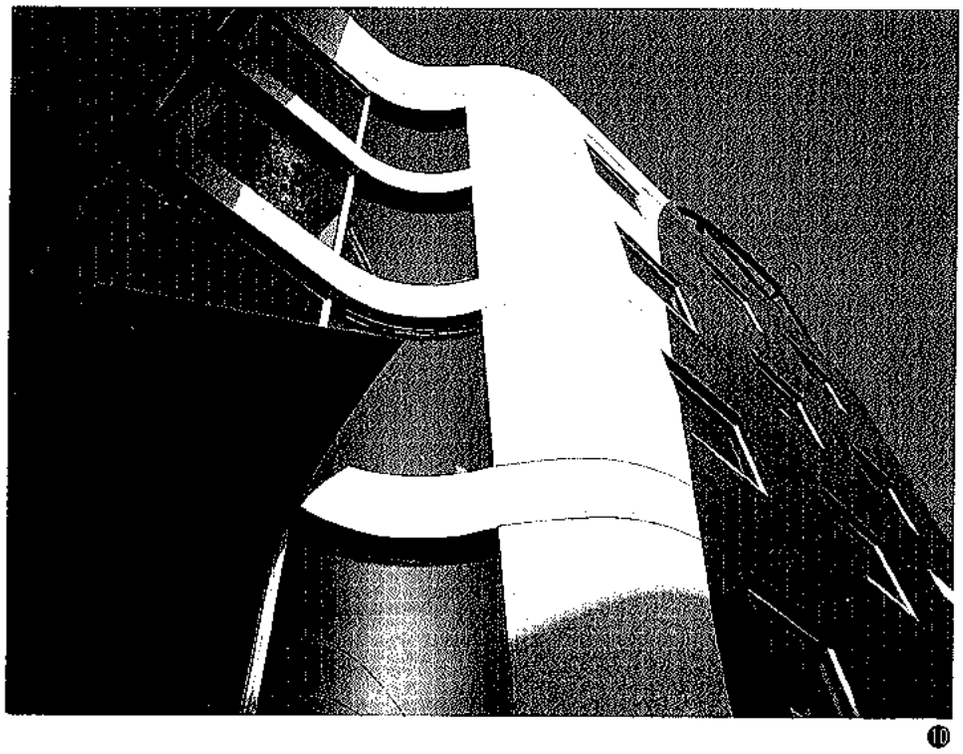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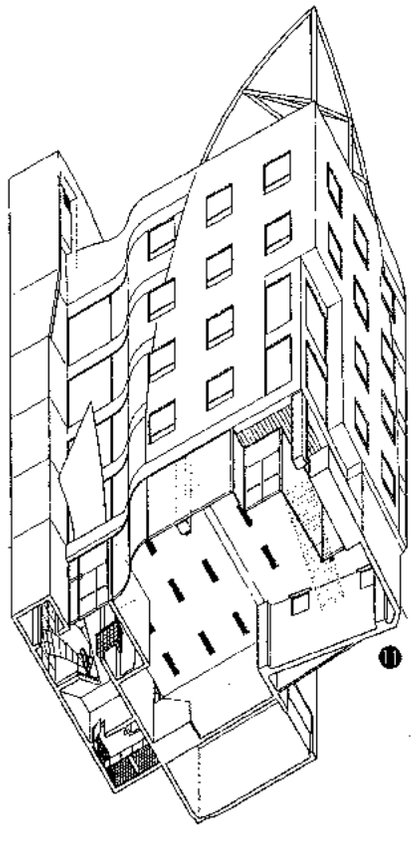

⓫

❺ 남서측 전경
❻ 모형 Ⅰ
❼ CAD 모델 Ⅰ
❽ 모형 Ⅱ
❾ CAD 모델 Ⅱ
❿ 전면 상부 상세
⓫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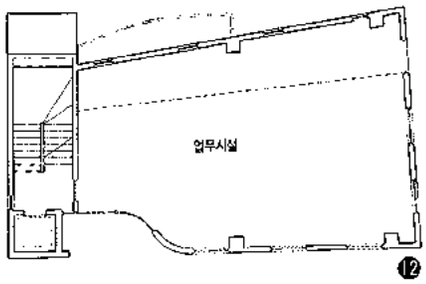
업무시설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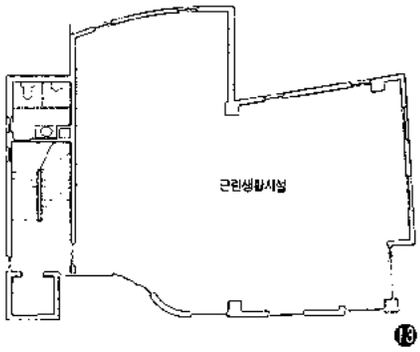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

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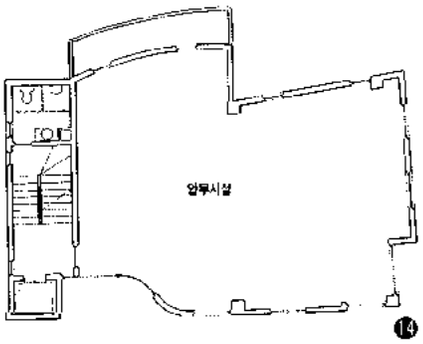
업무시설

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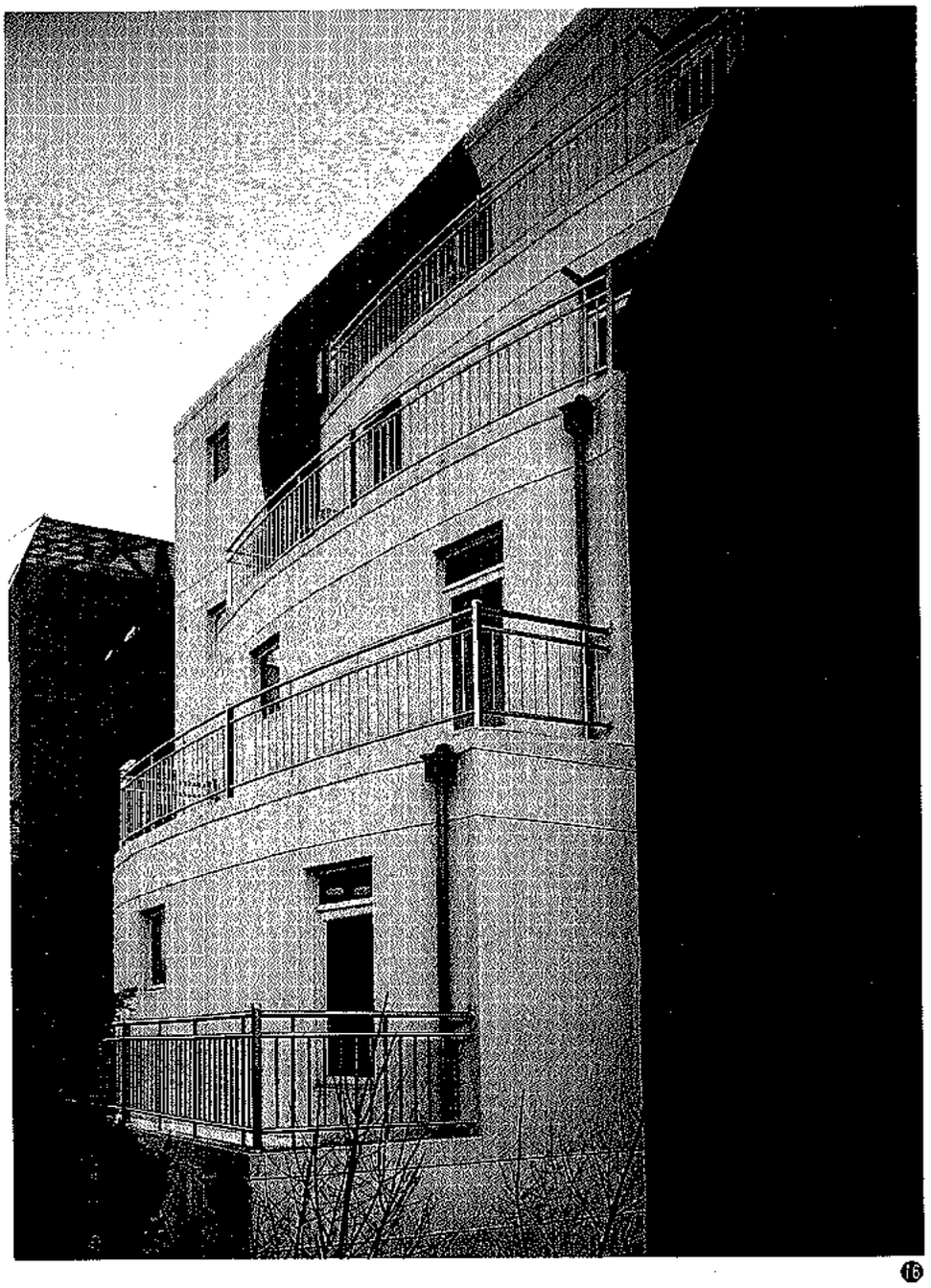

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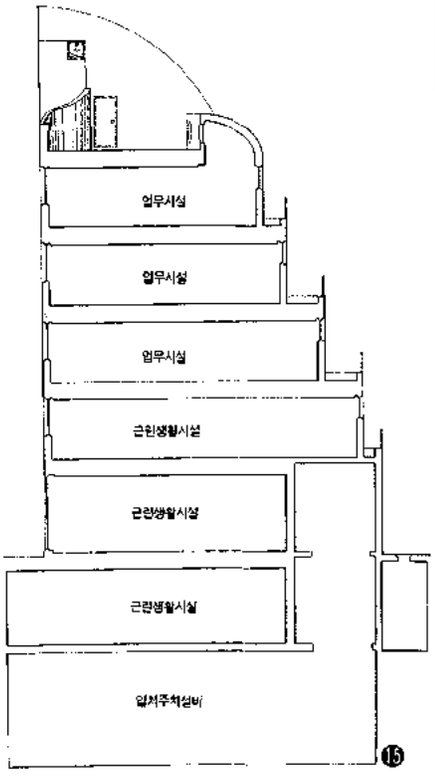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업저주택설비

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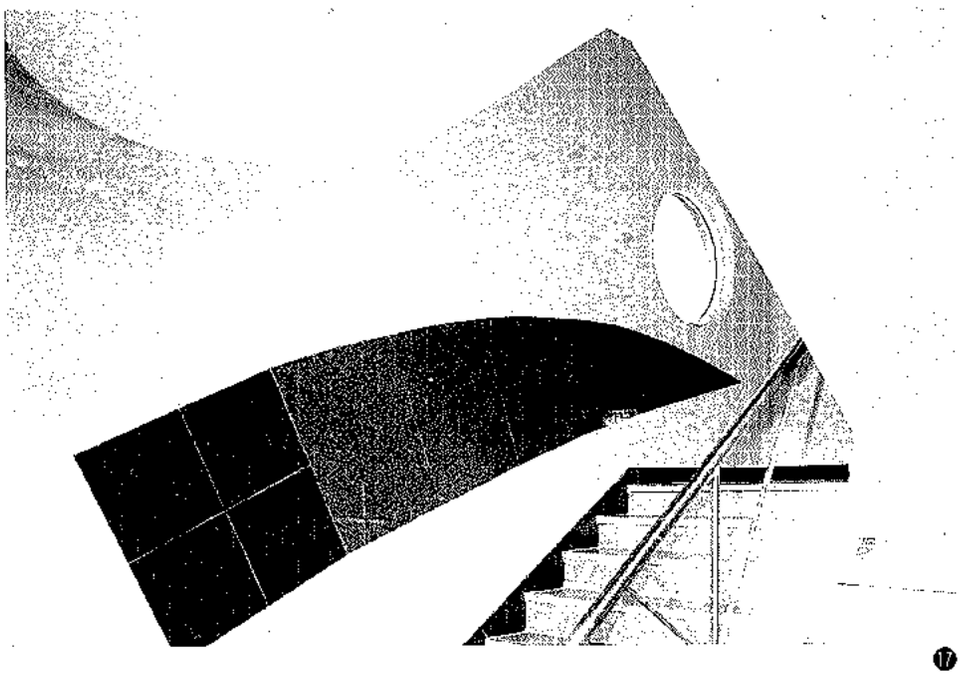

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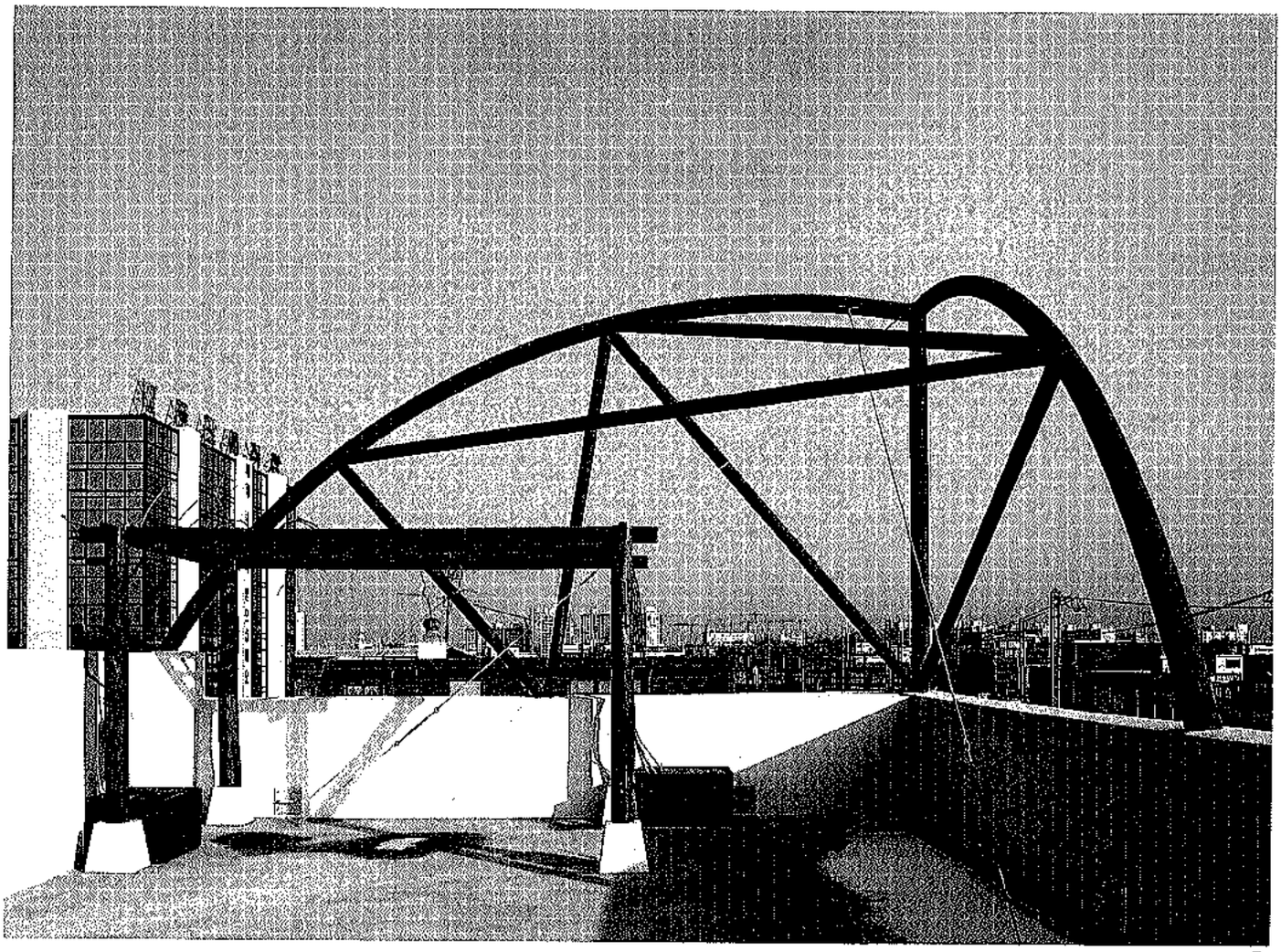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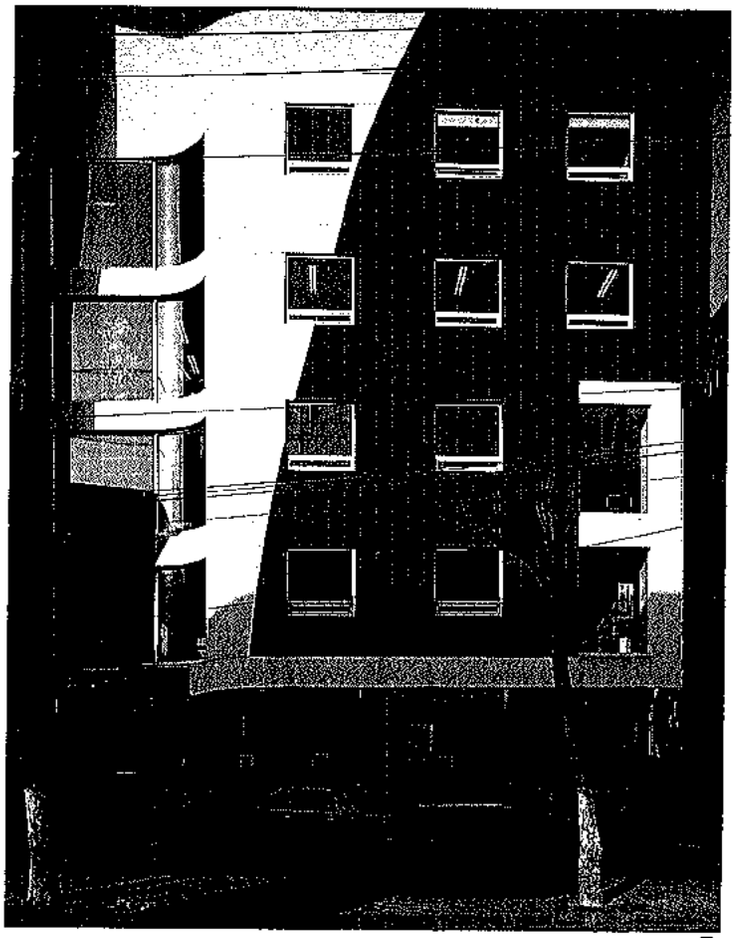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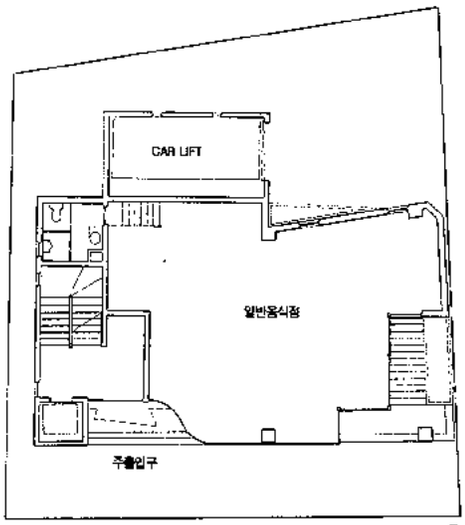

⑳

⑫ 5층 평면도
⑬ 3층 평면도
⑭ 2층 평면도
⑮ 종단면도
⑯ 북측 배면 상세
⑰ 1층 계단실 상세
⑱ 옥상에서 본 철골트러스
⑲ 남측 정면 상세
⑳ 1층 평면도

삼성레포츠 센터

Samsung Leports Center

金昌壽+朴昇+韓相默/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Soo, Park, Seung & Han, Sang-M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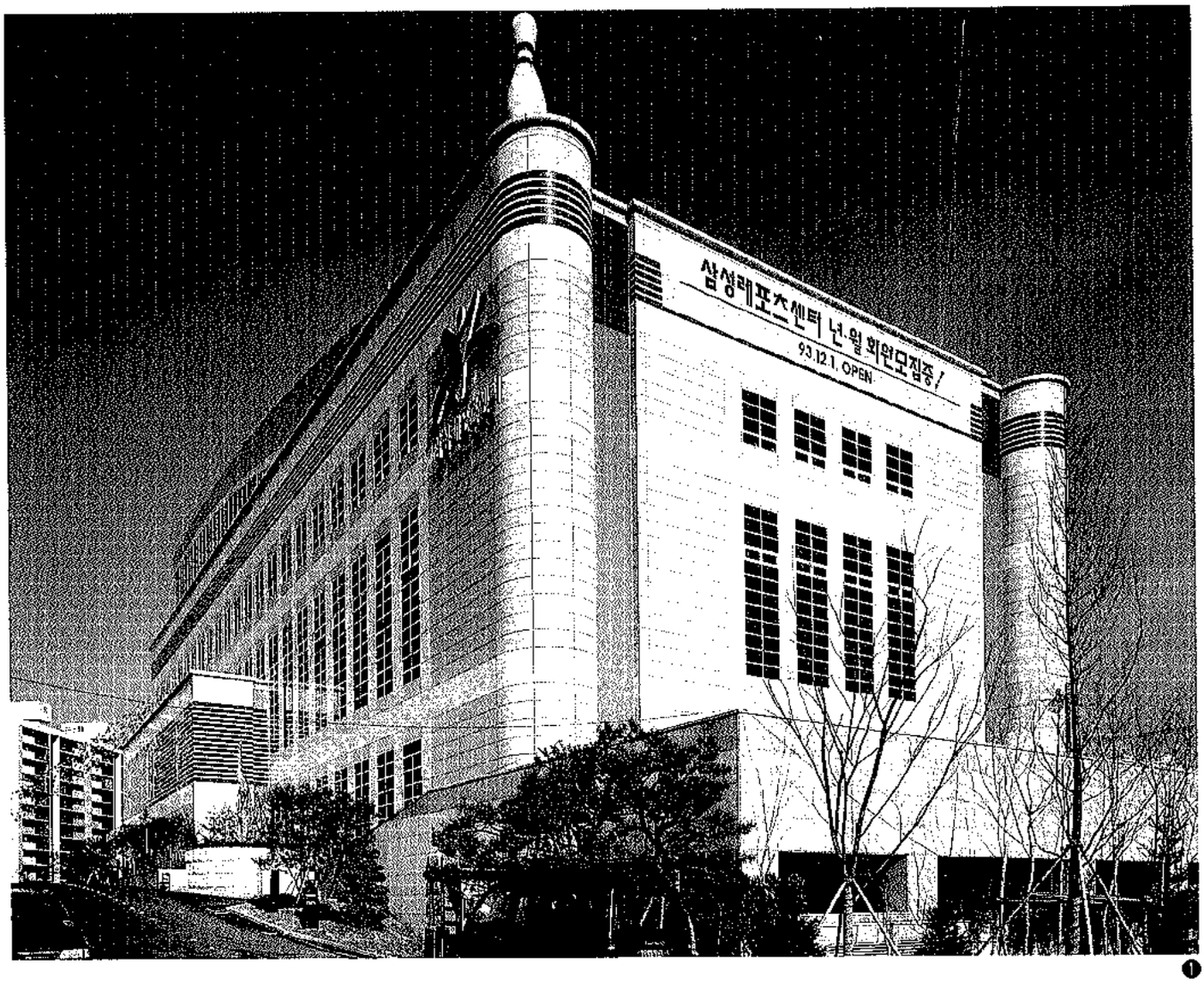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5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건물용도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6,183.3㎡
건축면적 / 2,792.62㎡
연면적 / 20,793.275㎡
건폐율 / 45.14%
용적률 / 170.30%
층수 / 지하 4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미늄판, THK24 페어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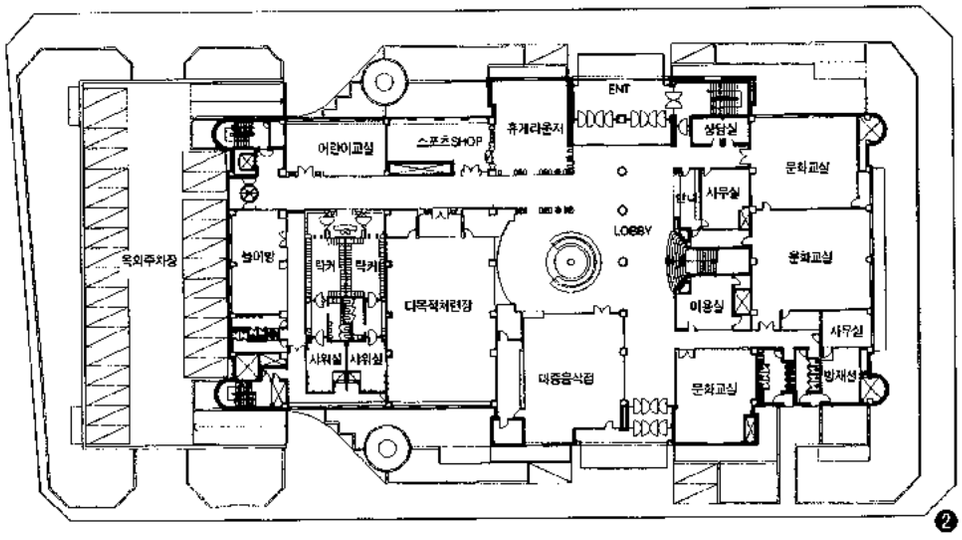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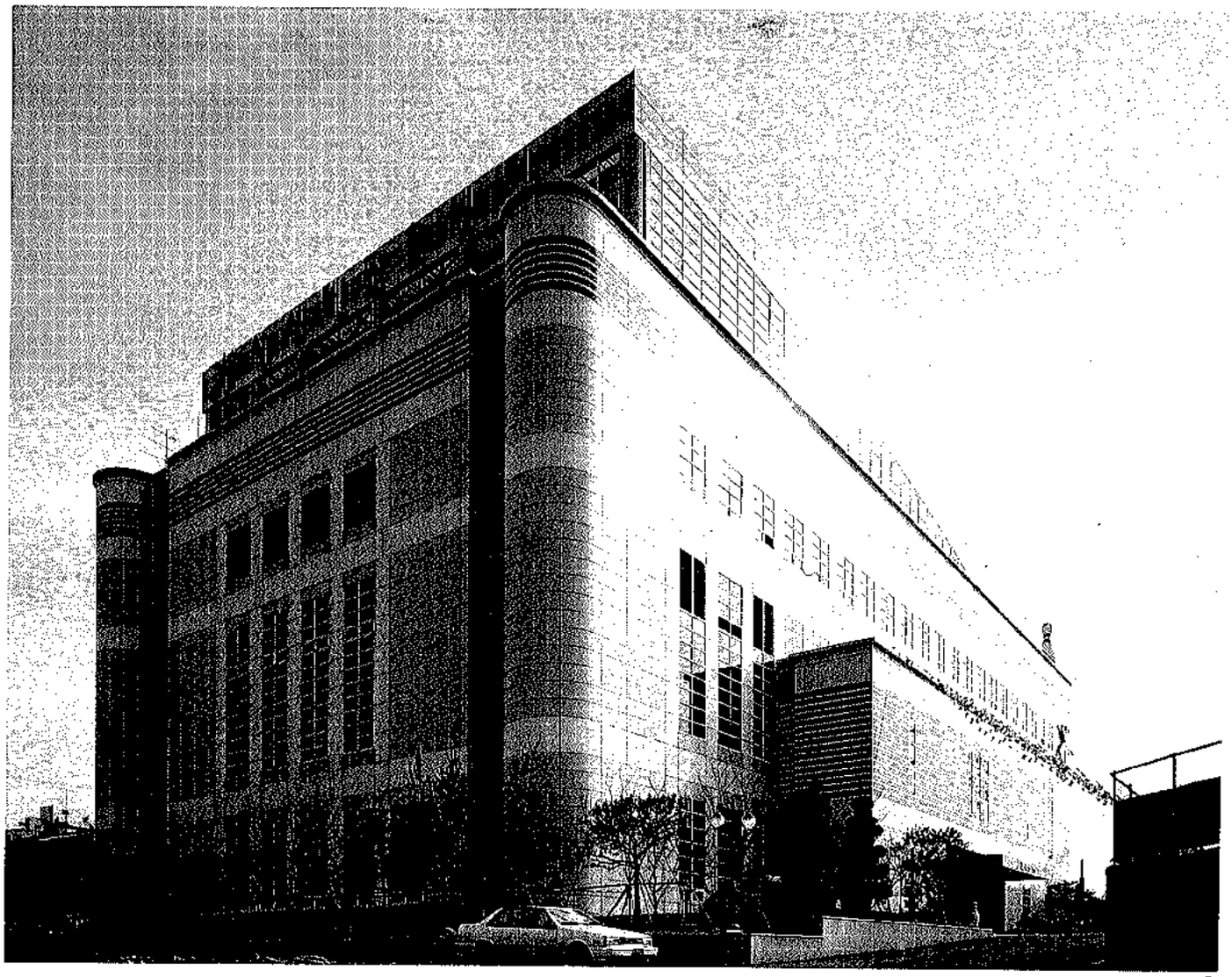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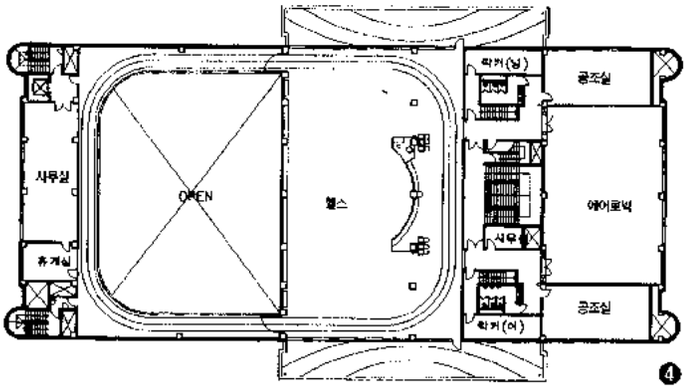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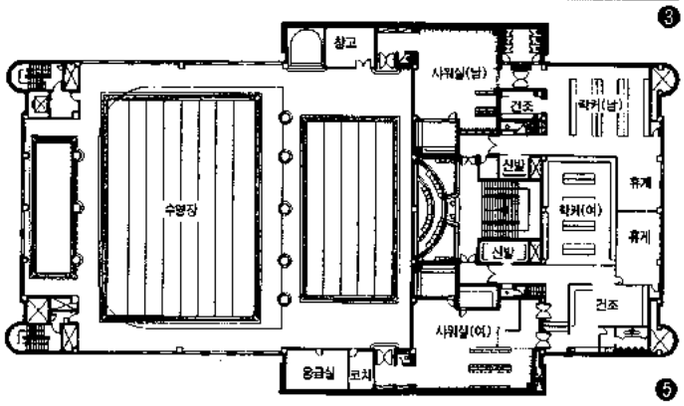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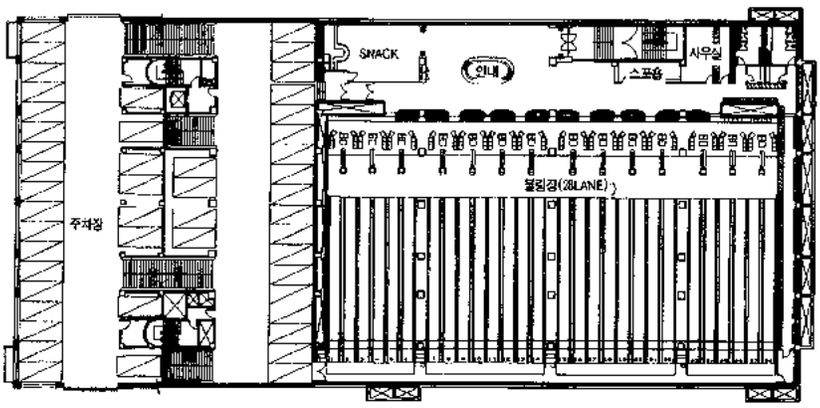

❻

❶ 진입로에서 본 전경
❷ 배치 및 1층 평면도
❸ 측면 전경
❹ 3층 평면도
❺ 2층 평면도
❻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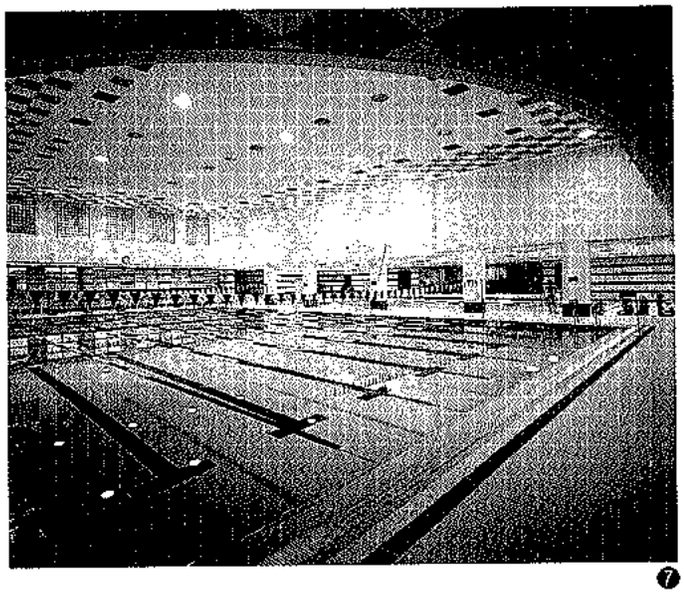

❼

❽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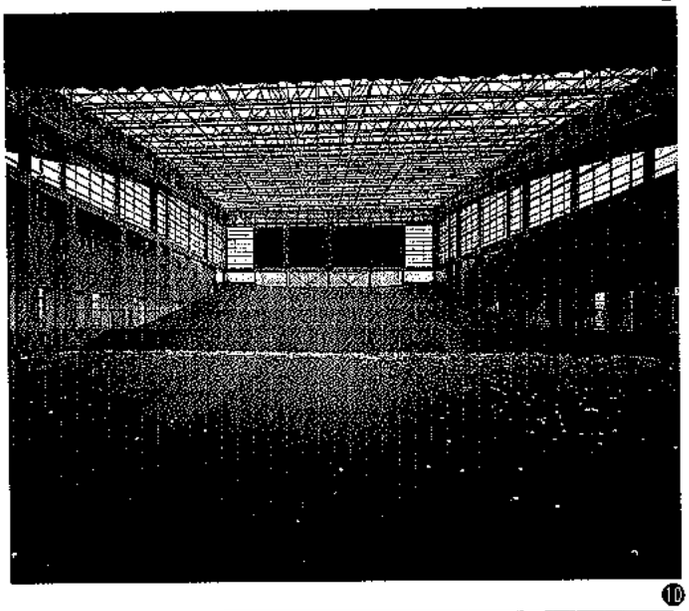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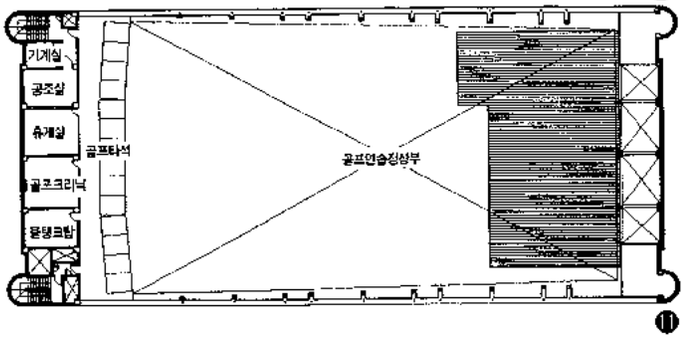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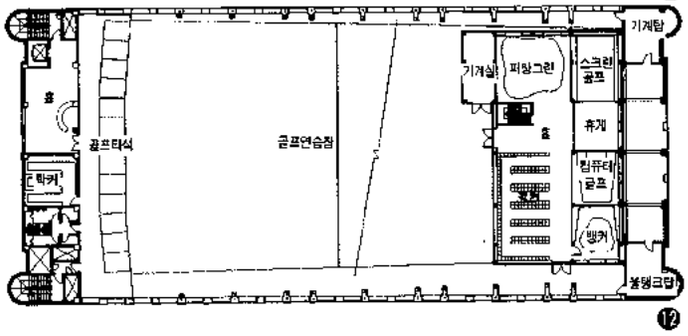

⓬

요즈음 우리주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인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개개인의 건강증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레져에 대한 참여욕구가 더욱 보편화, 대중화되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프로젝트는 삼성 라이온즈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야구단 운영의 일부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삼성 관계사 임직원의 후생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래 삼성농구단이 사용하던 체육관을 경기도 용인군 수지체육관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국내최고 수준의 종합 스포츠 전문시설을 신축하게 되었다. 신축건물 부지는 강남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들이 형성하는 블럭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지 주변에는 고급 주거단지와서울교대, 여원사 스포츠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편의시설로서의 가치는 그 외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전문 실내 Sports Complex는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회원제 운영방법을 채택하고 그와 별도로 일부 일반 회원시설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고정이익 창출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나 본 건물에서는 모든시설을 일반 일반 이용객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토록 일반 회원제 운영방식만 채택 운영하는 System로 구성되었다.

초기 배치계획단계에서 주출입구 위치는 추후 사업규모 확장을 감안하여 현 탁구장측 도로면에 설치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주차공간(312대)을 확보하면서 주변도로 레벨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하주차 진입방식을 Skip Floor Type으로 채택하였다. 평면계획에서 보울링장은 지하에 배치하여 자체소음 및 이용시간대가 다른 동선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수영장은 채광 및 전망, 심리적인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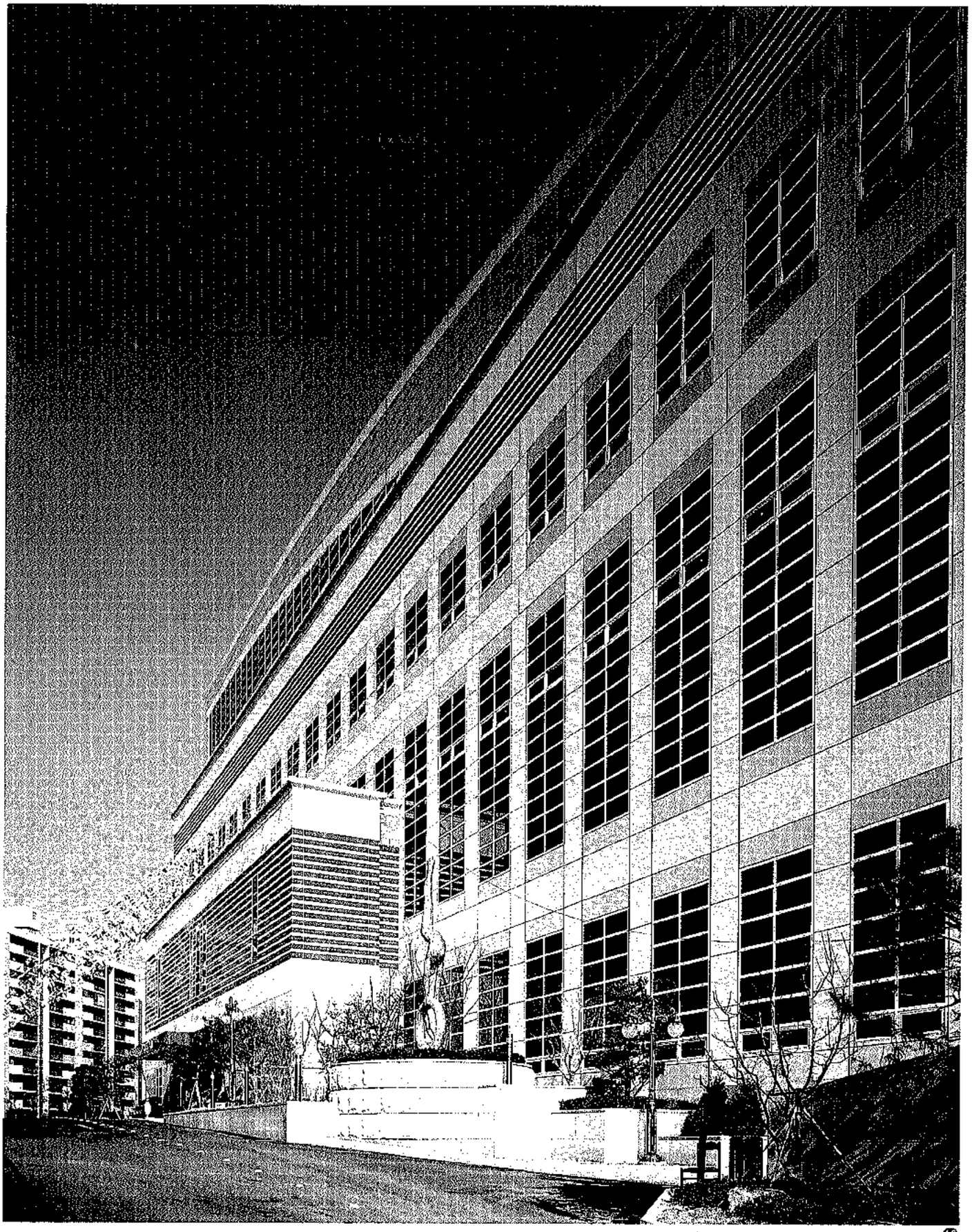

⑬

지상층에 설치하여 헬스, 에어로빅, 조깅트랙과도 연계운영 가능토록 동선처리 하였다. 옥상층의 골프연습장은 국내 최초의 실내골프 연습장으로 지붕면을 자연광이 최대한 투과되는 재질로 처리하여 밝고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입면계획은 전체 Mass를 안정감있고 좌우대칭의 Symmetry한 형태로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장식기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산뜻하면서 깔끔한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❼ 수영장
❽ 헬스장
❾ 보울링장
❿ 실내골프장
⓫ 5층 평면도
⓬ 4층 평면도
⓭ 전면 주출입구측 외부상세

지하철 종합사령실

Integrated Control Center of the Subway

趙南國/(주)건원국제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Nam-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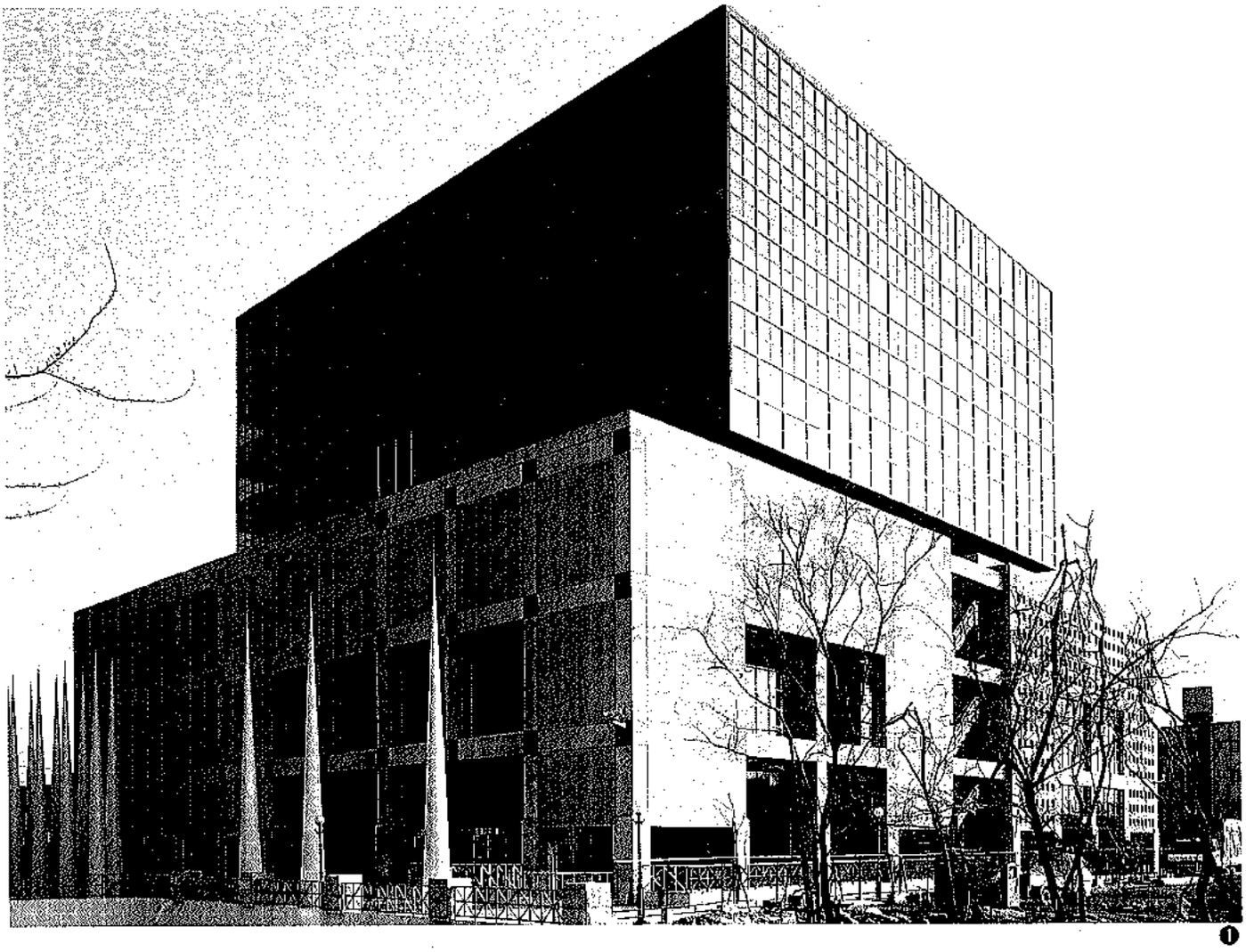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서울시 성동구 군자동 208-8, 7번지 일대
지역·지구 / 일반 주거 지역 2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5,270.00m²(1,594.18평)
용도 / 공공 업무시설(부속시설, 후생시설)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3층, 지상 7층
건축면적 / 2,366.00m²
연면적 / 23,921.16m²
건폐율 / 44.90%
용적률 / 276.40%
외장재 / -외벽 : 커튼월, 경량 P·C 판넬
-지붕 : 콘크리트 평 스라브
-창호 : 알미늄 샤시+THK 24㎜ 칼라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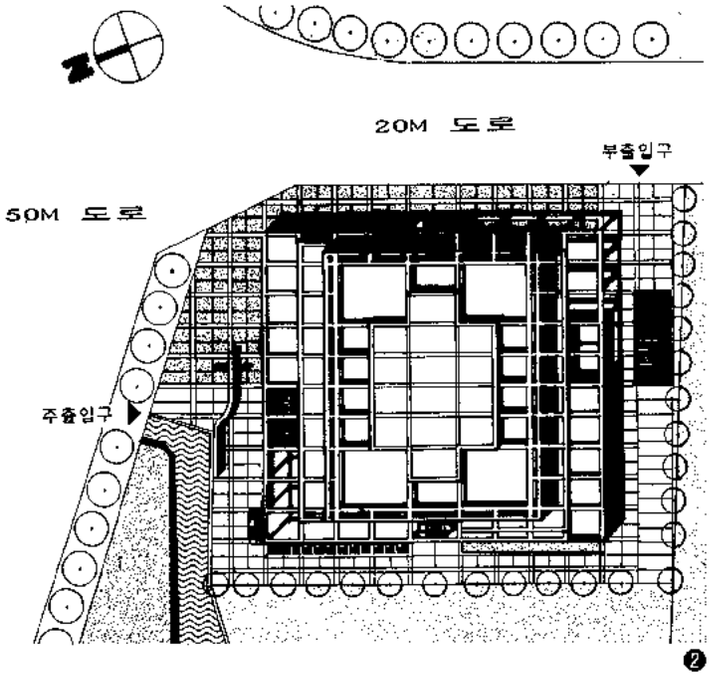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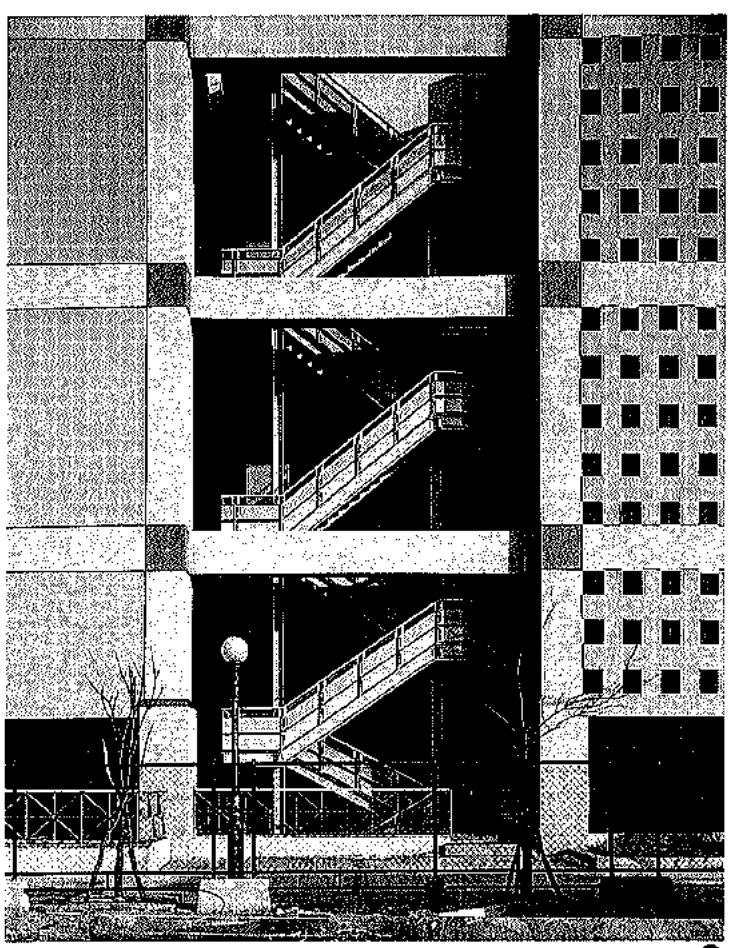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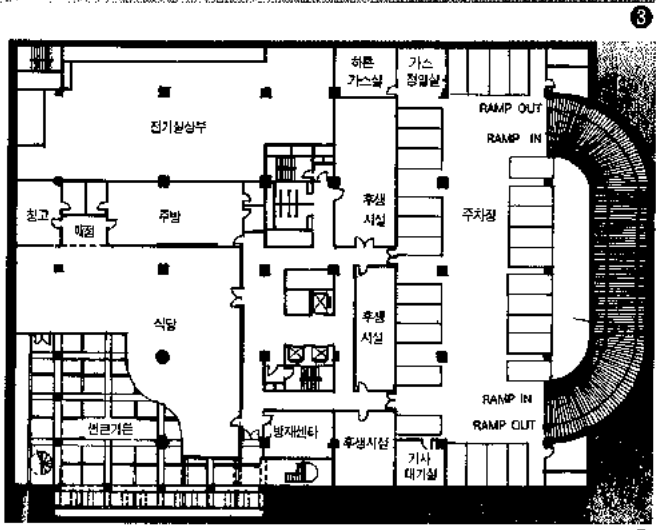

❺

❶ 북서측 전경
❷ 배치도
❸ 1층 로비
❹ 서측 외부계단 상세
❺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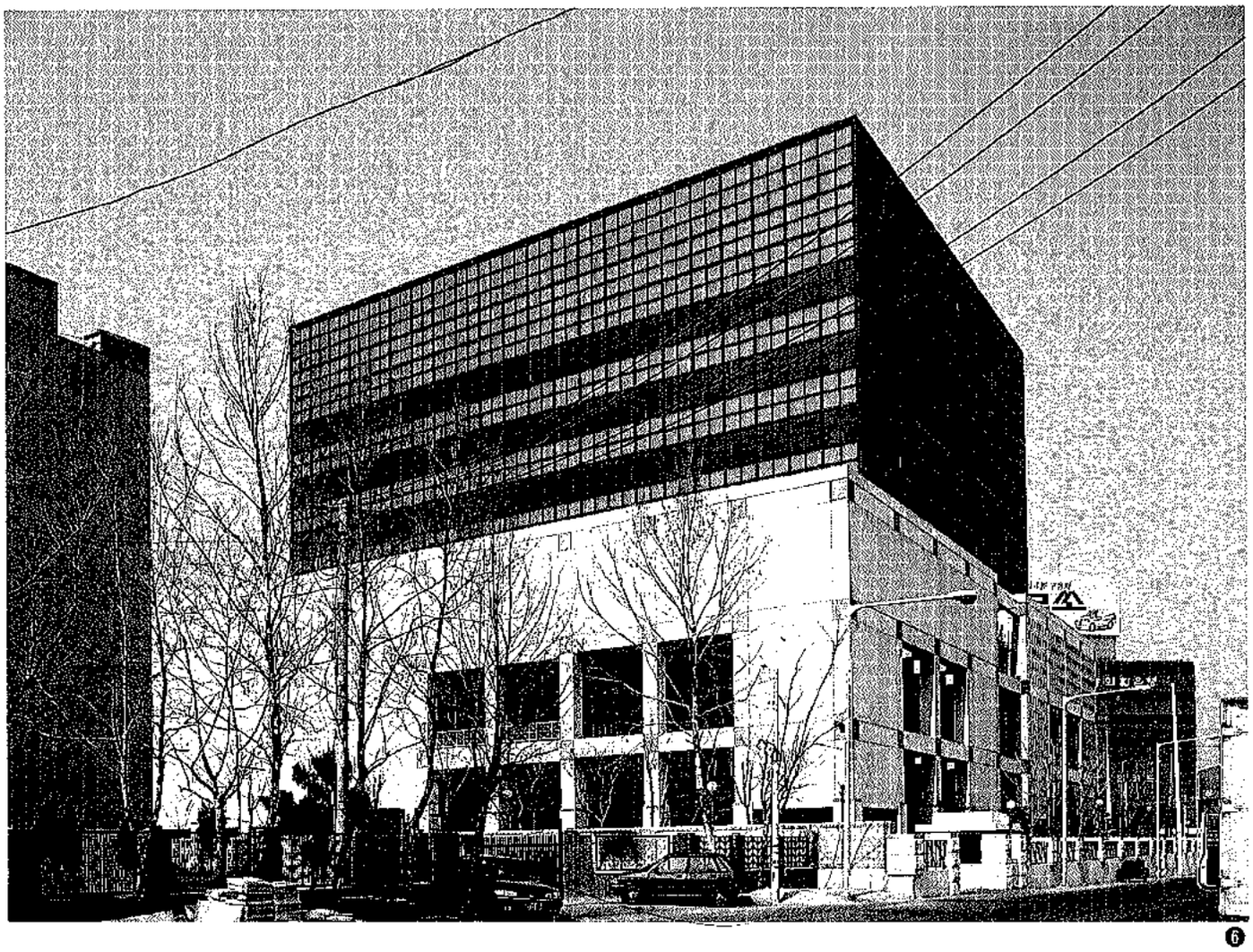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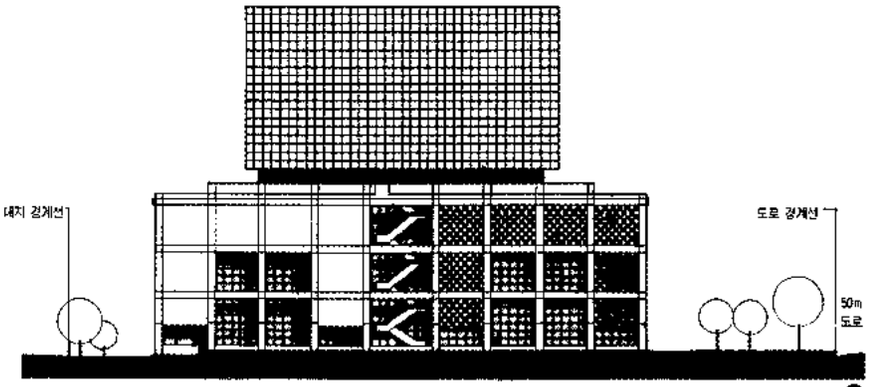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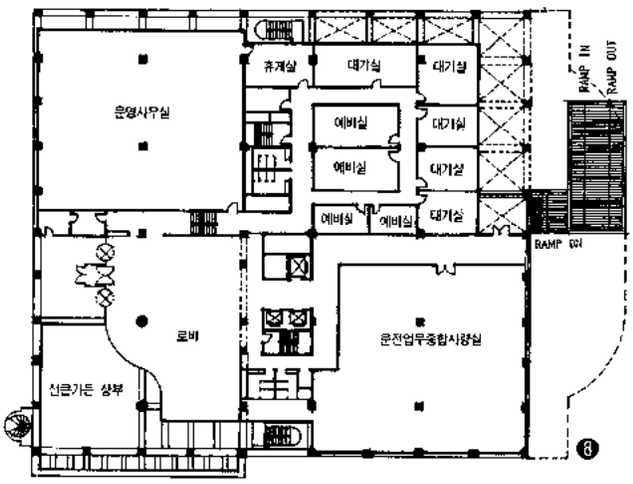

■ 계획배경

앞으로의 대중교통은 거리개념의 교통수단보다는 시간거리의 개념인 교통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지하철 노선이 확장됨에 따라 방배동 제1기 지하철 사령실(1~4호선)에 이어 제2기 지하철 종합사령실(5~8호선)이 90년 10월 설계 경기를 통하여 탄생되었다.

■ 계획전제

일반 업무시설이나 기타 공공건물의 기능과는 달리 각 호선별 지하철의 모든 사령을 담당하는 각종 최첨단 장비의 시설과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한 복합적 기능처리 계획과 내일의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미래 지향적 이미지 구현이 필요하다.

■ 계획 개념

본 계획부지는 천호대로변의 굴절부위에 위치하여 연속적 가로 흐름의 유지보다는 오히려 로터리로서의 독립적 부지블럭으로 해석된다.

로터리 성격을 갖는 독자적 조형의 이미지화와 작게는 부지내 토지이용 성격에 따라 충실한 계획으로 천호대로변의 무기질적 건축환경을 도시생태적 측면에서 본 도시 공간적 조형성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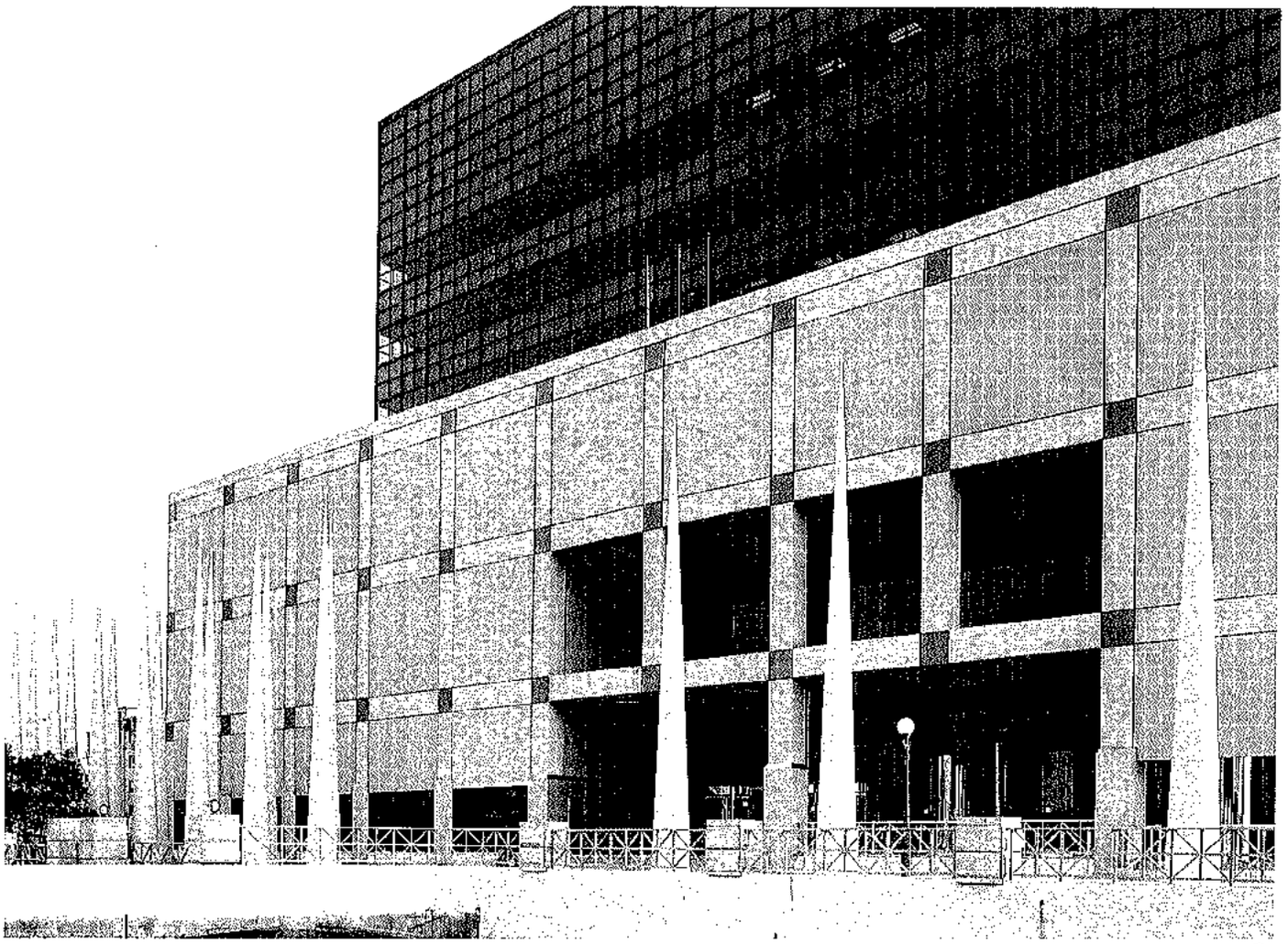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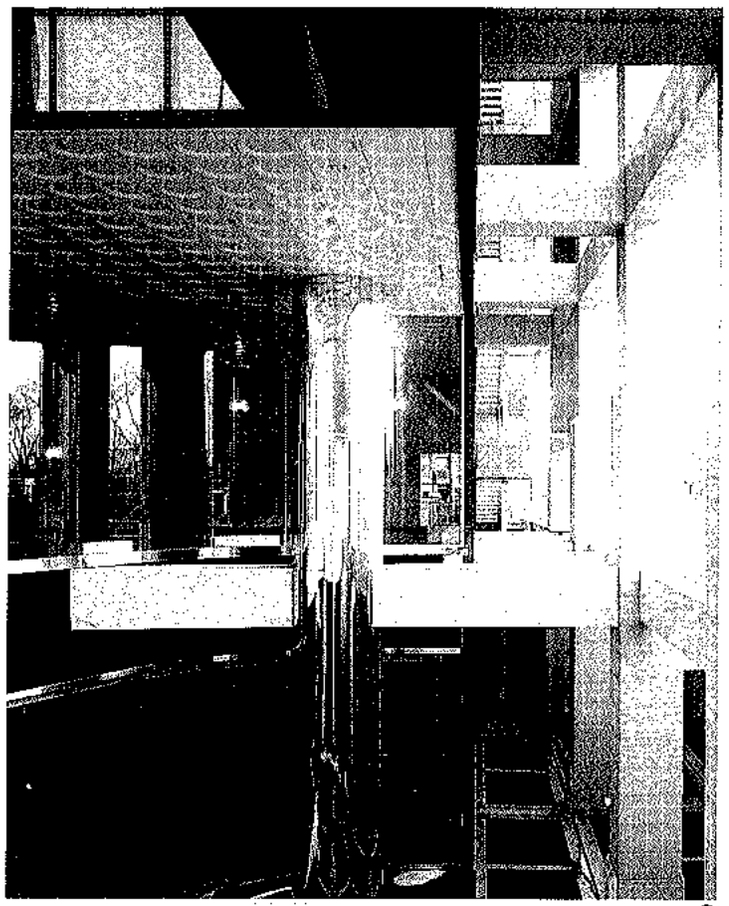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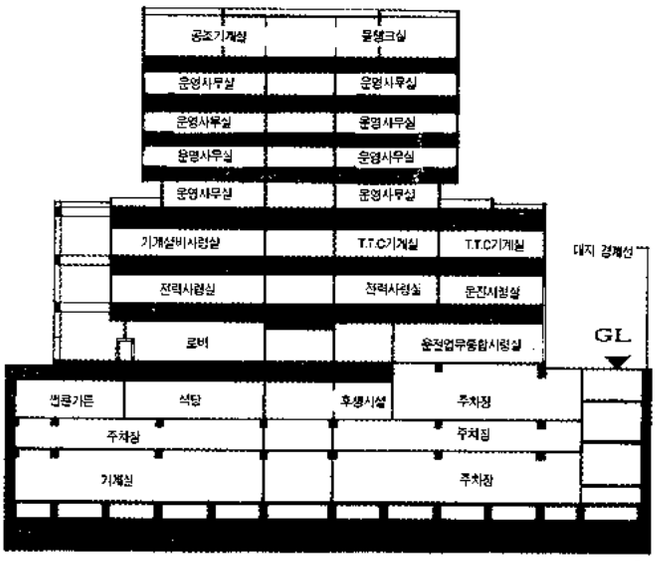

⓫

❻ 남동측 전경
❼ 동측입면도
❽ 1층 평면도
❾ 북측 외부 상세
❿ 선큰가든에서 계단을 바라봄
⓫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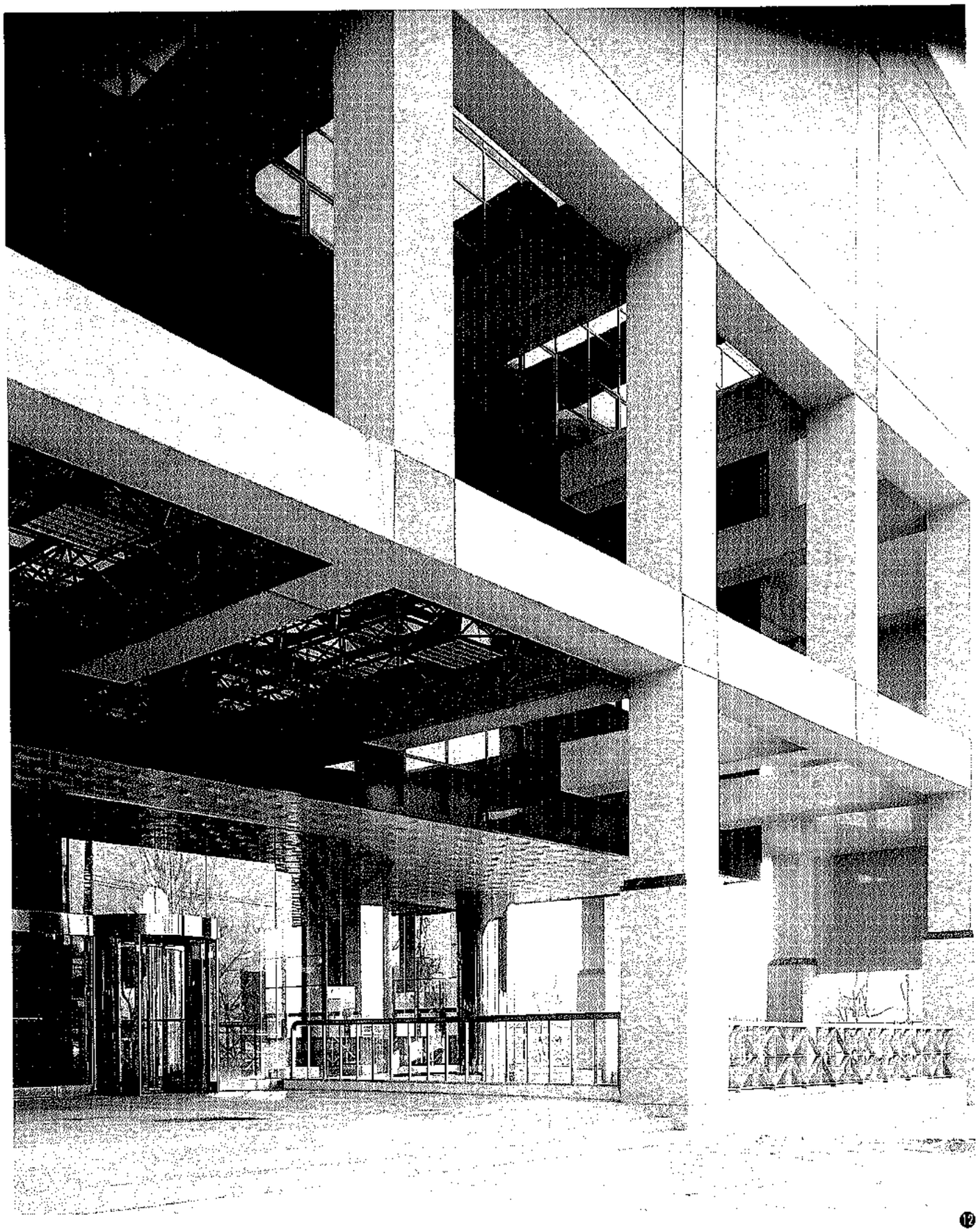

⓬

외부조형 개념은 전통적 구성요소로서 기단부와 몸통으로 구성된다. 기단부의 사령실(기계), 상층부의 운영사무실(인간)과 두 연결부위로 나누어 내적 기능의 외적 형태로의 표현, 사령실로서의 독특한 형태와 한국적 전통건축의 조형성을 추구했다.

설계자와 별도로 감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발전된 세부 마무리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 칼라의 변화등 일말의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시공과정에서 가급적 도면에 충실하여 시공하여 준 것과 미처 설계자가 검토하여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관청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천호대로변에 독특한 자기개성을 훌륭히 간직한채 지하철 사령실의 미래지표를 제시할 본건물이 새롭게 평가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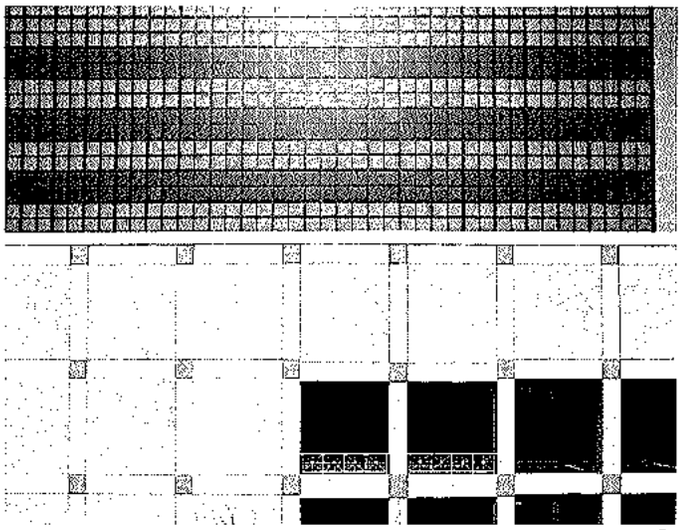

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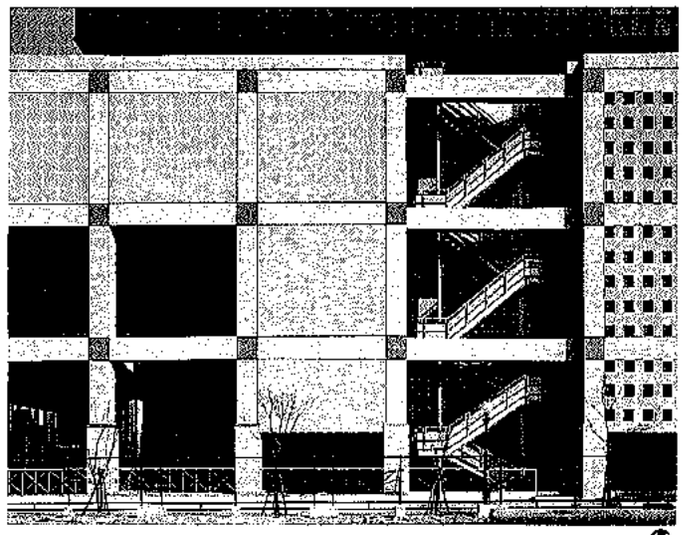

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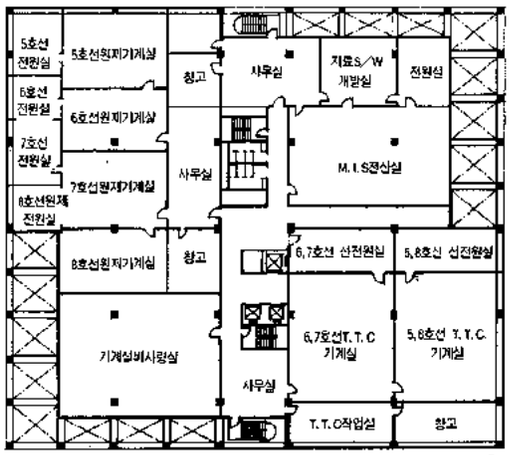

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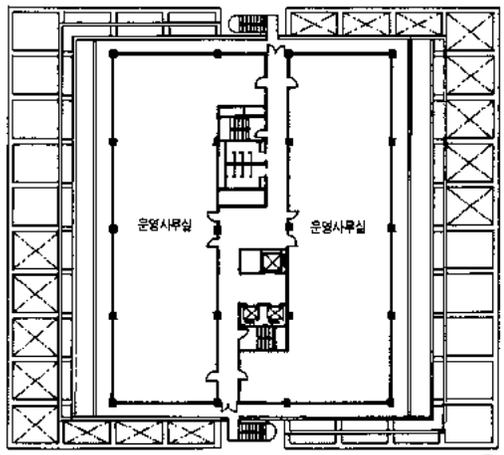

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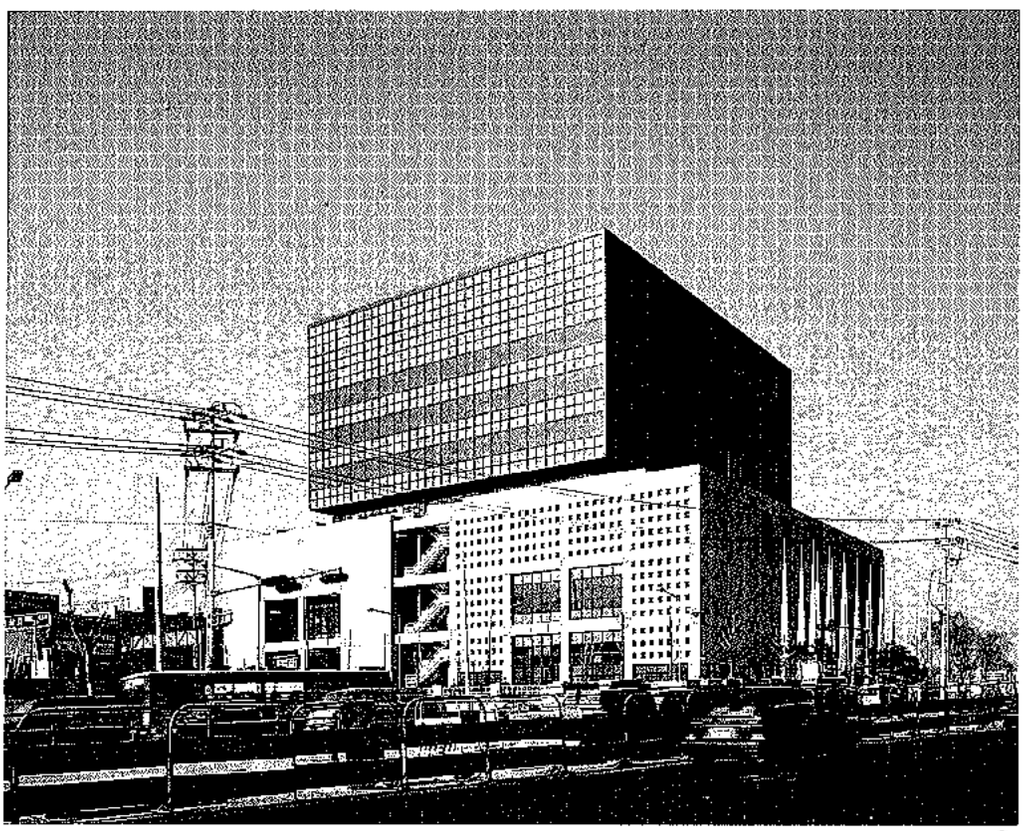

⓱

⓬ 주출입구 상세
⓭ 남측 외벽 상세
⓮ 서측 디테일
⓯ 3층 평면도
⓰ 4층 평면도
⓱ 동남측 전경

해태 사옥

Haitai Co. LTD

林龍澤/정원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Im, Yong-Taek

❶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31-1
대지면적 / 2,012.81㎡
지역·지구 / 일반주거, 일반상업, 주차장 정비 지구
건축규모 / 지하 4층, 지상 9층
건축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 패널, THK24 반사 복층유리(반사율 11%)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46.68%
연면적 / 12,599.34㎡
용적률 / 2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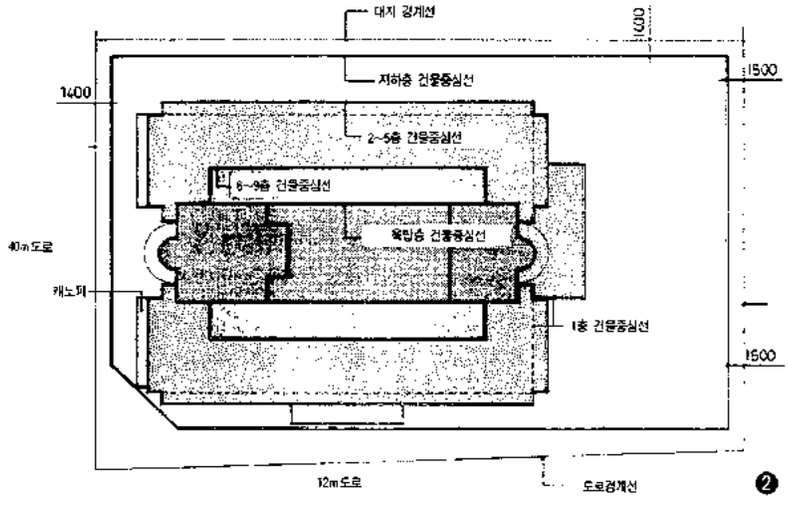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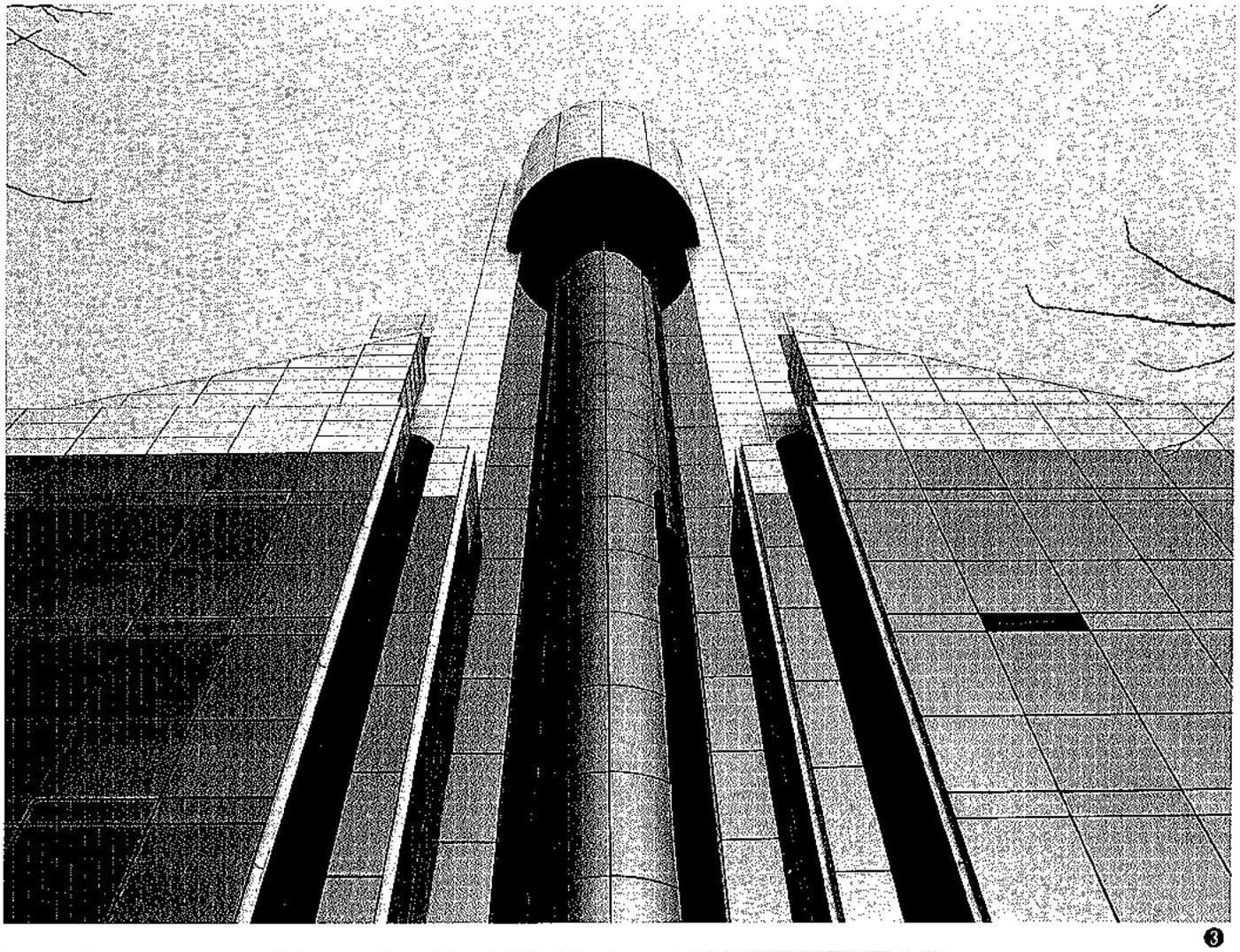

❸

❹

❶ 남서측 전경
❷ 배치도
❸ 올려다 본 서측 외부 디테일 상세
❹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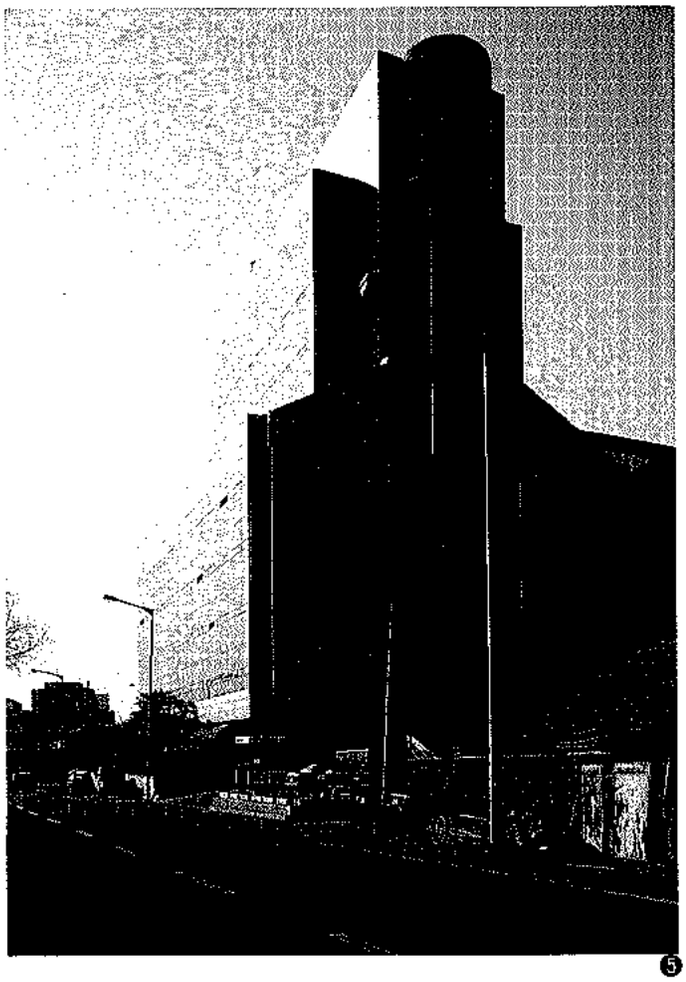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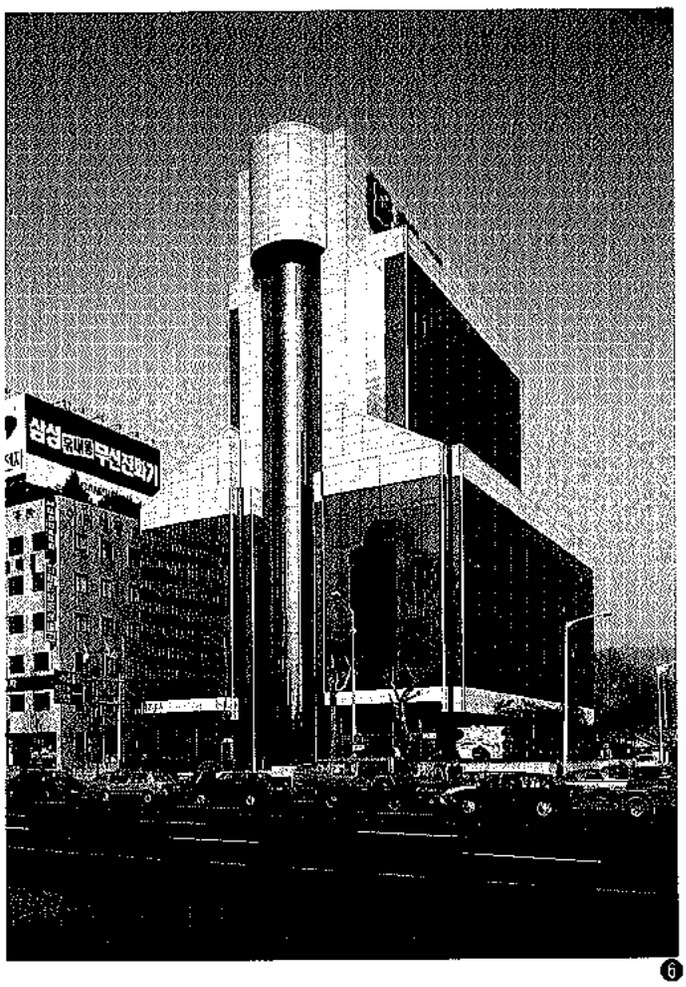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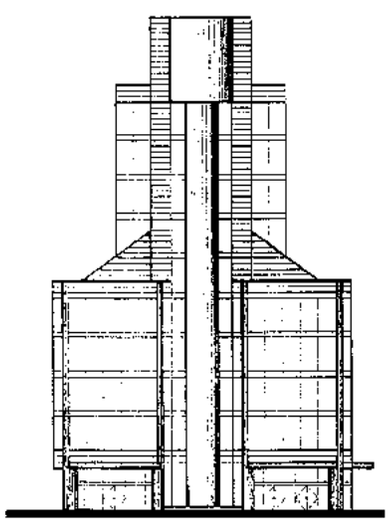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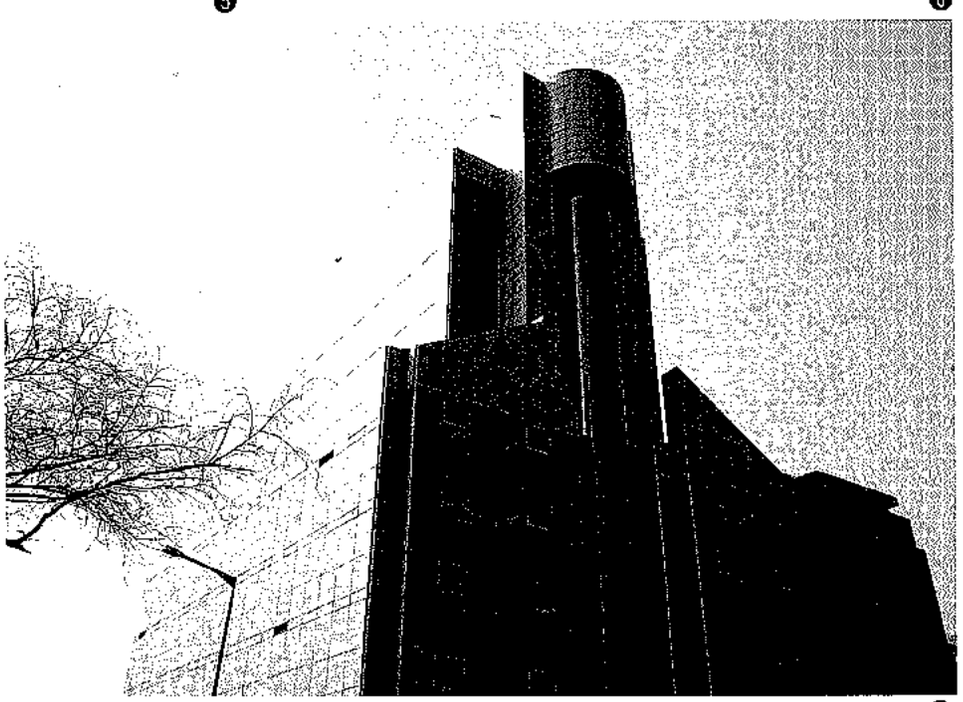

40m 도로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창밖으로 여러개의 건물들이 나열되고 그 무리들이 다시 하나의 소도시로 보이는 도심에서 자신의 얼굴(Facade)이 불특정인에게 보여짐은 하나의 모험이며 정당한 비판의 자리이다. 많은 건축가가 시도 하였고 지금도 시행되는 건축의 자리 앉히기(배치), 외모 다듬기(입면) 그리고 내적 충실성(평면) 등이 본 건물에서도 시도되었다. 그중 자리 앉히기와 내적 충실성의 완성도는 사용자의 사용이 전제된 후일의 느낌을 가지고 논하기로 하고 설계자의 몸과 마음을 쏟았던 덩어리(Mass)와 주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지 앞을 지나는 主도로(40m)를 직각으로 장방향 대지형상을 따라서 덩어리가 형성되고 다시 저층부위에 고층부를 앉히는 형식으로 하였다. 흔히 저층부가 고층부의 종속적 형태를 쫓아 다니는 것에서 저층부의 연장이 고층부로 이어지도록 저층부의 외모적 역할에 많은 할애를 하여 무변화의 외모를 탈피하였다. 또한, 양측코아 구조임에 계단실의 원형창이 또 하나의 수직적 외모로 구성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저층부와 고층부가 하나로 만나며 제2의 정면이 형성된다. 하나더 추가할 것은 밤이 되어 공간의 역할이 새롭게 형성될 때 계단실의 계단참, 계단의 규칙적 반복, 저층부만의 내부 투시등이 보행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으로 느끼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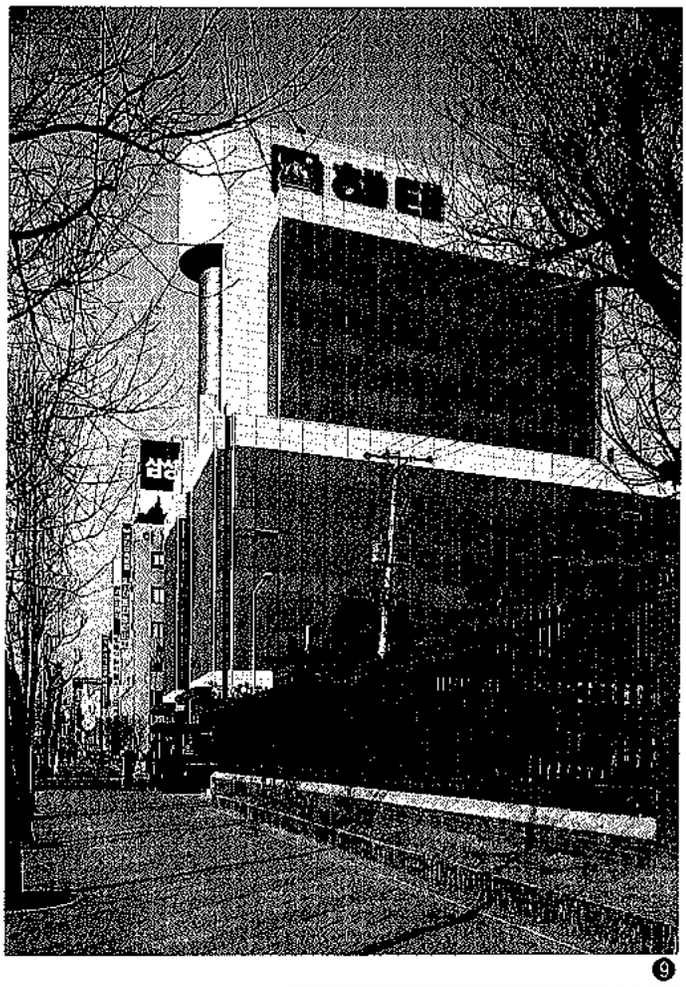

❾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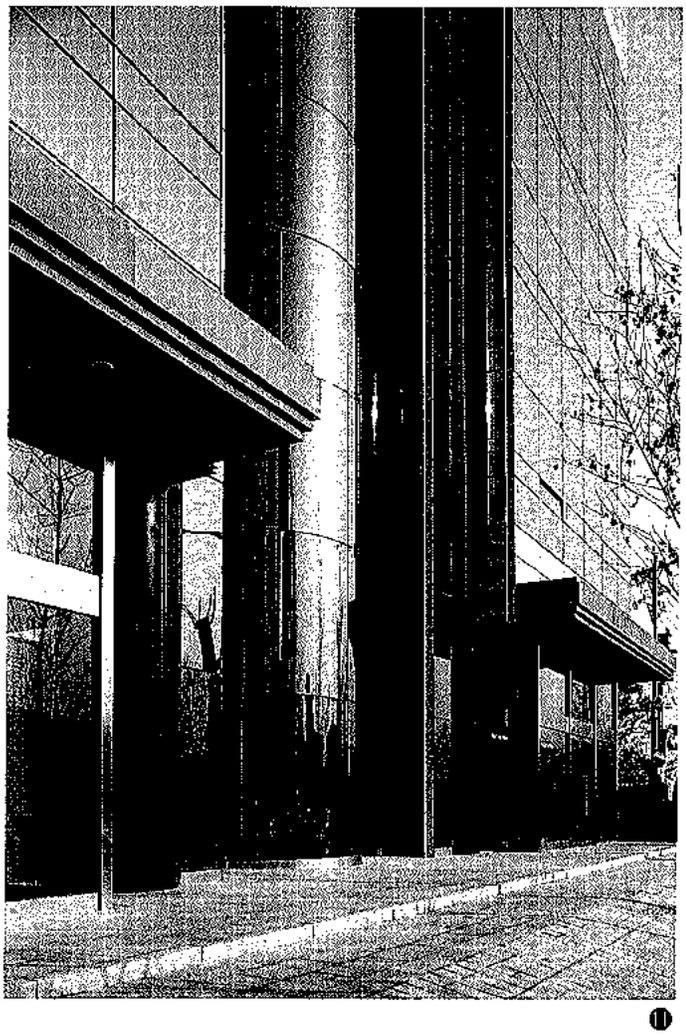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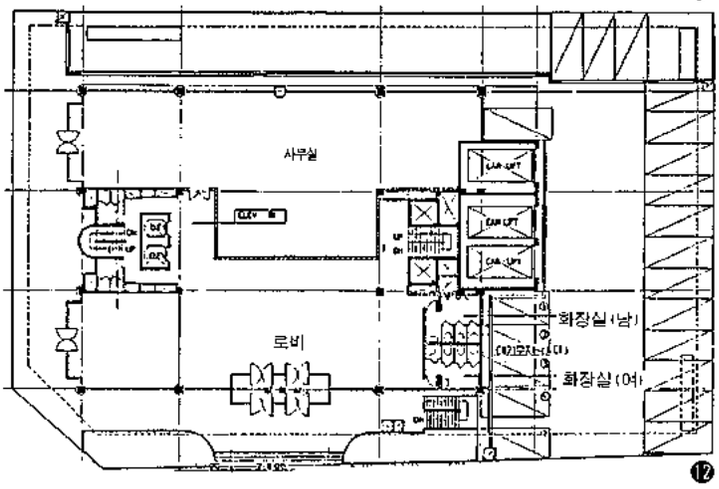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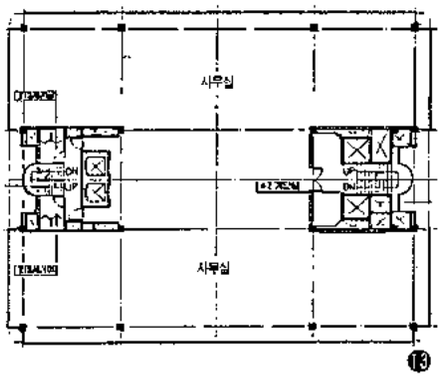

⓭

❺ 동측 전경
❻ 서측 전경
❼ 정면도
❽ 동측 상부 상세
❾ 남측 전경
❿ 북서측 전경
⓫ 서측 상세
⓬ 1층 평면도
⓭ 3~5층 평면도

성북동 S씨 주택

Seong buk-dong S's Residence

崔東奎/(주)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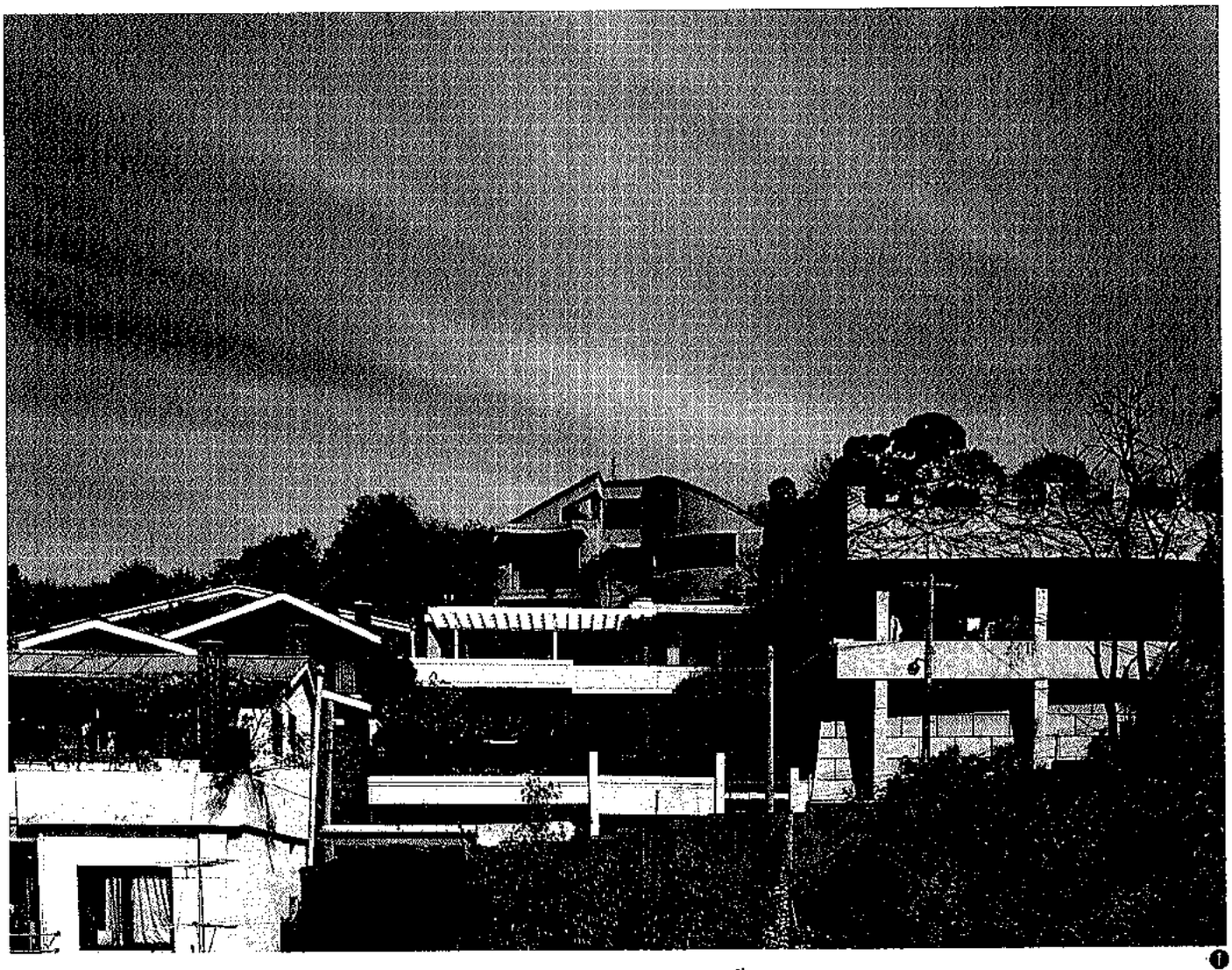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8
지역 · 지구 /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 294㎡
건축면적 / 114.54㎡
연면적 / 344.10㎡
건폐율 / 38.96㎡
용적률 / 76.93㎡

❶ 원경
❷ 단면도
❸ 배치 및 1층 평면도
❹ 전면 외부 상세
❺ 후면 외벽 상세
❻ 3층 다락(가족실)
❼ 지하층 연결 계단측 상세
❽ 2층 평면도
❾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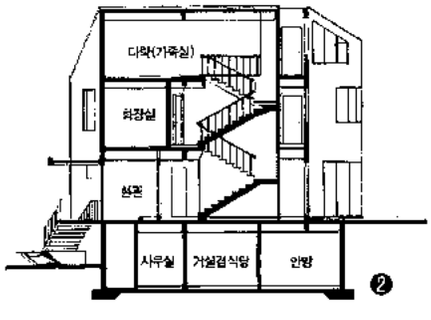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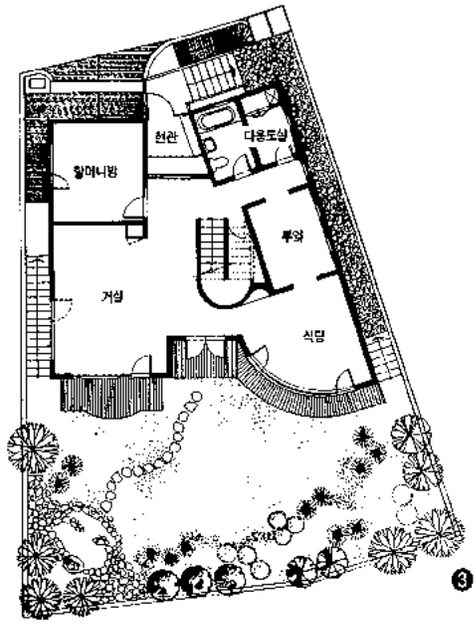

❸

정문사 CMY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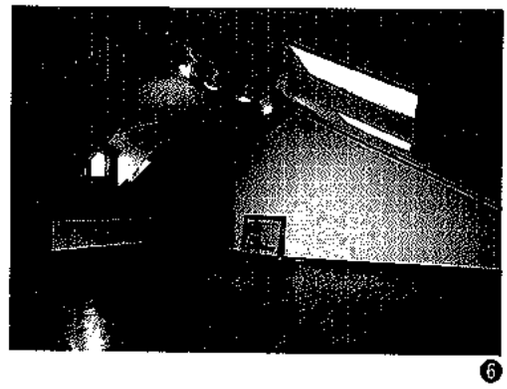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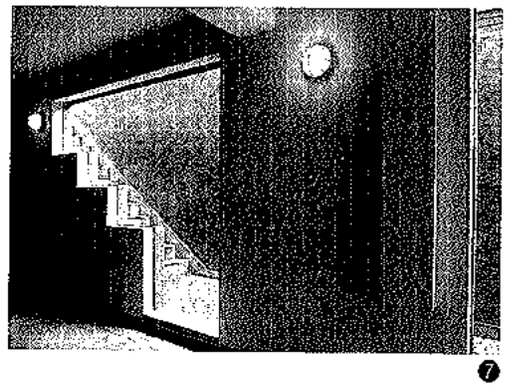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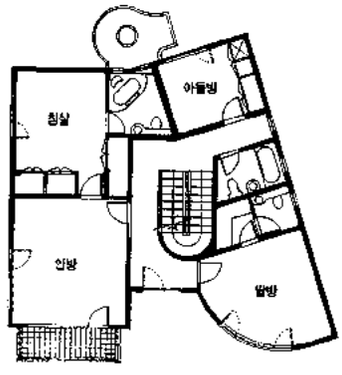
아들방
침실
안방
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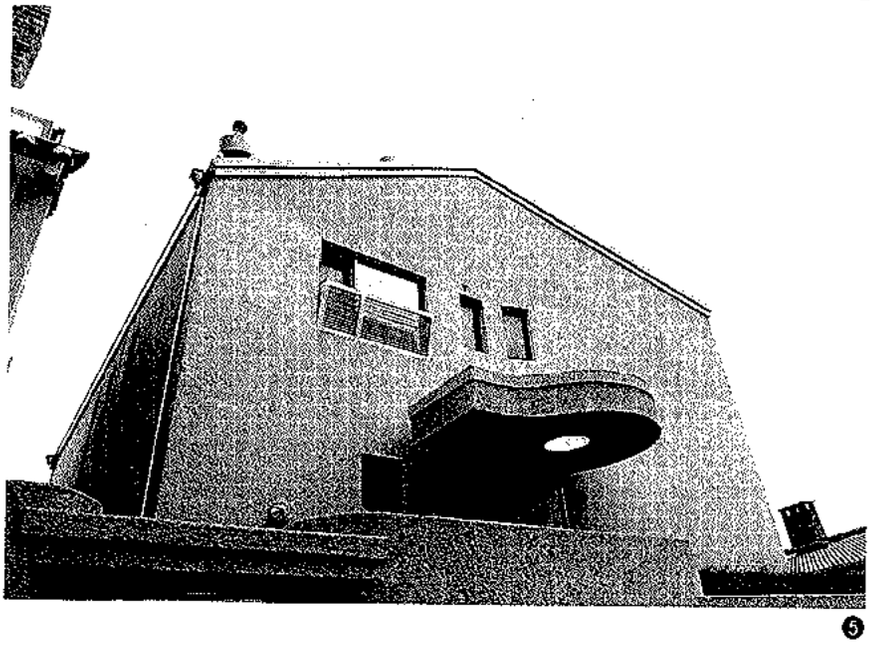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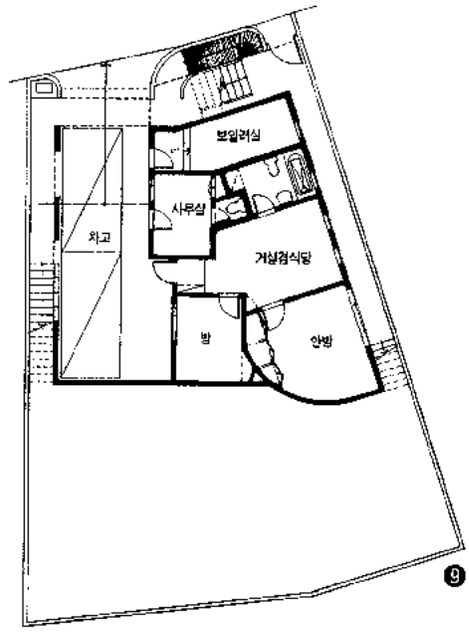
보일러실
사무실
차고
거실겸식당
방
안방

D교회 작업의 흔적들

D Church Project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탑
Designed by Choe, Young-Je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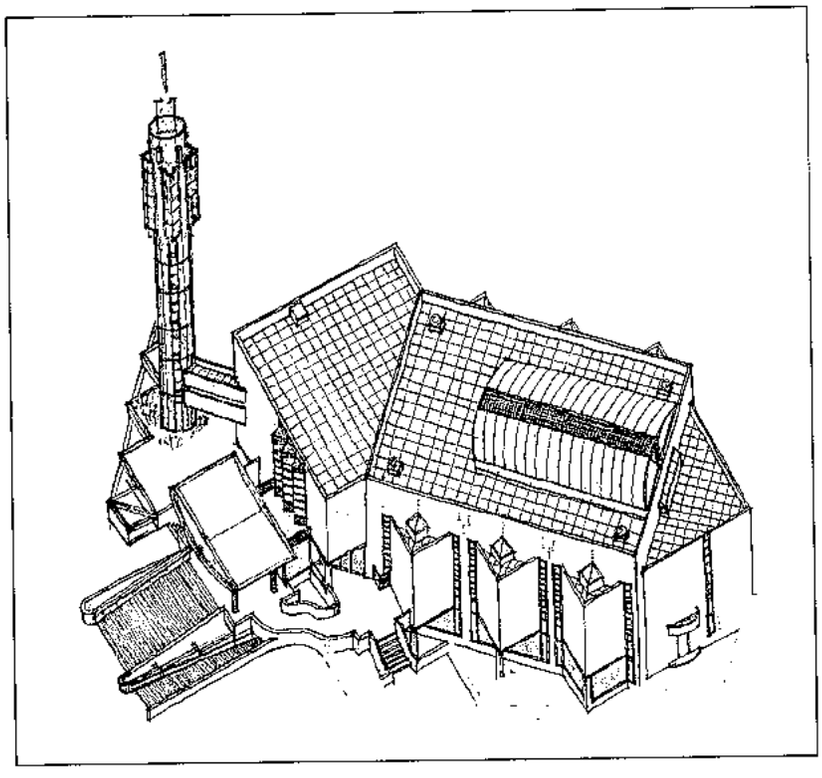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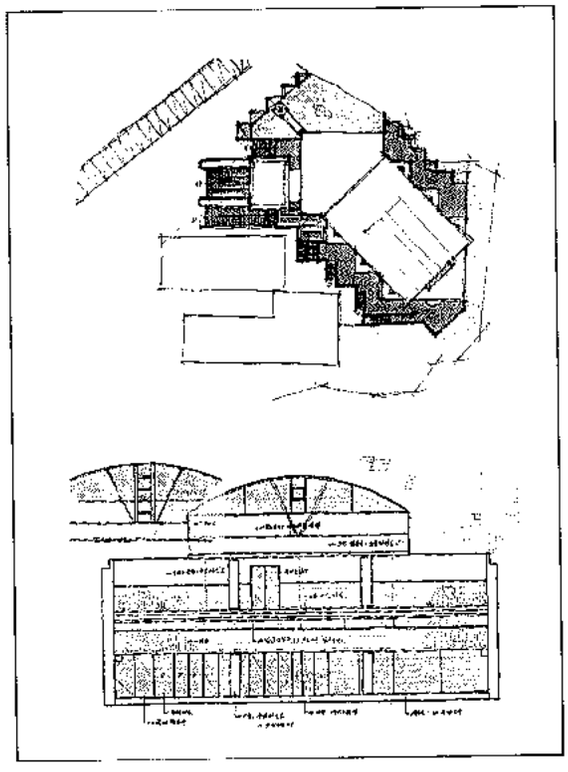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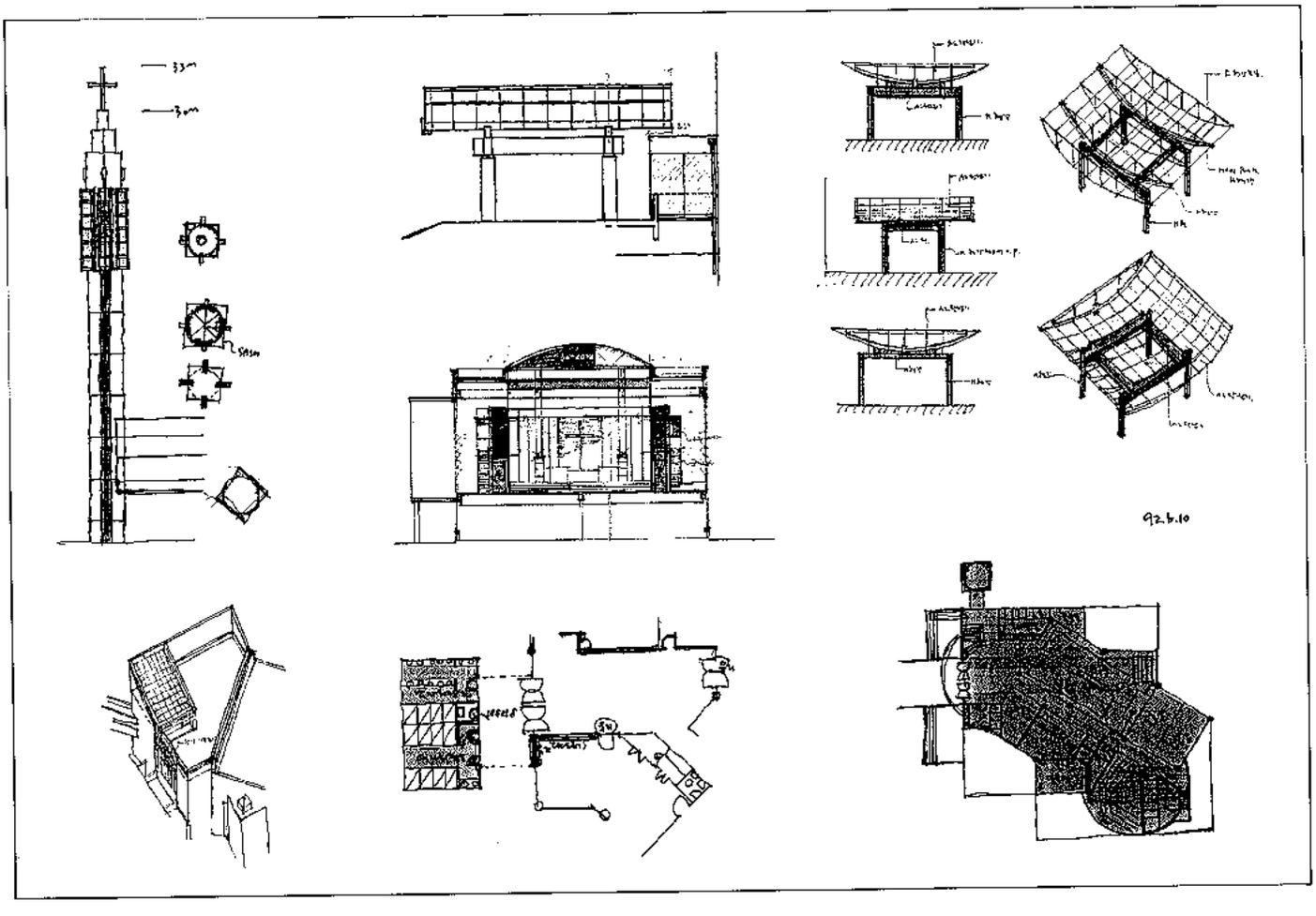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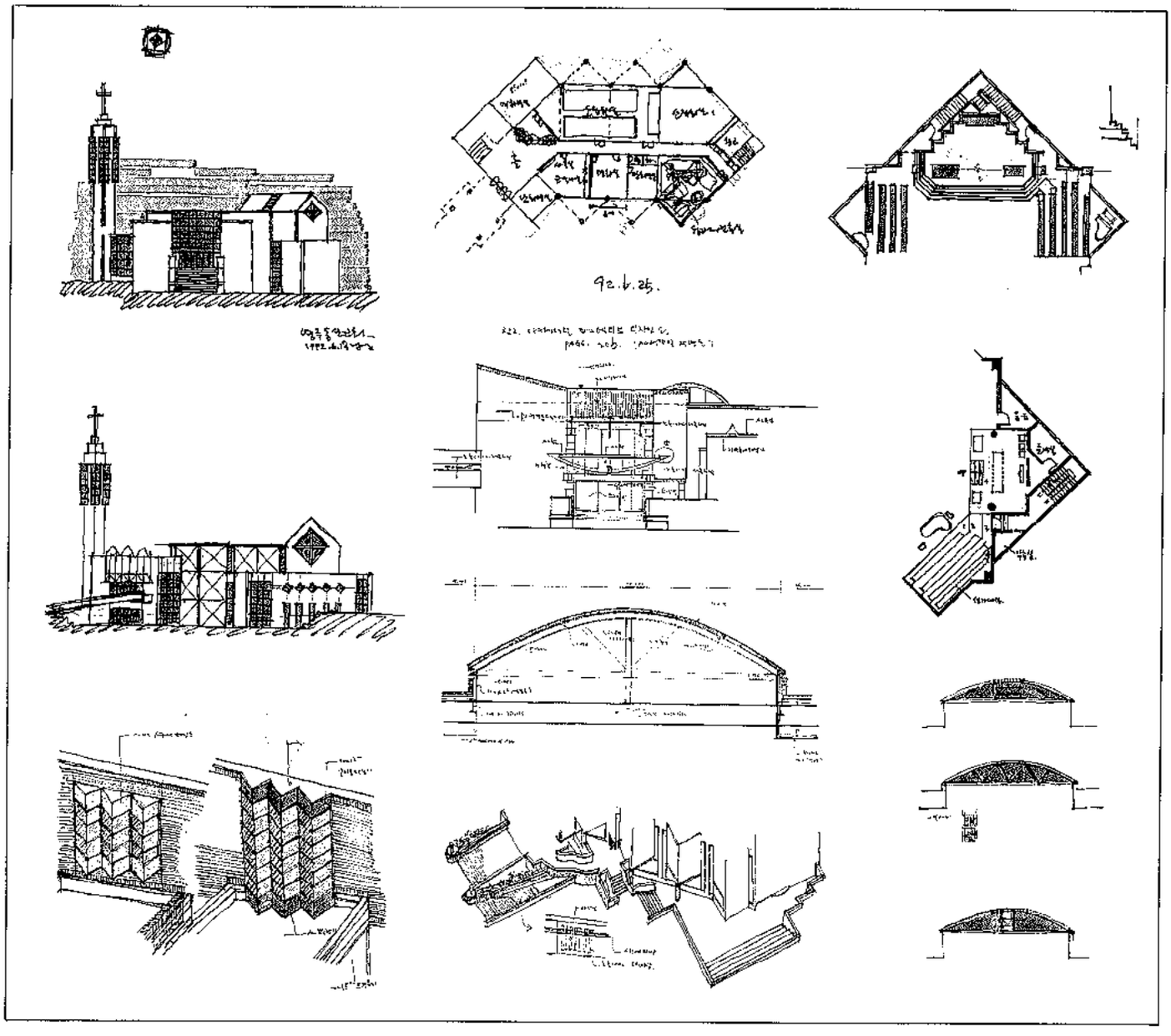
92.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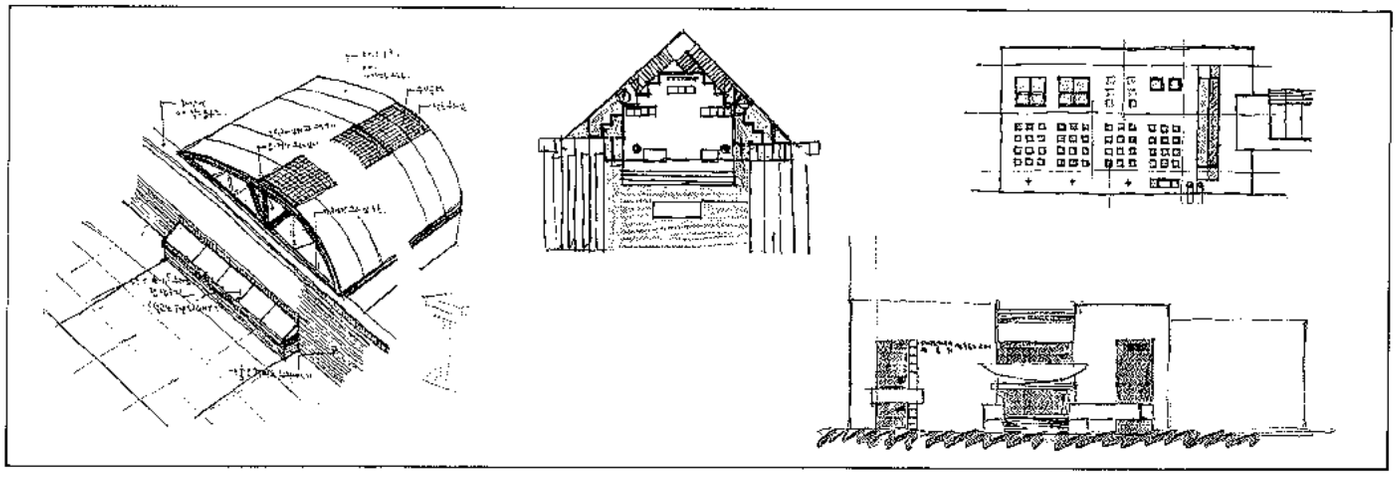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2)

What Should Be Changed ?

李根昌/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본 협회 국제위원
by Lee, Keun—Chang

이 글은 15년간 미 극동공병단(Corps of Engineers)에서 설계실, Project Manager, Engineering/Construction Coordinator 등 여러 부서를 거치고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3년 동안 현실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점과 그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다.

세계시장이 개방되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인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접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감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설계·감리비의 인상은 기술료가 비싼 외국기술자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축사들의 각성에 의해 우리의 지위향상에 일조하기를 진정 바라는 바이다.

Ⅱ. 감리의 품질

배경

인간사회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세분화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기전에는 공간은 필요에 따라 자연물을 이용하여 사용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시대의 품질 개념은 기능성이 우선이었고 공간을 창출하는 이의 지능과 기술력의 차이에서 평가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볼 때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조합되어있는 세계화 경쟁시대를 접하면서 건축물의 가치는 용도의 적합성 이외에도 예술성, 경제성, 내구성, 편의성, 쾌적성 등 여러 분야를 만족시켜야만 하고 이에 따른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높은 기술과 품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축감리의 품질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건축물의 붕괴 또는 하자가 발생할 때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공사의 부실 내지는 설계의 잘못으로 치부하던 이원론적 사고가 점차 원인제공자인 설계자와 행위자인 시공자 사이의 감리에 관심이 쏠리면서 감리 강화가 건축물의 붕괴를 예방하는 최선책인 것처럼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듯 감리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변화는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여러 토론회와 연구소에서 감리의 중요성과 대책을 논의하고 그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모든 이의 구미에 맞고 공감하는 제도개선이 있으리라 믿고 있다. 본 란에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제도나 규약을 떠나 감리자로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세 및 방법을 제안코자 한다.

토의

감리의 정의를 살펴보자,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라 표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는 업무"라 하고 건기법에는 책임감리라 표현하고 "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설계자는 감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면과 시방서를 제공하였는가(?) 감리자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라고 한 것은 근원적인 책임의 전가인가(?) 마감표에 지정색이라고 표현한다면 색깔은 건축설계와 무관하다는 뜻인가(?) 공법을 지시, 확인하고 자재를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시험을 행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와 행정 처리를 행해야 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민원발생이 되면 그에 대응해야 하며 첨가하여 무거운 행정처벌을 감수할 준비까지 해야 한다니 어느 슈퍼맨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덧붙여 확인 절차없이 공사를 진행시키고 편의에 의해 적당히 마무리 하려하며 싼것을 찾아 청계천을 헤매는 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면 감리는 무슨일을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인가? 더 중요한 것은 감리 업무를 설계의 덤으로 생각하여 건축주와 설계와 감리를 일괄 계약하여 감리비 책정이 미흡하게 되어 있거나 무시되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논의는 우리 건축계 내부의 소아병적인 갈등임을 인지하면서도 단지 원칙에 어긋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의(Definition)를 내려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어깨에 떨어진 처벌이라는 원숭이를 남의 어깨에 던지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여건조성은 근원적으로 행정부처의 관리소홀에 의해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법의 본질이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규정한 것이라면 냉철한 지혜를 모아 세계화에 따른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감리 업무를 위한 법규제정이 한참이고 어떻게 옥쇄를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순수 시공감리를 정의하고 싶다. 시공감리란 "시공자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를 품질 확인 ((Quality Assurance)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업무이다."

여기서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위해 1)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잘못(?), 혼돈된 부분, 법적 문제 기타 불명확한 사항을 지적(설계/시공)감리자에게 통보하고, 2)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필요하거나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s 을 준비하고, 4)제품의 구입서류를 작성하고, 5)작업자의 기술능력을 검토하고, 6)현지 기간시설 및 부지경계를 확인하고, 7)공정관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고, 8)하청업자의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 승인하는 작업을 행해야하며, 감리자는 시공전 기 합의된 공정표에 의해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와 함께 시공자가 제출 또는 협의 의뢰한 각종 서류 및 Shop Drawing, Sample 등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승인, 보고해야 한다. 비용의 가감이 있는 사항이나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건축주 또는 설계자와 협의, 결정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공동목표인 건축물의 품질과 더불어 감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과 감리자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수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Customer Care"정신의 확립이다. 부모없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듯이 Customer 없는 우리 건축계는 존재하지 못한다. 즉, Customer는 국민이고 건축물은 그들의 재산이며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ustomer는 가끔은 전문분야에 무지몽매하여 단순이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기에 감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감리를 탈법의 원상지로 매도하여 대서특필한 매스컴을 접하며 우리 감리자의 입지확립을 위해 반성하고 국민생활 의식개혁에 동참한다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남(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들 사이에서 도토리가 된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완료되고 시공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감리 사전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감리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뿐아니고 설계도의 작성정도, 지형 및 주변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시공자와의(가능하면 설계자와의 계약시에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 축조라는 게임의 Rule을 정하는 계약서에 축구시합의 Rule을 적용토록 합의하고 감리자에게 럭비시합 Rule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분리해야 한다. 설계감리는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고, 시공감리는 설계도서의 표현대로 시공되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로 서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 바닥을 설계도서에 "카페트"로 되어 있고, 시방서에 정확한 기술이 없다면 시공 감리자는 설계 감리자에게 Pattern, Type, 두께, 색깔, 설치방법 등을 확인, 요청해 설계의도를 얻어 시공자에게 지시해야 하는 것 등이다.

넷째, 공사전 회의(Pre-Construction Conference)를 감리자 주관하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와 하청업자(선정된 경우)가 참석토록 하여 착공전에 개최해야 한다. 본 회의는 서로 이해관계를 설정하고 공동목표를 위한 중요한 첫 모임이 될 것이다. 회의시 감리자는 안건(Meeting Agenda)을 준비하고 서로의 책임과 역할, 임무와 각 사안에 대한 절차 등 심도있게 토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Agenda에 포함될 일반 사항은 :

1)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자필서명을 받는다.)

2)건축주의 건물사용계획 및 운용, 관리 개념 설명(설계자가 대리로 할 수 있음)

3)설계자의 설계 배경 및 개념, 시공시 유의 사항 등의 설명.

4)감리자의 감리제반 규정 및 보고서 작성요령, 시기, 감리운용 방법, 기타 감리 일반사항 설명

5)설계 변경의 구분에 따른 절차, 비용 및 방법 토의

6)사안별 해결 Channel 및 Point of Contact.

7)기타 질문사항

회의 완료후에는 회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 건축주간 계약의 보완사항(Supplemental Agreement)으로 포함시킨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후 문제 야기시 어디에 Deficiency (설계/시공/감리)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여 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설계도서 및 계약서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은 설계자와 건축주에 통보 수정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현장조건 또는 시공상 난점이 발견될 때는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공사전 회의(Pre-Construction Conference)에서 합의된

경로에 따라 설계 감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조치해야 한다. 검토서를 작성할 때는 참고도면, 현장상황, 관련규정, 공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설계자에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공사의 감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단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단계(Phase) : 공사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Sample검수 Shop Drawing 검토, 작업순서확인, 작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협의하고 내용을 문서화 한다.

2단계(Initial Phase) : 주어진 공사 초기에 행하는 검수로써 작업자의 정확한 공사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수평, 평활도, 마감, 공사기법, 안전, 일의 순서 등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작업자에게 일의 중요사항 등을 인식시킨다. 또한 전 공정중 중요부분 또는 처음 시도하는 공사 이거나 하자 발생이 많은 공사는 Mock-Up을 만들어 주어진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보관토록하여 균일한 품질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감리자와 시공자간에 주어진 공정에 대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그 토의 내용은 요약, 정리해 두어야 한다.

3단계(Follow Up Phase) : 주어진 Initial Phase에서 보여준 품질의 수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는 절차이다. 이 단계의 전적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일일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Punch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는 그 부분이 수정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곱째,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점검하고 공정과 대비하여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공사일지를 일일, 주간, 월간으로 구분하여 완료부분, 시행부분, 예정부분을 나누어 작성하여 공사전반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추후 공정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공정과 연계하여 주요부분 공사시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관심을 주지시키고 더 나은 기술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즉시 준공도(Asbuilt)에 반영하도록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준공후 유지 관리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하에 매설된 Pile, 상/하수관, Gas관, 전기/통신관과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된 각종 Pipe와 Conduct 등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설치될 때는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필히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아홉째, 제반 시험(Testing)은 국가기관이 공증한 경우는 시험성적표로 대치하고 현장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고 불합격된 시험재료는 보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시험기구를 이용하여 그 완성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감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법과 더불어 Shop Drawing 검수 및 Sample의 확인, 승인절차에 있어 현장 감리요원 개인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 잘못 판단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소는 특별 QA팀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 구성원은 분야별 설계, 시공 등 경험이 우수한 인력으로 하고 현장에 문제 발생시 즉각 기술지원 할 수 있는 Tool Box Engineers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기술 집약된 하나의 사무실이 여러 Project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을 뿐더러 감리비의 절감과 전문성 확보에 보탬이 되리라 본다.

현재 감리업무 보수율 산정 기준과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감리원 수만 채우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감리 기술의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감리 기술 축적에 기여도가 뒤떨어지고 모든 감리가 Case by Case로 시행되어 비효율적이고, 뜨내기 감리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감리 품질의 향상은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의 머리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운영 System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제 향상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집결시켜 기술 선진국 감리팀들 보다 나은 감리 품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 론

각 분야의 세계화 추세를 볼 때 모든 생산품은 국내 품질 기준을 초월한 국제품질기준을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 도달하였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무형의 상품인 감리업무는 유형의 상품과 달리 그 기술수준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주어진 시장을 잃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시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Hardware부분 뿐아니라 투자가치가 높은 건설 분야의 Software인 시공기술과 감리업무 등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제 감리업무가 건축주에게 건축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시공자에게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한 건축작품을 양질의 것으로 제공하는 동반자임을 서로 깨달아 업무에 있어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감리보조원의 부족과 지역적 편중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적절한 감리 System의 개발 또한 무작위적인 감리 Check List보다는 해당 공사에 맞는 Check List를 각 공종별 작성하고 수시 교육과 점검을 하여야 한다.

특수 공사에 대한 감리보고서(Lessons Learned)는 확대 이용하여 같은 공사에 대한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매체를 통해 기술정보 System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변환기에 감리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모든 감리자로 성숙하기를 바란다.

특 집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

건축사자격시험은 1963년 건축사법 제정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많은 건축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화의 진전은 과거 행태와는 다른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현행 건축사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 대학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제도 ····· 沈愚甲
■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에 이르는 길 ····· 崔命喆
■ 바뀌어야할 건축사면허시험 어떻게 할 것인가? ····· 金瑛燮
■ 건축사자격시험의 자격 ····· 沈榮燮
■ 건축사 배출과 건축계의 변화 ····· 朴商浩
■ 희망사항 ····· 趙仁哲
■ 불란서 건축제도 ····· 鄭奇溶
■ 영국의 시험제도 ····· 金鐘圭

1 대학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제도

Architectural Education and the Qualifying Examination for Architect's Registration

沈愚甲/서울대 교수
by Shim, Woo-Gab

1. 머리말

매년 건축사자격시험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축계에서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듣고는 씁쓸한 기분이 들곤 한다. 수많은 수험자들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사표를 내고 서울의 유수한 학원에 다니며 여럿이 합숙해가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 누구는 7년을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기필코 합격하기 위해 아예 고시공부하듯 전념하고 있다는 이야기. 비교적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들은 건축사시험 때가 가까워 오면 사무실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 등등.

오륙천명이 응시해서 이삼백명 정도가 합격했던 시험이니 있을 법도 한 일이나, 과연 건축사자격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합격율이 30%에 가까운 때에 건축사시험을 보았던 필자의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특히 납득이 잘되지 않으며 과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보다 반드시 나은 건축사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었다. 설계실무 경력은 거의 없이 건설회사와 대학원의 경력만으로 빠듯하게 년수를 채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적지않게 보아온 반면, 실계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실무 경력 및 설계능력을 착실히 쌓아온 사람들이 또한 몇번씩 불합격되는 일들을 볼 때 더우 의구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에 유례가 없이 칠백명이 훨씬 넘는 합격자를 냈고 앞으로도 이러한 합격율이 유지될 전망이라니 좀 나아지긴 한 것 같다.

건축사자격시험을 두는 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과 설계, 공사감리 등의 건축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건축작업이 수행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과 응시자격의 기준은 이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학졸업 후의 실무에서의 훈련과 경험과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건축교육은 건축가 지망생으로서의 수업의 시작인 동시에 건축과의 첫 만남이며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에서는 대학졸업 전과 후에 습득된 지식과 능력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서구의 어느 나라들에서 하듯이 대학에서 정규 건축교육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건축사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예에서 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의 건축교육도 그와 같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내용과 질이 우수해질 날이 언제나 올 것인지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부러운 것은 필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리라.

2. 대학의 건축교육

대학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관련지어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특히 그 속에서 건축사자격시험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면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건축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의 배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우수한 건축사들의 배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건축교육이 필수적이다. 즉, 대학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제도는 건축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지향해야 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그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십여년 밖에 되지않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건축교육 현장에 몸담아오면서 느끼거나 당한 문제점들과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몇가지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의 전문화

전문적인 고등교육은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실한 교육내용과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교육제도와 시설이 이를 뒷받침해 줄 때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대학 건축과의 교과목편성이나 졸업생의 취업경향을 보면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함인지 건축기술자(구조, 시공, 설비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인지 그 목표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는 건축에 관련된 어느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그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generalist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이상은 학생자신이나 실무계에 떠맡겨버리는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관련 분야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현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인지 generalist를 길러낼 것인지를 판단하여 뚜렷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조정, 또는 필요한 경우 학제의 개편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70년대 후반 이후 실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수학점수를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하고 전공과목개설의 幅을 축소하므로써 대부분의 외국대학이 5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통해 건축가를 양성하고 있음에 비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나마 4년의 교육기간 중 1년은 기초교양과정으로 할당되어 있고,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기사시험, 졸업작품전, 취직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등의 준비로 정상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건축교육을 받는 기간과 내용은 극히 미흡한 형편이다.

게다가 더욱 어려운 것은,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건축가 지망 학생과 기타분야 지망학생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지는데, 건축설계 과목은 필수로 되어있어서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거나 재능이 없는 학생까지도 억지로라도 끌고가야하는 부담을 가져야 하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2) 건축교육과 실무와의 연계

건축은 실용적 학문이며, 특히 건축설계교육은 실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실무와 교육의 강한 연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며, 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교육 담당교수들의 실무참여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더 나아가서는 실무에서 상당한 경륜을 가진 분들이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에 교수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건축과 교수들의 실무 겸업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었고, 건축과의 교수임용시에도 박사학위에가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서 설계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수로 임용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어버렸다. 설계실무 경험이 없거나 오래 전에 설계실무에서 떠난 교수들의 설계교육은 현실감각이 부족하고 새로운 경향이나 기술발전에 민감하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되기 쉬울 것이다. 실무건축가들을 설계교육에 초빙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전임교수들이 실무 건축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도 교수들의 실무참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설계담당 교수진과 전문성

건축설계는 기능, 공간, 조형, 구조, 설비, 환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와 조경, 도시 등의 인접학문 분야및 사회학, 심리학 분야의 고려까지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사고체계와 시각적 표현의 종합과정이므로 담당교수와 학생간의 1대1의 대화를 통한 개별 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교육 담당 교수 한사람이 정해진 시간내에 담당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상당히 제한되며, 이것을 대부분의 국내 대학 건축과의 학년당 학생수가 적게는 4,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한 학년의 설계교육에만도 상당수의 담당자가 필요하게 되며, 필요 담당자수의 절반을 외부에서 초빙한다 해도 필요한 건축설계담당 교수의 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대학 건축과의 전임 교수 수가 평균 7인에도 못 미치는 정도인 현실은, 구미제국은 물론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 제국에서까지도 최소한 이삼십명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교조차 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 건축과의 대부분의 교수들, 특히 건축설계 담당 교수들은 과중한 강의 부담에 짓눌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과목의 강의까지도 담당해야하는 일도 있게되며, 결과적으로 깊이있는 학문연구와 강의준비에도 영향을 받게되기도 한다.

3. 건축사자격시험제도

지난 수년간, 특히 문민정부출범 이후 건축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비리가 심심치않게 매스콤에 오르내리며 건축사의 자질 문제, 건설기술의 낙후성, 프로정신의 결여 등에 관해 집중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은 우리 건축인들에게는 낯뜨거운 일이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막중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십분의 일이상이 건축사의 손을 거쳐나가고 있으며, 또한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거주 및 작업, 위락 환경이 거의 이들의 손을 거쳐 조성되고 있음이다.

따라서, 올바른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건축사의 배출은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 아닐 수 없으며, 건축사자격시험제도는 이러한 요청에 걸맞는 건축사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응시자격과 실무경력 인정기준

현재,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의 설계업무 종사경력이나 건설업체, 국가기관, 대학원 학위과정, 건축분야 교직, 공병/시설장교 등에서의 건축업무 종사경력이나 차등 없이 100%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란 실질적으로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므로, 설계실무 경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설계실무 우선으로 조정하여 적격자의 합격기회는 훨씬 높이되 자격미비자의 응시기회는 줄이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현재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게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차 시험에 구조, 시공, 법규, 건축사 등의 4과목, 2차 시험에 건축계획, 건축설계 등의 2과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건축학과 졸업자에게는 경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도록 하여, 재학시 습득했던 실력이 직접 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내용은 학교교육 내용위주로 하여 학교교육과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1차 시험 합격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게 주되 시험내용은 건축실무 지식 위주로 하며, 1차 및 2차 시험 공히 과목별 부분합격을 인정하여 과도한 시험준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3) 시험관장 기관

이제까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시험관련 업무를 점차 건축사 협회에 이관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바람직하기는 건축사자격시험 및 면허를 관장하는 상설기구를 새로 설치하여, 현재의 건축사위원회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NCARB가 이에 해당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 상설기구는

실무계, 학계, 관계 등의 명망있는 전문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방향설정, 시험방법 및 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4. 맺는 말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건축학회를 비롯한 관련 3단체에서 지난 십여년간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특히 UR개방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지난 1,2년간은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적 변화를 수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로되, 건축교육 개선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별 진전없이 계속되고 있음은 우리의 건축교육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건축설계 및 건축교육도 대외개방의 추세에 따른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발전적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앞에서 이러한 개선의 방향을 주요 이슈들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인들 모두가 철저한 프로정신, 즉 쟁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건축교육도 건축문화도 더욱 큰 발전의 터전을 찾게될 것이고 우리도 세계적 건축가를 배출하며 건축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이르는 길

The Improvement of The Examination for a Architect's Qualification

崔命喆/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건축
by Choi, Myung-Cheul

■제도개선 현황

1988년 청년건축인 협의회에서 주관한 건축사 시험의 공무원 특별전형에 대한 특혜부분 반대 서명운동과 이를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 청원에서부터 시작된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제안들은 건축계 내·외 여러지면에서 다루어져 왔고 또한 여러단체를 통해서 토론 및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이러한 논의들은 항시 일부 경직되게 부정적이거나 나약하게 감상적으로 흐르기도 하여 구체적인 정책연구나 대안제시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계내에서조차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중 1990년대를 맞아 우리사회가 민주화 길목에 들어선 탓인지 행정관료들의 독점(실제로 대안 입법의 95%를 행정부가 독점)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민간 부문에서도 활발하여졌고 1992년부터는 건축법 전면개정 과정에 참여한 도시건축연구원이나 설계, 감리분리제도의 반대서명을 시작으로 한 새건협과 이를 물려받은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등이 민간부문의 건축운동을 선도하였으며 일부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등의 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서인지 여러 개혁적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건축사 시험 제도개선은 1993년에 들어 건설부가 건축사법 개정안을 기안하여 도시건축연구원의 정기포럼과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시험 위원회에 검토 의뢰하였으나 건축사법의 다른 내용들이 첨예한 문제를 야기시켜 건축사협회 총회 파문과 회장단 퇴진등 불미스러운 사태로 발전되면서 급기야 공론화 과정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서도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개혁의지의 확산으로 비 제도권 단체(도건연, 건미준 등)의 참여공간이 넓어지면서 1993년 7월에는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서 건축관련 법·제도에 관한 쇄신과제를 제출하여 이들을 관철시킴으로써 건축계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에 일차접근하고 있다. (참고로, 위 두단체는 93년 11월 우수 국민제안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물론 이 쇄신과제 중에는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내용이 두가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첫째는 건축사 배출인원을 현행 300명 수준에서 200~300% 확대시킬 것(아직도 의문시 되는 것은 정원제가 아니었음에도 과거에 300여명 수준에서 합격인원이 유지된 점과 93년도 합격인원이 어떻게 정확하게도 300명의 2.5배인 750명 가량이었는지인데 이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정원제도의 전환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과 둘째는 시험방법의 개선으로서 필기시험의 경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지식 위주로 출제토록 하고 설계 시험의 경우는 1)사전예고 폐지 및 시험당일 택일제 2)시험시간 확대(5시간→8시간)등이다.

더불어 1994년 올해에는 건축사법이 전체 건축관련 법령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속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며(건축사 시험제도 포함), 건축사시험 관리를 건설부가 건축사협회로 이양하게 되는 원년으로서 커다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전술한 과거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한 논란은 무수히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첨삭되어지리라 생각하여 필자의 의견은 간략하나마 도시건축연구원의 정기포럼(1993년 2월 10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인용하기로 하고, 덧붙여 현재의 소용돌이와 같은 변환기 상황에서 우리의 건축계가 선택하여야 할 건축사시험 제도의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제도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

첫째 : 건축계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 선택에 건축계 내의 각 부문(산/학/관/연)은 기득권적인 사고를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 부정을 위한 비판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정해야 할 현실과 수용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젼을 담는 대안적 사고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 단순한 지엽적 제도 수정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적 목표를 모색해야 한다.

2. 면허 및 시험제도의 현황 문제점

—면허 자체의 기득권화
—사무소 고급 인력의 낭비
—설계 서비스 수준의 저하
—실무 경력자의 합격률 저하, 무경력 건축사의 양산
—면허 시험제도와 설계교육과의 괴리
—건설부의 시험관리 능력 부적합
—건축사보 관리의 모순

3. 면허개방

—사협회 개방

: 등록 건축사(92년 말 현재 4,226명, 건축사 면허 소지자 5,298명)위주의 운영으로 비등록 건축사의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협회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법인 사무소 제도등과 관련 비등록 건축사의 면허 사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유도

(예 : 건축사 소지 설계 교수와 기존 사무소와의 Joint Venture등)

—대외개방

: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 건축사들과 상호 호혜적인 상황으로 개방시키고, 국내 건축사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4. 건축사 배출 인원의 확대

—건축계 위상제고에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은 유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이다.

따라서, 교육—실무—시험—면허로 이어지는 전문 인력의 프로세스에서 년 건축과 졸업생 수 5,000여명에 2~3백명의 건축사 배출(매년 시험인원 6~7천명)이라는 현상황은 건축 전문직 구조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설계 수주액의 급격한 증가(85년도 약 160억원에서 90년도 약 1조원 : 건축사협회 실적회비 역산자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등록인원은 85년도 2,444명에서 90년도 3,642명으로 약 40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설계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따라서 불량 건축물 양산이라는 국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건축계로서는 고급 인력들이 기득권화된 면허 자체에 매달려 수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GNP 2만불대의 선진제국들은 개략 미국 10만명, 일본 23만명(1급 건축사만), 독일 5만명 정도의 건축사를 보유하여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과 비견하여 볼 때, 21세기 GNP 1만불 시대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연 평균 2~3백명이라는 배출인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건축사 배출인원의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1) 양호한 인력의 설계 서비스 영역 및 시장 확대
2)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3) 전문 인력 수급과정의 정상화
4) 대학 설계 교육의 정체성 탈피
5) 사무소 고급인력의 낭비 최소화
6) 기득권화된 면허 인력의 전문성 회복

5. 시험 전담 기구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관리가 민간기관(건축사협회)으로 위임 예정

—외국의 시험 전담 기구

미국 : NCARB(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일본 : (재단법인)건축기술교육 보급센터

—외국의 예와 같이 사협회와의 별도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건축계의 능력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의거한 〈건축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완, 확충되어야 한다.

6. 시험제도 개선

1. 경력 산정과 실무 연수(Intern)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졸 5년 경력(사무소 경력만 100% 인정)과 2년 인턴제는 사무소 무경력자 배출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적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사협회 의도에 의문)

—사무소 경력만 100% 인정하는 5년 경력제는 현 교육 실태와 타 기술직 면허 기준과의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2년 인턴제는 오히려 시험방법에서 실무능력 우선 방식으로 유도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 시험방법

—1차 시험의 수준이 현재 대학 졸업시 응시하고 있는 기사 1급 수준과 별 차이 없으며, 졸업후 실무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인 5년후에 기사 시험 수준의 1차 시험을 매년 응시해야 한다는 모순은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협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설계기사 1급(검정관리공단 시행)제도의 신설에 따른 1차 시험 이관이나 졸업직후 1차 시험을 응시 통과하게 하는 방법등 대안이 필요하며, 2차 시험은 설계위주로 시행함이 타당.

3. 시험과목

—대부분의 대학 교육이 엔지니어의 출발을 위한 기사 시험에 경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차 시험은 설계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 지식 위주로 하며,

—2차 시험인 설계 실기 과목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사 기능시험 같은 형식에서 탈피하여 (1)사전예고 폐지 및 당일 택일제 (2)시험시간 확대(5시간→10시간) (3)실기 요구조건 개선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 발전적 정책 대안

2000년대로 진입하는 1990년대는 과거의 어떤시대보다도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하는 세계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전쟁의 폐허위에서 짧은 기간에 물질적 토대를 갖추고 점차로 국제화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하는 사회적 변화에 당면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담아내는 물리적 장치로서의 건축 또한 도시공간과의 유기적 연관속에서 근본적이고 새로운 2000년대의 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볼 때 수 없이 거론되고 있는 현행의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은 대응적 처방(case by case)수준에서 머무르기보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 모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구현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시험 제도의 경우 일단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해소방안으로서의 건축사 배출 인원의 확대라는 전술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과는 건축전문계로서는 중요한 정책적 초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건축계내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일까?

일마전 어떤 세미나에서 한 토론자가 건축관련 법, 제도의 개정시에 대다수의 건축관료들이 주먹구구라고 힐난하자 참석했던 서울시에 재직하는 다른 토론자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물론 국민도 포함)가 주먹구구 아니겠냐며 즉각 반응하여 참석자 모두가 실소한 경우가 있다.

물론 세상 모든일이 그렇듯이 한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는 반면에 이렇게도 급변하는 사회 정세속에서는 무언가 발빠르게 상황을 선택하는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선택이 언제까지나 주먹구구식 대응적 처방에 의존하고 있기에는 민주화, 개방화, 국제화라는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는 구체적인 현실로서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건축계 내에서 이루어 내야 할 둘째 단계의 구체적 정책대안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응적 처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R & D(Research and Development)기능을 갖는 시험관리 전담기구의 출범에 두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에 대한 건축계 내의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방법이나 그러한 조직의 실질적 구성방안,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정 및 민간 재정의 후원방향등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각론이 무성할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설부가 시험관리를 민간(건축사협회)에 이양하려 하는 원년에 건축 3단체 또는 여러기구나 조직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현 가능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이러한 기구의 출범은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건축계를 분열케 하였던 건축 3단체가 협동하여 성취할 수 있는 최초의 공동 작업이 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교육과 실무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가능케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지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각계의 지대한 관심하에 1982년 9월 10일(재단법인) 건축기술교육 보급센터를 설립하여 2년여의 연구끝에 1984년부터 시험관리를 전담하여왔고 1989년에 이르러서야 건축기술교육 보급 기금을 창설하게 되어 이후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게 되었다.

■ 맺는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올해 건축사 시험 응시 인원이 예년의 곱절에 해당하는 약 1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에 건축사 시험에 낙담하거나 스스로 소외시켜왔던 여러 전문 인력들이 합격 인원의 확대에 따라 다시금 몰려들고 있다는 상황변화로 볼 수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언제 다시 원위치(?)로 될지 모르므로 이 기회에 악착같이 합격하여야 한다는 그동안의 행정부나 사협회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출발된 막연한 불안감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新한국시대의 투명성, 예견성등 행정구호에 걸맞게 건축계내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단체들도 수많은 우리의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자기 위치에서 실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번쯤 구태를 벗어나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서로 협동하여 건축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마스타플랜(Master Plan)을 제시하여 보는 것이 분명 타당할 것이다.

3 바뀌어야할 건축사 면허 시험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Improves ? —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for a Architect

金瑛燮/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ub

■ 머리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 면허시험제도가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올해 또는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국회일정 때문에 개선될 전체 건축사 면허시험의 윤곽이 다시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올해 치루어질 시험의 내용과 운영만이라도 바뀌어야 할 개정안에 맞추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대학입시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바뀌는 건축사 면허시험 역시 대학의 건축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양질의 건축사 적정공급이라는 명제와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궁리를 해야 하는것이다.

1. 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

국가수요에 따른 적정 건축사의 수를 여하히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부터 이러한 궁리를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제도 내지는 시험운용관행의 결과로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건축사 면허가 건축사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보다 이것을 극대화하여 면허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나서 부단한 자기 연마와 경험축적을 통하여 건축설계에 관한 실무를 쌓아나가야만 건축사로서의 위상이 올곧게 정립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자격증만 획득하면 생활보장과 사회적 지위, 나아가서는 부의 축적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면 건축사 면허시험제도는 바로 기득권의 수호와 기득권이 보장되는 적정 회원수 유지라는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건축사시험제도는 그 시험내용의 광범위함과 전문설계능력테스트의 불비로 인하여 실무설계경력자의 합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반대로 설계경력이 전혀없는 암기 위주의 시험준비를 일삼은 설계무경험의 건축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험 출제내용은 대학의 설계교육과도 현격한 괴리를 갖는 것이였으며 나날이 변모하는 첨단 설계기술을 연마하거나 준비하는데는 더구나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의 업무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서 설계사무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시험준비를 위하여서는 50년대 60년대에 쓰여진 이미 사장된 지식들을 암기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첨단설계를 해야 하는 웃지못할 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인 바, 건축사 면허시험 출제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무건축사들과 교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외국의 시험문제를 참고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일본 일방 지향을 배제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시험 출제내용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해온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A1 사이즈의 설계제도판을 1,000개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는 현실때문에 1차 시험 합격자를 1천명 내외로 한정시켜 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직능 실기 시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나 지금까지의 건축사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당국이 시험관리를 여하히 무난하게 수행하느냐에만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정말 필요로하는 질높은 건축사를 배출하여 수준높은 설계와 감리능력의 수행은 물론이고 이렇게 선발한 건축사들의 집단이 국가의 각종 건축정책과 행정제도에 정확한 올바른 진단과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2. 방향설정

건축계의 위상제고를 위한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건축사면허시험은 다음 몇가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제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전제되는 것은 첫째, 기존 건축사들이 모인 단체나 협회는 기득권 적인 사고를 배제하여야 올바른 건축사의 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오늘의 기존 교육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을 정확한 데이타에 의하여 제안하는 일 셋째, 지엽적인 제도 수정보다는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로 대외개방과 우리 건축사들의 해외 진출 또는 협력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해결 방안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항에서 열거한 방향설정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선, 건축사협회 또는 건축3단체가 함께 주관하여 시험전담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CARB'(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나 일본의 (재단법인)'건축기술교육 보급센타'와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사 면허시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시험제도의 개선은 ①경력 산정방법과 ②시험방법 ③시험과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경력산정은 설계사무소 실무경력 5년후 응시하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간에 떠도는 건축기사시험을 건축사 1차시험으로 대체한다면 대학교육은 졸업년도의 시험준비 관계로 더욱 황폐해지고 대학교의 학원전락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현행 기사시험도 건설부가 진정 이나라 대학교육을 걱정하고 기술육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학졸업후 2년 정도 경과후 응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 1차시험은 건축기사시험과는 다른 별도의 시험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건축사 1차시험제도는 건축사가 꼭 필요로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졌느냐 하는 1차 적정여부를 묻는 시험이어야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의 관리(응시자의 폭주로 인한 시험관리의 한계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뿐만 아니라 개선안으로는 설계계약서 작성과 각종 도큐멘트들의 작성을 위한 지침과 상식이 시험내용에 포함되는 것과 함께 전기, 설비, 조경디자인등 건축설계와 밀접한 관련분야의 기본상식이 함께 점검되도록 시험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필요한 실무와 경영에 관한 과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시험과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험과목(국내)

구분	과 목	출 제 범 위	출제방법
1차시험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객관식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객관식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객관식
	건축사	한국건축사, 서양건축사, 현대건축사	객관식
2차시험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주관식 객관식
	건축설계	설계설명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실기

표 2. 시험과목(국외의 예 : 미국)/서울대 심우갑 교수 제공
한번에 전과목 시험 실시, 과목 부분 합격 인정.

Day	DIVISION	TIME
1st	Construction Documents and Services	3hours
	Materials and Methods	2-1/2
	Mechanical, Plumbing, and Electrical Systems	2-1/2
2nd	Structural : General and Longs Span	3-1/2
	Structural : Lateral Forces	1-3/4
	Site Design(written)	3-1/2
3rd	Pre-Design	3-1/2
	Site Design(graphic)	2-3/4
4th	Building Design(graphic)	12hr

건축사 등 건축의 기본교양과목에 해당되는 시험의 강도와 비중을 보다 높히고 일반설계사무소의 구조설계와 계산에서 대부분 구조기술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구조과목은 고도의 구조계산 실무를 테스트하기 보다 설비, 전기, 조경 등과 같이 건축의 컨설팅에 관한 의사교환이 가능한 범위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과목의 난이도 때문에 대부분의 설계사무소 경력자들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구조학은 Civil Engineering의 분야이므로 일반건축대학의 구조교육은 건축교육에 꼭 필요한 상식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우리나라 구조규정이 정말 구미의 경우와 똑같은 극한강도설계(U.S.D)규정에 따른다면 구조기술사의 컨설팅이 배제된 건축설계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각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전제하에 과감하게 건축구조 시험과목의 내용을 현행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상식을 묻는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건축학과에서 구조관련 수업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커리큐럼만큼 많은 나라도 없거니와 구조 전공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제일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결과와 반대로 건물의 안전진단을 필요로하는 부실건물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실설계, 부실시공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차 시험은 전적으로 설계시험만 보아야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수 있는 것은 건축설계는 모든 과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건축학교에서 설계전공자나 건축행정전공자를 막론하고 정규수업시간에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이것은 건축설계가 디자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사항의 종합판단력과 치밀한 사고 또한 설계진행과정에 배우는 의사결정 방법론등 일반 설계사무소 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의 체계를 기획하고 정책 수립을 하는 건축행정가와 건설사의 임직원 모두가 필요로하는 필수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설계시간은 주당 약 20시간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주당 12시간에 비하여 대단히 높고 대부분 일대일의 개인교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주당 6시간의 명목만 갖추고 있는데 설계담당 교수 1인당 학생이 평균 70명인것을 감안한다면 영국의 경우 교수1인당 학생이 약 20명 선이므로 주 20시간 +20명=약 1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경우 6시간+70명=약 5분, 즉 12 : 1이라는 가공할 수치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차 설계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누가하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시험위원회는 설계경력과 디자인이 뛰어난 실무 중견건축가들과 교수진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해당자 모두는 이러한 역할에 봉사정신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설계과제 예시제는 결국 설계도면마저도 외워서 그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신진건축사들을 탄생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모든 건축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창의력 발휘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시험시간은 미국의 경우처럼 이틀이 걸리는 16시간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 8시간-12시간은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판은 A2 size를 그릴 수 있는 선형줄자가 부착된 것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수 있으므로 작은 제도판을 수험자가 지참하여 건축계획과 스케치 드로잉 등을 3~4장의 A2 도면에 그려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 중간 크기의 제도판은 일반 책상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교실 등 어디에서나 수험이 가능할 것이다.

맺는말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교수가 실제로 설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만 뿐이다. 그러나 대만은 국립대학만 그러할 뿐 사립대학교수들은 얼마든지 설계행위가 가능하다. 우선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설계문호를 개방하는 동시에 대학의 설계교육에 실무 건축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상호

별표 3. 1993년 현재 국가별 건축사/인구 비례표
/Progressive Architectrue(09/93)자료

Architects per million population

Country	Approximate populatlion	Number of architects[1,2]	Architects per million
NETHERLANDS	14.7	2,000	136
UKRAINE	53.0	9,000[8]	170
ESTONIA	1.6	350[6]	219
LITHUANIA	3.8	900[7]	236
LATVIA	2.8	800[5]	285
PORTUGATL	10.1	3,000	297
JAPAN	123.0	40,000[9]	325
UNITED STATES	250.0	85,000[4]	340
IRELAND	3.5	1,200	343
SPIAN	39.0	16,000	410
FRANCE	55.6	24,200	435
LUXEMBOURG	.4	200	500
UNITED KINGDOM	55.0	27,600	502
BELGIUM	9.9	6,300	636
ITALY	57.3	38,000	663
DENMARK	5.1	5,000	980
GERMANY[3]	62.0	67,000	1,080
GREECE	9.9	11,700	1,182

Source : Chert by Thomaa Vonier, AIA

Notea :

1 Figures exclude architectural engineers, naval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s, interior designers, and other occupations or professions whos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d licenses are not approximately aquivalent with those of architects in North America.
2 Figures obtained from 1991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records in Bruasels except where otherwise note.
3 Prior to reunitication : does not include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4 Estimate based on consultations with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5 Estimate from Latvian Association of Architects, December 1992.
6 Estimate from Estonian Union of Architects, March 1993 : includes approximately 100 who are retrel from active practice.
7 Estimate from Lithuanian Union of Architects, December 1993.
8 Estimate from Ukraine Union of Architects, April 1993.
9 From March 1993 draft report by Mary Hayden and Weld Coxe, for UIA Work Group.

제한부터 철폐하여야 근본적인 건축사 수준이 향상되리라 믿는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설계를 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온 학생이 나중에 좋은 건축설계를 할 수 있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20세기의 건축 명저 "시간, 공간, 건축"의 저자인 지그프리드 기데온의 이야기를 음미하여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2차 대전후 대학의 건축교육에 그대로 적용시켜 세계건축을 리드해 나간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미국이다. I.I.T는 미스 반 데 로에를, M.I.T는 월터 그로피우스를 영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라성 같은 실무건축가들이 학교로 들어가 교단에 섰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미국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교단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힘이 미국 건축이 세계를 풍미케 해온 것이다.

정부측 개정안에 의하면 1차 시험의 합격은 그 다음해까지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1차 시험 합격자 적체로 인한 관리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화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1차 시험 또는 과목별 합격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고급인력이 시험준비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게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전체 건축인력의 수급문제는 별표3을 참고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4 건축사 자격시험의 자격

Qualifications of Architect Registration Exam.

沈榮燮/건축사사무소 우노
by Shim, Young-Sub

■개선방향 논의의 전제

몇해전 건축사의 학력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건축사 1차 시험에 영어과목을 추가한다는 설이 나돈적이 있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근거없는 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당히 널리 퍼졌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꽤 여러 사람들이 현실성있게 받아 들인듯 싶다. 우리의 건축사 시험제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 전혀 무관한 영어 시험으로서 건축사의 학력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발상이나 소문이 가능했단 말인가?

비록 그것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근거없는 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파되리만치 우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몇차례의 건축사법 개정의 내용이나 운용방식이 건축의 특수성과 건축사의 작업적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방향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이후 경과조치법으로서 현재 건축사 5,600여명의 ¼이 넘는 1,500여명의 건축사가 서류전형으로 65년 일시에 배출된 후, 73년까지는 매년 응시자의 12~34%, 그 이후 92년까지는 6% 내외의 건축사가 배출되는 등 양적인 면에서 조차 그 기준이 분명치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다른 개선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준 및 방향의 설정이다. 그리고 건축사 혹은 건축사 시험제도를 개별적 사안으로 더이상 생각하지 말고 건축교육과 설계실무, 설계실무와 건축계 전반의 관계, 대사회·문화적 역할 및 UR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등에 걸친 총체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빠른 시일내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 3단체와 건설부등이 각기 다양한 관심과 역할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건축계 전반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건축(설계) 교육과 건축사 자격시험

현재 국내의 건축교육 및 건축사시험제도는 공학위주의 일본방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가들은 건축교육의 고유한 전문성에 따라 독립된 「건축대학(학교)」에서 설계교육을 위주로 한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학위 또한 Professional Degree(건축학사, 건축석사 등)로서 건축사(가) 자격부여와도 연계되어 있다.

주요국가의 건축행위와 연관된 자격시험을 대별해 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교졸업후 일정기간 실무경력후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프랑스, 이태리처럼 건축학교 졸업과 동시에 건축가 자격을 부여하고 바로 활동이 가능한 경우

영국, 독일, 스위스처럼 교과과정내 1년가량의 실무경력이 포함된 6~7년 과정 졸업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 생각해 볼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축교육과 자격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범건축적 단체가 구성되어 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30여개 건축관련 대학을 AIA와 연계된 「건축교육 인준위원회 NAAB」에서 수년마다 평가하여, 건축교육의 전문성을 인준받은 대학(약 80%)의 건축학사 졸업생의 경우 3년간의 설계실무후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미승인교 졸업시에는 보통 7년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해 차별화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왕립건축가 협회인 RIBA 및 Beaux-Arts 총회등을 통해 건축학교의 인준이나 건축교육의 공동방침을

결정하며, 건축대학의 교육과정 자체가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구성되었거나 교과과정 및 과정통과시험이 건축가 자격기준에 바탕을 두고 편성되었으므로 건축대학의 과정시험 통과 및 졸업은 건축가의 기본적 자격을 갖춘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건축사(가) 자격은 시험의 당락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건축가 양성을 위한 학계 및 실무계간의 긴밀한 논의와 프로그램에 의해 교과과정, 학위, 자격제도가 연계됨으로써 충실한 건축교육와 학위 및 자격의 전문성 보장, 학계와 실무계간의 긴밀한 산·학 연계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건축교육은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이 아니라 공대소속으로서 설계, 구조, 시공등의 포괄적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므로 학위별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후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체계를 존중하더라도 설계교육의 내실화, 교육과 실무의 거리감 해소, 각 학교 혹은 전공별 다양성 부여, 건축대학의 설립에 대비한 전문학위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건축사협회와 건축학회 등이 공동으로 건축설계 전공(또는 전문학위)에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기준과 이에 따른 실무경력의 산정기준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UR 개방에 따라 외국의 건축교육기관과 사무소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우리의 건축 현실에 비추어 볼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건축설계분야 이리라 생각되며, 이는 건축설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은 문화적인 잠식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그동안 건축학회나 몇몇 대학에서의 건축(설계)학과 또는 건축대학의 설립을 통한 설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새대로 실천되지 못한 이면에는 설계전공자들이나 건축대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리 마련되지 못한것에도 그 원인이 크다.

기존의 공대소속 교육체계이건 새로운 건축대학의 형태이건간에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건축을 택한 이들에 대한 충실한 건축교육의 발판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뒷받침할 교육내용 및 이와 연계된 자격제도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틀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응시 자격 및 경력의 인정기준

현행 건축사법에 의하면 학력 및 경력별로 구분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분은 국제화, 다양화의 시대와는 동떨어진 포괄적 내용으로서 기준이나 구분에 불명확한 사항이 많으며 각 사안별로 그때그때 담당자나 담당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학문적인 건축교육의 특수성과 건축설계의 전문성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외국의 건축교육은 건축과 타학문간의 연계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학원등에서 정원의 일정수는 타 전공자들을 우대하려만치 인접학문과의 공조체계가 일반화 되어 학제 및 자격시험등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학부에서 도시계획이나 조경등을 공부하고 국·내외 대학원 과정을 건축전공한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일시 되어 10년 이상의 실무경력후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건축공학과 위주의 단일학위(공학) 체계로 구성된 국내의 현행 교육체계 위주로 생각한 결과로서 현재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국제화 추세에서 볼때 학력, 전공, 학위간의 적절한 구분과 전문성은 보강하되 상호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학력이나 경력, 건축사 자격등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를 판단할 전문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학력기준과 비교해 볼때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설계와 거리가 있는 여러 분야에 걸쳐—구조 및 시공, 공무원, 교직, 군복무 등—100% 산정하여 설계실무 경력이 전혀 없어도 5년의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즉 건축교육의 다학문적인 다양성과 종합성은 획일화된 국내학계에 따라 상호인정이 안되는 폐쇄적 상태에서,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실무의 경력기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전문성 부재'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 구조, 시공 등의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설계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 분야의 경력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따라서 경력의 인정기준은 학력 및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기간속에 건축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실무기간을 명시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

실제 건축설계의 경험이 전무하고 설계를 수행할 기본적 능력이 없는 건축사들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그들이 건축사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실무건축계의 악순환은 이제 막아야 한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건축사 배출의 양적확대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실무건축계의 건축사 수험준비자들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건축사의 자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어려운 실무건축계의 현실에서 미래의 건축가를 꿈꾸며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를 통해 전문직에 근무한다는 최소한의 자긍심과 희망을 간직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건축사 1차 시험

현재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서 건축계의 실무중추를 이루는 인원 5,000여명이 매년 3~6개월의 휴직 또는 사직도 불사하면서 건축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으며, 합격자 이외의 90% 이상이 매해 같은 준비를 반복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건축계 및 국가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시험일정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연초부터 설계 사무실과 수험자들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차시험의 과목이나 난이도를 볼때 정상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며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거의 힘든 상태에서 어렵게 1차시험을 통과했더라도 2차시험 불합격시 매년 같은 준비를 되풀이해야 되는 현행 시험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처럼 매년 본인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신청을 하고 한번 합격한 과목은 면제가 되는 방식까지는 못하더라도 1차시험 합격시 이들 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실무시험에 치중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2차시험의

주관식이 1차 객관식 시험으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자칫 암기식 1차 시험의 비중과 난이도만 올려놓아 설계실무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과목별 합격제가 힘들경우 계획, 건축사, 법규와 구조, 시공의 2개 분야로 구분한 분야별 합격제를 택하거나 과목수 및 난이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차시험 합격자가 누적될 경우의 시험관리의 어려움이나 전산시설의 미비, 제도편의 부족등을 이유로 현행 시험제도를 1회에 한한 1차 시험 인정 방식으로 절충하려는 움직임은 건축사 시험의 본질적 문제는 회피한채 모양새만 갖추려는 건설부의 행정편의 주의나 건축사협회의 본직 수행 태만과 다름아니다.

주어진 시간내 묘수풀이식 제도기능시험의 형식을 못 벗어나는 현재의 2차시험으로 설계능력의 기본적 평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암기위주의 1차시험 역시 속성상 실무설계자들에게 2차시험보다도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으로 여겨지는 것은 시험자체의 전문성과 권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어렵다는 것만으로 시험과 자격의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실제 운전능력보다 학원에서의 암기식 주행훈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면허취득후에도 실제 운전이 불가능해 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권위를 크게 인정치 않게된다. 왜냐하면 시험의 성격을 면허증 취득을 위한 1회성—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건축사 1차시험의 과목수, 내용 및 형식, 난이도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취지와 권위를 살릴수 있고 건축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며, 1차시험 합격자의 과목(분야) 면제와 더불어 최소한의 전문성 및 창의성, 설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2차시험의 형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 1차시험과 기사시험의 연계방안

한편 실무경력 5년후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건축사 1차시험을 기사시험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기사시험의 경우 계획, 법규, 구조, 시공, 설비등의 1차 객관식과 시공, 적산, 품질관리, 공정등 시공일반의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설계전공자(실무설계 진로)의 경우 기사 2차시험을 설계연관 과목으로 구성하여 합격시 기사자격증과 더불어 건축사 1차 시험에 통과한것으로 간주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후 건축사 2차시험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력 5년이상의 설계실무의 중추적 인원들이 매해 같은 시기에 건축사 1차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야기되는 실무건축계의 공백현상 해소와 더불어 시간낭비 또한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재학중 설계 진로를 택한 학생들이 보다 충실히 교육과정에서부터 건축가로의 성장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 대학 4년시부터 볼 수 있는 현행 기사시험으로 인해 4학년 학생들의 학교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기사시험준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학점수에 비해 다른 과목들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기사시험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설계과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설계사무실의 취업기회가 시공회사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사시험 보다 졸업설계등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하기에는 설계진로 희망자들에게 조차 용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대학현실이다.

건축사 1차시험과 기사시험의 연계 및 시험시기 조정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건축사 2차시험

현행 건축사 2차시험의 경우 건축계획(계획, 환경, 설비)의 주·객관식과 설계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의 내용은 암기식 1차시험과 대동소이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즉 건축사로서 필요한 연관분야의 종합적 이해도나 지식, 창의성 및 기본적 설계능력의 평가라기 보다는 단기간의 암기력과 정보수집력, 출제 교수의 성향등에 따라 시험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설계실기의 건물유형 예시 및 제도능력 평가의 범주를 못벗어나는 시험시간과 내용은 점차 설계시험에까지 건축사 수험대비 학원의 양성화와 합격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설계실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설계능력이 없는 이들이 설계실기 시험을 1~2개월간 학원에서 훈련받은후 건축사시험에 다수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단적으로 현행 건축사시험의 권위와 전문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2차 필기시험을 1차시험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과목수와 내용의 합리적 조정을 전제하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며, 혹 주관식이 2차에 남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기위주의 학술적 내용이 아니라 건축설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관분야나 지식의 응용력과 종합력을 평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설계시험 또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관련법규와 자료, 건축적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를 분석·종합한 내용이 최종설계내용과 연계 되도록 하여 계획 프로그래밍과 프로세스, 설계결과물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설계설명서의 형식으로서(주관적으로 채택가능) 설계요구조건이나 건축적 지식의 분석력과 종합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설계도를 통해 도면작성 및 표현능력, 응용력을 평가함으로써 제도시험의 범주를 벗어나 건축사로서 필요한 종합적 지식 및 설계능력을 시험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리라 본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설계시험의 내용을 Pre-Design, Site-Design, Building Design 등으로 구성하여 다각적인 설계능력을 1~2일간 평가할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축설계가 건축의 여러 학문 및 분야가 종합된 건축적 열매이듯이 설계시험이 건축사자격시험의 근간이자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와같은 결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실무설계를 계속해온 실무자들이 그들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시험에 다수 합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건축과 건축사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건축사 수험대비학원을 통한 건축사의 배출'이라는 우리의 건축적 비극은 막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5 건축사 배출과 건축계의 변화

Architect Training & Renovation of Architecture

朴商浩/석림 건축사사무소
by Park, Sang-Ho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현행 건축사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건축계의 변화〉라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논하기전에 건축사법이 왜 마련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1965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까지 건축사의 총면허는 6,298명등 개업건축사는 3,933명등 1992년 현재 사무실 개설수는 2,418개소(1992년 12월말 현재)가 현황이다.

건축사법의 목적에 〈자격과 업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그 간의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임하는 기술자의 자격법으로서 설계, 감리 업무법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건축사법 제정 당시의 건축물, 건축기술의 상황등이 오늘날에 와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점포, 대형복합용도건물, 호텔, 문화시설, 인테리젠트건물, 막(膜)구조 등 고도로 복잡한 건축설비를 장비한 건축물이 급속히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기술의 혁신은 건축생산 전체에 걸쳐 전문화, 전자화등을 앙진(昂進)시키게 되었음으로 이와같은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생산이 확실히 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고도화된 업무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기술의 혁신에 따라 수반되어 일어나는 건축사에 기대되는 기술내용의 변화와 건축생산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의 건축사법을 반성할 때 그간의 수차에 걸친 개정등이 있었으나, 건축기술업무의 발전과, 건축물의 용도의 수요에 따른 건축설계업 진흥(振興)을 위한 中長期的 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축허가업무와 관련된 제도, 건축설계, 감리 등에 관련되는 제도,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요건, 업무범위, 감리 전문회사와의 관련문제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건축사법은 말할나위 없이 건축물의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의 향상을 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은 그 지역 민족, 역사와 맞물려 국가, 사회집단의 자산을 형성하는 기초적 생활기반이다.

이와 같이 건축물, 건축기술의 성격에 따라 근대국가는 이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기능을 가지는 기술자의 양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건축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관장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고 시험제도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등록을 함으로써 전문 기술자의 일정수준의 확보와 질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업무에 대한 책임제도를 확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건축기술자는 다시 그위에 자기자신에 대한 엄한 책임의식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시험에 의한(일정수준) 면허등록 제도에 따라 건축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전문적 기술의 일정수준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 공사의 실시는 건축업자에게로 그 각각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간에 부정, 과실의 방지를 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로는 건축물은 단품(單品)의 주문생산에 의한 것이 많다. 즉, 일반 상품과 같이 완성품을 선택구입하는 여지가 수요측에는 없는 것이다. 사전에 설계에 의하여 생산의 성과가 된, 건축물의 형태, 기능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의 주체(主體)와 시공의 주체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술상의 요인이 설계와 시공 쌍방에 중복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품질책임의 소재는 불명확함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나, 건축과 같이 한 번 만 발생하는 단발성(單發性) 프로젝트에 공통되는 조직적인 문제점임 것이다. 또 설계 시공이 분리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건축사(가)사회적 사명에 대한 이념(理念)의 뿌리가 깊으며, 건축물의 실현은 극히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설계 행위에는 당연히 커다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그 실행에 있서서는 일체의 상업성의 입장을 떠나, 말하자면 Professional한 입장에서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 생산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감성(感性)도 동시에 발달하게 됨으로 고도의 지식, 폭넓은 경험과 조합력, 사고력, 창의력이 요구되고 과학 뿐 아니라 미학, 생태학(환경적 관점)과 철학이 요구될 수도 있는 문화적 위상이 강점이 되는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 요건으로 보아 일정기준에 도달된 사람이 배출되면 건축사업무와 수요, 건축사의 자격과는 직접 관계는 없을 수 있다. 건축사의 지적수준을 저하시키는 인원수 위주의 선발방법은 건축물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건축사법의 제1조(목적)에 건축물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뜻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감리인원의 부족은 시공자의 자의적인 자주관리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자체 시공관리, 기술관리, 하청자 감독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부실시공의 치유가 될 것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건축사의 배출은 우수한 건축사가 많아 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 자동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하의 인원수 위주의 선발은 과거의 2급 건축사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법하게 될 것이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회원의 70% 대졸, 30%이하 전문대 졸업이하의 학력수준으로 반드시 학력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자격시험의 수준은 일정수준을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금후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재(素材)의 발달로 인간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을 요구하며, 건축사는 고도의 지식수준과 계속하여 부단한 자기수업, 경험의 축적으로 사회적 책임마저 갖고 있어야 한다.

건축사 제도도 생산기술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종전의 건축사 단일체제에서 총괄, 설비, 구조, 감리 등으로 계속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려하는 추세의 경향이며, 종전에는 건축사는 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로서 금후의 방향을 직능등을 고려할 때 기술면 보다는 디자인면에, 연구개발보다 조합에, 물질면 보다는 서비스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의 특질과 건축직능 면에서 볼 때 건축설계는 공업제품의 설계와 비교하여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주문에 의한 일품생산이란 점과 둘째, 건물이 가지는 정신적인 요소이다. 건축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설계자의 역할은 건축행위이며, 건축행위는 생산행위이고 건축물은 인간생활의 장(場)이며 예술적 관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어떤 제품이라도 그 제품의 좋고 나쁘고 아름다움 등은 설계에 좌우되는 것이 많다. 건축의 경우, 특히 정신적 측면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설계의 질에 좌우된다. 건축의 정신적인 질을 탄생시키는 것은 설계자의 개성인 것이다.

공업제품은 물론 토목시설에서도 일반적으로 설계자와 명칭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설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설계자의 개별성이 중요시 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축의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의 설계자의 역할은 이해하기 쉬우나 건축은 물론, 다른 많은 사회적 요구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능성, 조형성, 경제성 등의 세 요구는 건축주의 의향이나 건축목적, 건축용도에 맞게 균형있게 다듬어 가는 것이다. 설계중에 과학적, 공학적으로취급하는 부분은 되도록 객관화하고 설계를 종합적으로 종합정리하는 일은 역시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건축설계는 다른 공업분야와 비교해서 과학화, 공업화가 곤란하고 그만큼 인간의 기능에 의존하는 부분을 많이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무의 흐름을 조사, 기획, 설계감리, 시공, 유지관리의 4단계를 큰 흐름으로 볼때 각기 업무의 구분이 분명하고 직능상의 각각의 특질이 분명한데 기존의 건축사법과 새로 1987년에 입법한 건설기술관리법은 그 업무직능이 중복되어 있다.(특히, 감리업무 부분) 최근에는 건설회사에 종합건설 면허제의 허용설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제 경쟁력을 빙자한 현상으로 시공권을 따기 위한 설계의 서비스(무대)가 평계가 될 수 있고 일부 대형 건설사의 전체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국에 지사를 설치 함으로써) 이렇게 볼때 전문직능의 분업화, 상호견제, 이익 추구만을 위한 부실공사의 우려와, 전체주의 사회적인 독점경제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민주사회의 大,小 공존의 의의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며, 大,中,小의 각각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여 공존, 공영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건설회사는 건설기술을 구체적으로는 시공법, 공정관리, 견적기법, 원가절감방안, 가설공사기법 등을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설계업무에서는 설계기술의 향상과 신소재 신공법에 의한 신기술의 부단한 습득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자율적인 세미나 교육, 기술정보의 교류등으로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 안목으로는 〈설계업의 장기 진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행정관서에서는 건축기술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법규를 재조명하여 금후의 제도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현대건축의 발달에 따른 관련기술(예: 초고층 기술, 조립식 공법, 지하 구조물, 고도의 설비시설, 전자 정보시설, 기타 특수공법, 소재 등)에 대한 적절한 시험과목에의 포함이 바람직하고, 이를 다시 학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에서의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이수되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학교에서의 교수진은 부족할 경우 실무 유경험 설계의 고급기술 인력을 강사로 초빙하여 산학이 일체가 되도록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사는 인간생활의 장(場)으로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성과 쾌적성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본성능의 향상과 설비의 고도화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성과 쾌적성은 계속 금후의 기본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경제활동의 (場)으로서의 건축물의 역할도 점점 중요시 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의 발전에 따른 CATV, VAN 등의 뉴미디어가 실현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산업의 발달은 인테리젠트 설비를 장비함으로써 OA(오피스 오토메이션), BA(빌딩 오토메이션)화 등의 추진 움직임이 현저하다.

한편 공사 품질면에서는 시공자의 자주적인 관리, 감독의 의지가 없는 한 감리자의조사 검사 확인에만 의할 경우는 이 조사 검사 항목에만 초점을 두고 공사관리를 행하기 쉽기 때문에 또 다른 하자나 사고의 발생 요인이 되기 쉽다. 지나친 감리자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의 창의적인 자율성을 잃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중점적인 중요사항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법33조의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공사시공에 있어서 공사관리 기타 기술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1인 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취득한 시공 기술자가 당연히 건설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관리를 해야 함에도 건설기술 관리법의 제정으로 건설시공 기술자가 자기 본 업무가 아닌 설계 감리업무를 한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할 일임이 당연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나.

당초의 법 취지가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 건축관련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표준공사 계약서(안)을 마련하여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중 현장 대리인, 감리 기술자 등 감리자의

책무를 보면 제8조(현장 대리인, 감리 기술자 등) (1)을은 현장 대리인과 공사현장에 있어서 시공의 기술상 관리를 해야 할 감리 기술자 또는 주임 기술자 또는 전문 기술자(건설업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기술자를 말한다)를 정하여……로 명문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시공의 기술관리를 해야 할 감리 기술자는 자체감리, 감독업무로서 1차적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리자는 제7조(감리자)

중간 생략…

e)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에 지시하고 시공에 입회하고 공사재료와 마감견본, 건축설비의 기기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승인하다……생략 위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도서에 정해지는 바에 따라……라는 범위를 정한 부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반조건의 제3조에는

제3조(공사 감독원)

1항에서는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독원과 감리자가 구분이 분명하고 이 부분으로서는 감독자가 감리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자체가 시공 일반 업무라면 시공회사의 자체기술 감리감독자가 해야 할 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공사 표준계약서(안)도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조속히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자격 감리자의 인원을 양반으로 충원하려 하지 말고 시공자 자체가 자체인력에 의한 시공전반에 걸쳐 자주(自主)관리 감독해야 함이 원천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건설업법상의 보완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건축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공사계약서(안)을 마련하여 감리자와 시공회사의 기술관리 감독자의 업무 등의 구분을 명문화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관계당국은 이를 조속히 주선하여야 할 줄 기대하며 이는 곧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작업무 책임소재의 명확히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건설회사가 국제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자체내에서 설계·감리를 다하겠다(종합건서업면허)고 하는 것은 초년도에 1건당 100억에서 50억으로 차츰 내려오게 되면 중·소 건설업체와의 마찰도 문제이고, 전문화 직능 분업화 되어가는 고도 기술사대에 모순이 되며, 민주화사회의 大,中,小가 공존하고, 각개의 특성을 살려 어울려 사는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존의 사상이 필요하며 종국에 대형화로 몰리면 궁극에는 모든 균형은 깨뜨러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공동패망의 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재구성 편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쉽다.

6 희망사항

Wishes

趙仁哲/건축사 보조원
by Zho, In-Choul

1. 대상자들의 실태

본 글에서는 건축사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대상자(이하 대상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재의 시험제도는 시험공부에 매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대상자들이 과정통과를 하기 위해 우선 공부시간의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설계사무소(이하 사무소)에서 주어진 모든일—야근, 휴일근무, 심지어 출장까지도—마다 않고 완벽히 소화하면서 공부시간을 만들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다수 대상자에게 있어서 목표달성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을 적당히 하는 법이 없을 뿐더러 맡은 일이 워낙 중요하며, 게다가 마땅한 대리자가 없어 시험기간이 되더라도 전혀 시간을 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무실내에서 건축적인 실력은 인정받지만, 영원히 대상자로서 남아있는 건축인을 종종 볼 수 있다.

둘째는, 소속된 사무소의 배려로 일정시험준비 기간동안 장기유급휴가를 얻어 공부할 수 있는 안정된 시간을 갖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대상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된 형식이나, 사무소 입장에서는 대상자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험때문에 상당기간 마비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도 몇번씩 무한정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철저히 퇴근시간을 엄수하고, 퇴근후의 시간과 출근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국내 대기업에 속해 있는 사무소 중에서도 몇몇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장기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설계작업 속성상 주어진 일은 대체로 근무시간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야근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으로 꼭 시험 때가 되면 설계현상 공모건에

참여하게 되어 대상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바쁜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네번째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이 여의치 않는 경우나, 앞의 방법을 전부 소진하면서도 과정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면 소위 "보따리 장사"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시험기간에 전적으로 시간을 내어 공부에 열중하는 경우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 어렵게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많지만, 이런 경우 튼튼한 재력가가 뒷받침해 주는 때가 아니면 굉장한 모험일 수 밖에 없다. 2년, 3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상자는 정신적인 좌절감을 느끼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지경이 된다.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박봉의 사무소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난다. 설계 사무소에 10년이상의 경력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법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방법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안정되고 확실하지 못하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만 자격증 취득의 그날까지는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보조원의 생활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 건축계의 하부구조는 불안정 하다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이란 장기든, 단기든 또는 자의든, 타의든 설계작업을 적당히 하거나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사보조원의 경력기간이 자신의 독립적인 결정으로 건물이 설계되고, 또 지어질때,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그 과정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험제도하에서 오직 자격취득이 목표라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의 과정보다는 타 직종에서의 준비가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좋은 건축은 단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절대로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프로젝트마다 부딪치는 많은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며, 또 그것들을 통합하여 건축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한 능력배양의 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건축설계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설계는 대형 프로젝트 일수록 건축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무소내에서 대상자 이상의 경력자들의 뒷받침 없이는 설계의 질은 좋아질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들은 이러한 대상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무소내에서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 하나의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누구나 그것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현재 상황은 주어진 일 열심히 함으로써 예비 건축사의 과정을 착실히 쌓아가는 대상자에게는 그 자격을 잘 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 실정은 이러한 대상자 이상의 경력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꼼꼼하고 차분하게 일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경력이 많을수록 안정감 보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현재의 시험제도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상자들은 시험준비와 더불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머리속은 항상 복잡하다. 어떻게 휴가신청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안 통하면 그만두고 시험공부에 전념해야지! 그렇게 해서도 목표달성이 안되면, 내친김에 사무소나 옮겨보자! 사실상 건축설계사무소 직원들의 사무소 옮겨다니는 횟수가 타직종에 비해 빈번한 이유는 단지 봉급수준이나 개개인의 성실도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불안정한 하부구조의 기반에서 건축의 질향상을 운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자격시험제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의 자격시험제도는 "자격의 기준을 임의로 선정하여 자격을 주고 있으며, 자격이 있는자"도 그 자격을 갖기가 매우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긴 자격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부구조의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건축의 저질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희망사항

1993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천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그동안 연속적인 시험의 실패에 눈물을 머금고 타직종으로 전업해야 했던 많은 쟁쟁한 설계경력의 소유자들이 돌아온다니 그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도 희망적인 합격자 다수배출의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과년도까지의 경우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기 쉽고, 되어야 할 사람은 되기가 어려운 제도였다면, 작년의 경우는 되어야 할 사람,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었다. 근본적인 개선없이 합격자만 다수 배출하는 것은 건축의 질향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한사람으로써 자격취득이 쉬워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것이란 거의 없다. 인원수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많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1차시험은 한번의 합격으로 영구히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매년마다 1차시험 준비로 설계사무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좋은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1차 과목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실무적인 일의 과정에서 습득되어 지고 숙련되어야 할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1차과목에서의 내용이 전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니며, 단 한번의 시험통과 수준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본 것을 또 보고 암기했던 것을 또 확인하는 1차시험 준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2차시험은 1년에 2회 정도는 시행되어야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1년에 1회를 2회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절차상 어려움이 많을 듯하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국 시행비용의 문제로 집약된다. 비용의 문제는 응시자의 원서대로 조달하면 될 것이다. 1년에 시험 1회 더 보는 기회를 주는데 그에 대한 필요비용을 대상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1회로 국한하여 다수의 인원을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보다는 자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는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급함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정의 얘기가 나온 지도 몇년이 지난 것 같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는 듯하다. 어쨌든, 시험제도의 개선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칫, 진통의 기간이 길어져 또 한번 당초 설정된 올바른 길을 벗어나 기득권층의 이해타산에 맞추어진 어정쩡한 제도를 토해내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올바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건축사자격시험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시험자체를 거부해야 했던 몇몇 선배건축가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거추장스러운 멍에를 벗었으면 좋겠다.

7 불란서 건축사시험제도

An Architect Examination System in France

鄭奇溶/기용건축
by Cheong, Ki-Yong

1. 전제

현재 불란서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제도가 없다. 건축학교(대학이 아니라)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 논문 또는 논문과 함께 계출하는 계획안의 심사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졸업장이 주어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소위 "건축사"가 된다. 물론 관보에 그 명단이 소개되는 절차가 있긴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많은 한국의 동료건축가들은 『그거 참 너무 쉽구나』라고 한다.

하긴 우리나라 건축과 대학생들이 학위수료와 동시에 건축사가 된다는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만도 하다. 그렇다고 불란서의 교과과정을 완벽히 이수하고 논문·프로젝트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불란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런 제도를 큰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는 불란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란서의 건축교육을 알아야 하고, 예술가로서 건축가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성숙되어온 서양의 전통적인 건축역사를 이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불란서의 건축문화 나아가서 문화전반의 풍토를 이해하지 않고서 제도자체만 촛점을 맞추워 우리들의 편의대로 유추해서 해석한다는 것도 또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건축계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건축사」의 선별방법은 본질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축문화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제도의 목적이나 적용 방법이 어떠하든 전문직종으로서의 건축사에게 이 사회가 요청하는 얼굴이 어떤 모습이어야하는 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사회가 건축사들을 사회적 분업에서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이들에게 한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창조자들로서의 능력까지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질문에대한 해답의 방향은 불란서의 예를들어 생각해볼때 명료하게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제한보다는 자유의 계령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일 것이다. 이때에 제기되는 반문들의 대부분은 「건축사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즉 대충 건축교육을 이수하여 어느 수준에 이른 것이 객관적으로 판정되어 건축사가 양산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건축사의 몸값'과 '건물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다. 실지로 불란서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사」를 수적으로 파악하려는 단순도식법에서 나오는 근시안적인 걱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건축주)들은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많아지는 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시장원리와 똑같이 적용되어 '품질'경쟁에서 뒤진 건축사들은 고객(개인이건 관이건)들에의해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건축가란 고객을 필요로하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이란 또한 사람들의 머리수 만큼 다양한 취향과 계층들로 구분되기 마련이어서 그들은 각기 그들에게 적합한 건축사를 찾아나서게 되어있으므로 우리들이 건축사의 숫자를 머리속으로 너무 고민할 문제는 아닌듯 하며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필요로하는 인력수급 계획의 대강에서 큰 줄거리를 정하면 족할 것이다. 건축사·건축가, 건물 디자인하는 사람, 설계사 집짓는 사람, 나아가서 뭐 집같은 거 그런거하는 사람으로 일반대중은 건축사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름조차 분명히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사의 문제를 건축계내부의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사회속에서의 건축」이라는 본질을 일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바로 불란서 건축사제도의 중요한 큰 줄거리는 위에 언급한 의미들속에 내포되어있다고도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보다 압축된 방식으로 앞에서 제기한 두가지의 이해조건 즉 불란서의 건축교육제도가 어떻게 「건축사의 양성소」로 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예술가로서의 건축사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불란서의 건축교육(주1)

프랑스 건축교육은 초기에 왕립건축아카데미(L'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1671년에 탄생하여 1795년부터 1968년 학생운동 시기까지 대략 5기간으로 구분되어진다.

1기 : 1795년—1920년
2기 : 1920년—1940년
3기 : 1940년—1966년
4기 : 1966년—1968년
5기 : 1968년—현재

1968년 이전까지 불란서의 건축교육은 로마상(주2)을 중심으로 전통적 고건축에 뿌리를 두고 도제식의 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19C 이후 변화하는 사회속에서도 부르조아 계층의 미묘한 취향을 충족시켜주는데 그치고 있었다.

2차대전을 거치면서 비로서 국제주의적 건축양식 즉 현대건축은 빛을보게 되었으나 대량으로 씨잡아 건설한 집단주거단지들이 슬럼화되며 7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전후 20년간의 고도성장과 함께 지연되어온 사회적 문제의 단편적 분위기는 전반적인 건축교육의 혁명적인 개선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건축과의 학생들은 바로 그들이 배운 교육이 오직 부르조아 계층의 취향에 이바지하며 사회적인 여러 요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갖고있지 못한 모순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젊은이들은 집단적으로 건축행위가 단순한 예술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편리하게 각색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즉 억압받는 노동계층이나 억압이 은폐된 「보자르」(주3)의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당대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좌익사상가들의 정신적 자양을 받아 견고하게되어 결국은 드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서게한 학생혁명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68년을 전후한 전세계적인 학생들의 운동은 결국 크든 작든 2차대전후 산업사회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었으며 특히 불란서에서는 그것이 보자르와 건축과의 학생들로부터 출발했었던 사실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타 학문에 비해 역설적으로 건축교육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나 하는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건축은 다른 의미에서 보수적인 가치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건축의 일반적인 보수적인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엎으며 건축이 본래의 건축의 모습으로, 「보자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당시대의 절실한 요청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건축의 문제를 그 본래의 고정적 의미로부터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1968년 12월 Beaux—Arts 폐쇄를 고하는 명령이 공표되고 자치적이며 독립된 새로운 건축교육전문학교인 UPA(Unité Pedagegigue d'Architecture)가 정부지원을 받으며 설립되었다.

프랑스의 대학교육조직은 대학(Université)과 학교(Ecole)라는 2개의 커다란 체제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과계통과 예술계통은 학교(Ecole)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교육은 일반대학에 속하지않고 독립적으로 Ecole의 체제속에 있으며 이것은 프랑스의 독특한 체제라 할 수 있다. 간략히 Unvrsité와 Ecole의 차이점은 각 전공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대학예비고사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를 거치는 것은 같으나 Université는 Baccalaureat만으로 전공별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되나 Ecole은 각 학교마다의 전형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Ecole마다의 엄격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예를들어, Ecole Polytechnique, Ecole Centrale, Ecole des Pontset Chaussées와 같은 학교는 프랑스 공과 계통의 학교 중 대표적인 Ecole들이며 입학하기 위해 몇년씩 재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며 예술전문학교인 Ecole des Beaux—Arts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러한 학교들을 프랑스에서는 그랑데꼴 Grande d'Ecole)이라 부른다. 이러한 Ecole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전형시험을 거치지않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건축학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건축학교에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프랑스 학생사이에서는 통한다. 프랑스에는 현재 2개의 사립건축학교와 23개의 국립건축학교(파리지역 9개 기타 지방주요도시 14개)가 있다.

유럽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이 프랑스의 거의 모든 건축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1년에 약 7-8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며 특이한 것은 일반대학은 문교부 소속이나 건축학교는 관련행정부처인 도시계획, 주거 및 교통부 산하에 있다. 이는 건축이 모호하고 막연한 예술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 현재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23개의 건축학교마다 교과과정상의 운영에 따라 특색을 달리하겠으나 행정적인 면이나 교육체계는 거의 평준화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건축학교가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수진에 따라서 학교의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학사일정을 보면 70년대와 80년도 초기까지는 건축수업연한이 최소 6년으로(졸업논문 포함) 3 Cycle로 구성되고 각 Cycle은 최소 2년으로 졸업논문이 통과하면 프랑스 국가 인정 건축사자격증이 주어지며 동시에 건축부분에서는 프랑스에서 유일한 학위인 D.P.L.G(Dipôme d'Architecte diplôme Par Le Gouvernement) 학위를 받는다. 그러나 1984년 이후 개편된 교육조직은 수업년한이 최소5년(졸업논문은 별도)으로, 2 Cycle로 조정되었으며 건축기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첫번째 Cycle은 수업년한이 최소 2년으로 수료하면 D.E.F.A(Diplôme déEtudes Fondamentales en Architecture)라는 학위가 수여되며 많은 학생들이 이 Cycle에서 중도탈락한다. 두번째 Cycle은 수업연한이 최소 3년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논문과 실습을 거쳐서 D.P.L.G.학위를 받는다. 따라서 총수업연한은 논문준비과정을 최소 1년으로 보았을 때 최소 6년(서독 최소 6년, 스위스 최소 5년6개월, 이태리 최소5년)이나 최대기간은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1년간의 의무 군복무로 인한 유학기간과 실무경력을 쌓기위해 일부는 과정중 또는 과정이수 후 실무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학위를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수의 학생들은 설계사무소에 다니면서 수업을 받기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실무경력의 년한을 정해 놓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은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또 자신의 의지에따라 정할 뿐이다.

그 Cycle의 과정은 모두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거친 후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작품 및 보고서로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는 작품 및 보고서로 하는 경우가 많다.

DPLG 학위는 학위자체가 학문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않고 건축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국가인정건축사자격증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처럼 별도의 국가고시에 의한 자격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건축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뒤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한다. 건축학교의 모든 담당교수들은 단지 DPLG 학위 소지자이며 거의 모든 설계 담당교수들은 실제 사무소를 운영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있고 프랑스 학계나 건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전임교수들의 연구실이 학교에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학교내에 전임교수들의 연구실이 없음으로 인한 교수와 학생들간에 대화가 부족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나 대학의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연구활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건축설계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교수들의 실무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상주하는 인원은 거의 관리 운영부의 직원들이며 교수들은 각자가 맡은 수업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즉 일주일에 한두번 학교에 나오면 되므로 한국에서와 같이 학교운영상에서 오는 많은 짐들을 교수들은 덜게된다. 바로 운영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이 교수들의 실제 설계시간에 할당되어 반대로 그 체험이 산교육이 되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위에서 다소 길게 건축교육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졸업과 동시에 건축사로 출발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함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프랑스에는 사립건축학교로 E.S.A(Ecole Spéciale dArchitecture)가 있으며 이들도 역시 같은 정도로 교육을 받고 국가인정 DPLG와 같이 건축사로서 자격이 주워진다. 다만 그들의 이름밑에 DPLG대신 학교이름인 ESA를 부칠 따름이다.

건축관련공무원으로 수 년을 근무하고 특별전형으로 건축사가 되는 제3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 숫자는 미미한 정도라 하겠다.

건축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DPLG증서를 가지고 회비를 지역협회에 납부하고 선서를 하면 정식으로 도면에 서명할 권한이 주워진다.

이들을 등록건축사(Architecte eu Ordre)라고 칭한다. 건축사협회는 물론 등록건축사들의 권익을 위한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도 하고있다. 특히 프랑스건축사는 그들의 작품 중 골조설계분에 대하여는 10년책임(Résposabilité décéuale)을 지게 됨으로 계속 후속업무에 대한 부담과 기타 업무관련의 손해로부터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특별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전제에서도 거론한 것과 같이 수세기 건축문화 전통의 연장선 속에서 자라난 교육과 문화의 전반적인 풍토는 현재의 프랑스 건축사제도를 특별한 쟁점으로 대두 시키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축가를 예술인으로 보다는 전문인으로 수용하는 듯하고 이는 후기산업사회분화과정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현재의 우리나라 건축사제도의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사회로 완전히 분화되기 전에 자율적「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온 점에 그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건축사 제도가 사회화되는 과정과 사회의 분화과정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들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한국산업화 정도에 알맞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그 방법이란 인구비례에 따른 숫적 제한이 아니라 건축사로서 올바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객관적으로 보증할 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바른 건축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제도보다는 자율적인 정신의 보장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손끝에 나오는 서류나 허가도서 보다도 그에 이르는 "창작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주1) 불란서의 건축교육에 대해서는 '건축가'지 90년 11월호 〈프랑스국립 파리—라빌레뜨 건축학교의 건축교육〉(이명수)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으며 같은 건축가지 92년 7월호에서 필자가 다룬글「불란서의 건축교육」을 통해 그 본체를 들어내고자 하였다.

주2) 19세기부터 있어온 로마상이란 건축및 기타 미술분야에 수상되던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건축가인 경우에는 그것이 큰 영예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 건축의 대가로 군림하였다. 차츰 이 제도는 보수주의적 대명사로 불리웠고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적이기도 하였다.

주3) 영어로 FIVE ARTS로 표기되는 이말은 전통적인 장르 미술로써 회화, 뎃생, 판화, 조각, 건축을 의미하며 또한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 Ecole Nationale Superseures des Beaux-Arts(ENSBA)의 줄인말로도 사용된다. 전통적인 미술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도 흔히 쓰여진다.

8 영국 건축사시험제도

An Architect Examination System In England

金鐘圭/M・A・R・U 건축
by Kim, Jong-Kyu

영국의 경우 18세기 경까지 건축사들의 관심은 형태나 공간 등의 시각적 문제에 놓여있었지 건물공정의 관리, 운영 등의 문제는 그들을 돕고있는 장인들에 의해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질 수 있었던 관계로 거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면서 자유

경제체제의 발달로 직업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축에서도 '전문인(profession)'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서 건축사들의 모임인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가 1834년 만들어진 이후 건축사는 '전문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837년 윌리암4세로부터 왕립기관으로 인정되면서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RIBA)가 되었고 협회규약에 의해 학위증명서와 자격증 또는 다른 형태의 인준서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62년 RIBA내에 시험위원회가 생겨났으며 1963년에 최초의 시험이 행해졌다. 원래 RIBA의 건축관계 시험은 건축사무소의 도제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건축교육제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있다.

■RIBA 건축시험 제도

RIBA의 자격시험은 건축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시험으로 현재는 3부제의 형식을 띠고있다. 1부, 2부는 영국의 교육제도, 즉 건축은 5년의 교육으로서 3년의 초기교육과 2년의 후기교육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교육제도와 일치되게끔 구성되어 있으며 제 3부는 실무와 긴밀히 연관되어져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제도는 영국의 경우 제3부 시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The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라 불리우는 제3부 시험은 건축에서는 최종적인 시험으로서 건축사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영국에서 '건축사(Architect)'란 명칭은 국회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심사에 의해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의 목적은 건축실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인'으로서 '적합'한가를 보는 데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부, 2부의 시험에 통과 혹은 면제된 이후 2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며 2년의 실무기간중 1년은 영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해야만 주어진다. 제3부 시험은 1부, 2부 시험에서 다루는 건축의 일반적 상황의 이해를 보는 교육적 측면의 평가와는 다르게 건축사의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책임과 책무에 대한 인식, 사무소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직업적 수행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사고의 성숙도 지식 기술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시험평가에 있어 시험관들은 세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는데 첫째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응시자의 직업적인 반전을 보며 둘째는 서술시험에서 보여진 응시자의 답안을 통해 보여진 것으로서 실무에 이론적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며 셋째는 구두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인'으로서의 도의적인 행위와 반응을 보는 것이다. RIBA를 대신하여 시험을 대학교 혹은 'polytechnic(현재는 모든 polytechnic이 University로 명칭을 바꿈)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시험관들은 RIBA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제3부 시험은 대체로 3단계로 나뉘어지며 첫단계는 실무경험에 대한 증거와 실무경험 동안 응시자가 참여한 project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서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서술시험으로 RIBA가 정한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출제되는 논술식 시험으로 1. Legislation and Architecture 2. The profession and the Building industry 3.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4. Project Management로 구성된다. 서술시험의 목적은 건설 및 건축업계에 적용되는 계약, 규정, 법규 등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것의 논리를 설명해 내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방식과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데 있다. 세번째는 구두시험으로 2명의 시험관에 의해 치뤄지게 되는데 응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직업적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서술시험전에 제출하는 case study형식의 논문으로 이것은 시험관들에게, project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조사하는 응시자의 능력을 보여주며 실무초기부터 시험때까지 진행되어온 응시자의 배경과 발전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응시자가 참여했던 project의 기록이 아니라 project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의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 또한 project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 응시자의 지식과 경험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유추해 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전체적인 구성은 틀려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항으로서는

1. 건축주 요구사항—초기요구사항과 최종결과물과의 관계
2. 경제성—예상견적과 실시공사비와의 비교분석
3. 디자인 팀의 구성—외주업체의 선정 및 구성과 그들의 참여기여도 분석
4. 법규상의 제한과 그의 해결을 위한 과정적 기록
5. 보수요율에 의한 보수산정 및 사무실 운영과 계획
6. 공사업자 선정에 따른 과정과 계약관계의 이해 및 계약서 작성
7. 시공현장에서의 계약이행사항과 시공과정에 대한 분석
8. 준공에 따른 사항
9. 사용자의 반응과 이에따른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

등을 들 수가 있다.

■영국시험제도의 특성

영국에서 19세기부터 건축에도 적용되어진 '전문인'으로서의 건축사는 설계집단의 조직, 작업방법, 건설시장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그들이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형태를 재정비해야만 했다. 건축사들은 그들이 정직성, 성실성, 자신감을 제공함으로 유사한 직종의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인'으로 남기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표방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교육받고 책임감있는 전문인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제도의 주요한 목표가 되게 된다. 영국시험제도의 특성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건축사들의 모임이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건축사들의 모임 즉 RIBA는 3부제 시험의 운영에 의해 교육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 모두를 책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전문성의 확립에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전문인'이란 개념은 따라서 교육방향과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되게 된다. 1920년대 Sydney와 Beatrice Webb은 '전문인적 특성'을 '특수한 교육적 훈련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직업의식으로

	The profession	A1
Fig A1. 3.1	Professionalism : how the concept developed	
Traditional	Developments	Current issues
Status Membership of a Professional Institution	• Registration by Act of Parliamont • Traditional role as team leader is questioned	• Increases in legis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 Impact of EC practice and Directives • Government attitude towards restrictive practices
Copmetence Hallmark given by the profession	•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adopt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Publication of guidelines for sound practice	• Quality management system recommended for all practice units • Qualtiy assurance certification by independent body
Liability Liability unlimited-ansawerable in full	• Advances in technology, innovative design, working practices, increased risk • Increasingly litigious climate • More rigorous attitude in the Courts towards professional performance	• Practice with limited liability • Necessity for and realistic availability of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 Need for law reform on limiting professional liabililty
Integrity Largely restrictiv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on the interests of practitioner and client	• Code expressed in Principles to allow greater flexibility of applilcation • More relaxed approach to advertising and obtaining work in competition • Recognition of wider forms of professionl activity	• published Standard of Professional Performance extending Code beyond matters of ethics • Deliberate marketing initiative • Impartiality of the Professional not relevant in all circumstances
Service Standard conditions for well-defined service-regulated minimum fee scale	• Methods of procurement increasingly varied • Range of professional services widened • Abolition of mandatory/recommended fee scalce	• Increasing demand for warranties • Client-imposed special conditions of appointment • Fee tendering

그것의 목표가 직접적이고 뚜렷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공정한 조언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는데 RIBA는 핸드북을 통해 이러한 정의가 소비자위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인'으로서의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전문적 노력이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집중되고 있다. RIBA 핸드북에서 보여지는 표 A1.3.1은 실무에 영향을 주고있는 이러한 작업적인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형식화 되고있는가를 보여준다. (표A1.3.1. 별도삽입)

■인식의 문제

다른 직업과는 달리 '건축'이라는 일은 일종의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기술이라는 면이 함축되어 있음으로 해서 기술적인 지식과 동시에 미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그러한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인'으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전문인'으로서의 건축사는 무엇이 '전문인'을 만드는가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제도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를 통해본 것으로 건축사들의 모임인 RIBA는 그들이 '전문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작업을 행해나가고 있다. 어쩌면 하나의 제도를 변형하려는 노력에 앞서 우리가 갖고있는 인식의 문제에 충분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바로 건축사들의 모임이 대대적이며 포괄적인 작업에 의해 '전문인'으로 존재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치근거를 도출해 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듯싶다.

건축부조리, 그 원인과 대책

Architecture Irrationality-a Cause and Alternative

元鍾一/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by Won, Jong-Ill

어느 시대, 사회를 막론하고 부정 부패 부조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부조리가 마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특히나 건축 부조리는 그 규모나 농도에 있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 개혁의 제일 목표 이기도 한 것이다.

부조리가 사회활동 능률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불신, 위화감 그리고 상대적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갖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써 건축계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심한 부조리의 온상속에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 부조리 방지 개선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부조리의 원인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행위가 우리가 정해 놓은 건축법 규제의 틀에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다.

건축행위자가 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돈으로써 중간 관리자 또는 감독자를 매수하여 무마하려고 하는데에 부조리의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건축행위가 건축법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에는 크게 세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건축행위자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법에 따르기 어려운 상황을 법이 현실을 외면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득이 건축행위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 건축행위 관리 운영제도의 미숙, 미비로 발생하는 것등이 있을 것이다. 요컨데 현재 우리 사회가 열병처럼 앓고 있는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바로 우리 건축분야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 행위자에 대한 의식개혁은 장구한 시간을 갖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달성할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이 현실을 외면 무시하고 규정하는 것과 건축행위의 관리 운영제도가 아직 미숙, 미비하여 위법을 예방치 못하는 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과 제도를 개혁,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부조리의 예방대책

법 또는 관리운영제도의 불합리한 채택으로 발생되는 부조리에 대한 실천적인 처방대책을 세세히 거론 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닐테지만 현재 우리의 건축현실에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적인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코자 한다.

첫째, 법을 현실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법규개편

둘째, 건축행위자와 건축현장주위의 피해 민원인 사이의 쌍방 공개적 적법확인 절차 제도 확립

셋째, 소규모 건축에 있어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격있는 시공대리인 제도 채택

넷째,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건축공무원, 설계자 및 건축민원인 각자의 역할 및 권리, 책임 한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원인 행위자를 정당하게 문책

다섯째, 건축법 금지 규정외의 행위에 대하여 전면 허용하고 법해석, 시행자의 임의 유추 해석 불용.

“

어느 시대, 사회를 막론하고 부정 부패 부조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부조리가 마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특히나 건축 부조리는 그 규모나 농도에 있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 개혁의 제일 목표이기도 하다.

”

첫째, 법을 현실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법규를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소형 건축물 특히 주택에 있어 반지하의 주거용 바닥이 도로의 맨홀 배수 수위보다 낮아서 역류하므로 불가피하게 지하 바닥을 허가 도면보다 높여 시공함으로써 주택의 2층 또는 3층의 처마 부분이 일조권을 침범 위반하게 되는 것.(만일 자동펌프를 사용하여 배수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론 주택이 밀집되어 소음이 막대하므로 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의 층고를 2.8m에서 2.6m까지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2.6m로써는 장롱같은 가구를 유동시켜 배치 시킬수 있는 천정고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히 천정위의 바닥사이의 공간이 없는 경우 윗층 진동소음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므로 현장에서는 도면과 상이하게 층고를 2.7m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층고 규정은 그냥 단순히 2.7m 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축물이 조적조인 경우 벽체의 두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4) 기타, 거실의 채광, 조도, 재료의 품질들과 같이 세세한 문제는 법규정에서 제한하기 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어디까지나 법에서는 생명의 안전과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되게끔만 최소한 조건 규정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자율적 건축 행위가 어느 건축문화 수준에 못미친다 하여 이런 우리의 수준을 죄악시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 건축행위자와 현장 주변 민원인 사이의 쌍방 공개적 적법 확인 절차제도를 도입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의 행정은 건축행정 뿐만 아니라 대민 공개를 필수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폐쇄적 처리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감사업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만일 이 폐쇄적 처리 방식이 늘상 안고 있는 부정부패의 징후가 현저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더더욱 감사업무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관청의 행정업무를 대민 공개하지 않고 또다른 감찰 기능을 지닌 행정력으로 부조리를 치유하려고 하는 이 관행은 아마도 유교적 왕도정치의 조선시대로 부터 이어져 내려온 숙명적인 관행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행정 통치 방식은 행정 편의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써 민주화, 문명화, 개방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이념에 부합되게 비판되고 수정되지 않으면 않될 기로에 서 있다.

건축 행위 관리 행정에 있어 초기 과정부터 건축주와 건축행위를 감독, 감리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행위를 필히 주변 민원인에게 대민 공개토록 의무화 한다면 따라서 이 자체로 감찰감사의 역할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위에서 말한 이 새로운 시대의 이념목적에 부합하는 행정관리 방식일 것이다.

부조리 논란의 불씨를 이렇게 투명한 민간 자율적 방식으로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의 뒤탈 처리 문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현상들로 인해 야기되는 가치체계의 왜곡과 비생산적 능력 소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적 행위의 통제는 현재의 관행처럼 옥상옥 행정체계로 관리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이해 당사자인 민간들끼리 쌍방 대립구조방식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되게끔 하는 제도를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건축에 있어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격있는 시공 대리인제도의 채택 필요성.

시공자는 건축주의 시공대리인이다. 주택등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 현재 시공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공자를 두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예는 거의 없다.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수행자가 건축법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무지로 인한 범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등 소규모 건축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여러 여건상 적합하다고 해석하여 금번 소규모 건설업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로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보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공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법규 지식과 전문성을 더욱 함양시켜 무지와 자의적으로 자행되는 위법을 막고 공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시기인 것이다. 지금까지 양산된 무자격 시공자로 인하여 발생된 폐해는 이루다 거론못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다.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 수행하여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 책임은 법제도권 밖에 있으므로 해서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 국가의 행정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건축활동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그리고 활동에 임하는 건축주와 건축기술인과 관리자 등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그 역할이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국가 운영 목표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 그 소임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폐해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불법, 저질시공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이를 은폐, 무마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또는 감독자를 매수하는 것'으로써 매우 보편적으로 성행되고 있다.

또한 불법 저질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고 수습이 않되는 경우 공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몰래 도피하는 예도 상당히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준공처리도 할수 없는 상태로 물심양면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대로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 무자격 시공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 하는 문제는 부실시공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그리고 건축주가 부당하게 불이익과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히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건축공무원, 설계자 및 건축민원인 각자의 역할 및 권리, 책임한계 수립에 대하여 건축행위와 그 행위를 통제 관리하는 행위 및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에 놓인 민원인 등 건축을 둘러싼 이 모든 관계는 상호 협력적인 동시에 상호 이해 상충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위치가 고유의 행위권리만큼 또한 이에 대하여 얼마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분석하여 정당하게 그 권리와 책임의 양을 부여해야 한다.

이들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어느 편이든 권리와 책임의 양이 불공평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또한 이 배분을 잘 함으로써 건축산업분야의 능률과 창의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행위가 발생되었을때 그 행위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보고 또한 누가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런 관계에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해관계에 무관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민원처리기구에 의무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케 하고 이를 허위로 하거나 생략한 경우 문제를 삼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구(기관)을 통해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그 조사, 확인 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

이런 상호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직접적 이득이 없이 오로지 기술용역만을 제공하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자까지 이 문제와 연루시켜 연대책임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 부당하고 비 생산적인 관행인 것이다.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자, 감리자, 건축공무원 및 설계자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역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술 용역업무 내용이 계약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본연의 직업의무사항을 벗어 났을 경우에만 책임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누구라도 과잉권리로 인하여 그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든지 불필요한 이중, 삼중 연대책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창의력을 잃고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축법 예하 조례까지의 금지 규정외의 행위에 대하여 전면허용하고 시행자의 임의 법해석 유추 해석을 불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 질수 있는 법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의 모든 행위를 그 틀안에 꿰어 넣어 '어느 법 구문에라도 소속되어 부합되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행정지침 등으로까지 규제에 규제를 가하여 제한하려고 한것이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고 꼭 필요하거나 꼭 금지시켜야 하는 것만을 제외하는 법 규정(건축법 예하 조례까지)만 사용하고 행정지침이나 시행자의 임의 유추 법해석 등은 수용치 말아야 한다.

설사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 같은 혐의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지사항이 아닌 이상인 한에서는 무조건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 이런것이 편법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간의 건축 생산활동에 일일히 제동을 거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로서 오히려 여러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국가의 행정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건축활동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그리고 활동에 임하는 건축주의 건축기술인과 관리자 등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그 역할이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국가 운영 목표에 위배되지 않토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 그 소임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건축직 공무원—그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대책

Problem and Alternative seen by Architecture Office

尹赫敬／서울시 송파구청 건축과장
by Yoon, Hyuk-Kyeong

Ⅰ. 부질없는 몸짓 하나

황희정승이 싸움을 하는 두 노비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 다 옳다고 하니 이를 본 부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부인말도 옳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쪽말을 다 들어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부엌에서 들으면 부엌말이 옳고, 안방에서 들으면 안방말이 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집안의 평화가 깨어진다.

그동안의 개혁이나 제도개선 등 건축행정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행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견보다는 건축주나 시공자 등 외부의 여론에 의한 개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만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붉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붉어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르게 보인다.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진대 사실로 받아 들여진다면 결국엔 적녹색맹과 다를 바 없다.

현정부의 개혁은 그 질과 양적인 부분에서 5공화국과 6공화국의 그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도 정권 초창기에 있었던 개혁의 바람은 더없이 높았지만 바람직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오늘과 같은 개혁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현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분야의 개혁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으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이 개혁과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한번쯤 다루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93년 9월 한달 동안 서울특별시 산하 22개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설문서를 배부하였다.

인사·감사 및 업무에 따른 근무여건에 대한 16개항과 법규제도 등에 대한 11개항 그리고 건축진정에 대한 10개 문항의 설문에 대하여 그들은 비교적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

동대문·마포·양천·서초·강서·동작 등 6개구청을 제외한 16개구청(73%)의 195명의 건축직 공무원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개인에 따라서 설문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이 서울특별시 건축직 공무원 모두의 의사를 대변한다거나, 우리나라 건축직 공무원 모두의 의사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설문에 응한 건축직 공무원만의 솔직한 답변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들 설문에 응답한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1·2와 같이 구청계장인 6급 공무원은 26명(13.3%), 주임급인 7급 공무원은 54명(27.7%), 8급은 70명(35.9%) 그리고 9급 공무원은 45명(23.1%)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공무원 경력이 10년이상인 경우는 25.6%인 50명이며, 5년이상이 21.5%(42명), 3년이상이 18.5%(36명), 1년이상이 31.3%(61명)이며, 1년이하는 3.1%인 6명이었다.

[그림 1] 직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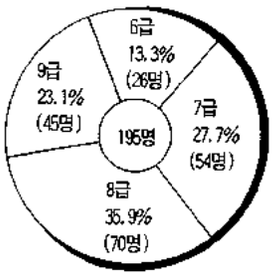

[그림 2] 경력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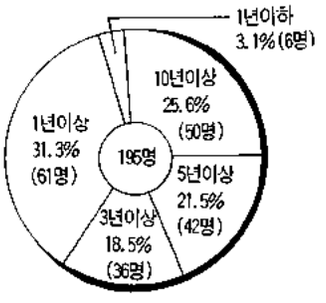

Ⅱ. 근무여건—지첩대로 지친 소외된 자들

건축행정은 서비스업무다. 얼마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가 건축직 공무원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여건은 최악의 경우다. 현 정부는 검소한 정부를 목표로 공무원의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인력의 50~100% 이상 충원하든가 업무량을 절반이상 줄이지 않고서는 친절한 행정, 공정한 행정, 신속한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의 질적수준은 날로 향상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하기만 할 뿐 아니라 친절하기를 요구한다. 친절은 제도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근무여건이 친절하게끔 되어야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900원짜리 택시를 타다가 기본료 3,000원짜리 택시를 한번 타본 경우는 어느쪽이 왜 친절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공무원 169명의 담당행정동을 분석해 보면 [표1]과 같이 4개동 이상을 담당하는

[표 1] 1인당 담당행정동(응답자 169명)

1 개 동	2 개 동	3 개 동	4 개동 이상
7.1%(12명)	17.2%(29명)	17.7%(30명)	58%(98명)

경우가 58%(9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동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체력이나 능률을 감안한다면 1인당 1개의 행정동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달 평균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10일 이상인 경우가 38.7%, 15일 이상이 47.3%로서 전체의 공무원의 86% 이상이 야간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1인당 월평균 야간근무 일수(응답자 186명)

2 일 이상	5 일 이상	10 일 이상	15 일 이상
1.6%(3명)	12.4%(23명)	38.7%(72명)	47.3%(88명)

업무의 내용면에서도 오늘의 건축직 공무원들은 건축행정업무 이외의 기타업무로 말미암아 건축행정에 전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표 3] 건축과 업무 현황

건축과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이외
1.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2. 위법건축물의 조사에서 고발 등 행정 조치까지 3. 건축진정의 접수에서 조사, 행정조치까지	1. 주차단속 2. 가로환경정비 3. 새마을 청소, 환경정비, 캠페인 등 각종 행사동원 4. 보안점검 등 타부서 전결업무 동원

건축행정업무의 양은 규제행정을 할수록 많이 증가한다. 또한 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욕구가 증대될 때마다 업무의 양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일선구청에서 야간에 제일 늦게 불이 꺼지는 곳이 건축과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일이다. 그들이 야간근무를 위해서는 최소 저녁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의 유지없이 일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달 급식비는 고작 37,500원으로서 1끼 4,000원 정도의 설렁탕도 먹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종래에 3~4일 이상 또는 일주일이상 걸리던 건축허가·사용검사업무를 몇 시간에서 1일이내 처리하는 그야말로 건축행정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건축민원실의 설치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건축직공무원의 업무량은 엄청난 증가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조만간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동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간다.

건축직공무원 1인이 몇개씩의 행정동을 담당하여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검사는 물론 진정서 처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장기미준공, 상설점검 등 각종 조사검사업무를 도맡아 함으로 인하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4층이하 2,000㎡ 이하인 건축물)의 허가·사용검사 등까지도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러던 것을 현장조사 업무 등은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단순업무는 창구에서 즉시 처리토록 함으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였으나 건축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과에 근무하는 나머지 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업무량이 월등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축직공무원 대부분이 한달내내 출장을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조사, 검사, 허가, 사용검사, 진정서처리 등을 위해 하루에도 2~3곳 이상을 다녀야 한다.

[표 4] 1달 출장일수(175명 응답)

10 일 정도	15 일 정도	20 일 정도	25 일 정도
14.3%(25명)	25.1%(44명)	38.9%(68명)	21.7%(38명)

관내 출장일지라도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나, 한달 출장비로 지급되는 54,000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건축민원처리는 일반행정보다 10배이상 출장이 많은 업무임에도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을 따져 월등한 출장비를 지급 못하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다. 개인의 월급을 축내며 현장출장하지 못 할 바에야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출장비를 조달해야 한다면 이는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업무는 증가하고,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출장비가 부족해서 처리를 못한다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다.

현대의 출장비는 한달에 20일정도 출장을 다닌다면 1일 2,700원 정도로써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즉시 출장비는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적당한 1일 출장비(189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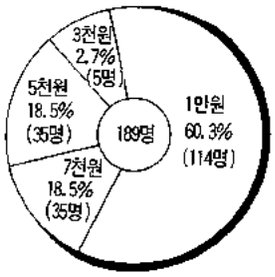

[그림3]에서 보듯이 하루 출장을 2~3개소에 다닌다면 소요경비는 1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처우개선 없이 무조건 명령으로 출장을 다녀오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진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5공화국이나 6공화국의 개혁이 처우개선 없는 그런 지시

[그림 4] 현재의 업무량(194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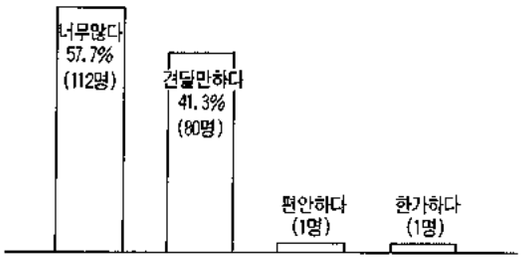

일변도의 개혁방향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대부분의 건축직공무원들은 업무의 양이 너무 많아 견디기에 벅차다. 57.7%가 그렇다고 말하며 41.3%는 그런대로 견딜만하다고 하고 있다.

건축직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는 업무량이 주어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 등 근무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사나 시공자를 지도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좋은 조건의 개인회사로 빠져나가 버리고마는 현상은 유독 건축분야만은 아닌 현상이다.

서울시의 10개구청의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건축관련분야 전공졸업자는 83.1%이며, 건축관련이외 졸업자도 16.9%나 되었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4%(8명), 대학졸업이 51.7%(104명), 전문대졸업이 24.3%(49명)이었으며, 고졸이 18.9%(38명), 기타 1.1%(2명)로 분포되어 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기사 등 면허나 자격소지자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보수나 승진 등 타직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될 것이다.

[표 5] 건축과 건축직 공무원의 학력(10개 구청)

구분 / 전공분야	계	대학원졸	대 학 졸	전문대졸	고 졸	기 타	비 고
계	201	8	104	49	38	2	
건축분야	167	8	94	38	25	2	83.1%
건축분야 이 외	34	—	10	11	13	—	16.9%

포상, 인사, 감사 등에 있어서도 건축직 공무원들은 행정직 등과의 월등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75.1%인 142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4.8%(28명)만이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대답도 9.5%(18명)나 되었다.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원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건축직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빈도나 징계의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청전체에 접수되는 총 진정서의 60~80%가 건축분야 진정이고, 일반 민원건수도 일반행정직 1명이 처리하는 업무량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류로 처리되는 부분은 은폐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건축물은 외형상 노출되지 않을 수 없고 건물이 존치하는 한 건축주가 사용중 위법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위법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의 좋은 표적이 바로 건축분야인 것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나 징계를 받을 확률이 많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하겠는가.

Ⅲ. 감사·조사업무—일속에 파묻힌 죄인들의 집합

건축직공무원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업무가 진정처리 다음으로 감사·조사업무다. 사정의 첫째 대상이 건축분야이고 보면 감사원, 서울시 감사와 건설부, 내무부, 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집중적으로 감사나 조사업무를 벌이는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구의회·시의회 등을 합치면 하루걸러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과 감사에서도 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건축과를 감사하고, 세무과의 세무감사에서도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감사에서도 도시정비과의 형질변경 감사에서도 건축과는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를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에 처해있다고 본다.

[표 6] '93 조사·감사업무 현황(서울시 A구)

구 분	조사월	기 간	대 상
감사원감사	9월	3주	'92.1~'93.9 허가·사용검사분 …… 200건
D부지청 조사	4월 5월	6주	'92.1~'92.4 5층 이상 1,000m²이상 건축물의 준공분 …… 105건
D부지청 조사	10월	3주	'91.1~'91.12 5층이상 1,000m²이상 '93.5~'93.10 건축물의 준공분 …… 137건
소·중·대형 건물조사	2월	4주	소·중·대형 건축물 …… 116건
상설점검	4월 7월	1주 1주	1/4분기 착공분의 30% 2/4분기 착공·준공분의 30% …… 275건
	10월	1주	3/4분기 착공·준공분의 30% …… 157건
상설점검 추가점검	10월	3주	1/4분기~2/4분기 상설점검분중 위법이 없는 건축물 …… 207건
건축물부설 주차장	3월 4월	4주	838건
장기미준공	6월	3주	'90~'91.12말 미준공 건축물 …… 142건
구의회감사	12월	1주	
계		30주	2,177건

[표 6]은 서울시 A구청의 93년도 조사·감사업무를 정리한 내용이다.

물론 [표 6]은 타과와 관련한 감사나 건축민원으로 인한 개별감사·조사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1년의 3분의 2를 조사·감사업무에 빼앗겼으며, 또한 조사나 감사를 받는 기간은 물론 그의 준비나 사후 뒷처리를 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1년도 부족한 형편인데 언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설문에서 92년도에 얼마나 감사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1%였으며, 필요이상 감사를 자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9.4%라고 답하였으며, 적당하다고 한 경우는 2.1%(5명)에 불과하였다.

물론 실제감사기관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사기간은 다를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이 항상 감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한 긍정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은 어렵게 될 것이며, 패배주의·무사안일주의·무소신주의·

[표 7] 92년도 받은 감사의 양(181명 응답)

15 일 이상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2.1%(22명)	29.8%(54명)	31.5%(57명)	26.6%(48명)

[표 8] 감사의 양(195명 응답)

필요이상 자주받음	좀 많은 편	적 당 함	부 족 함
79.4%(154명)	18.5%(36명)	2.1%(5명)	0%(0)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사로 인하여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699명의 과반이상인 359명이 훈계,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우선 숫적으로도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도시건축연구원의 건축부조리 실태 및 방지 대책에서)

공무원 생활중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를 물은 결과 15.9%인 31명이 견책을 받았으며, 5.7%인 11명이 감봉이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설문에 응하지 아니한 파면, 직위해제, 해임 등은 제외되었으며, 또한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의,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받고 있으므로 통계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묻지를 않았다.

[표 9] 공무원 생활중 받은 징계(194명 응답)

견 책	감 봉	직 위 해 제	없 다
15.9%(31명)	5.7%(11명)		78.4%(152명)

징계를 받은 42명에 대하여 응답자별로 분류해 보면 9급 공무원은 응답자의 2.2%인 1명, 8급은 4.3%인 3명, 7급은 41.5%인 22명, 6급은 61.5%인 16명으로 상위직급으로 오를수록 징계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주임급들일수록 중요업무나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려하는 현상도 위 징계빈도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잔소리처럼 자주하는 것보다 한번 따끔하게 나무랄때가 효과가 큰 것이다.

매일 때리는 매는 오히려 반발심과 체념으로 나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게 인간심리다.

공무원은 급여 등 처우가 나쁘더라도 진급하는 희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진급에 대한 희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 업무기피증 환자가 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음 업무를 소홀히 다룸으로 계속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

감사로 인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2%에 불과한 반면, 잘못에 비해 징계량이 과중하다고 답한 경우가 64.9%이며 심지어는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1.9%나 된다. 이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매를 맞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야만 매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매나 억울한 매는 결코 사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표 10] 징계처분의 정당성(174명 응답)

정당하다	잘못에 비해과중	가 벼 움	잘못 비해 억울함
13.2%(23명)	64.9%(113명)	0%	21.9%(38명)

Ⅳ. 법규—오리무중

건축법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법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법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행정예규나 지침 또한 그렇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공무원의 43.8%만 법과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대충 알거나 (39.7%), 약간 알고 있는 경우(11.3%)이며, 솔직히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5.2%나 되었다.

[표 11] 법과 규정의 숙지도(194명 응답)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43.8%(85명)	39.7%(77명)	11.3%(22명)	5.2%(10명)

건축인허가 업무를 다루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건축사가 법규정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16.7%이고, 잘 모를 것이다라고 답한 경우도 21.4%나 되었다.

[표 12] 건축사의 법규정 숙지도 여부(192명 응답)

잘 이해함	보통일 것임	잘 모 름	전 혀 모 름
16.7%(32명)	61.9%(199명)	20.8%(40명)	0.6%(1명)

이로 인해 업무처리중 공무원과 건축사간에 논쟁을 하거나 다툰 경우도 96.2%나 되었다.

[그림 4] 건축사와의 다툼여부(186명 응답)

이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조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규정을 두고 A구청과 B구청의 해석이 틀리고, 1계와 2계의 해석이 틀리며, 甲과 乙의 해석이 틀릴때 어찌 건축행정이 바로설 수 있겠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우선 법규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의 글(건축사지 9308 ; 건축부조리—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담당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익힌 방법을 보면 [표 13]과 같이 대부분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익혔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법과 규정을 알게 된 경우는 3.8% 뿐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혼자서 또는 선배공무원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표 13] 법과 규정을 알게된 방법(186명 응답)

교육을 통해서	선배들에게 물어서	혼자 공부해서	그때그때일에 부딪힐때마다
3.8%(7명)	20.4%(38명)	59.1%(110명)	16.7%(31명)

이들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배우기 위하여 59.9%(115명)가 실무교육을 받겠다고 하였으며, 과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번쯤은 토론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 경우도 24.5%(47명)나 되었으며, 혼자서 공부하거나(7.8%),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그때 그때 익혀나가겠다(7.8%)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 건축행정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법과 규정은 하나의 약속이다. A구에서 허가를 신청하든 B구에서 허가를 신청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 외부에서 외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조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건축행정실무교육의 필요회수(19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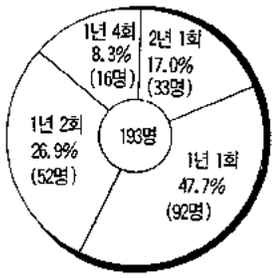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듯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열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건축사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과 규정을 이해한 후에 설계를 하므로 다툼의 소지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함께 건축법규의 정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건축법규중 악법으로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에 대하여 물은 바, 60.8%가 일조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이라고 하였다.

[표14] 건축법중 악법규정(163명 응답)

건폐율 ·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11.0%(18명)	14.1%(23명)	14.1%(23명)	60.8%(99명)

일조권 규정의 폐해는 여러곳에서 다루었지만 건축진정을 양산한 주범이었고, 이로 인해 이웃이 분열붕괴되는데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법의 유형은 10년전이나 10년후에나 거의 같다는데는 건축법규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현행 법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다. 그 중에 시건축조례와 구건축조례로 나누어져 있고, 더구나 22개구의 건축조례는 구별로 내용의 일부분이 달리 제정되어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특히 이로인한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실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치구건축조례를 없애고 서울시건축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우가 52.9%(100명)인 반면, 시건축조례와 구건축조례가 현행대로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경우도 26.4%(50명)나 되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시건축조례를 없애고 구건축조례만 운영하자는 의견도 9.5%(18명)이며, 시조례 및 구조례 모두를 폐지하고 건축법령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11.2%(21명)나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정도로 쉽게 될 때 위법은 줄어들 것이며, 부조리 또한 줄어들 것이다.

인허가 업무처리중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에 대하여 법규를 잘 아는 선배 공무원에게 묻거나(33.7%), 과계장에게 물어서(41.1%) 처리하거나 직원들간의 토론(17.3%)에서 해결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상급기관에서 질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7.9%나 되었다.

질의회신기간이 적어도 10일 이상 또는 20일 이상 걸리는데 이로 인한 불만은 만만치가 않다.

법과 규정은 쉽고 단순해야 한다.

[그림 6] 어려운 법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19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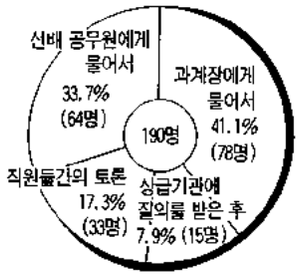

58.9%(112명)가 쉽고 단순하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절차규정과 집단규정만 법규로 정하고 개체규정 등은 설계기준 등으로 코드화하여 법규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36.3%(69명)되었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4.2%), 어려워야 한다(0.6%)고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V. 건축진정—붕괴되는 사회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분량 중 절반이상을 진정서 처리에 할애하고 있다. 지적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건축물 등이 밀집한 특정한 구역의 담당공무원은 거의 대부분이 진정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건축직 공무원은 매2년마다 갑 · 을 · 병지를 순회 근무케 하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갑 · 을 · 병지를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건축직 공무원들은 진정이 제일 적은 곳을 갑지로 꼽을 정도다.

진정의 원인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가 개인주의 · 이기주의 팽배현상이다. 이웃보다는 개인, 다른집단보다는 소속집단, 국가보다는 지역사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지역, 집단이기주의 팽배현상은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유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한 이익집단이 등장하거나, 집단의식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기보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으로만 집단의식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도 개인의 이익에 반할 때는 언제든지 집단에서 탈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 왔었다.

두번째 이유는 피진정집단의 무성의한 대책을 꼽을 수 있다. 건축주, 사업자 또는 시행자, 감리자, 감독들이 제 할 일 하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겠다는 안일한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을 하다보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지를 날리거나 공사소음으로 인접지에 피해를 주게 되고, 자재를 도로에 무단방치함으로써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는 피해로 인정하려들지 않는 건축주의 또 다른 이기주의를 볼 수 있다.

균열 등 피해를 주었음에도 민사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무성의한 대책은 진정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성실한 자세가 아쉽다.

세번째가 금전만능 풍조의 만연이다. 주택을 거주공간으로 보기보다는 단순재화의 가치로만 인식하고, 사실이상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조그만 피해에도 금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처리되어지는게 현실임을 볼 때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5] 공무원 재직중 금전으로 해결되어진 민원의 양(180명)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전혀없음
23.3%(42명)	32.2%(58명)	22.2%(40명)	15.6%(28명)	6.7%(12명)

[표 16] 금전으로 해결한 민원중 최고로 많았던 금액(158명)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7.1%(27명)	18.4%(27명)	24.7%(39명)	31.0%(49명)	8.8%(14명)

위 2개의 표를 보면 오늘의 진정세태의 현실을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해결의 양태를 본다면 67.8%가 금전으로 해결되어지고, 쌍방간의 이해로 해결되어지는 경우는 9.4%에 불과하였다.

[그림 7] 진정해결의 양태(18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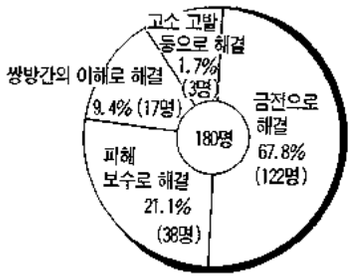

이 보다 더 무서운 현상은 진정의 직접적인 사유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금품을 목적으로 한 진정이 56.3%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진정이 22.6%인 반면, 과거진정에 대한 보복진정이 18.4%이며, 무고에 의한 진정도 2.7%나 경험했다고 하고 있다.

[표 17] 진정의 직접적 발생사유(190명 응답)

보복진정	무고진정	금품 목적 진정	피해진정
18.4%(35명)	2.7%(5명)	56.3%(107명)	22.6%(43명)

결국 건축진정의 77.4%가 불순한 목적에 의한 내용이고 보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붕괴현상 또한 77.4%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친척과 이웃이, 우리 사회가 이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포분열할 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등 현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개선도 불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유는 진정을 우선 해결토록 하는 정책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원처리에 최우선 정책을 두고 그 업무를 처리할 기구를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그 기구가 설립되면 그 존재이유를 찾기 위하여 필요이상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게 되고, 이미 설립된 기구는 폐지되지 않은 채 새로운 기구가 생겨 옥상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일선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진정에 시달리는 이상으로 내부감사·조사기관에 시달리므로 혹시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법과 규정을 어겨서라도 무리하게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려할 수밖에 없다.

진정이 있는데도 위법이 없으므로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한다면 이는 행정의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해결이라는게 결국엔 돈을 주어야 끝이 나는 것인데도 공무원이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문책을 한다면 뭔가 잘못짚어도 대단히 잘못짚은게 아닌지 모르겠다.

법은 지키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을 어겨 우선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다음 번의 피해자는 바로 법을 어겨 가며 개인의 이익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과거진정에 대한 보복진정 현상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전세입자에 대한 대책의 잘못이 오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민원처리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5공화국초기 목동아파트개발을 반대하던 전세입자들의 집단민원을 기억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가 없는 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복리사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의 균등한 분배 등의 차원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등 전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리라 보여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구제대책을 민간인에까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심히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8] 전세입자의 민원양태의 변천

정 부	개발주체	민 원 내 용
5공화국 초기	공영개발	목동APT단지 개발시 전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집단 민원 -임대주택 제공
5공화국 말기	민간개발 +공영지원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에 따른 전세입자의 집단민원 -임대주택 등 제공
6공화국	민간개발	동작구 대방동의 주택조합의 재건축에 따른 전세입자의 집단민원 -이사비와 특별비용지원

전세입자의 민원 양태가 공영개발에서 점차 민간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요즘은 개인 건축물의 건축에까지 전세입자가 추후의 영업권보장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 등 무리한 요구로 건축주가 전세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어느 누가 마음놓고 전세를 줄 수 있겠는가.

첫단추 구멍을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게 된다는 독일 속담이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

Ⅵ. 대책—아주 작은 의견들

1. 근무여건의 개선

가. 인력의 증원

'우리나라 전국의 건축직 공무원은 약 2,210명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 건수와 대비하여 보면, 1990~1991년 기준으로 건축직 공무원 1인당 연 334건이 되고, 건축민원은 1인당 약 1,633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699명의 건축허가 부서 공무원이 1992년을 기준으로 약 8조원의 건설물량을 수행했는데, 이것은 35,584건의 총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되는 물량으로서 하루평균 약 100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난 셈이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동안 건축행정 업무증가 상황을 보면, 건축허가의 경우 매년 20%씩 증가했고, 건축민원의 경우 매년 28%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도시건축 연구원의 건축무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에서)

현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있으나, 민생분야의 서비스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동결함은 잘못이다.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 업무가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처리할 건축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구청까지 불필요하게 내청하는 사례가 좋은 예이다.

서울시의 경우 500여개의 동사무소의 최소한 1명 이상씩과 일선구청의 경우는 현 인원 700명의 50%에 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수한 인력 확보

건축사, 기술사 등의 특채를 고려해 보고, 이들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축사 면허만 취득하면 사표를 제출하고 설계사무소를 차리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양질의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고 우리 건축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 업무량의 조정

업무량의 증가는 사회경제의 성장과 비례한다. 또한 민원인의 욕구 증가와 규제행정 또한 업무량의 증가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건축행정을 분석하여 공무원이 해야 할 일과 건축사나 시공자,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행정에서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책임과 권한을 가급적 민간자율로 이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만 행정부서에서 갖고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19]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 방안

구 분	절 차
현 행	건축심의→건축허가→착공신고→중간검사(2회이상)→사용검사
개정(안)	입지심의(건축심의 포함)→건축신고

1995년 시행을 목표로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건축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려 하고 있다.

라. 출장비, 급량비 등의 현실화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찍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당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월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현장출장이나 야간 근무, 복사, 사진촬영 등을 위한 필요적 경비만이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업무를 기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현재는 개혁의 바람으로 움추려들고 있지만 이러한 불편을 오래 참기는 어렵다.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마. 공평한 대우

건축직에 대하여만 특별한 우대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처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분위기속에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없다고 본다.

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아닌 전문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직의 우월성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인사나 포상,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도 건축직들은 소외를 받는다고 느낀다.

구청장 표창	서울특별시장·장관 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없 음
14.3% (27명)	28% (53명)	2.1% (4명)	0.5% (1명)	55.1%

2. 감사업무의 개선

가.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종래의 감사는 과거적발형 감사위주였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잘못한 행정에 대한 처벌위주의 감사였다.

법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하지 않고 잘못된 법과 규정에 위반한 사항만 적발한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야말로 무소신, 앵무새형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매일 때리는 매와 한번 따끔하게 때리는 매는 그 반응이 전혀 다르다. 또한 매를 맞는 사람이 정당하게 매를 맞는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반성을 하는 경우와 체념과 반발의 경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감사는 예방적 감사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가 상주감사제도를 권장하고 싶다. 일반행정업무를 제외한 특별한 행정업무(대형건축물과 위반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검사와 진정서 처리 등)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에 상주하여 행정처리전에 점검하여 위반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이 위법하려는 의도를 아예 없애자는 취지이다. 또한 건축과장이 원할 때는 감사기관에서는 언제든지 해당업무를 감사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감사대상기관, 인원의 선별원칙 확립

감사는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감사를 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감사전과 감사후 준비와 마무리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감사기간의 2~3배 정도가 된다. 감사원, 건설부, 내무부, 서울특별시 감사과, 구청감사실,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 구의회 감사, 검찰청조사 등을 합하면 건축과의 경우는 년중 감사를 받지 않는 기간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어찌보면 감사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감사는 오히려 행정을 위축시키고 무소신·무기력하게 하는 요인이다.

감사원 등 감사총괄기관에서는 1개 부서에 연중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감사기관도 지정하여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손실을 막고 또한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 필함을 표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감사활동의 민원문의제도 신설

일종의 예방적 감사활동의 하나로 상부감사나 일상감사가 불가피할 경우나 상주감사나 일상감사부서보다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야 할 경우는 민원인이 신청하든, 행정부서가 신청하여 사전에 감사원의 감사나 의견을 듣는 제도의 신설을 건의하고자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무제한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우려되는 바 이는 제도적으로 일상감사나 상주감사를 거친후에만 하도록 선별함으로써 민원과 위법의 예방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감사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이의처리를 위한 인력과 기구는 별도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3. 법규의 정비와 이해

가. 건축법규체계의 정비

현행 건축법은 시행령·규칙·시조례·구조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타법과의 관계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의 혼란은 대단하다고 본다.

구조례를 시조례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며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하여 건축분야는 건축법 하나에 통합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축법 내용중 운용규정과 집단규정을 행정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기술 등의 개체기준은 가급적 법규에서 배제하고 Code화하여 건축사의 창작활동 범위에서 조정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교육의 강화

공무원이나 건축사에 대한 법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기교육을 연 1회정도 실시하기를 건의한다.

다. 예규집의 발행

건축예규나 행정방침의 변경으로 겪는 혼란 또한 엄청나게 크다. 물량적으로는 예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법과 규정 등의 90% 이상임을 볼 때 이로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매년 1년 동안의 질의회신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예규집을 발행할 것을 건의한다.

예규집이 발행될 경우 동일 내용의 질의가 줄어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주 등 모두가 법규에 관한 다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4. 건축진정해소 방안

가. 법과 규정이 준수되는 풍토 조성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는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민사적인 문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토록 유도를 하고, 행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해결사가 아닐진대 모든 문제를 금전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풍조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운동 전개

개인주의·지역이기주의 등에 대한 폐해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심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적임을 알려야 된다. 도덕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언론인, 종교인, 교육인, 정치인 모두가 인간성 회복운동에 앞장서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인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의 지도층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 민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축민원은 단순한 피해보상이나 보수의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단절을 초래하며, 이의 행정처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는 엄청나다. 진정1건 처리를 위해서는 건축인허가 50건 이상의 처리를 위한 노력이 소모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정력의 낭비인가.

기존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또한 조정결과를 쌍방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는 어떤 제재나 결론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1차 판결의 효력이 있는 가칭 민원분쟁조정위원회와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주1회이상 심의를 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판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 등 법과 기술을 함께 다룸으로 인하여 명실공히 건축민원의 전문판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

3회이상 반복민원이나 10인이상 집단민원 또는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민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민원을 제기한자나 피민원인의 책임에 따른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민원수수료의 징수

민사적 이익을 위한 진정서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를 행정부서에 제기함으로써 행정부서가 이를 조사하고 중재하여 해결하는데는 진정서 1건당 건축허가 50건 이상을 처리하는 인적·물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경비의 부담은 민원제기자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물론 단순한 위법에 대한 조사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밀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발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은 이 제도로 말미암아 줄어들 것이라 보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아울러 행정공무원의 업무량은 대폭 절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건축본래의 행정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딕 성당 건축(1)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 담 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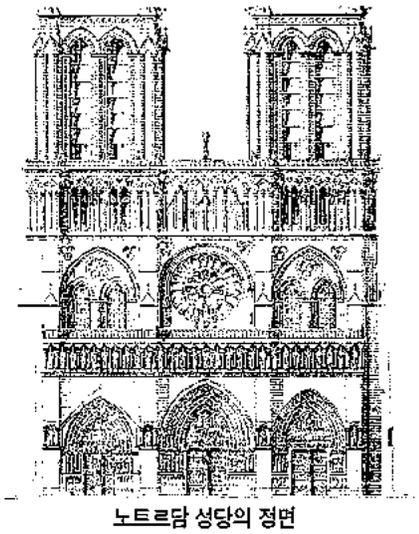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정면

유럽여행을 하다보면 거의 유명하다는 명승지는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나 도시일 것이다. 그만큼 성당은 그 시대의 역사속에서 종교적인 특성이외에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건설되었기 때문이고 가장 가까이 호흡되며 생활 속 깊이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은 잘 가꾸어진 도시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한 조그마한 시떼(cité)섬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안정되고 규모가 크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수평적, 수직적으로 완전하게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성당은 수도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종교건물이라 할 수 있으며, 프랑스 문화의 정상 중의 하나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리를 여행한 사람이라면 노트르담 성당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다.

20세기 전에 사람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골의 사원 (Temple Gallo-Roman), 바실리키식 그리스도 교회당,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에서 기도를 하였으며, 바로 이 장소에 쉴리(Maurice de Sully)주교가 노트르담 성당을 건설하였다. 이 주교는 쉴리 쉬흐 루와흐(Sulliy-sur-Loire)의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이었으며, 1159년 파리 대성당의 교회참사회원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교구의 교구장이 되었다. 이 주교는 파리 근교의 쎙드니(Saint-Denis)성당을 건설하였던 신부인 쉬제(Suger)다음으로 파리에 어울리는 대성당을 짓기로 계획하였다. 1163년 성당 건축이 시작되었고, 주교의 재력과 왕실의 적극적 봉헌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성당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다. 석공, 목수, 대장장이, 조각가들, 유리세공인들이 정 드 쉘(Jean de Chells)과 쎙뜨 샤뻴(Sainte-Chapelle)의 건축가인 삐에흐드 몽트뢰이(Pierre de Montreuil)의 지휘와 감독아래 일을 하였다. 특히 정 드 쉘(Jean de Chells)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남쪽 정면위에 자랑스럽게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58년 주님의 해 2월12일에 이것은 시작되었다. 주님의 어머니와 생존 중의 건축가 정드 쉘에게 경의를 표시하기위하여"-본래와 설계도는 1345년 경에 완성되었다.

성당이 완성되기 전 노트르담은 큰 종교적 정치적 사건들의 무대가되어 1239년 쎙뜨 샤뻴(Sainte-Chapelle)이 완성되기 전 루이9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그에게 바친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제대 위에 놓기 위해 맨발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1302년에는 필립 드 벨(Philippe de Bel)이 공식적으로 왕국의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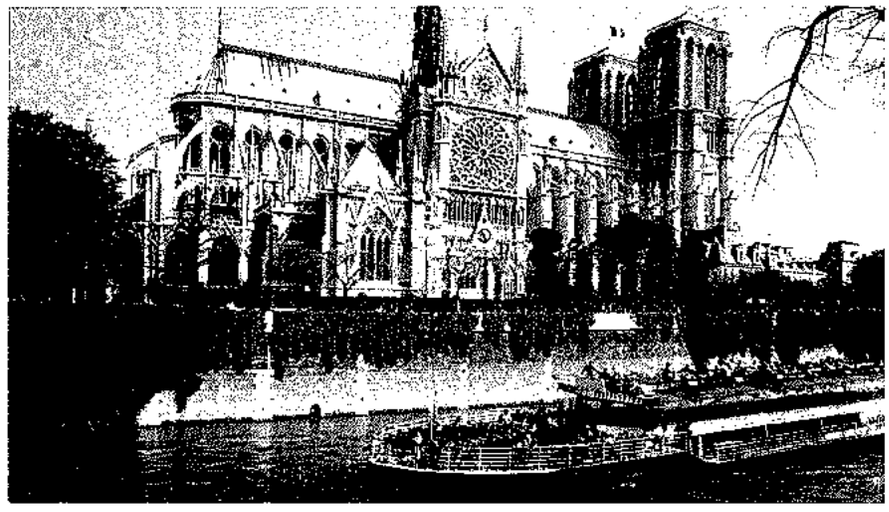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측면전경

삼부회(프랑스 혁명전 의회)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의식들, 감사의 기도, 장례식 등 프랑스 역사의 일부가 이 성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430년 영국의 어린왕 앙리(Henri)6세의 대관식, 1455년 쟌 다크(JeanneD'are)의 복권 소송의 공개, 1572년 마리스튜아트(Maire Stuart)의 대관식, 성가대석에 홀로선 마그리뜨 드 발루와(Marguerite de Valois)와 분앞에 서 있어야만 했던 칼빈파 교도(위그노) 앙리 드 나바흐(Henri de Navarre)의 이상한 결혼식, 앙리 드 나바흐는 후일 파리는 미사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성가대석에서 수도 파리의 항복을 위해 감사미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1687년 보쉬에(Bossuet)가 그랑 꽁데(Grand Condé)의 추도 연설을 하였으며, 그 후 룩셈부르크의 국가원수는 플랑드르에서 노획한 적들의 깃발들로 노트르담 성당의 융단제작자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이전의 성당 노트르담은 이성과 절대자의 예배에 바쳐졌으며, 큰 종만 제외하고 모든 종들은 녹혀졌다. 1804년 12월2일 내부 수선을 마친 노트르담 성당은 루브르에 있는 다비드(David)의 그림이 황제의 대관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교황 비오 7세를 맞아들였다. 1811년 6월 로마왕의 영세 역시 역사적 기록과 축제의 기록이기도 하였다.

몇 세기 동안 별로 잘 보존되지 못한 건물은 파손되기 시작하였다. 낭만주의 운동과 빅토르 위고의 민중소설 "노트르 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1831))"다음으로 7월 왕국(루이 필립왕의 정부)은 1841년 복원 사업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이 복원은 비올레르 뒤(Viollet-le-Duc)의 기록에 따라 복구되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입상(조각)술의 재검토, 그림이 있는 유리창들(vitraux)의 재검토, 도금과 덧붙인 부분들의 제거, 건물의 꼭대기와 높은 부분들의 복원, 정문들과 주 제단의 개조, 종루와 제의실의 건축 등과 같은 공사가 1864년까지 계속되었다.

파리 꼬뮨(Commune : 파리혁명정부)과 리베라시옹(Libération : 2차대전 중 피점령군의 해방)의 파괴를 조금 모면한 노트르 담(Notre-Dame)은 오늘날까지도 파리역사의 즐거웠던 때나 슬펐던 때의 증인과도 같다. 1944년 8월26일 웅장한 떼데움(Te Deum : 카톨릭에서 감사예식), 1970년 11월 12일 드골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감동적인 추도미사,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거행되었던 성당 앞뜰에서의 공식적인 미사에 이어진 1980년 5월31일의 성모찬가 (le Magnificat)등은 엄청난 군중들이 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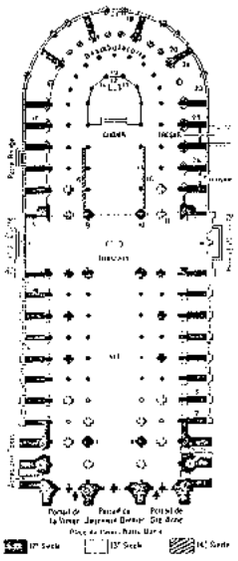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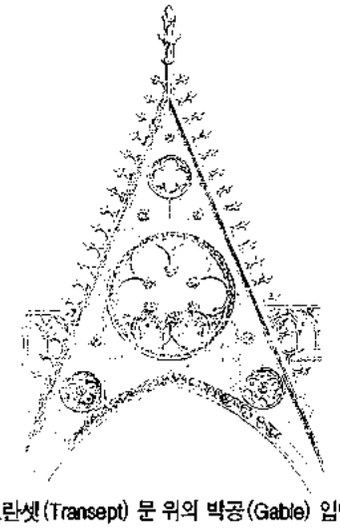

남쪽 트란셋(Transept) 문 위의 박공(Gabl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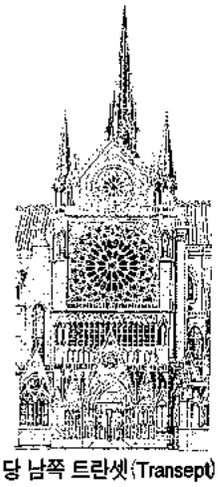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 남쪽 트란셋(Transept) 외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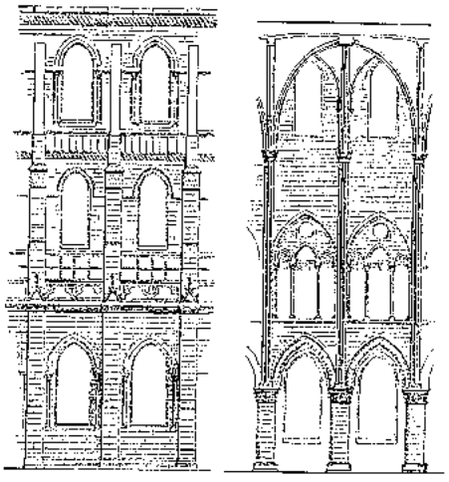

외부 입면도 내부 입면도

노트르담 성당의 내외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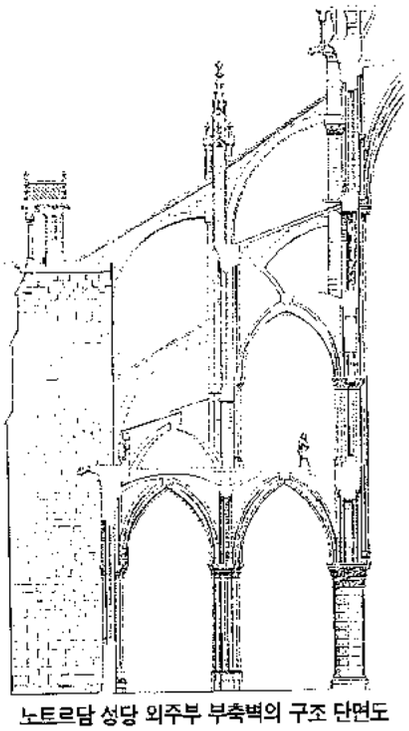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 외주부 부축벽의 구조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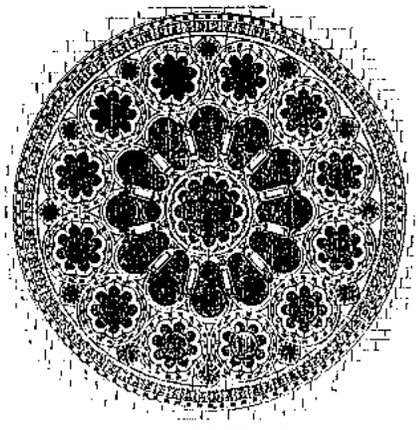

서쪽 원화 창 상세도

결과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성당 앞뜰 지하에는 3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고대 기념 유물들이 118m의 길이로 있다.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특히 입구에서 왼쪽에 온돌로 보온을 했던 갈로 호망(Gallo-Roman :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고대의 프랑스)의 두개의 방의 유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동로마제국 성곽의 토대, 옛 도로 뇌브 노트르르 담(Neuve-Notre-Dame)의 집들의 지하실, 중세기의 지하실, 보후랑(Boffrand)에 의해 지어졌던 구제원, 데장팡 트루베(des Enfants-Trouvés)의 토대와 쌩뜨 저느비에브 데자흐당 (Sainte-Geneviéve-des-Ardents) 성당의 토대 일부분을 볼 수있다.

노트르 담(Notre-Dame)의 정면 배치는 상중하고도 균형적이며 조화를 갖고 있다. 세개의 정문은 똑 같지않다. 중앙의 문은 다른 문에 비하여 가장높고 넓으며, 왼쪽의 정문은 문위로 가블르(Gable : 박공)가 위로 올라와 있다. 넓은 면적으로 되어있는 중앙정면의 단조로움을 경감시키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사용하였다.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정면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각들에 의해 더욱 돋보인다. 왼쪽의 정문이 뾰족한 박공에 의해 깊이 파여진 데 반하여 중앙 정문은 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왕들의 주랑(la Galerie des Rois)이 정문들 위에 놓여있다. 이것은 19세기 비올레 르 뒤(Viollet-le-Duc)에 의한 전체의 복원 때부터 나타난 걸작품들로서 28개의 왕들의 입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의 정문은 중세기에는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모양이었다. 여러가지색들로 채색이 된 입상들은 금바탕위에 부각되었으며, 그들은 돌로된 성서를 만들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신자들이 거룩한 역사나 성인들의 전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개의 정문의 여섯개의 문짝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단조된 철로 만들어진 경이로운 경첩에 달린 쇳조각으로 장식되어있다. 전설에 의하면, 측면의 문들은 악마에 의해 조각되어 다듬어 졌고 철물공인 비스꼬흐네(Biscornet)는 악마에게 그의 영혼을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성체 거동(종교상의 행진)때 성체가 지나가는 중앙의 정문을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다. 결국 이것은 19세기에 복원되었다.

노트르담의 정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1)동정녀의 문(Portail de la Vierge) : 아주 아름다운 합각벽(①Tympan)은 중세기 동안에 판화가들에게 모델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상인방에는 계약의 아치가

노트르담 성당 조감도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알리는 예언자들과 왕들 가운데 마리아가 내려오는 것으로 둘러져 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정녀의 감동적 죽음이 있다. 첨정에는 성모의 대관식이 있다 ; 아주 고귀한 자태로 그리스도가 그의 모친에게 왕권을 내밀고 한 천사가 왕관을 씌우는 모습이다. 아치곡선의 조각들②은 아주 섬세하게 잎사귀, 꽃, 과일들로 가장자리가 처리되어있다. 4개의 줄은 천사들과 구약성서의 족장들, 왕들, 예언자들과 함께 천국의 안뜰을 상기시켜 준다. 문사이의 벽기둥(③Trumeau)에는 아기를 안은 동정녀의 현대적 입상이 있다. 측면과 문설주④ 위에는 작은 저부조가 여러달의 공사와 황도 십이궁을 상기시킨다. 채광을 위하여 물매지게 깍인 창틀(⑤Ebrasement)은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의 입상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두 천사에 의해 떠 받쳐진 드니(Denis)성인과 세례자 요한, 에띠엔느(Etienne)성인이 있다.

2)마지막 심판의 문(Portail du Jugement Dernier) : 이 문위의 합각벽(⑥Tympan)은 1771년 종교행렬의 이동 닫집(Baldaquin)을 지나갈 수 있게 하기위해 수플로(Soufflot)가 잘라내었다.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가 아래의 두 상인방을 복원하였다. 아래에는 부활을, 가운데는 영혼의 무게를 재는 것을 나타낸다. 선택된 영혼들은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악마들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다. 첨정에는 최후의 심판관인 그리스도가 재판관석에 앉아 있으며, 무릎을 꿇은 동정녀와 요한 성인이 인간들을 위해 중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줄의 아치의 곡선들⑦은 천국의 안뜰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쪽에는 천국과 지옥의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끔찍한 악마로 상징되어 있다. 문사이의 벽기둥⑧은 숲풀로(Soufflot)가 없앴다. ;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입상이 있으며, 현대적으로 만든 문설주⑨는 현명한 처녀들(왼쪽, 낙원의 열린문 밑에)과 미련한 처녀들 (오른쪽, 낙원의 문이 닫혀있다)의 비유를 상기시킨다. 채광을 위해 물매지게 깍인 창틀⑩에는 비올레 르 뒥(Vidlet-le-Duc)이 만든 12사도들이 악인들(아래쪽)과 선인들(윗쪽)의 위에 서 있다.

3)안느성녀의 문(Portail de Sainte Anne) : 합각벽⑪의 두 윗층에는 1170년경에 만들어진 입상들을 다시 세워놓았다. 이것은 폐나 좁은 정문에 맞게하기 위해 지금의 정문이 건설되기 약60년전에 제작된 것이다. 이 입상(조각)들은 노트르 담(Notre-Dame)의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합각벽의 첨정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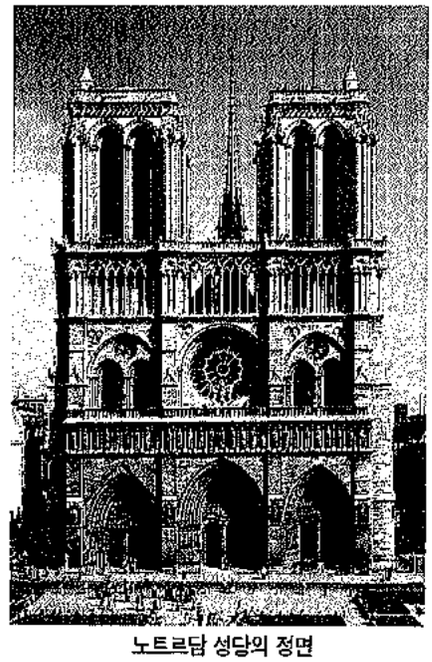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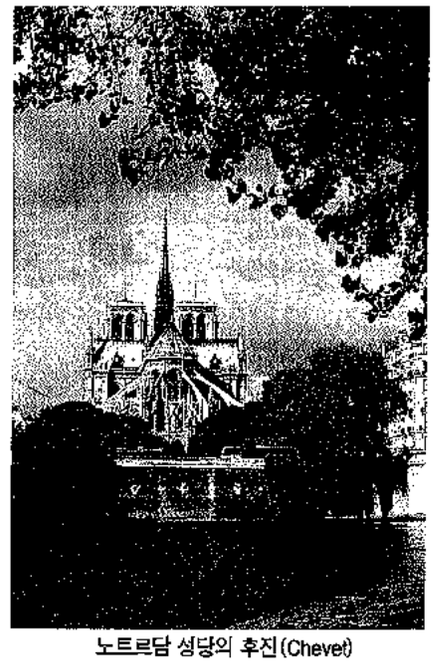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후진(Che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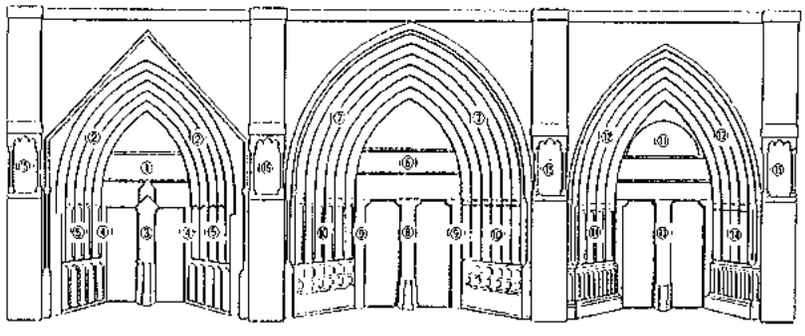

Portail de la Vierge　　Portail du Jugement Dernier　　Portail de Ste-Anne

동정녀의 문　　마지막 심판의 문　　안느 성녀의 문

노트르담 성당의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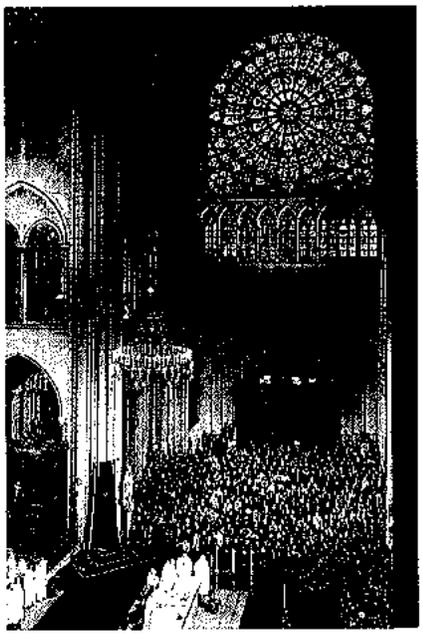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내부 중앙 회중석
(1180—1220년건설)

로마네스크식 양식과 전통에 따라 위엄있는 동정녀가 정면에 앉아 있으며 아기예수를 안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정녀는 향로를 받드는 두 천사와 모리스 드 쉴리(Maurice de Sulley)주교, 동정녀(Natre—Dame)에게 성당을 바친 루이7세 왕 르 죈느(le jeune)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중간의 상인방은 동정녀의 삶의 장면을 상기시키는데 아래의 장면은 그의 부모인 안느(Anne)성녀와 조아킴(Joachim)성인에게 바치는 것이다. 합각벽 주변에 있는 아치의 곡선⑫은 4줄위에 천사들과 왕들, 족장들의 천국의 안뜰을 나타내고 있다. 문사이의 벽기둥⑬은 한마리의 용에게 수도를 내어 줄 뻔 했던 5세기의 파리의 주교 마르셀(Marcel)성인의 입상이 있다. 마르셀(Marcel)성인의 조각은 클뤼니(Cluny)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는 상당히 손상이 된 본래의 마르셀 성인의 원본에 따라 제작이 되었다. 거기에는 파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한 괴물을 정복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괴물은 욕심많은 악인의 유골을 묘지에서 산산조각을 내기 위하여 센느(Saine)강에서 어느날 밤 나타났다. 성 마르셀이 괴물에게 센느(Saine)강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고, 그 괴물은 그에게 복종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 괴물의 입속에 그의 십자가를 꽂고있는 성인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길고 얇은 조각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 입상들과 아주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문의 여기저기에는 여러왕들 왕비들과 성녀들이 물매지게 깍인 창틀⑭에 새겨져 있다. 끝으로 정문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부벽들⑮은 에띠엔느(Etienne)성인, 교회(Eglise), 유태교회당(Synagoque), 드니(Denis)성인의 현대적 입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4)왕들의 주랑(Galerie des Rois) : 정문들 위쪽에 28입상들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스도의 조상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나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 1793년 그 입상의 왕들을 프랑스의 왕들이라고 착각한 프랑스의 파리혁명정부는 성당 앞뜰에다 입상들을 무너뜨렸으나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이 이 입상들을 다시 복원시켰다.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괴가 되었던 대성당의 여러가지 조각의 부분들과 21개의 왕들의 머리가 다시 발견되었다. 먼저 그들의 왕관이 깨어졌고, 그 다음으로 여러 해 동안 행인들에게 화장실로 사용되기 위해 입상들은 많은 댓가를 치르고 주랑(Galerie)에서 내려졌다. 드디어 많은 입상들이 건축자재처럼 팔릴 때 한 왕당파가 이 구정체(Ancien—Régime)의 기념품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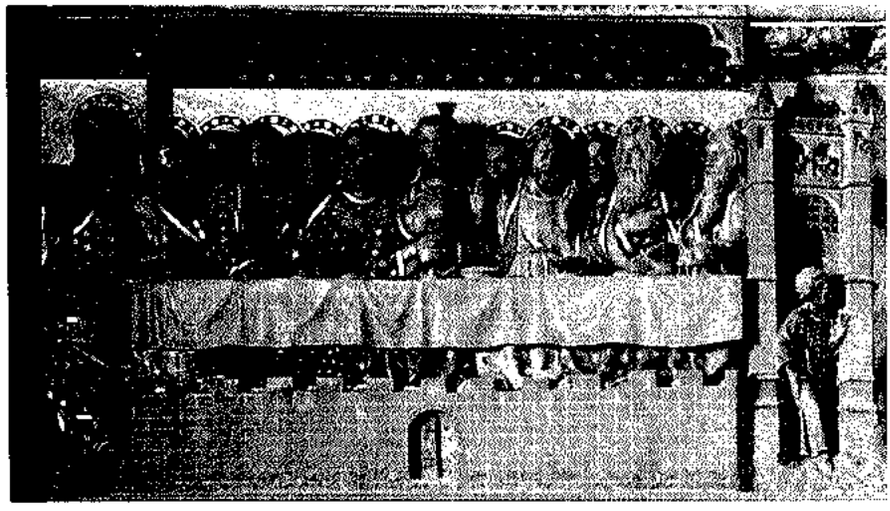

최후의 만찬

회수하여 새로운 건물 가까이 파묻음으로써 이 입상들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 조각들은 클뤼니(Cluny)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조각솜씨가 아주 훌륭하고 여기저기에서 그 시대의 다색배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왕들의 주랑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주랑의 입상들이 그리스도의 예언자들인 유대의 왕들인가 아니면 프랑스의 왕들인가? 13세기의 여행객들과 프랑스 대혁명가들은 오히려 프랑스의 왕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1284년의 한 수사본은 허리에서 염낭을 빼앗으면서 왕들가운데 뻬삘 르 브레프(Pépin le Bref)나 샤를르마녀(Charlemagne)를 보여주고 또 이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방문객을 묘사하고 있다. 입상들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까지 한번도 정리되어 본 적이 없다.

5)장미 창(Etage de la Rose) : 직경이 10m인 큰 장미창은 오랫동안 사람이 만든 가장 원대한 것이었다. 모든 십장들에 의해 채택된 창의 구도는 너무나 완전한 것이어서 7세기도 더 전부터 어느것 하나 변경된 것이 없다. 두 천사에 둘러싸인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동정녀의 입상에 후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교각의 아치에서 올라온 측면의 창문앞에는 왼쪽에 아담, 오른쪽에 이브가 서 있다. 전체는 원죄이후 대속을 상기시킨다(Viollet-le-Duc이 복원함).

6)대 주랑(Grand Galerie) : 아주 잘 다듬어진 홍예문들의 이 화려한 줄은 탑의 토대를 연결한다. 주랑(Galerie)위에 얹혀있는 난간의 부벽들 모퉁이에는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이 환상적인 새들, 괴물들, 악마들을 놓았는데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당 앞뜰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난간의 돌출부분이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고딕양식의 대성당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악마, 괴물, 밤의 새들이 건물의 맨 꼭대기를 가득채우고 있는데, 실제와 허구, 상상의 중간에 있는 창조물들은 비 기독교적 초상학과 동양적인 동물형태의 주제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이해되기 어려운, 염려가되는 존재물(모습들)은 대성당을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조각의 주제들에 대한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복잡한 교훈적 프로그램속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나타낸다. 기독교 교리의 이 상징적인 개요속에서 주교들과 공의회는 신의 명령을 거역한 악마, 괴물, 인간들은 교훈적계획에서 배제되며, 마치 이것들이 허공으로 몸을 던짐으로써 사라질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건물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일련의 교리를 제시했다. 고딕양식 말기에는 이러한 괴물형상은 조금씩 의미하는 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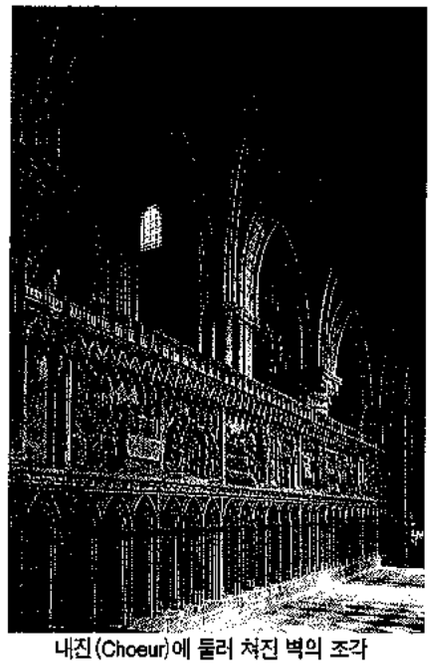

내진(Choeur)에 둘러 쳐진 벽의 조각

14세기의 동정녀와 아기예수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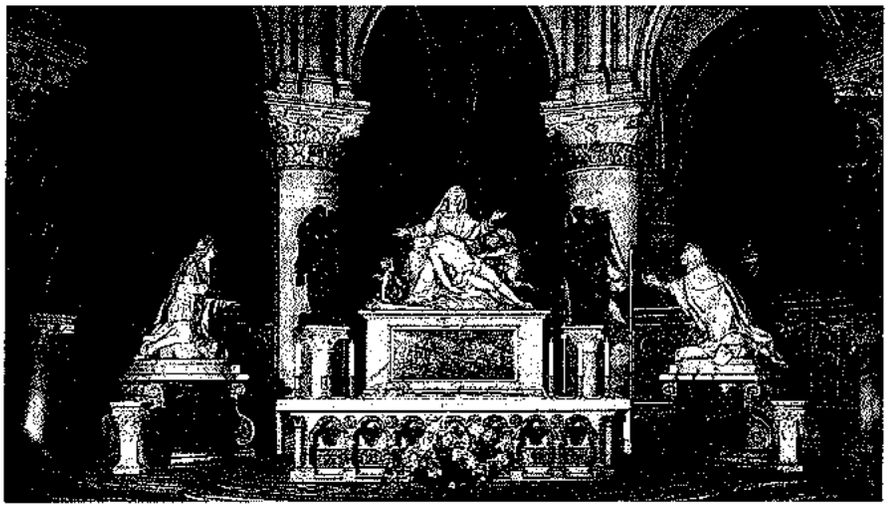

내진(Choeur)의 입상전경(중앙 : 성모마리아와 그리스도 오른쪽 : 루이14세 왼쪽 : 루이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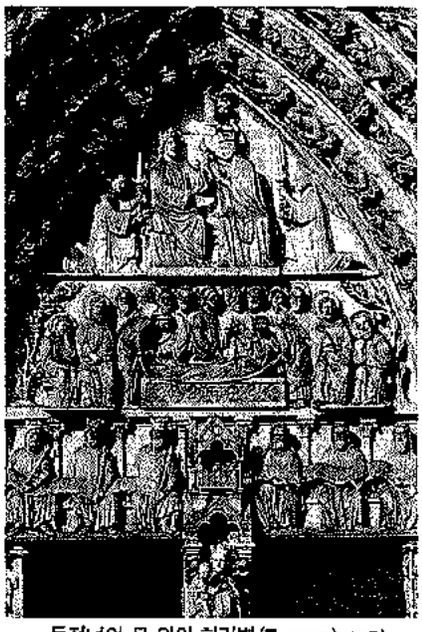

동정녀의 문 위의 합각벽(Tympan) 조각

잃어버리게 되어 찾아보기가 쉽지않다.

7)탑들(Les Tours) : 지상에서 69m에 달하는 탑(Tours)들은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좁으면서 16m이상되는 아주 높은 트인공간은 탑들의 장중함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탑을 경쾌하게 보이게 한다. 내부의 기둥(지주)사이의 공간들이 규칙적으로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균형은 딱딱하지가 않다. 북쪽탑은 남쪽탑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쪽탑이 눈에 띄게 더 넓은데, 이것은 아래층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이며 딱딱함을 피하고 있는 배열은 건축적인 요소에 살아있는 리듬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대성당의 모든 부분들은 엇바꿔 놓을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잘 정리된 조화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쪽탑의 그 유명한 큰 종 앰마누엘(Emmanuel)은 무게가 13톤이나 되며, 종의 추는 약500㎏이다. 17세기에 종이 다시 주조될 때 귀부인들과 서민여자들이 그들의 금은 보석을 용해된 청동속에 넣었고, 이것으로 인해 종은 맑은 음향을 가지게 되었다고들 한다. 중요한 축제 때에는 종을 울린다.

노트르담 성당의 내외부와 내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샤뻴(Chapelles : 작은 제대), 트란셉(Transept : 성당의 좌우익부), 쾌흐(Choeur : 內陣)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8)노트르 담 성당의 내부 : 노트르 담 성당은 길이 130m, 넓이 48m, 높이35m이다. 약 6,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다. 내부의 꽤나 높은 천정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네프(Nef : 중앙회중석)의 부벽들사이에 위치해 있는 샤뻴 Chapelles : 작은 제대)들을 밝게하기 위해 13세기에 높은 특별석을 낮추었으며, 네프(Nef)와 부뜨(Voûte : 둥근천장)의 압력을 받쳐주기 위해 한 볼레(Volée : 두 층계참사이의 계단)로 된 받침기둥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내부에 대해서는 최대의 공간과 빛을 사용한 데 반하여 외부에는 모든 건축적인 노력을 하였다. 트란셉(Transept)의 모든 교차점(Croisée)에서 아직도 12세기의 건축을 찾아볼 수 있다. 작은 원화창과 높은 창문이 당 세기에 적용되었던 탓이다. 탑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직경이 5m에 달한다. 중세기에 일반적으로 성당에 사용되는 유리창 채색기법이 있었고, 18세기에는 붓꽃(백합꽃)이 그려진 흰 대형 착색유리가 뒤를 이었으며, 19세기에는 회색만 써서 농암, 명암을 그리는 화법인 그리자이유(Grisailles : 회색의 농담만으로 그리는 화법)가 대를 이었다. 1965년에 설치한 르 슈발리에(Le Chevalier)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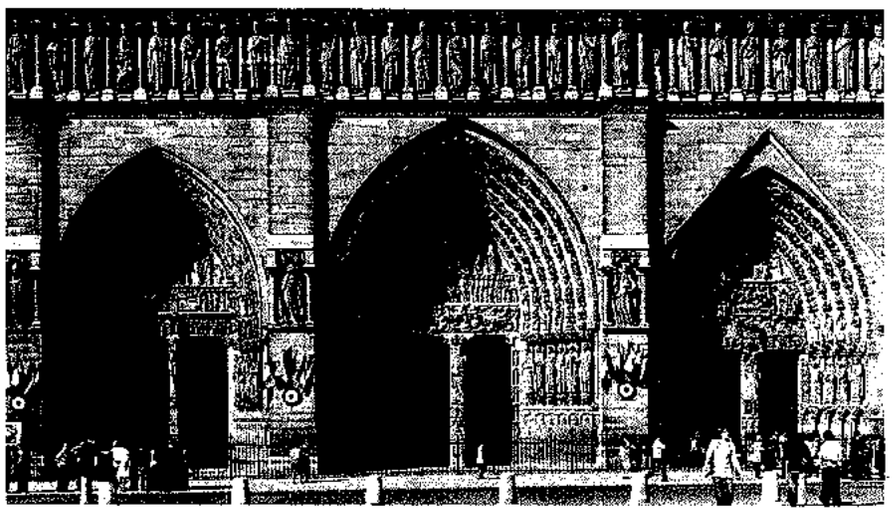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주 출입문 전경

현대적 유리창들은 중세기의 방법과 채색법을 다시썼다. 1868년에 다시 제작된 오르간은 프랑스의 가장 훌륭한 오르간속에 속한다.

9)샤뻴(Chapelles : 작은 제대) : 노트르 담(Notre-Dame)은 부유한 가정과 종교단체의 창립에 부흥하기 위해 13, 14세기에 부벽사이에 덧붙인 작은 제단들로 둘러싸여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트란셉(Transept)부분들은 더 늘려야만 하였다. 1949년에 재개된 전통에 따르면 매년 5월에는 파리의 금은 세공사들이 한 예술작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르 브항(Le Brun)과 르 쉬에흐(Le Sueur)이다. 왼쪽에는 15세기 한 교회참사회원의 묘석과 추기경 아메뜨(Amette)의 묘석이 있다.

10)트란셉(Transept) : 고딕양식의 향상에 의한 견고함 때문에 트란셉(Transept)의 찬탄할 만한 대형 착색유리는 예외적으로 넓지만(직경13m) 중압감을 주지 않는다. 북쪽에 16개, 남쪽에 12개 있는 원화창은 중앙의 둥근창 둘레에 작은 기둥들이 마치 바퀴의 살처럼 배치되어 있다. 13세기부터 거의 파손되지 않은 북쪽의 장미창은 동정녀를 둘러 싸고 있는 구약성서의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다. 불충분하게 지탱되었던 이 남쪽의 원화창은 16세기부터 다시 고쳐야만 했고, 완전히 변경을 해서 18세기에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한 이 원화창은 마침내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이 대체를 했으며, 상당부분이 정적이다라는 이유로 13세기의 원상태로 복원을 했다. 복원된 남쪽 원화창은 천사들과 성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준다. 성가대식의 입구에는 구스뚜(N. Coustou)가 제작한 것으로서 쎙 떼냥 샤뻴(Saint-Aignan chapelle)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리의 노트르 담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기예수를 안고있는 아름다운 동정녀에게 대답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기예수를 안고있는 아름다운 동정녀에게 대답하는 드니(Denis)성인이 있다.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바닥에 새겨져 있는 글은 뽈 클로델(Paul Chaudel)의 개종을 상기시키고 있다.

11)내진(Choeur)과 주 제단 : 결혼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던 루이 13세는 프랑스를 동정녀에게 바쳤고, 내진(Choeur)을 새로이 장식하므로써 그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새로운 장식을 하기 위하여 로베르 드 꼬뜨(Robert de Cotte)가 이 일에 참여하였다. 아직도 성직자석과 귀욤 꾸스뜨(Guillaume Coustou)의 루이 13세가 옆에 있는, 쿠와즈복스(Coysevox)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릎에 안은 성모마리아(Pietá) : 피에따)와

장미 층(Etage de la R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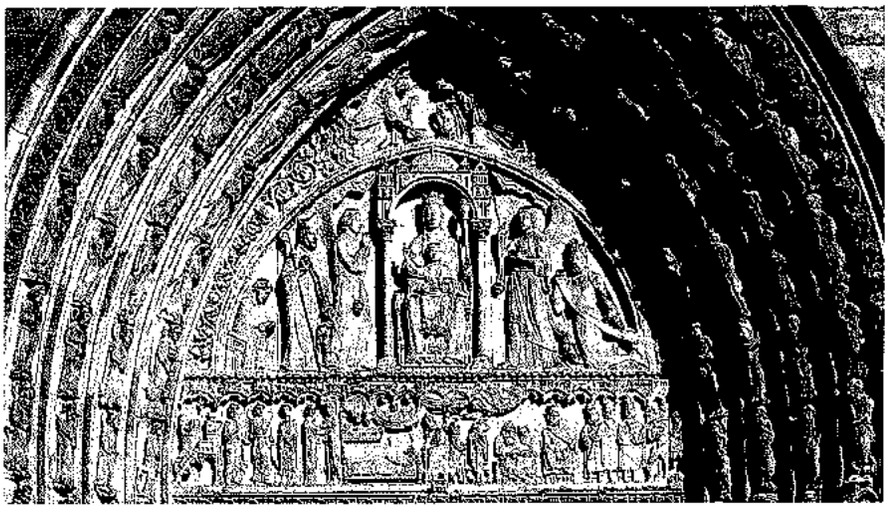

안느 성녀의 문 위의 합각벽(Tympan)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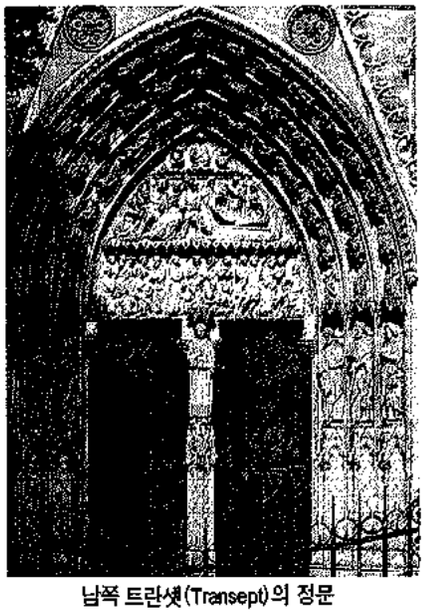

남쪽 트란셋(Transept)의 정문

쿠와즈복스(Coysevox)의 루이 14세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돌로 된 내진의 간막이는 몹시 훼손되었다. 비올레 르 뒤(Viollet-le-Duc)에 의해 복원된 14세기의 저부조는 단지 그리스도의 생활의 몇 장면과 발현만을 나타내고 있다. 파리의 주교들과 노주교들은 내진밑에 있는 성당의 지하실 속에 묻혀 있다.

12) 노트르 담 성당의 외부 : 노트르 담 성당의 외부는 13세기에 있었던 건축과학의 훌륭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늘 위로 뚜렷이 드러난 기념물의 윗부분에 대한 전망은 찬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옛날에는 노트르 담 성당의 북쪽으로 교회참사원들의 수도원 안뜰이 있었고, 크루와지옹(Croisillon : 트란셉의 외진)의 길과 정면은 수도원 안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1250년경 장 드 쉘(Jean de Chelles)이 수도원 경내(안뜰)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을 세웠다. 1248년에 준공된 생뜨 샤뻴(Sainte-Chapelle)에서 얻은 경험으로 건물 트란셉의 외진(Croisillon : 크루와지옹)을 통하여 최대한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계를 하였다. 트란셉의 외진에 잘 다듬어진 큰 원화창은 살문구조위에 설치되어 전례없는 대담하고도 중압감이 없는 18m의 높은 공간을 이루고 있다. 직경13m로 정면의 원화창보다는 조금 큰 이 원화창은 경탄할 정도로 견고하다 아래부분에는 조각된 아치형의 곡선을 갖고 있는 큰 문이 여러 박공과 조화를 이룬 채 있으며, 그 장식적인 풍부함과 아름다움은 30년 일찍 조성된 성당 앞뜰의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표현된 정문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3층으로 된 합각벽에는 맨 아래에 동정녀의 생애를 나타내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위의 두 층은 중세기에 성당 앞뜰에서 있었던 부제 떼오필(Théophile)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 떼오필(Théophile)은 속세에서 영광과 부를 갖기위해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 후회와 참회에 사로잡혀 그는 성모마리아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동정녀는 사탄에게서 주교가 평민에게 보여준 증명서를 빼앗아 그를 구한다는 이야기이다. 문 사이의 기둥벽(Trumeau)의 조각품인 아름다운 동정녀는 불행히도 복원 때에 아기예수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었다. 이 조각품의 섬세한 미소와 고귀한 자태는 13세기의 입상술의 수준높은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뜨안느(Sainte-Anne)가 있는 정문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동정녀보다 더 실감나는 이 동정녀는 트란셉의 14세기의 동정녀보다도 표현기법서 더 완벽하다. 붉은 문(la porte Rouge)은 삐에르 드 몽뜨뢰이(Pierre de Montreuil)의 작품으로 교회참사회의 참사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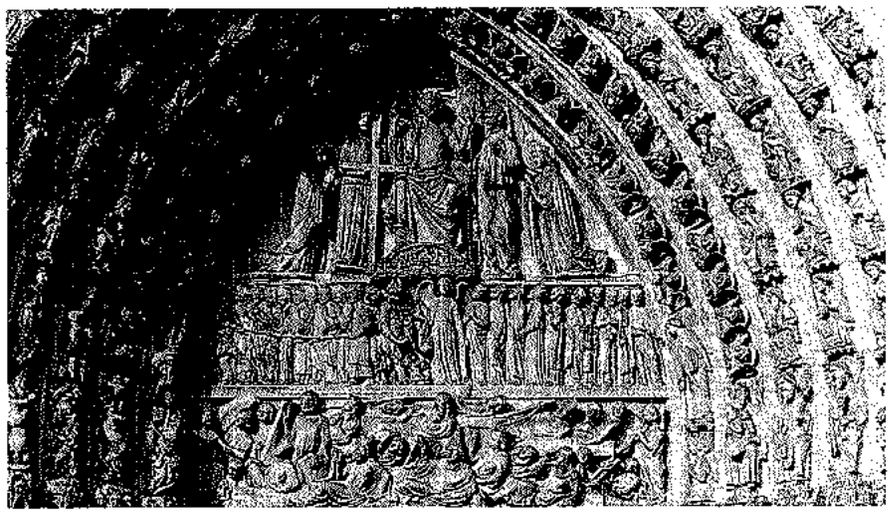

마지막 심판의 문 위의 합각벽(Tympan) 조각

것이다. 아치형 곡선들 아래는 동정녀가 루이스 성인과 무릎을 꿇은 그의 처 마그리뜨 드 프로봉스(Marguerite de Provence)사이에서 예수에 의해 왕관을 받고 있다. 내진(Choeur)의 작은 제대들의 토대에 박아넣은 14세기의 7개의 저부조들은 동정녀의 죽음과 승천을 상기시킨다.

노트르 담 성당 뒷면에는 쟝(Jean)23세 광장이 있는데, 19세기 초까지 노트르 담 성당과 씨떼(Cité)섬 끝까지에는 주택들, 작은 성당, 대주교의 주택이 있었다. 대주교의 주택은 파리가 대주교의 본거지가 되므로써 루이 13세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이 주택은 성당의 뒷면과 쎈느(Saine)강 사이에 있었는데 1789년 11월2일 제헌의회가 이곳에 본부를 두었고, 성직자들의 모든 재산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다. 1831년에 반왕당파의 폭동이 건물들을 완전히 약탈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1844년에는 작은 공원의 개방과 신 고딕양식의 분수가 건립되었다. 약간 뒤로 물러서면 아직도 본래의 골조를 갖고있는 13세기의 지붕을 볼 수가 있다.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은 트란셉(Transept)의 교차로(la Croisée du Transept)에 프랑스 대혁명 때 파괴된 옛날 종루를 재건하였다. 500톤 이상의 떡갈나무와 250톤이상의 납을 사용하여 땅에서부터 90m에 세워진 종루는 이것을 장식하고 있는 청동으로 된 복음사가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세기에 세워진 제의실을 지나면 수도원 안뜰의 문과 비슷하지만 조각이 더 훌륭한 쎙에띠엔느(Saint-Etienne)의 문에 이르게 되나 불행히도 담장 하나 때문에 이 문에 다가갈 수 없다. 1258년 쟝 드 쉘(Jean de chelles)에 의해 시작되어 삐에르 드 봉트뢰이(Pierre de Motreuil)에 의해 완성된 이 합각벽(Gâble)은 부제 에띠엔느(Etieme)의 삶과 돌로 쳐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3층으로 된 아름다운 합각벽이다. 대성당을 능가하는 쌍뛰에흐(Sanctuaire : 성당 중앙계단의 주위 · 일명 성역이라고도함)은 에띠엔느(Etienne)성인에게 바쳐졌으며, 문사이 기둥벽(Trumeau)의 에띠엔느성인의 입상과 박공의 마르셀(Marcel)성인의 입상은 아치곡선의 대부분의 입상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의 것이다. 부벽의 밑에는 13세기의 작은 저부조 8개가 길과 대학의 정경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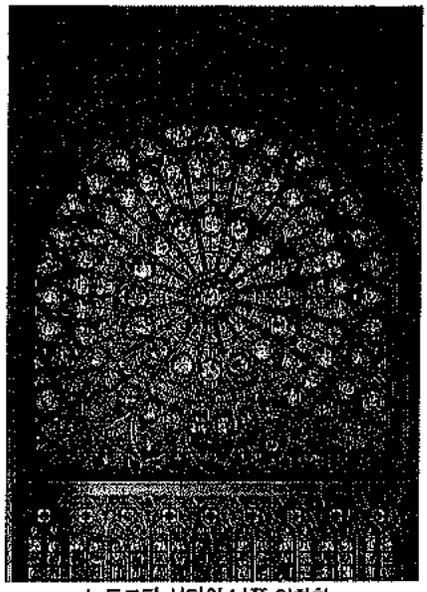

노트르담 성당의 남쪽 원화창

실제와 허구의 중간적 창조물들(악마, 괴물, 밤의새)

KBS 수원방송센터

2천년대의 방송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금세기 최고의 종합방송 제작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춰 급변하는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KBS는 수원방송센터의 설계공모를 실시, 지난 2월 8일 당선작을 확정, 발표했다.

총 11개 사무소에서 출품된 이번 공모의 당선작은 (주)간삼종합건축(김자호)안이 확정되었고, 우수작으로는 (주)무영종합건축(안길원)안이, 입선작으로는 희림종합건축(이영희)안과 원도시건축(윤승중+변용)안 그리고 (주)건우시종합건축(장종률)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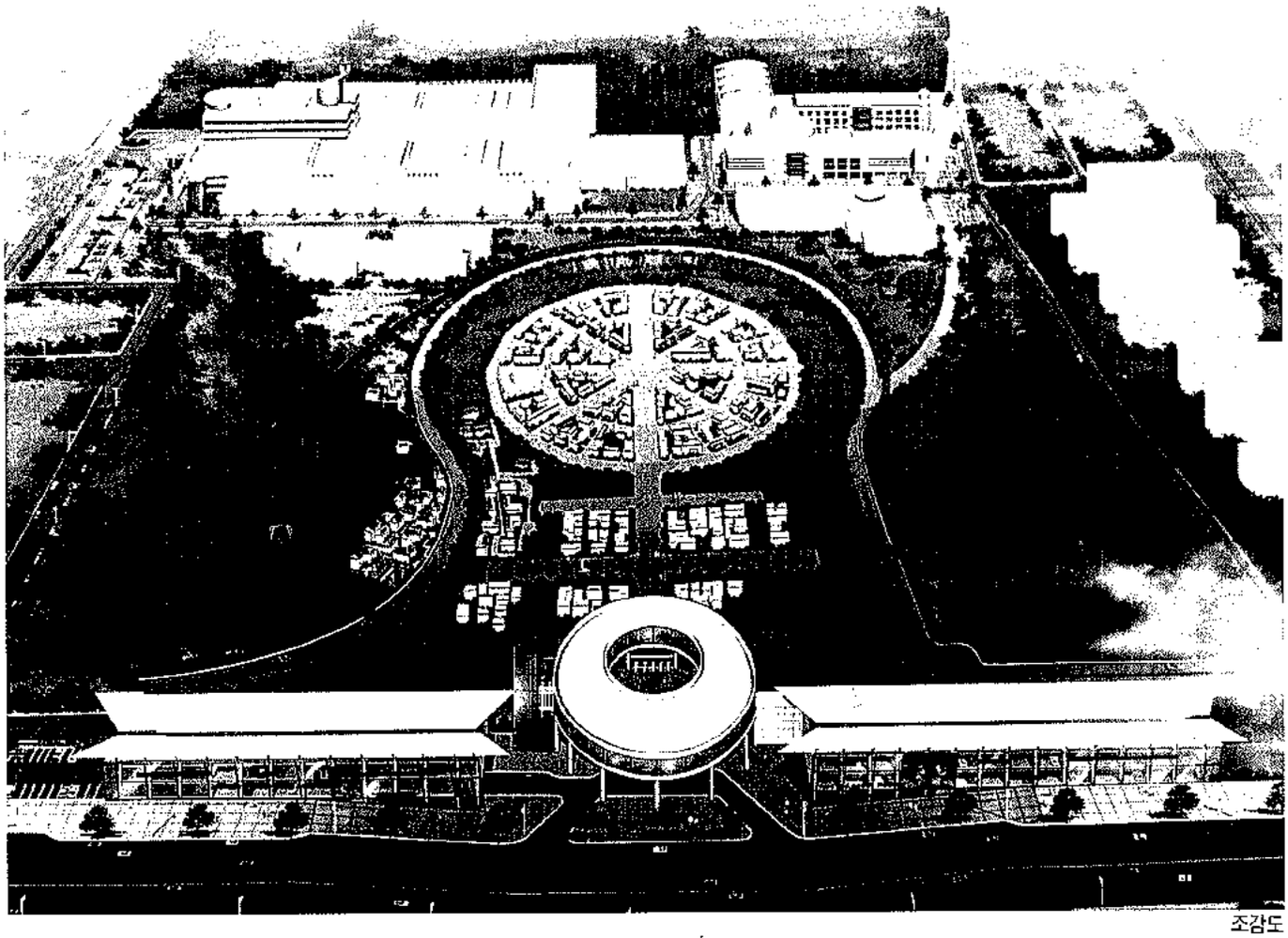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주)간삼 종합 건축(안)

건립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55번지 외
대지면적 / 168,998 ㎡ (51,120평)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공원내 문화시설/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건축면적 / 30,758㎡
건폐율 / 18.2%
연면적 / 66,770㎡ (20,197평)
드라마제작센터 44,719㎡
인력개발센터 12,218㎡
주차 건물 9,833㎡
용적률 / 37.75%
주차 대수 / 총 542대/드라마제작센터 133대/인력개발센터 77대/주차 건물 332대(소품용 45대 포함)
규모, 구조 / 드라마 제작센터 : 지상 6층/지하상 1층(R.C+철골 TRUSS 지붕)
인력개발센터 : 지상 3층/지하 1층(R.C)
주차 건물 : 지상 3층(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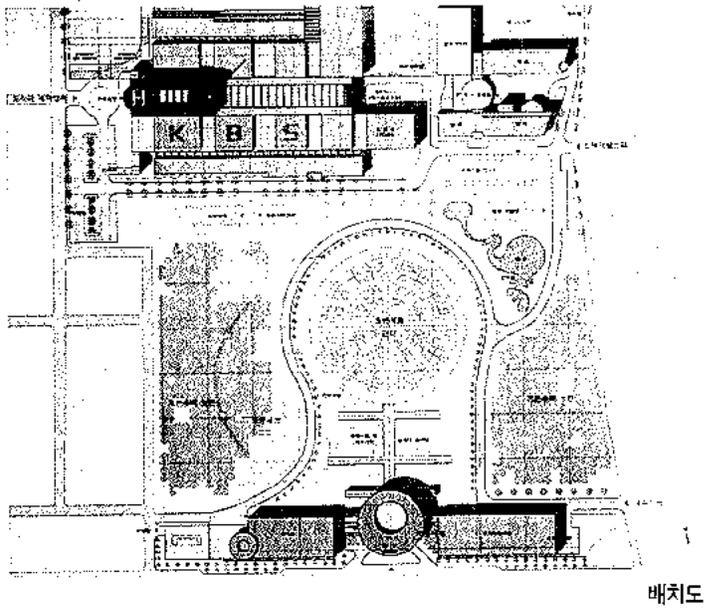

배치도

투시도(드라마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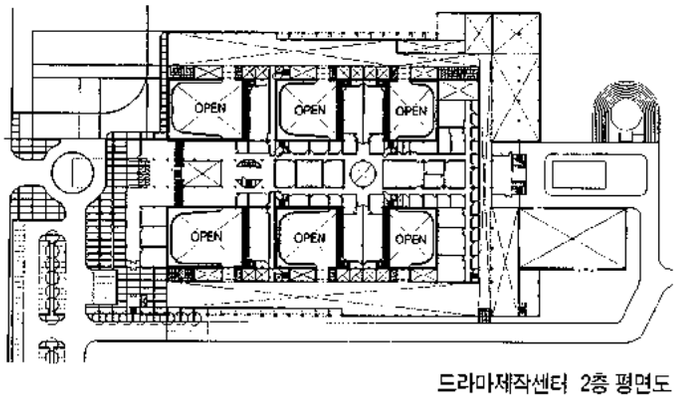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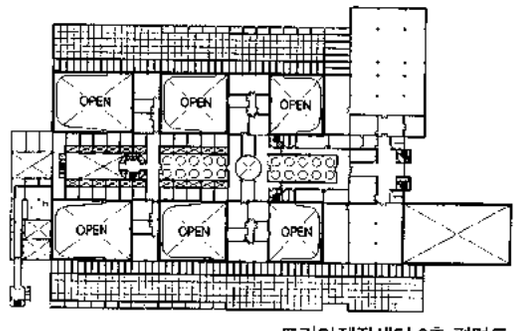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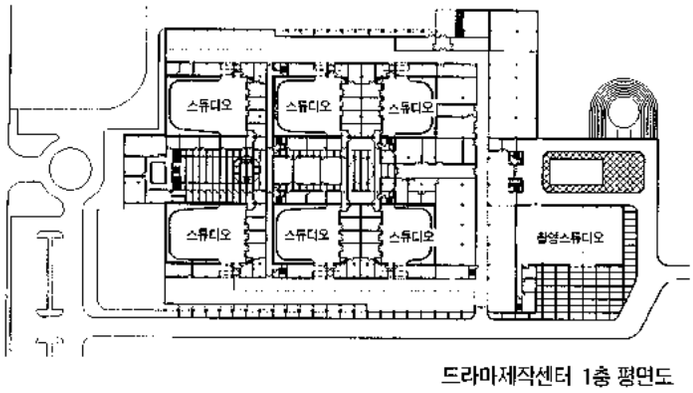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1층 평면도

■ 배치 개념

부지 중앙의 Open Set장을 중심으로 북측에 드라마제작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배치하고 남측에 주차 및 Open Set 지원 시설을 배치하였다.

Open Set장은 기능의 특수성 및 지형을 고려하여 Loop형의 제작동선 안쪽에 높이차를 두어 낮추었으며, 이는 촬영시의 카메라 각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각 공간간의 위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드라마제작센터와 인력개발센터는 두건물 사이의 지형(언덕)을 이용하여 서로 상충되는 두 기능을 분리하며, TV 스튜디오중 특수 촬영 겸용 스튜디오와 촬영용 스튜디오 및 옥외 Pool을 근접시켜 상호 보완관계가 있는 기능들이 같은 Zone으로 구획되도록 하였다.

■ 드라마 제작센터

수원방송센터내의 중추 기능이 될 드라마제작센터는 제작자, 출연자, Set, 견학자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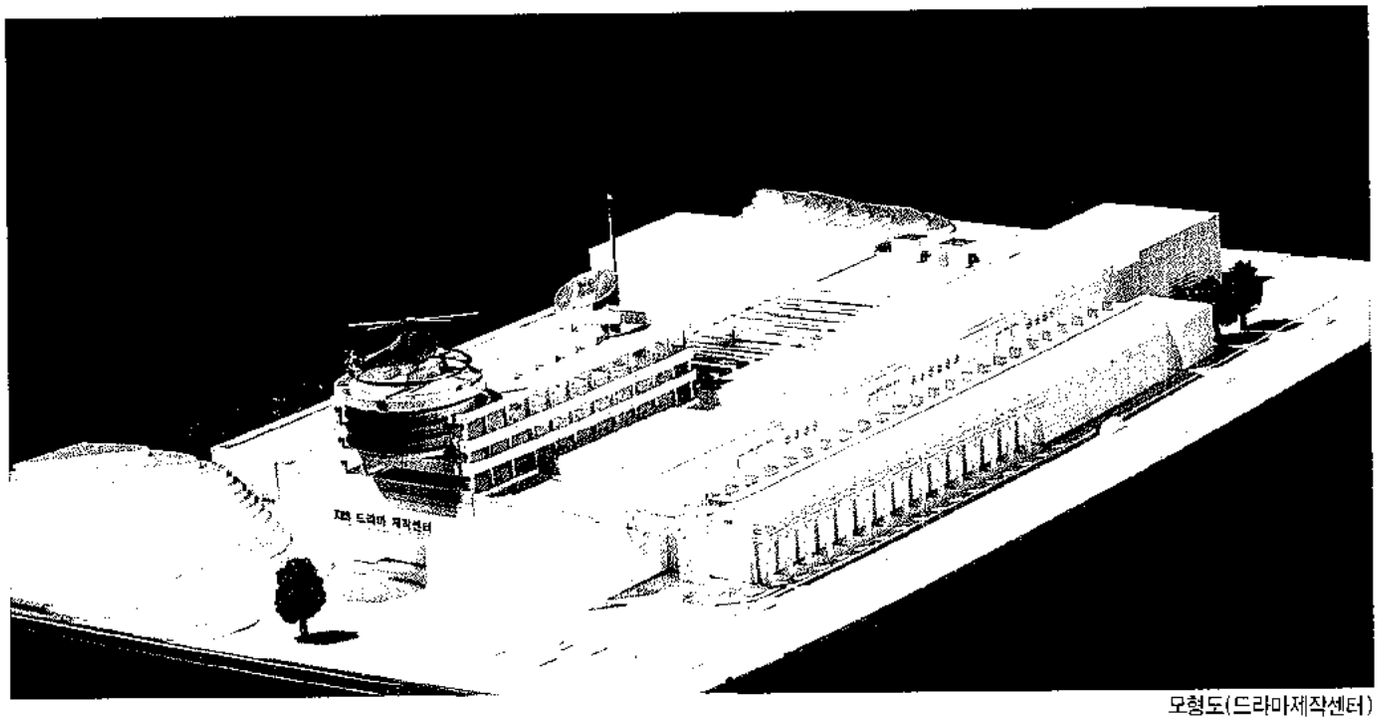

모형도(드라마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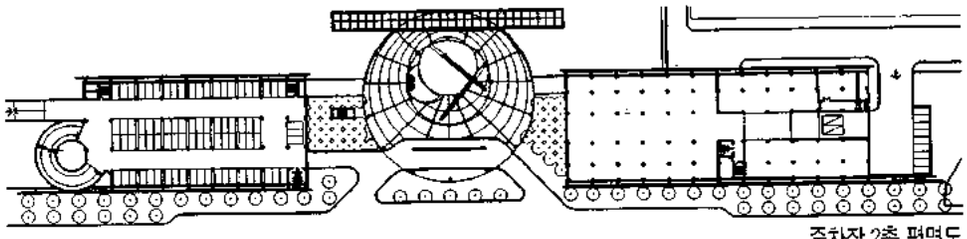

주차장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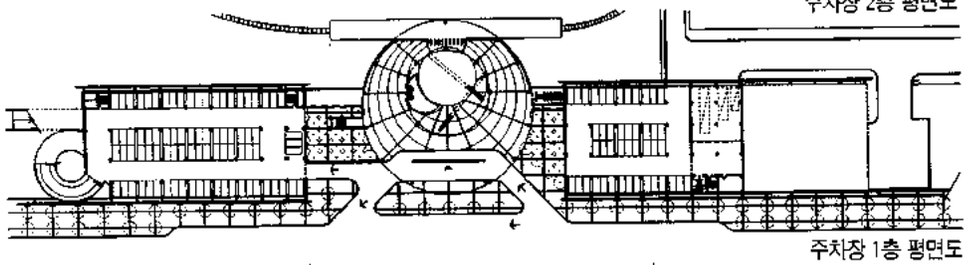

주차장 1층 평면도

고유의 독립된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확한 동선의 분리 및 향후 전작제(前作制), Post Production 제작시의 편이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요구하는 시설 Program에 비하여 계획대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과 단계별 공사(기능의 무리없이 3개의 스튜디오를 1개 Zone으로 한 분절 시공 가능)및 장래 증축(2개의 스튜디오 증축 가능)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스튜디오를 3개씩 병렬로 배치하였다.

현 대지 레벨을 이용하여 1층과 2층의 중간 레벨에서 진입하면 1층에는 스튜디오(200, 250, 300평 각 2개 및 촬영용 1개), Set 기능 및 연기자 이용 시설(리허설, 탤런트대기, 분장, 의상)을 배치하고 조정실 및 관련 기술 시설을 2층에 집중 배치하여 각동선간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기능적인 실 배치가 될 수 있게 고려하였다. 3개씩 병렬 배치된 스튜디오 사이에 설정한 아트리움은 스튜디오와 Set 그리고 방송 기기의 운용만이 중요시되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다루는 각종 스탭 (출연자, P.D, 엔지니어 등) 역시 중요한 방송 요소임을 인식한 환경적 접근이며, 이는 3층에 설정된 견학 통로에서 출연자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견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다이나믹한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

Set는 스튜디오와 같은 층 (1층)에 두어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 유입의 차단을 위해 3중 방음 셔터를 통해 스튜디오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품은 기능적으로는 Set와 같은 층이 좋으나 드라마제작센터의 과대한 볼륨증가로 아쉽지만 Set창고 상부인 3층에 두어 별도의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도구에 비해 운반이 용이하므로 기능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드라마 제작 시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무기능 (연출, 미술, 촬영 및 효과 등)을 스튜디오 상부에 집중 배치하여 제작 기능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였고, 최상부에 (6층) 식당 및 라운지를 두었다.

■ 인력개발센터

방송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기능을 갖는 인력개발 센터는 드라마 제작센터와는 별도로 부지 우측에 독립된 정문을 갖도록 계획되었으며, 공용 및 관리 시설을 중앙에 두고 상부에 숙소 및 체육관(강당겸용 300석 규모)을, 하부에 실습 및 강의 시설을 배치하였다.

ㄷ자형 배치로 이루어지는 중정은 숙소와 강의등의 완충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고유의 독자 영역을 가짐을 의미하며, 사용자들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매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공용 Deck로부터 연계되는 옥외풀은 야외 음악당 및 체육관과 근접시켜 활용도를 높이며, 촬영용 스튜디오와 관계되어 수중 촬영등의 특수 촬영을 겸하게 된다.

■ 주차 건물

방송센터 부지로의 주진입구이면서 Open Set 장에 대한 드라마 제작센터에서의 제작지원을 보조하고, 단지내의 불필요한 차량의 통행에 의한 Open Set기능의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전면도로 (30m도로)에서의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중앙의 진입광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제작지원 시설을 좌측에 방문객 주차 시설을 배치하며 광장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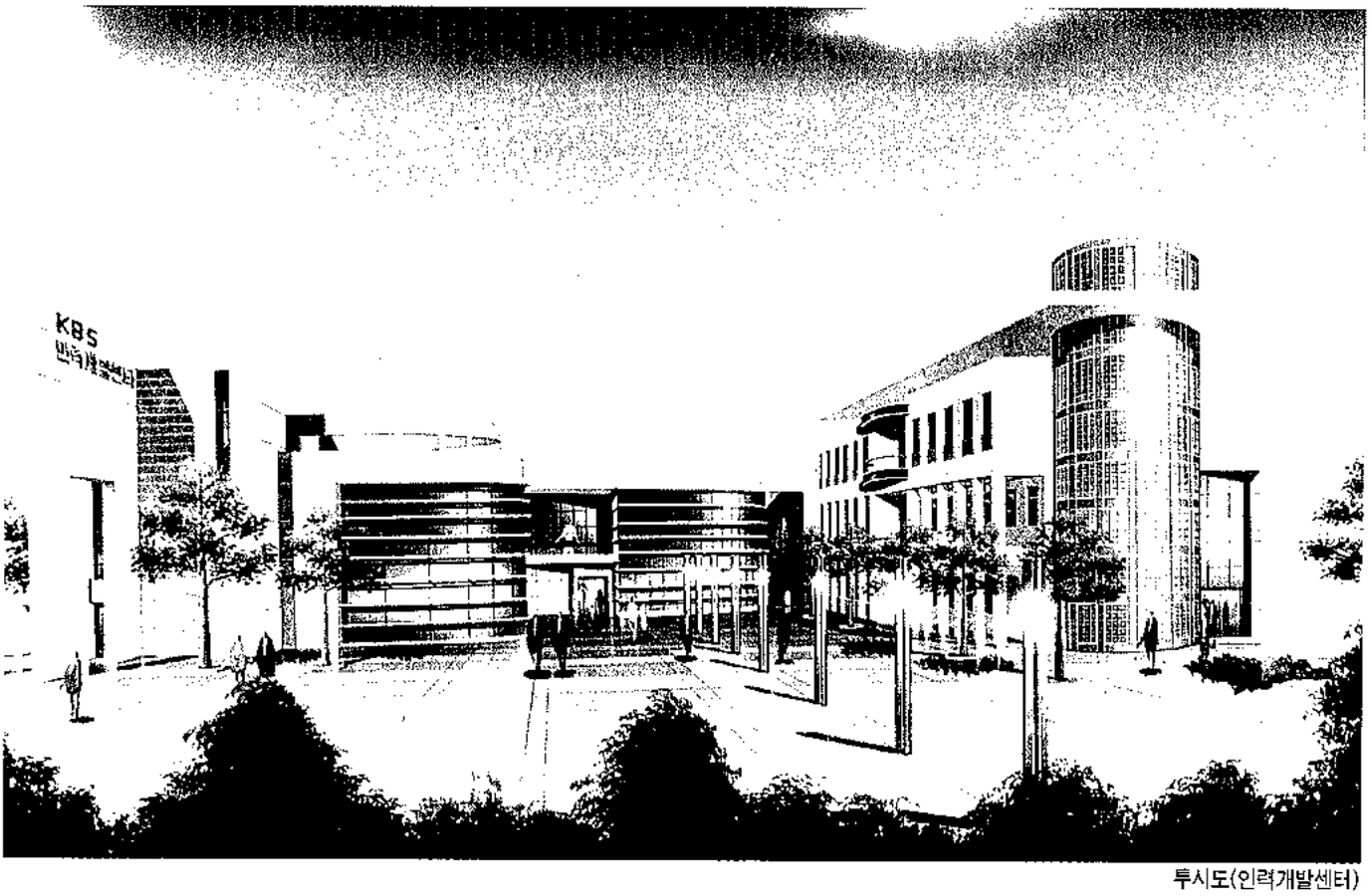

투시도(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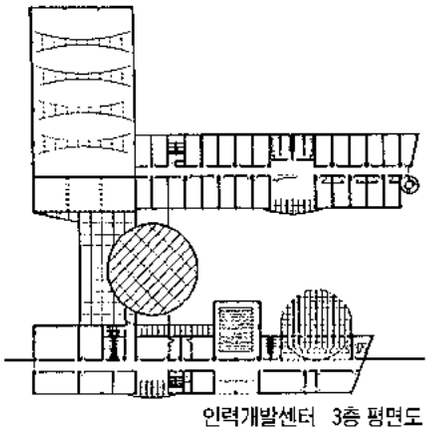

인력개발센터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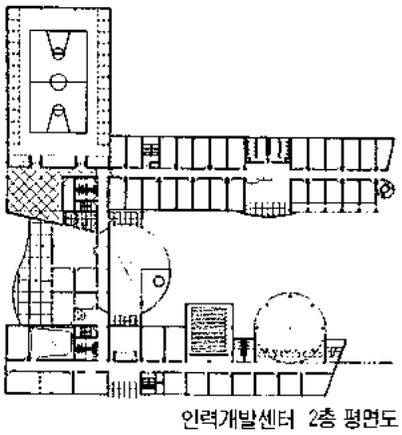

인력개발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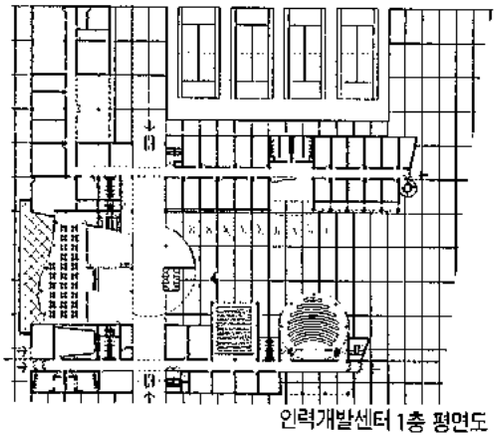

인력개발센터 1층 평면도

방송센터 진입의 상징성 및 개방된 공영 방송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광장 상부는 Glass Cylinder로 구성된 쇼핑몰을 두어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시설을 배치한다.

Open Set장측의 입면은 촬영용 Horizont를 설치할 수 있는 System Wall로 계획하고, 주간선 도로변의 입면은 영상 또는 그래픽등 다양한 입면 효과를 줄 수 있도록 Layer를 설정, KBS 홍보등의 시각적 매세지 전달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진입구로서의 주차건물이 갖는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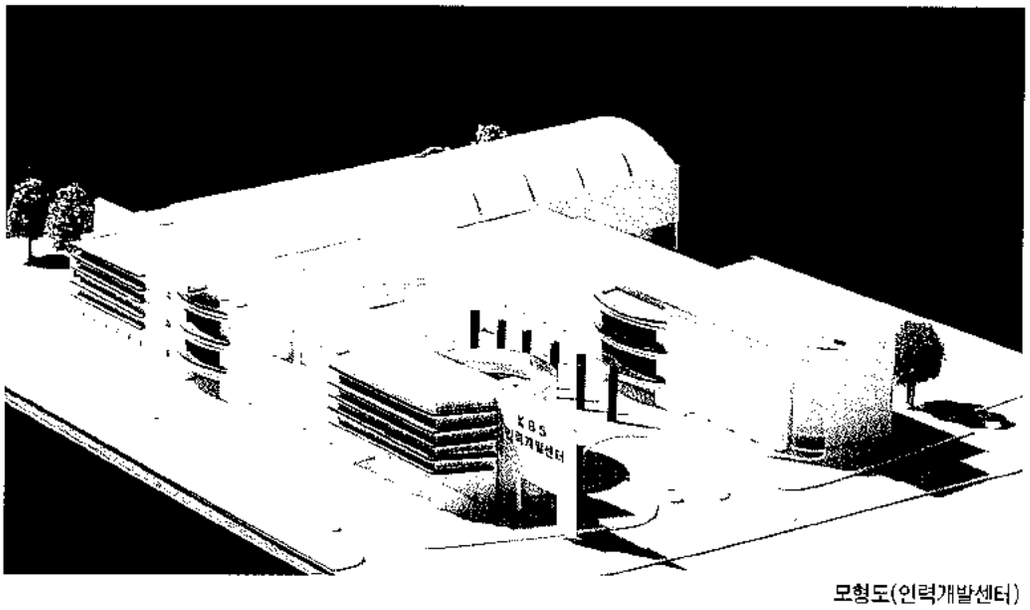

모형도(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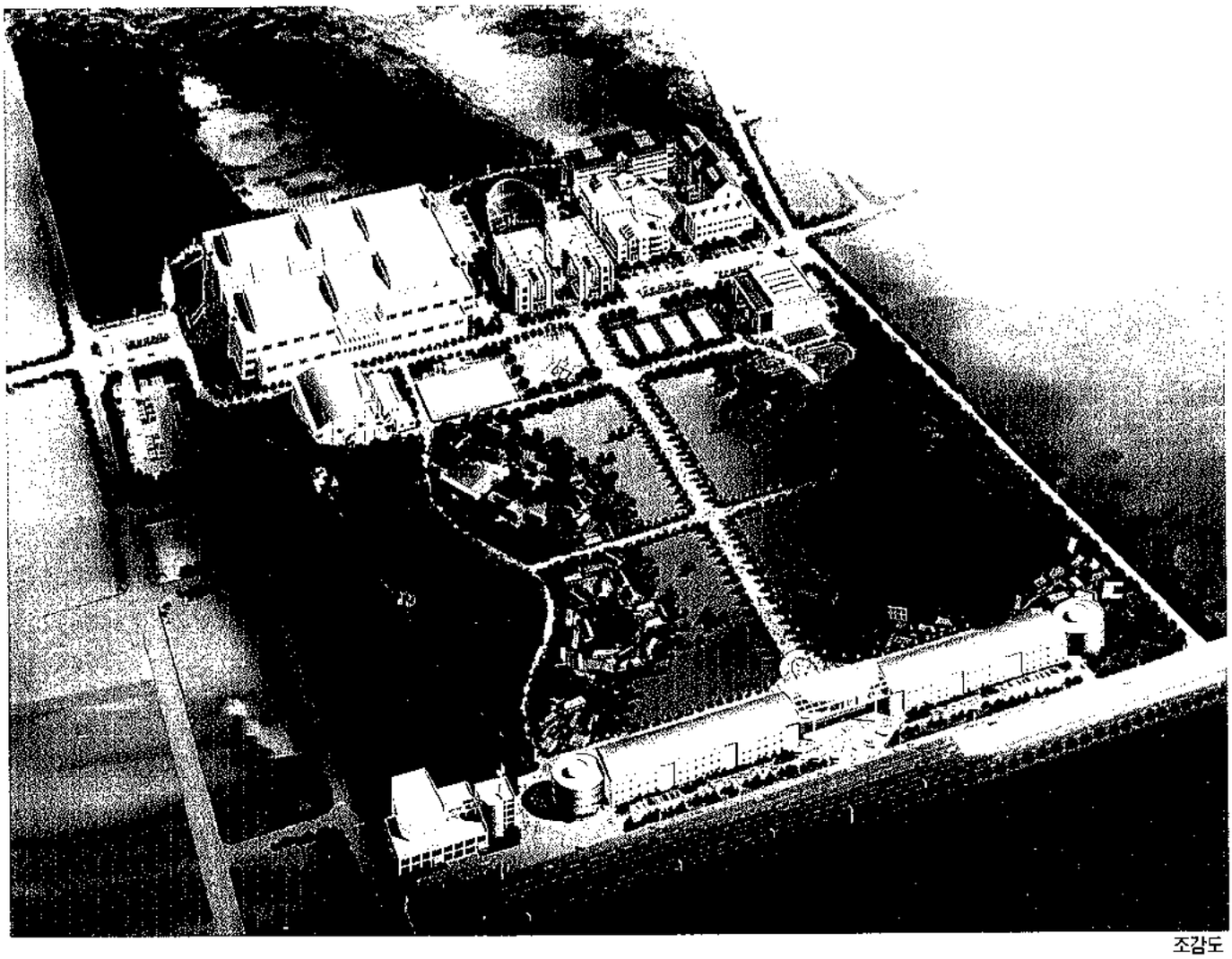

조감도

우수작
(주)무영종합건축(안)
(대표 안길원)

대지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55번지외
대지면적 / 168,998㎡/51,120평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 22,988㎡/6,954평
연면적 / 67,303㎡/20,359평
건폐율 / 13.6%
용적률 / 39.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튜디오 : 조립식패널(외벽)
－인력개발센터 : 조립식패널(외벽)
아스팔트싱글(지붕)
－주차건물 : 조립식패널(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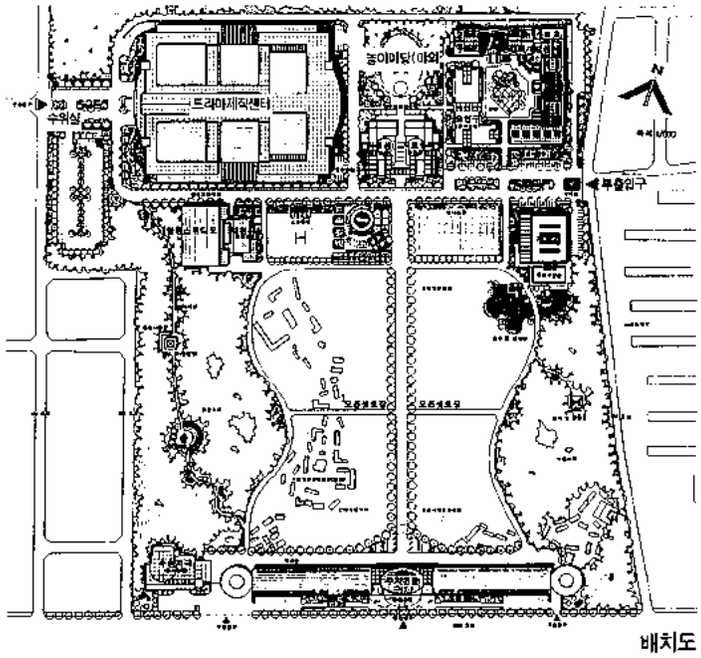

배치도

주차대수 / －옥내 : 320대(주차건물)
－옥외 : 290대
－합계 : 610대

• 계획의 기본방향

－국민문화에 공헌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창성 부여
－첨단종합방송타운의 선도적 역할 수행
－경제성을 고려한 방송센터
－수원지역 자치문화의 상징적 공간창출
－장래 성장변화 수용을 위한 융통성 고려
－주변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수행

투시도(드라마 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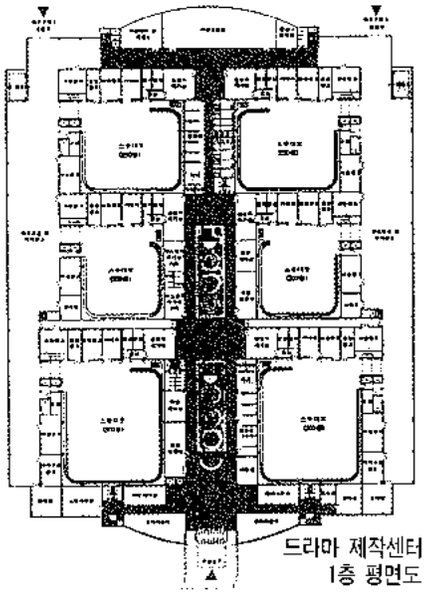

드라마 제작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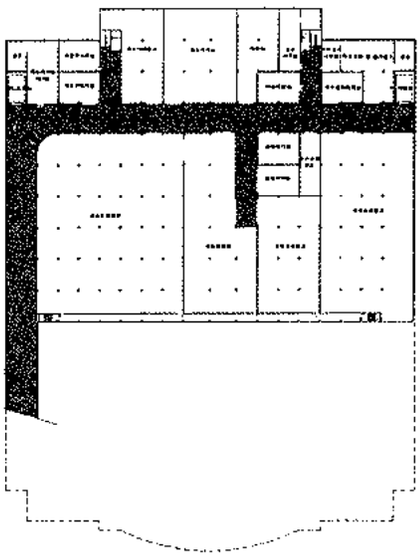

드라마 제작센터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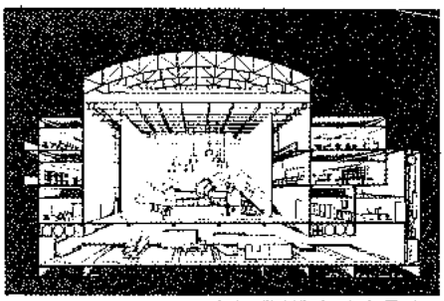

드라마 제작센터 단면 투시도

드라마 제작센터 종단면도

드라마 제작센터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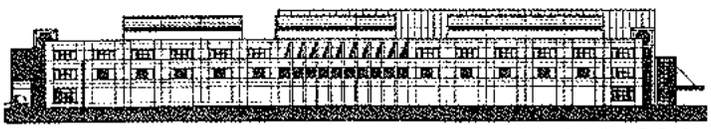

드라마 제작센터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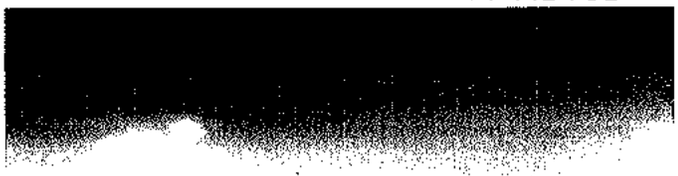

투시도(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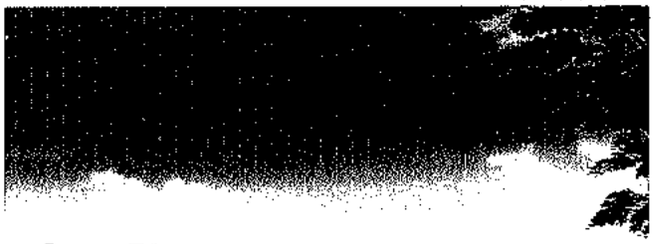

투시도(주차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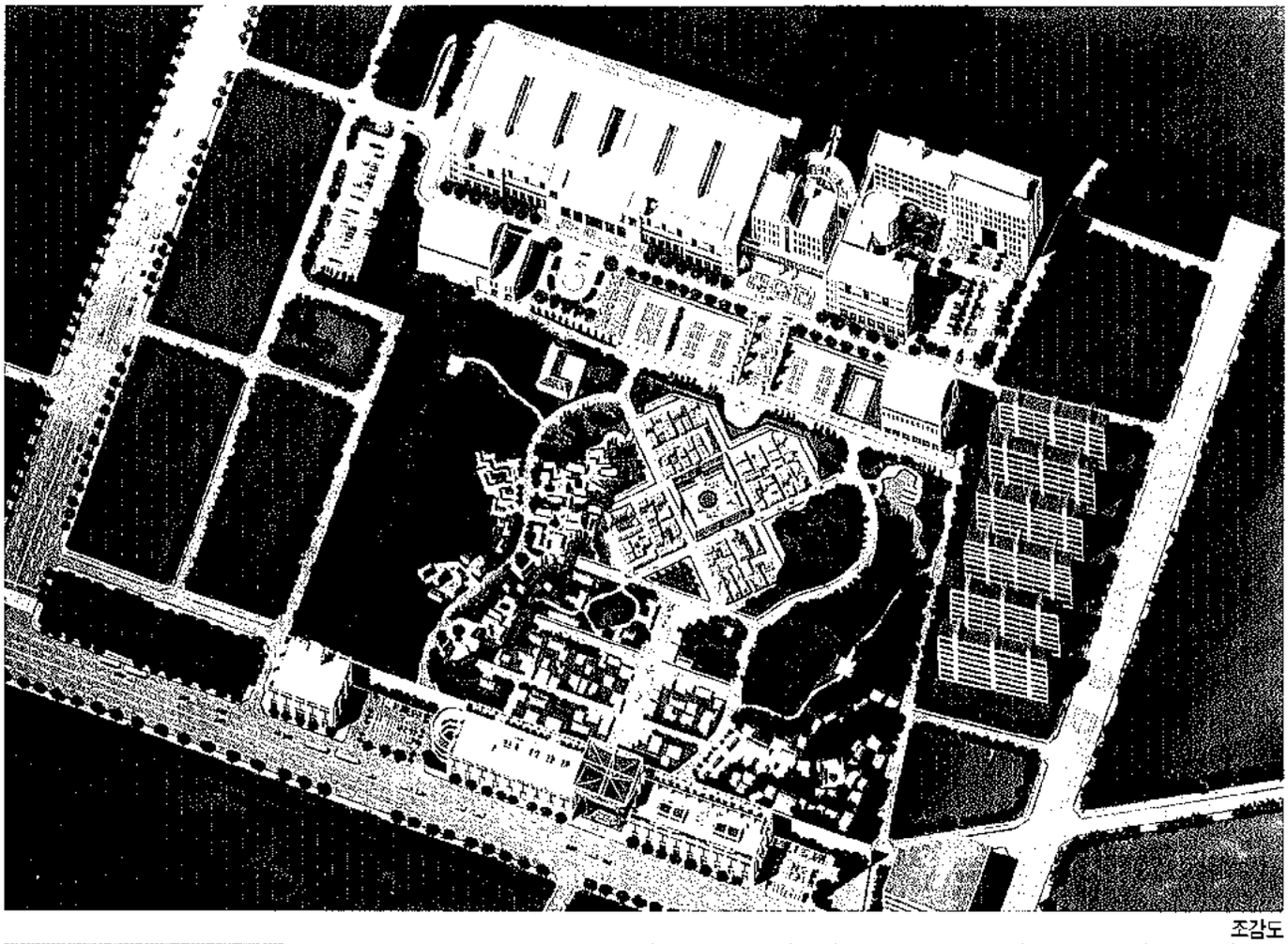

조감도

안산직

희림종합건축(안)
(대표 : 이영희)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55번지외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168,998㎡ (51,120 평)
건축면적 / 24,646㎡ (7,456 평)
연면적 / 66,557㎡ (20,132 평)
건폐율 / 14.5% (법정 : 20%)
용적률 / 34.7% (법정 : 100%)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리스조
주차대수 / 741대(옥내 : 310대 옥외 : 431대)

■계획의 전제

1. 계획의 배경
- 급변하는 미래 방송환경에 대비하여 첨단 종합방송 제작공간의 필요성 대두
-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프로그램 제작의 수요증대로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
- 기존 여의도 본사의 기능을 분담하는 제2본사로서 수원드라마센터 건립 절실
-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 방송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최고의 종합방송 타운의 필요성 대두

2. 계획의 목표
- 합리적 건축계획을 수립 방송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계획
- 각 시설 및 기능공간의 다양화로 첨단 종합방송 제작공간을 충족
- 방송센터 일반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지원시설을 갖춤
-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고려한 합리적 기능동선처리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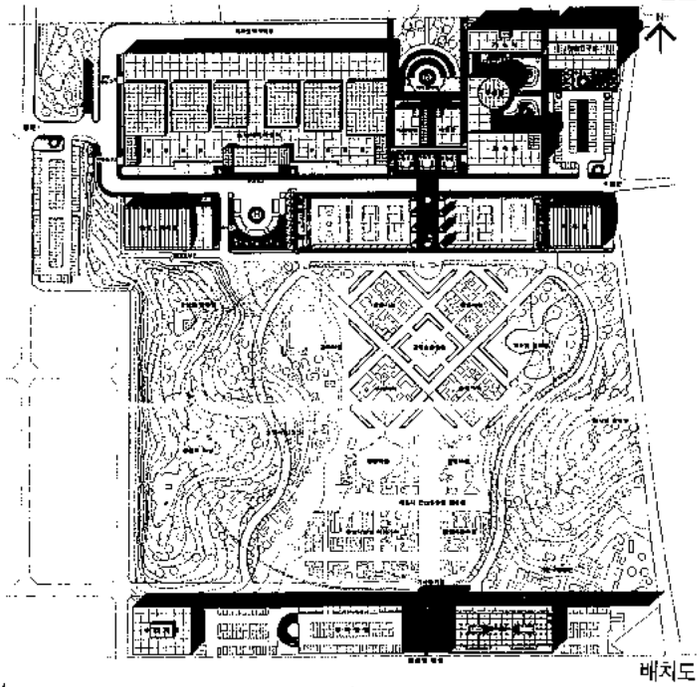

배치도

■드라마 제작 센터

1. 기본개념
- 전시설물의 촬영 장소화
- 스튜디오와 제작지원 시설간의 원활한 동선 처리
- 증가하는 미래 방송 수요에 대처
- 첨단화에 따른 공간의 융통성 고려
- 출연자 보호를 위한 SECURITY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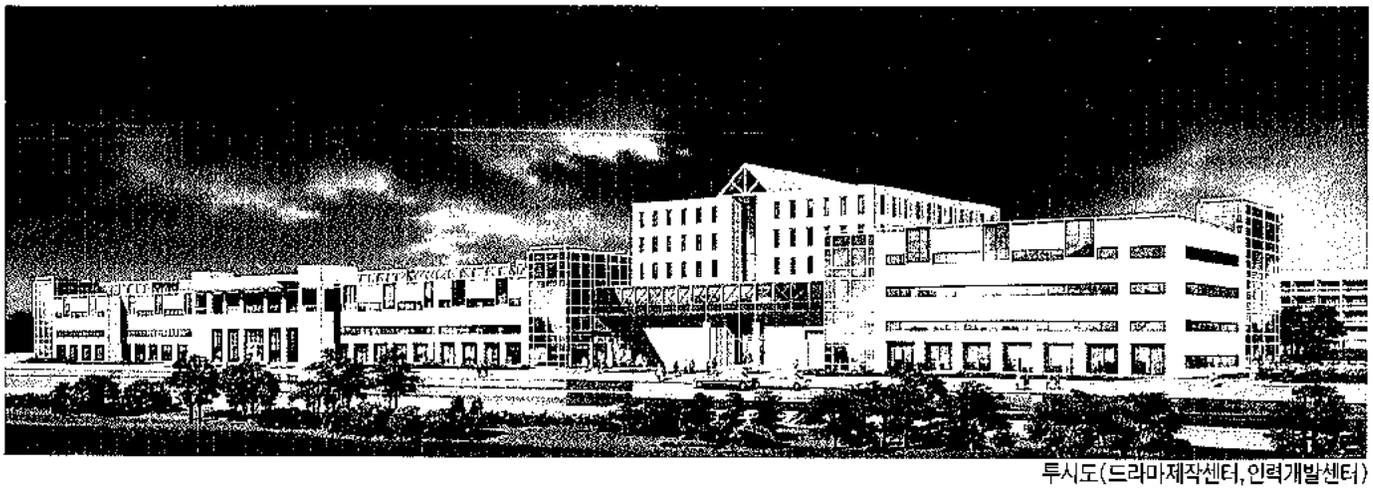

투시도(드라마제작센터, 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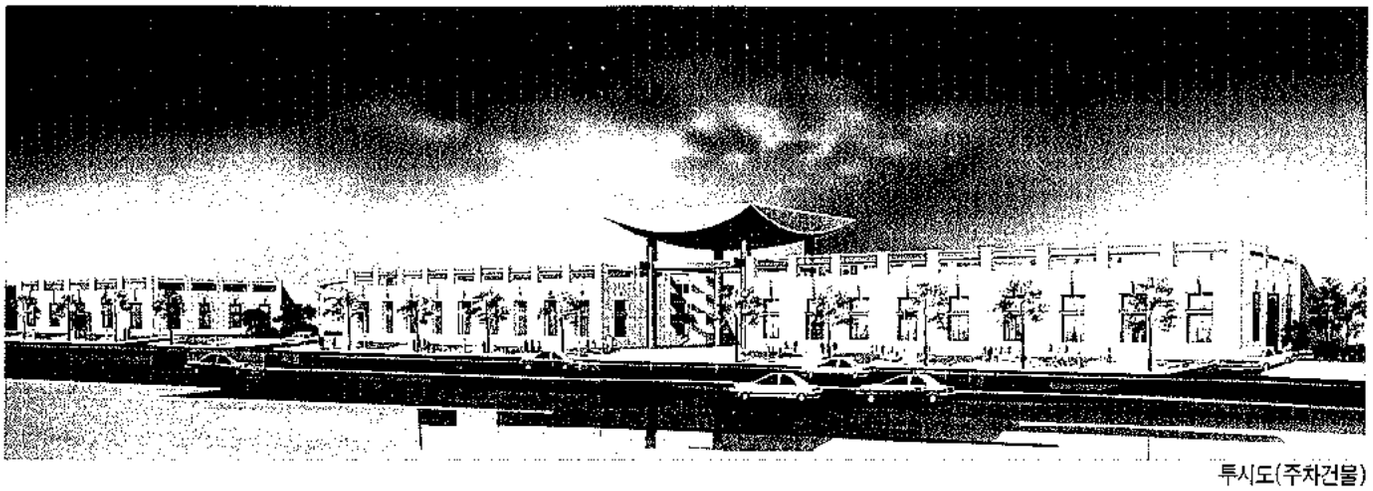

투시도(주차건물)

2. 방향
-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와 촬영 스튜디오의 분리
- 스튜디오와 출연자 및 제작진 간의 동선단축
- 스튜디오와 야외오픈셋트 시설과의 동선단축
- 스튜디오와 지원시설간의 소모품 및 셋트 반입 반출이 용이한 기능을 고려
- 제한된 구역의 관광 및 견학 통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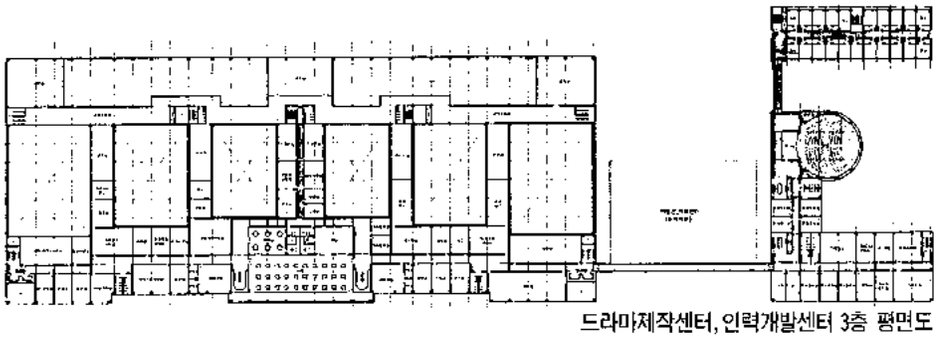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인력개발센터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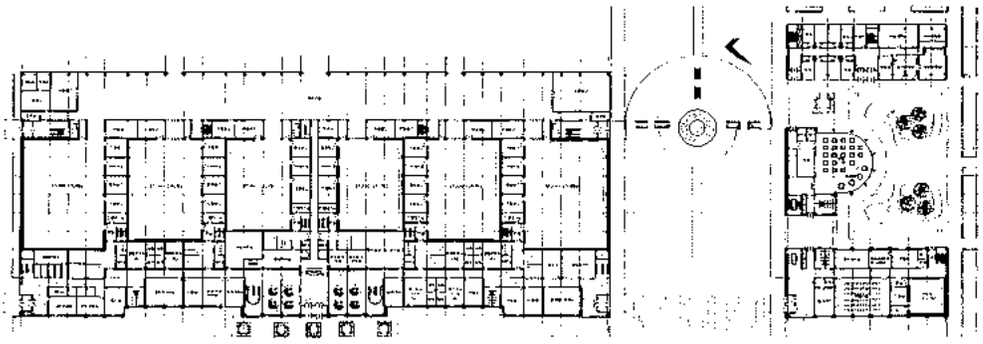

드라마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 1층 평면도

■인력 개발 센터(연수원)

1. 기본개념
- 효율적 연수교육공간의 창출로 교육 효과 증대
- 인성교육과 자기 철학을 재인식하는 장소로 제공
- 재창조를 위한 휴식의 장소 제공

2. 방향
- 타기능 시설과 엄격한 분리로 독립성 유지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
- 공유가능한 시설은 타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 관리
- 각 기능 공간의 명확한 동선계획
- 장래 연수 인원의 증가에 대비하여 증축고려
- 숙소 계획시 촬영의 다양화를 위한 공간계획

■주차건물

기본개념
- 각 시설별 무속주차를 주차건물에서 해결
- 오픈셋트의 지원기능으로서 Set 창고 및 관리시설 확보
- 촬영 차량기지를 수용하여 드라마 제작을 지원
- 관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방송센터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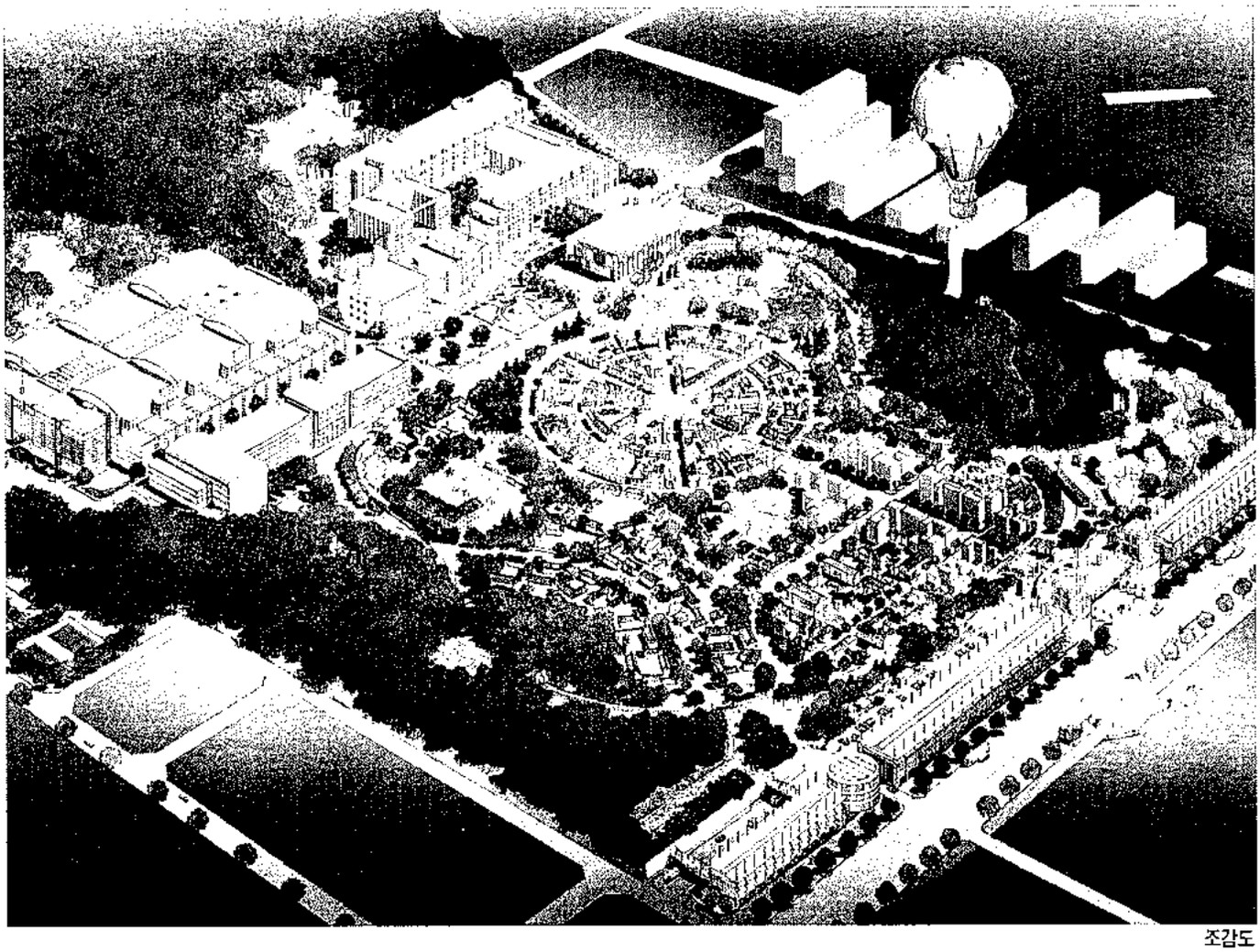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55번지

대지면적 / 168,998㎡

건축면적 / -드라마제작센터/46,149㎡
-인력개발센터/11,041㎡
-주차건물/10,368㎡

■ 계획원칙

-계획대지 자연조건의 적극적 보존 활용/기존구릉 및 수림→차음, 차경 기능/연계된 공원의 적극적 수용

-계획된 전시설물의 촬영 대상화/외부공간 세트화→시설 외부 조형 마다 주제거리 설정

-증축시설에 대한 고려

■ 드라마 제작센터

-배치계획 : 서측을 주출입구로 하여 전면에 사무공간 전진배치하고 스튜디오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양립배치하였음.

-평면계획 : 스튜디오를 지원시설들이 둘러싼 형상으로 기능지원 동선을 최소화함.

-입면계획 : 전 시설물 촬영장화를 수용하면서 현대사 거리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세트구조를 건물에 부착함.

-단면계획 : 기능적 평면 구성이 놓치게 되는 공간의 개방성을 실내 아트리움을 제공함으로서 갖는다.

■ 인력개발 센터

-배치계획 : 중정을 중심으로 숙사동, 교육동, 관미동, 실습동으로 기능분화 하지만 동선으로 연결함.

-평면계획 : 각 Unit의 개별기능을 존중하면서 실기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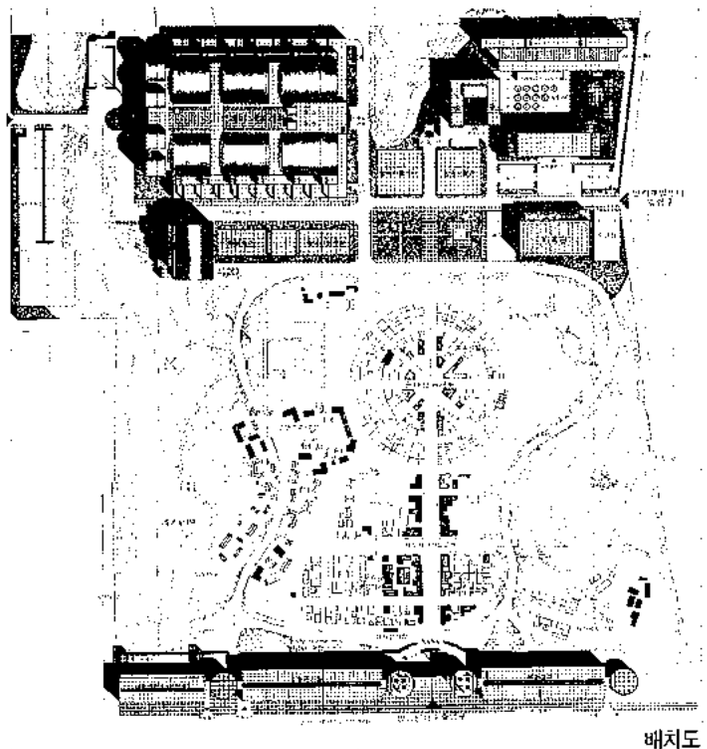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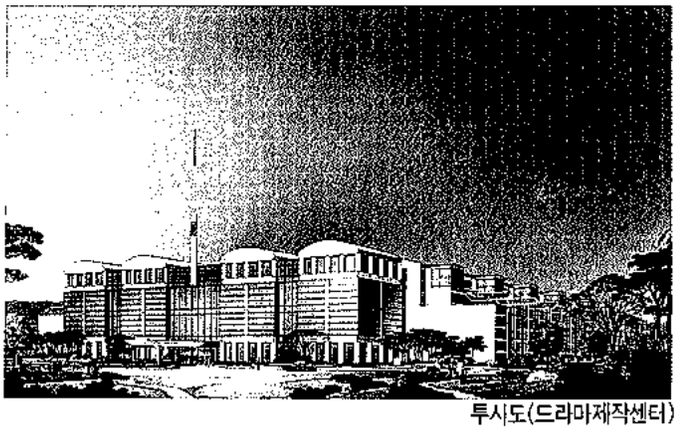
투시도(드라마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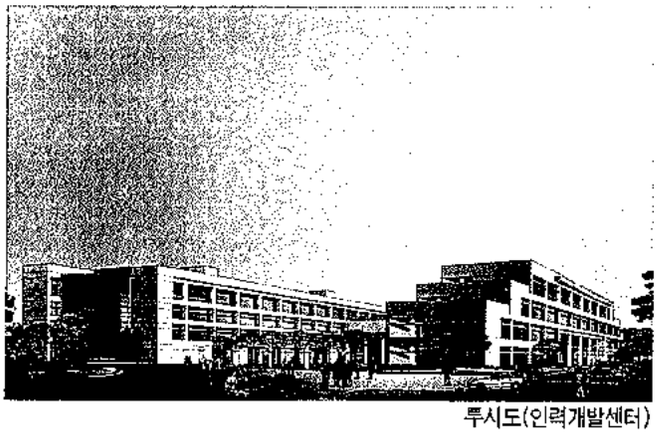
투시도(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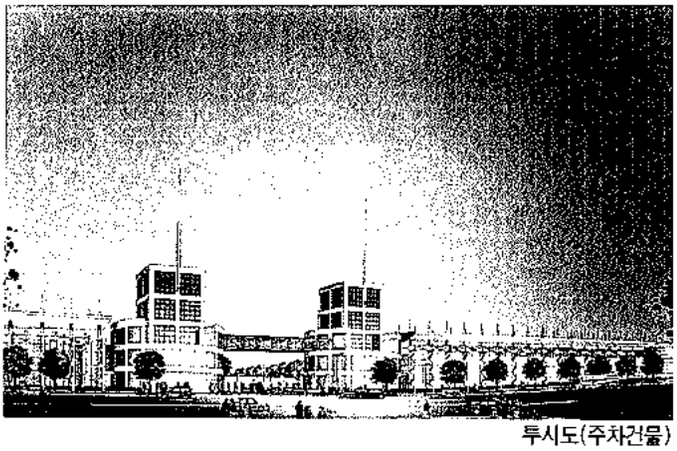
투시도(주차건물)

인력개발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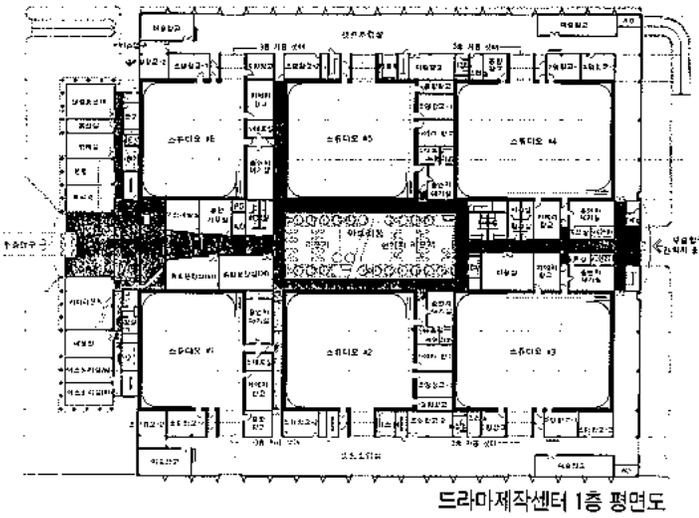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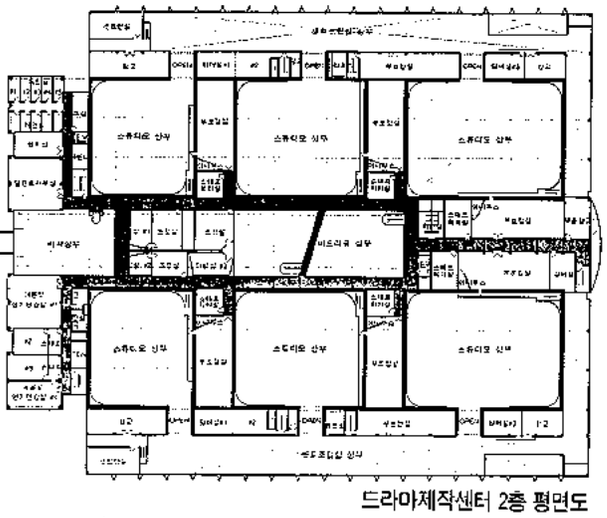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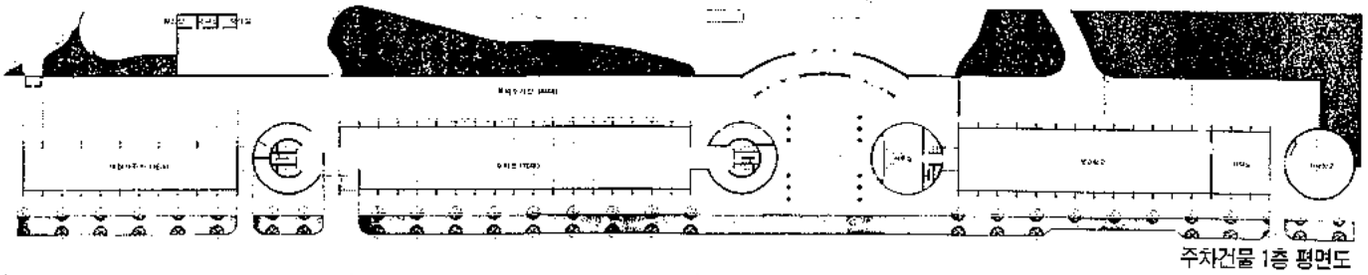
주차건물 1층 평면도

후생시설등의 프로그램내에서 물리적으로 해결함.

-입면계획 : 실내의 개방적이고 동적 분위기는 외부조형이 중후한 석조 조형으로 조율하고 석조건축의 진부함은 수평적 요소를 극복함.

-단면계획 : 동선의 연결을 목적으로 각 기능간의 층고의 균제점 칫수를 배분하고 예외가 되는 강당 등은 최상층으로 두었다.

■주차건물

-배치계획 : 주차, 창고, 제작의 기능과는 별도로 차음, 차경에 목적을 수행하도록 전면도로에 평행하게 배치함.

-평면계획 : 중앙광장은 진입광장의 역할과 함께 상징적으로 제작단지 입구가 되도록 배분하고 Motor Pool은 순환도로의 연속적 위계로 수용함.

-입면계획 : 기능상 최소한 변경을 그램프의 조형으로 수용하면서 각 건물은 동일한 구조시스템을 적용 일관된 조형이 되도록 함.

-단면계획 : 기본적 3개층이 되도록 용적을 갖고 기능별 요구에 따라 천정고를 변화함으로써 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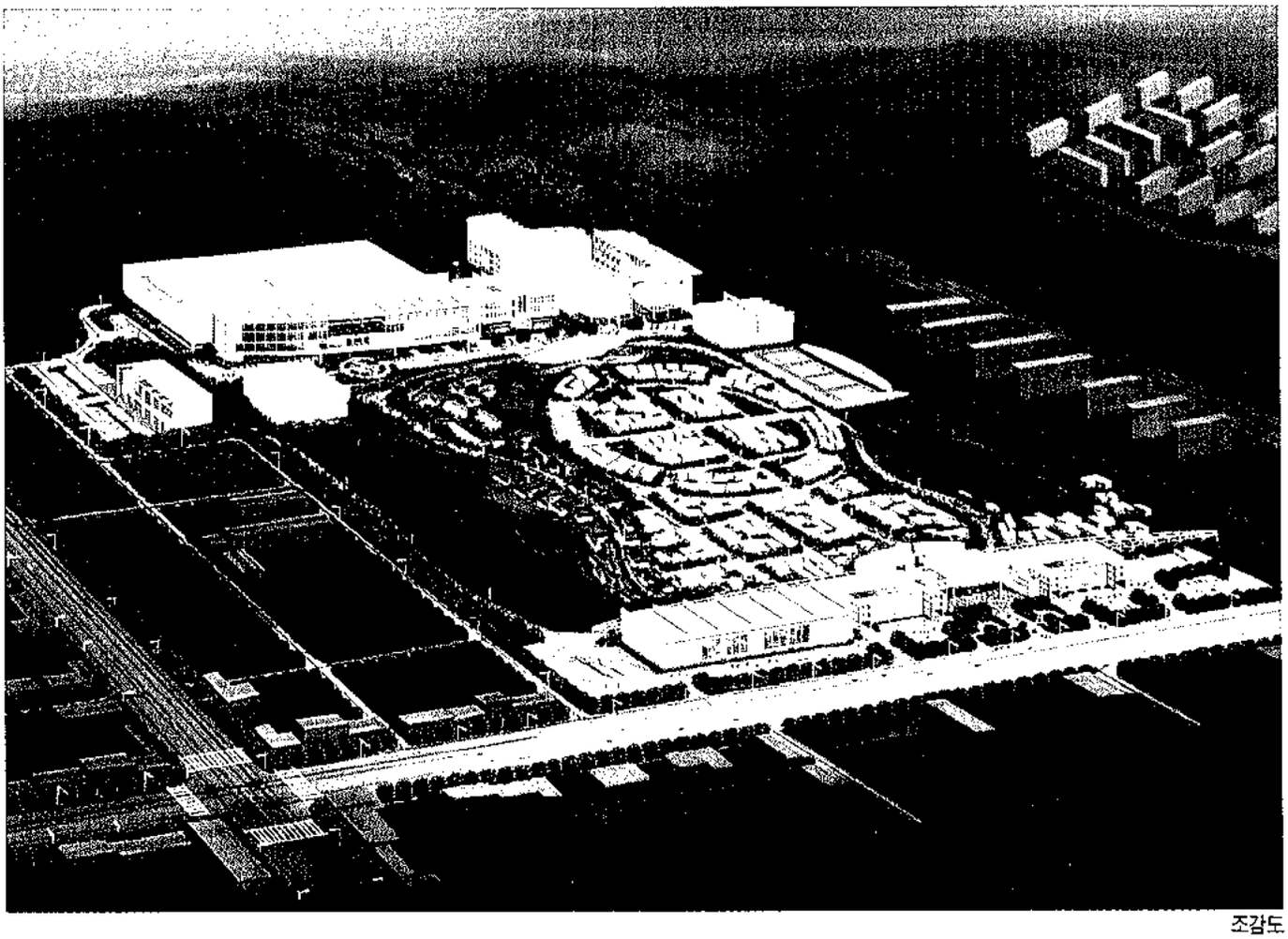

조감도

일신적

(주)건우사종합건축(안)
(정종률+정상모+공순구)

대지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55번지외
지역지구 / 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166,998㎡(51,120평)
건축면적 / 26,958.09㎡(8,169.12평)
연면적 / 69,090.31㎡(20,912.27평)
드라마 센타 : 45,408.29㎡(13,735.9평) 촬영스튜디오 포함
인력개발센타 : 13,240.9㎡(4,012.4평) 체육관 포함
주차건물 : 10,441.10㎡(3,163.97평)
구조 / 철골콘크리트/철골구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 주차건물 : 299대/기타 옥외 : 282대
주요 외장재료 / 알루미늄 복합판
설계담당 / 조성철, 유근록, 이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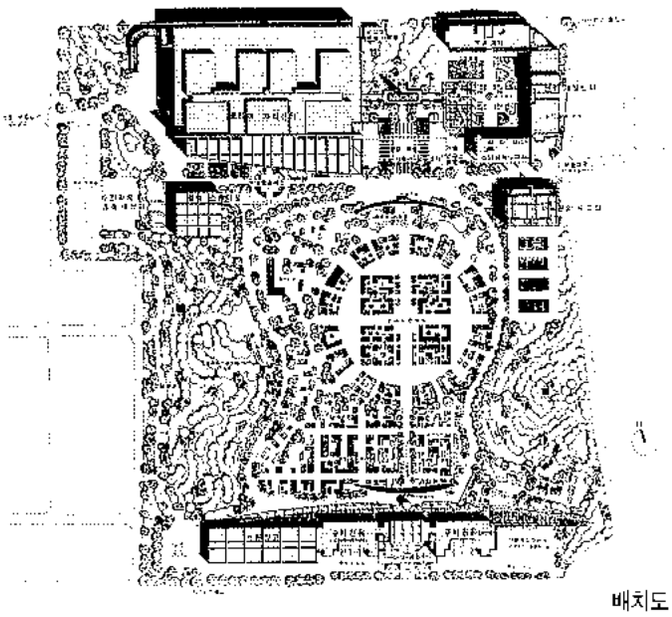

배치도

□계획의 전제

KBS 수원방송센타는 급변하는 미래 방송환경에 대비한 첨단 종합방송 제작공간을 조성. 2000년대 방송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키 위한 종합방송타운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드라마 제작시설을 포함하여, 방송자료시설, 방송인의 교육시설, 방송기술연구시설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들 기능이 상호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운영될 때, 명실 상부한 종합방송타운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여건상 단계적으로 건립할 시에는 종합배치계획과 종합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된후 순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즉, 향후 사정에 따라 증축한다는 개념이 아닌, 종합계획하에서 증축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완공됐을시 본래의 목적인 종합방송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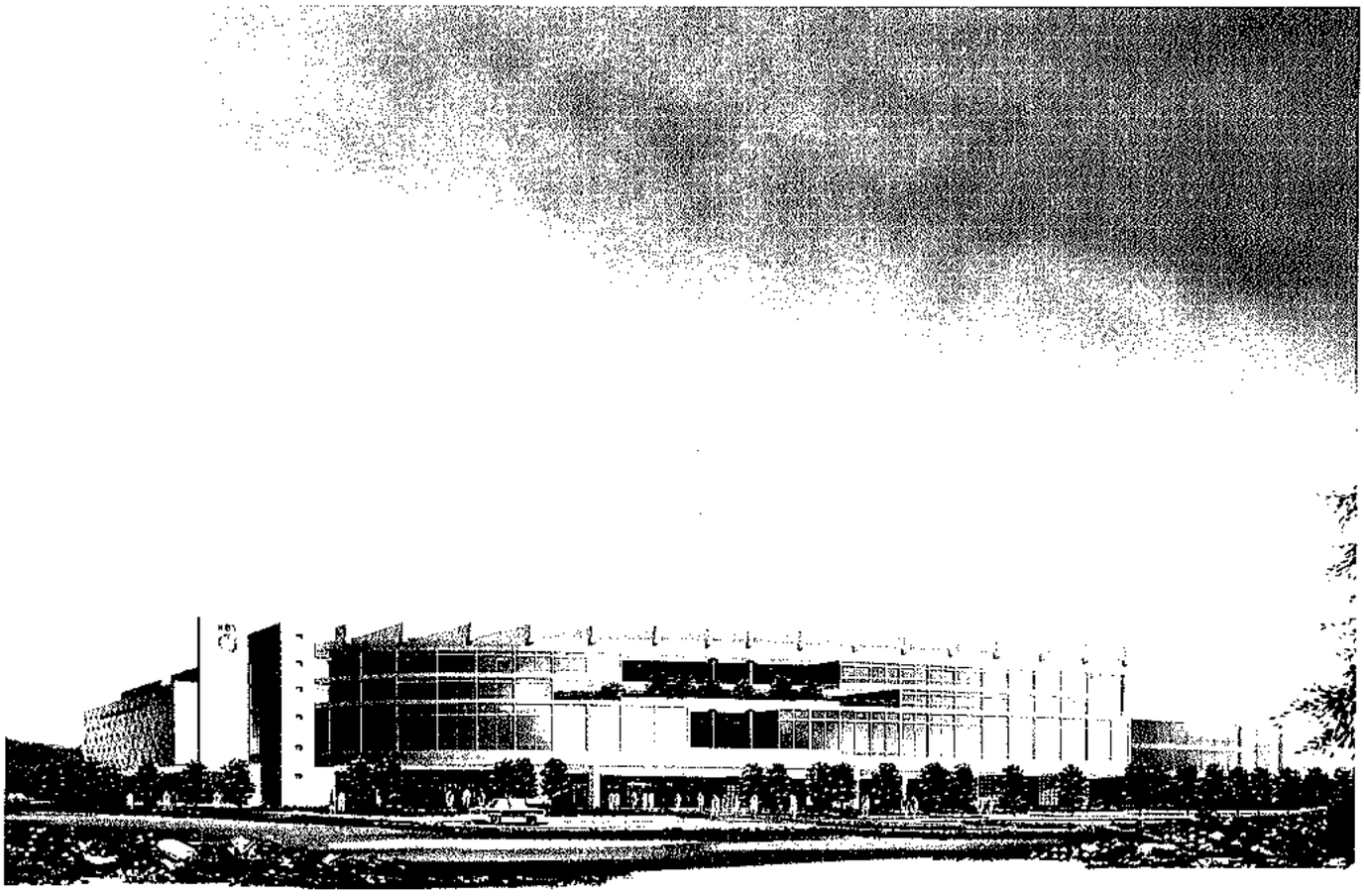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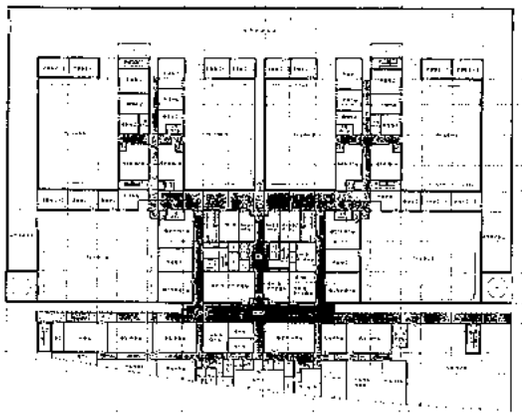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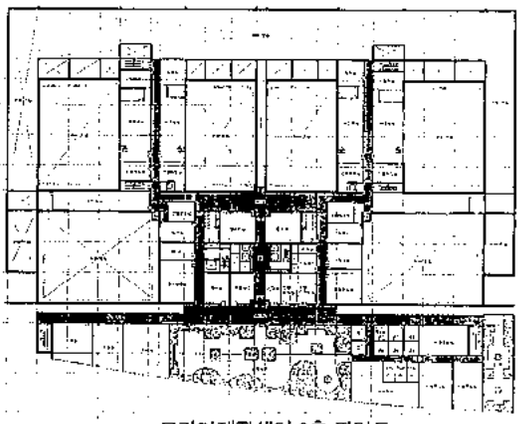

드라마제작센터 3층 평면도

투시도(드라마제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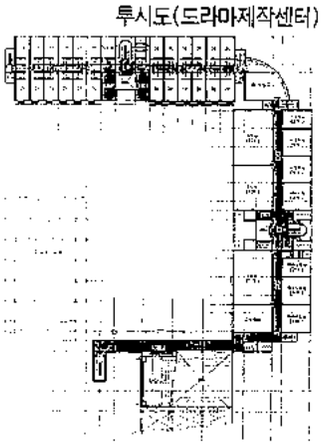

인력개발센터 2층 평면도

이다.

기존의 드라마센타, 혹은 방송국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방송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개방하며 새로운 개념의 방송문화 창달에 시민이 동참, 기여하는 방송센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드라마는 뉴스, 교양프로등 방송제작물을 생산해 내는 단순한 공장개념의 방송국이 아니라 방송문화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송국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기존의 방송공사 이미지에서 개방적이고, 친숙하고 진취적인, 국민속의 진정한 방송국이어야 한다.

□배치기본 계획

- 자연지형을 최대로 보존활용
- 시설의 집중과 분산화
- 전체 마스터 플랜 하에서 중축고려한 1단계 계획
- 시설물의 촬영셋트화(탈착시스템)
- 외부공간의 위계화 및 오픈셋트장의 관람명소화
- 주간선도로의 차음차경용 주차건물 설치
- 야외셋트장과 건물 사이의 호리존트설치
- 기존 마스터 플랜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경제적, 시간적 낭비 줄임
- 도시축, 자연축 고려한 중심축 설정 상징성 강조
- 단지계획상 Grid System도입 설비하부시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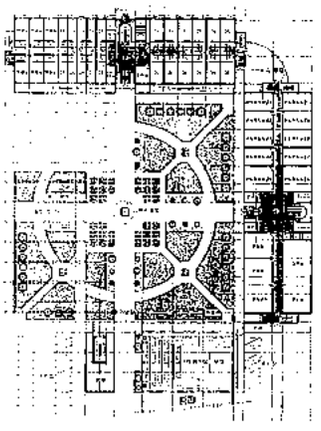

인력개발센터 1층 평면도

영국의 건축(1)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

- 18세기~현재 -

金龍昇/한양대 건축공학과 강사
by Kim, Yong-Seung

1. 머리말

본 글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영국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다. 20세기 초반에 전세계의 건축을 지배했던 근대주의 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던 여러건축 이론이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영국 하이-테크의 건축가들이 세계의 이곳 저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건축을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연구대상의 학문으로 접근시킨 것도 영국의 건축이론가들이었다. 본 글은 이처럼 건축이라는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국의 건축, 특히 그것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영국만이 지니는 특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8C의 고전주의의 부활에서부터 현재 영국건축의 실상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신사의 나라,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 황태자, 다이아나 황태자비 등의 왕실에 관한 이야기, 2차대전 당시의 처어칠경, 최근의 수상이었던 대처여사 등의 세계적 인물들 등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을 전공하며 평생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축과 학생과 건축가들의 영국건축에 관한 정보나 교육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일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영국건축—물론 건축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근대주의 건축을 공부할 때 나오는 윌리암 모리스와 그의 집이었던 Red House, 영국 글라스고우의 건축가 맥켄토쉬, 최근에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제임스 스털링,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그리고 해체건축을 하는 자하 하디드 등이 영국 건축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학생들의 반응은 "아! 제임스 스털링이 영국 사람이었나? 자하 하디드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나?" 등의 웃지못할 것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에 편향된 우리 건축교육의 결과는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면서 이러한 제한된 건축이야기의 영역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글을 쓰고자 한다.

우선 본 글은 3회에 걸쳐 연재될 것임을 밝혀두며 따라서 전체의 줄거리를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전체줄거리의 시작은 유럽전역에서 시각과 감각에 호소하며 부흥했던 바로크양식이 막을 내리고 고전주의 양식이 부활하기 시작했던 18세기부터이다. 첫 부분, 즉 이번 호에서 다룰 기간은 편의상 18세기부터 근대주의 운동이 태동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되겠다. 이 기간동안의 영국건축은 유럽대륙의 건축과는 다른 영국만의 전통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유럽대륙과 미국에서 번성할 근대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근대건축운동의 시작부터 최근의 다원적 건축 이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이 기간동안에는 유럽대륙이나 미국의 건축발전보다는 미흡함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의 2차세계대전 전후의 상황에 따른 독자적 건축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현재의 상황을 조명하고자 한다. 즉 이떤 특정한 건축양식의 추구에서 탈피하여 다원적 건축양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영국 건축을 소개한다.

2. 팔라디오양식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던 바로크 양식의 종말은 점점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는 시각적, 감각적 효과의 추구에서 기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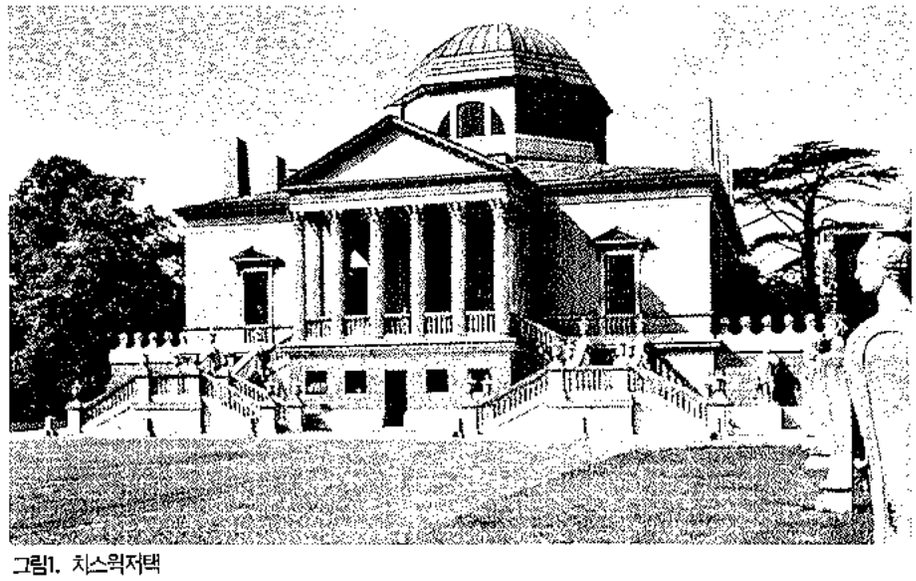

그림1. 치스윅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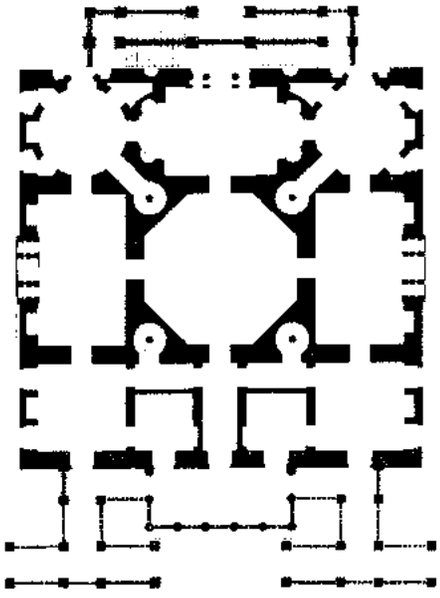

그림2. 치스윅저택 평면

그림3. Assembly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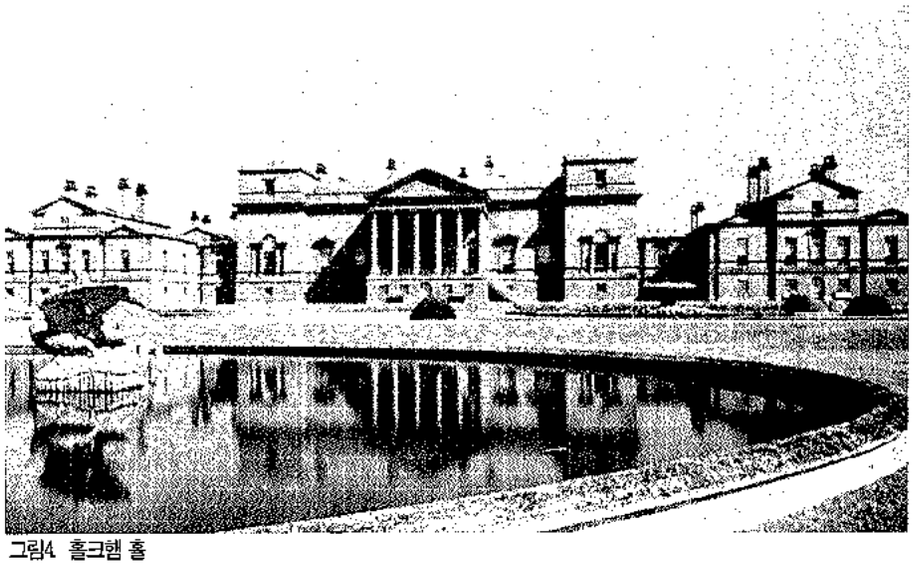

그림4. 홀크햄 홀

바로크 양식 자체가 갖고 있던 문제점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발생되었던 변화들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철학에서는 이성주의 이론이 나타나 발전하게 되었고 음악이나 시에서는 규칙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학에서는 그리스와 라틴고전들이 새로운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모든 예술분야에서 분명한 법칙과 원리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바로크 양식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에서도 우아함, 순수함, 정확함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면서 예술적인 건축가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많은 학자나 귀족들이 로마나 그리스건축들을 공부하기 위해 소위 Grand Tour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Grand Tour의 한 결과로서 1715년에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팔라디오의 저서 "I Quattro Libri"의 영어 번역판과 캠벨의 "영국의 비트루비우스"가 그 것이다. 이 두 권의 고전양식에 관한 책은 영국에서 바로크 양식의 종말과 고전주의 양식의 부활을 예고하였다.

이와 함께 캠벨(C.Campbell, 1676~1729)과 벌링턴경(Lord Burlington, 1694~1753)에 의해 선도된 일련의 건축가들이 바로크 양식의 사치스러움으로부터 영국 건축을 순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전의 비트루비우스, 팔라디오, 이니고 존스 등의 건축을 모방하면서 고전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이가운데 영국만의 독특함을 나타내고 주목을 끄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건축과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08~1980)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팔라디오 건축양식이 활발히 발전되었다. 이러한 팔라디오 양식의 새로운 개발은 영국 건축이 유럽대륙의 신고전주의 건축에 기여한 커다란 공헌이었다.

팔라디오 양식의 대표적 예로는 벌링톤경이 디자인한 런던근교에 위치한 치스윅저택(Chiswick House, 1723~1729)에 있다.(그림 1) 이 저택의 이태리 비첸차근처에 있는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다(Villa Rotunda)를 모델로 삼았으나 평면(그림 2)을 보면 로툰다의 공간들보다 그 모양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가장 다양하고 돋보이는 공간구성은 이 건물의 뒷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의 반원형 벽감을 가진 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쪽에는 원형의 공간, 다른 한쪽에는 팔각형의 공간이 각각 면해있다. 이처럼 모양이나 크기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평면구성은 이후 영국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담(Adam)의 작품세계에 깊숙히 작용하고 있다.

벌링톤의 현존하는 공공 건물로는 요크에 있는 Assembly Rooms(1731~1932)이 있다.(그림 3) 이 건물의 형태구상은 팔라디오의 책에 연회나 페스티발에 적당한 건물로 설명되어 있는 비트루비우스의 '이집트 홀'을 재건하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건물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원리와 팔라디오의 드로잉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벌링톤은 이것들을 당시의 용도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각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벌링톤의 집에서 머물면서 건축 훈련을 쌓은 윌리암 켄트(William Kent, 1865~1748)은 자연적으로 팔라디안양식을 추구하며 명성을 넓혀갔다. 영국 특유의 팔라디안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켄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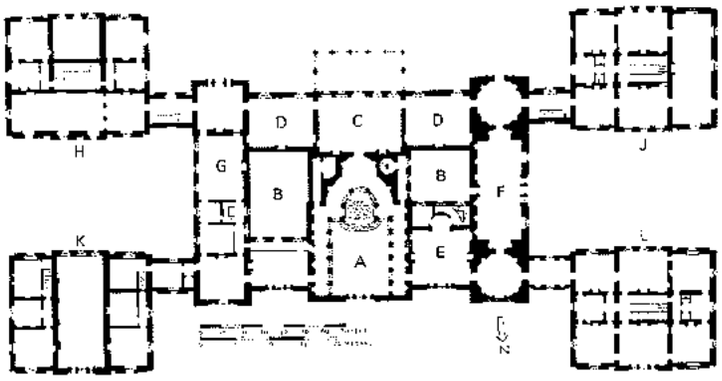

그림5. 홀크햄 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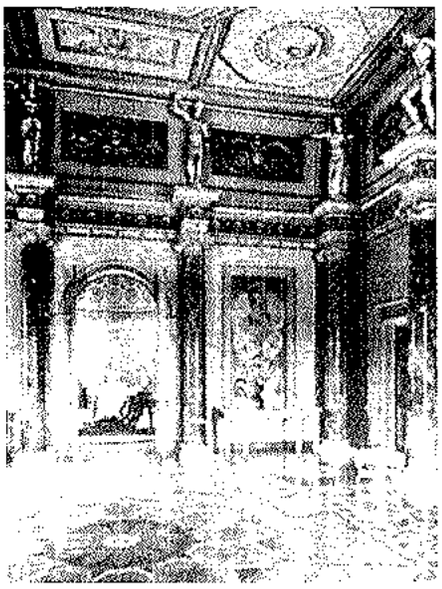
그림6. 시온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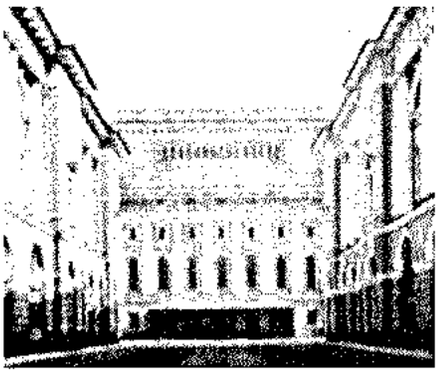
그림7. 로얄 크레센트, 바스(176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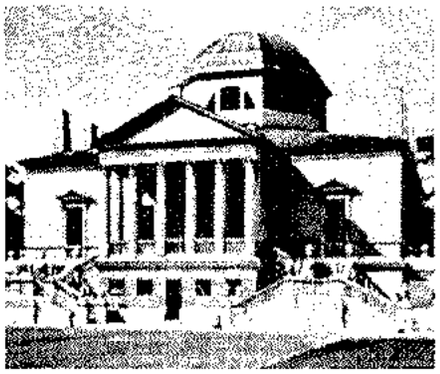
그림8. 바스의 전경

홀크 햄 홀(Holkham Hall, 1734)은 삽화적이고 딱딱 끊어지는 듯한 공간구성과 전체건물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독립성은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유연함에 대한 벌링톤의 반발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4,5) 이 건물의 내부는 매우 다양하고 색채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르네상스시대의 팔라디오나 당시의 건축가들이 고전주의 건축을 모방할 때마다 당면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즉 외부의 건축형태는 Grand Tour를 통하여 본 로마와 그리스의 폐허나 책을 통하여 접할 수 있었지만 그 건물들 내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켄트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독창적인 내부장식을 창조하였는데, 이것은 18세기초에 지어진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의 내부디자인에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로버트 아담(Robert Adam, 1728~1792)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시대인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낭만주의, 고전주의 고딕주의 등의 양식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이태리 로마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고대로마와 르네상스의 건축을 공부하였다. 그의 저서 'Works in Architecture'에서는 딱딱하고 독선적인 건축원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움직임, 다양성, 즐거움의 건축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팔라디오 양식의 지나친 딱딱함, 엄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영국 전통의 픽처레스크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반브러(Vanbrugh, 1664~1726)의 작품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로마시대의 폐허들을 공부하면서 당시의 동료 건축가들을 위해 고대건축의 실내장식에 대한 정보도 축적해 나갔다. 특히 고대로마의 공중목욕탕에서 볼 수 있는 기둥으로 이루어진 간이벽, 반형의 돔 등에 의해 방들을 신비롭게 장식하였다. 그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대조되는 모양과 크기의 공간들을 나란히 배치 시킴으로써 공간적 드라마와 복합성을 창조하려 노력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런던근교에 있는 그의 시온저택(Syon House, 1762~1769)(그림 6)과 오스털리 공원(Osterley Park, 1763~1780)을 보면 이러한 건축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3. 픽처레스크 운동

위에서 살펴본 18세기의 고전주의 건축의 부활, 특히 팔라디오양식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나 타운계획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18세기 초기유럽의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발전해온 도시계획이 영국에서는 작은 규모로 주위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보다 편안함을 주는 타운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비형식성은 왕권, 귀족, 중산층간의, 균등성을 지닌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이어져 내려오는 영국건축 전통의 생명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 마을이나 농장은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18세기초부터 많은 건축가들이 고전주의 양식에 기초한 디자인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노력은 영국의 마을이나 도시의 풍경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같은 이름의 아버지와 아들인 우드부자(J.Woods, 1704~1754, 1728~1781)는 1727년과 1780년 사이에 온천과 기쁨의 도시인 바스(그림 7,8)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첫째 그들은 영국의 거리와 광장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영국의 테라스주택을 개발하였다. 둘째 서커스와 로얄 크레센트에서 도시계획사에 길이 빛나는 작품으로서 조화가 있으면서도 대조를 이루는 도시공간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공간의 요소들이 픽처레스크 운동과 접합하며 발전을 계속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존 나스(John Nosh, 1753~1835)의 런던 레전트공원에서 성 제임스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계획이다.(1812~1827)(그림 9)

여기서 픽처레스크 운동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영어의 "Picturequc"라는 단어는 원래 이태리의

"Pittoresco"라는 말에서 기인한다. 그 본래의 의미는 "화가들의 방법을 따라서"이다. 픽처레스크라는 단어자체가 그 의미를 전달해 주듯이 자연을 볼 때 일련의 그림과 같이 감상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는 위에서 보듯이 많은 귀족이나 건축가들이 그랜드 투어라 하여 프랑스나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영국에 전달되었으며, 이 단어는 앞에 대문자 P가 붙어 하나의 고유한 이론체계로 발전하면서 시각적 철학으로 그 개념이 격상되었고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졌다. 건축의 경우 픽처레스크의 개념이 여러가지 건축양식보다 우위에 서서 작용하게 되었다. 즉 건축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체 풍경을 위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게 되면서 건축물들은 회화적으로 고려되어졌다. 즉 건축적 디테일, 건축계획 등은 주변풍경에 대한 계획에 부속되게 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러한 이론은 건축드로잉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각각의 건축물을 풍경의 일부로 여기는 관습은 영국의 지방이나 도시풍경의 불규칙한 그리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픽처레스크 운동을 배경으로 계획된 나쉬의 레전트공원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테라스형식의 대저택들의 열과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빌라들로 계획하였다. 이 레전트공원 밑으로 성 제임스파크까지 이르는 거리에 나쉬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건축형태와 양식을 픽처레스크 전통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이 거리는 전체가 재미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공적인 파노라마를 형성하고 있다.

또다른 픽처레스크 운동의 건축가 존 손(John Soane, 1753~1837)은 고전주의 양식에 "건축의 시학'이라 불리우는 것을 소개하였다. "건축의 시학"이라함은 전통적인 4각형 형태의 방을 유동성의 공간으로 완화시킴과 동시에 돔이나 천장으로부터의 조명에 의해 시적이고 신비스러운 조명효과를 의미한다. 존 손의 대표적 작품인 영국 국립은행(그림 10)은 오랜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건물은 육중하고 창문이 없는 벽으로 둘러쌓여져야만 했다. 이러한 조건은 천창으로부터의 조명을 필요로 하였으며, 방화를 위한 건설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방화조건은 목재나 플라스터로 된 전통적인 천장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그림9. 존 나쉬의 런던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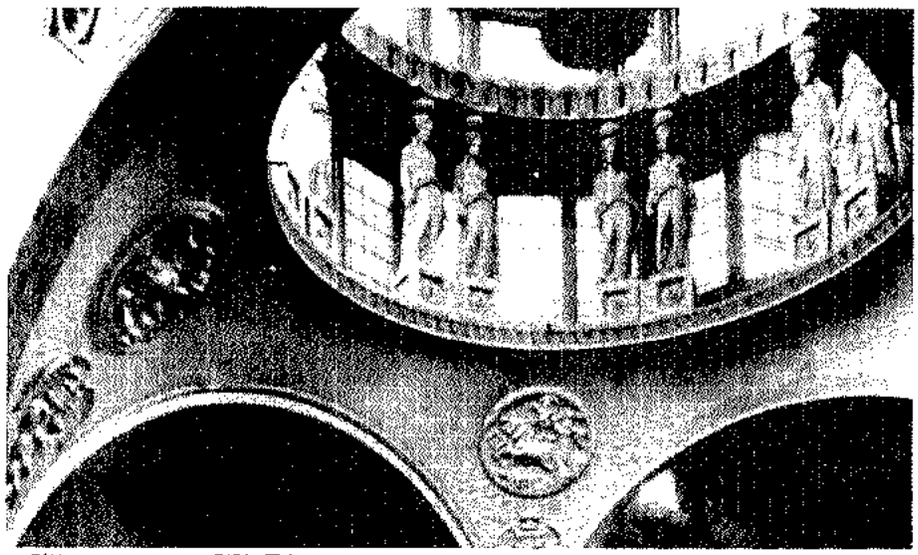

그림10. Bank of England. 런던,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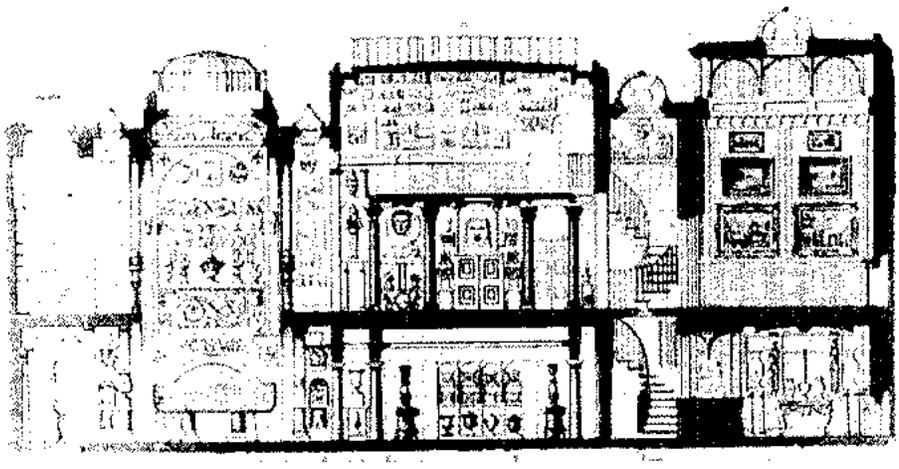

그림11. 존 손의 저택

그림12. 스코트니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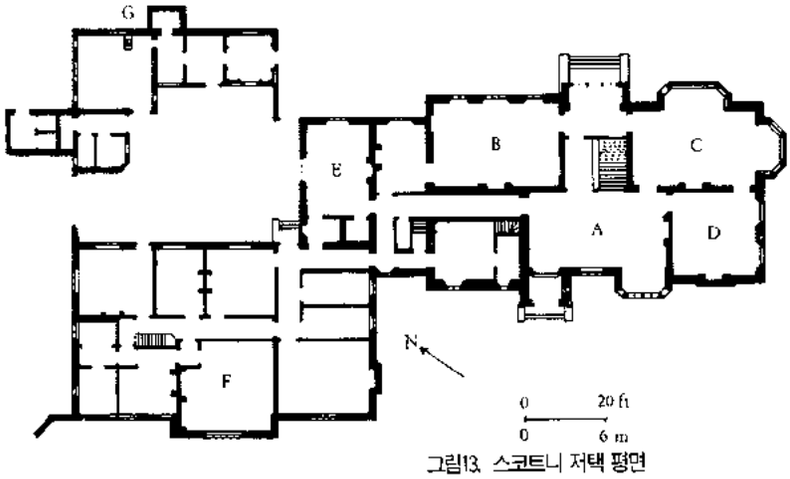

그림13. 스코트니 저택 평면

필요들은 손의 색다른 천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러작품들에서 그는 기능의 전통적 요소들을 기묘한 홈과 잘라진 선들로 대치함으로써 고전건축을 그것의 본질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1792년과 1824년 사이에 손은 런던에 있는 그의 집(그림 11)을 영국 국립은행에서 처럼 부분적으로 고쳐나갔다. 그는 이 집을 개인박물관으로 개축하여 1837년 그가 죽을때 국가에 "건축과 관련된 예술을 위한 박물관"으로 헌납하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건축드로잉, 모델, 그림, 골동품 등 다양한 건축관련품들은 픽처레스크 전통에 입각하여 고의적으로 여러형태의 공간에 산재하여 전시되어있다. 이 공간들은 신비스러움을 자아내는 천장을 통한 조명, 다양하게 변화를 준 바닥차, 거울 등의 수단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그만의 독특한 고전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해석은 그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독립된 직업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새롭게 창조된 개념의 대부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명성은 1834년에 설립된 영국 왕립 건축협회(RIBA)의 초기회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4.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고딕양식의 부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건축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필요되면서 생겨났다. 특히 여러가지의 새로운 건물형태의 등장과—병원, 호텔, 기차역사 등—새로운 건축재료의 등장으로 인하여 건축은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건축으로의 공간적 접근은 수정궁(Crystal Palace)이나 거대한 기차역사, 철교 등을 창조해 내었다.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건축은 영국건축사에서 가장 변화가 많았고 흥미로웠던 기간으로 현재 볼 수 있는 영국건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건축을 특징짓기 시작한 것은 고딕양식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고딕양식의 부활은 퓨진(Augustus W.N. Pugin. 1812~1852)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선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퓨진의 건축이론이나 업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18세기에 발생된 픽처레스크 운동과 더불어 낭만적인 고딕형태나 성의 형태를 지닌 디자인의 오랜 전통이 영국에는 있었음을 밝히고 넘어가야겠다. 당시의 한 예를 보자.

나쉬의 제자였던 살빈(Anthony Salvin, 1799~1881)은 튜더시대의 고딕양식과 엘리자베스시대의 양식을 도입하여 수많은 지방저택과 성들을 디자인하면서 18세기의 픽처레스크 전통과 중세기의 건축에 관한 학자적인 지식을 성공적으로 조합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스코트니저택(Scotney House, 1835~1843)(그림 12,13)은 불규칙한 형태를 지닌 건물로 아름다운 정원속에 세워졌으며, 계곡의 밑에 있는 폐허가 된 옛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창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출입구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당시에는 파격적인 비대칭으로 놓여 있고

굴뚝과 창문들도 그 자체의 기능을 중시여기며 배치시켰다. 이처럼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시도했던 건축접근은 영국이 유럽대륙의 건축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후기의 유명한 영국건축가인 리차드 노만 쇼(Richard Norman Shcaaw, 1831~1912), 에드윈 루티엔스(Edwin Lutyens, 1869~1944)등 많은 건축가들에게 전형적인 영국건축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동안 지속되어온 영국건축의 경험주의적 전통에 색다른 논리를 가미하면서 고딕양식의 부활을 주창한 사람이 퓨진이다. 그의 여러저서들 중에서(1836~1843년 사이에 주로 쓰여짐) 퓨진은 고딕건축은 건축의 한 양식이 아니라 건축의 원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딕양식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였다.

그의 건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건축은 진리일 수도 잘못일 수도 있으며,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정직성이라는 면에서 건축은 구조나 기능을 겉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그 지방의 특색을 지닌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개념은 당시의 카펜터, 스트리트, 버터필드 등을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국교인 성공회의 많은 신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19세기의 전기간에 걸쳐 고딕양식은 당시의 건축에 대한 지적 응집력으로서 부활이 되어 발전하게 되었으며, 퓨진의 건축개념은 19세기를 넘어 20세기의 근대주의 건축에서 제기되는 주요논리들의 배경이 되었다.

퓨진의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예술이나 건축 비평을 지배해온 두가지 기본사항은 예술과 도덕성이었다. 즉 건축의 가치는 그 건축가의 도덕성에 의존하며 건축은 그것의 미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가 당시 영국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던 카톨릭계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던 건축개념에 비해 그의 건축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딕양식에 대한 비전과 건축적 지식, 특히 세부장식에 대한 디테일한 전문지식 등은 영국 국회의사당(Charles Barry, 1795~1860)(그림 14)이 내부장식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다음으로 19세기 영국건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다. 케네스 클락은 "러스킨이 이세상에 없었다면 퓨진의 이름은 지금처럼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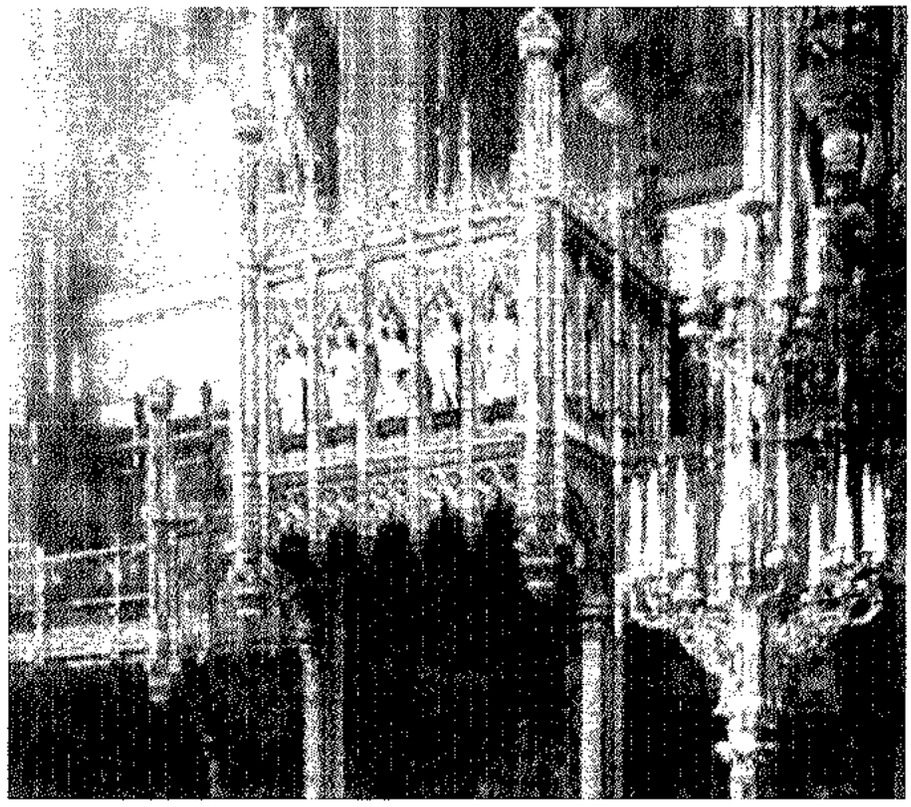

그림14. 국회의사당 내부(House of Lords)

말할 정도로 러스킨의 등장으로 인하여 퓨진의 영국건축에 대한 위대한 업적이 그늘에 가려지게 되었다.

러스킨은 여러글을 통하여 건축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퓨진이 주장했던 고딕건축을 재강조하였으며, 후기에 가서는 사회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세기의 고딕건축뿐만 아니라 중세기의 생활상을 기준으로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러번에 걸친 이태리 여행을 통하여 고딕양식으로는 가장 적게 알려진 이태리고딕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융성했던 프랑스고딕에는 무관심하였다.

그의 건축에 대한 개념을 보면 건물은 일련의 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건축표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표면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여러가지 종류의 대리석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패턴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료본래의 아름다움을 중요시 여겼다.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을 예로들면서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본질은 대리석 표면의 색에 있으며 특히 오랜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건축표면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건축개념은 당시 영국에서 마구잡이로 일고있던 옛 건물들의 중·개축에 강력히 반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주요건물들의 원형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표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는 표면의 장식적 요소로서 조각적인 디테일처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또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보다도 부분 부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더 나아가 각 부분에 독립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건물의 장식은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퓨진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1850년과 60년대에 나온 주장으로 이태리고딕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고딕을 비판하고 나왔는데 이는 당시 건축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빅토리아시대의 영국건축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된 새로운 건축형태들과 재료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축양식의 채택에 있어 퓨진과 러스킨의 건축개념에 의해 고딕양식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거쳐 당시의 대표적 건축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영국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의 팩처레스크전통과 접합하며 발전한 고전주의 건축과 19세기의 산업혁명과 지식인들의 사회적 사상에 의한 고딕양식의 건축을 알아야겠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

(건설부령 제544호, 1993년 12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관리) 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의 현황에 관한 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당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교육이수현황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 등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신규고용
2. 건설기술자의 퇴직 또는 해임
3. 건설기술자의 현장이동
4.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제3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1주이상, 기사1급 및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2주이상으로 한다.

제4조(건설기술자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관련단체(이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기술자교육관련단체(이하 "건설기술교육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이하 "경력사항"이라 한다)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회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 건설기술교육원은 매년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사용계획과 강사현황
3. 교육대상 및 교육비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건설기술교육원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교육원은 분기별 교육훈련실적을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심의평가단의 구성등)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②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중앙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 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④ 심의평가는 당해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의 준공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제6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상망의 연결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의 수립)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2. 연구추진계획
3. 연구수행부서 및 관련기관
4.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5. 기타 정부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영 제29조의2제1항 제7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 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사업공제조합

제9조(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공사 분야에서 최근 2년간 5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신기술의 지정신청등)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내용 및 범위(신기술의 세부내용, 도면등을 포함할 것)
2. 개발비용 및 기간 산출근거
3. 활용현황 및 활용계획
4.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5.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신기술의 실용화가능 입증자료
7.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등의 자료
8. 기타 신기술에 관련되는 자료

③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토기간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설기술의 검토기관)영 제33조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영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3조(용역업자의 선정)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인 내지 6인
2. 5억원이상(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인 경우에는 2인 또는 3인

②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할 사항 및 평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3. 도로건설공사. 다만, 터널이나 길이 200미터이상인 교량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축조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상하수도시설공사.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만톤이상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상하수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5. 20층미만으로서 2천세대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임해공단외의 단지조성공사
7.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공종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포장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나. 준설공사
다. 사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라. 단순굴토공사 또는 정지공사

제 5 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제15조(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6조(품질시험의 실시)①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시험대장에 품질시험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시험기준등)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시험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별표2의 기준외에 따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발주자는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4의 검사시험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시험성과관리등)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당해기관의 시험비용의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제20조(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①영 제47조제1항각호의 건설공사를 허가등을 하였거나 발주한 행정기관(이하 "건설공사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품질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한 때에는 3월이내에 별표6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할 건설공사의 개요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1월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의뢰서에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가 이를 부담한다.

⑥ 제4항의 요청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품질시험 적정성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표6의 품질시험적정성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확인을 요청한 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영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원
2.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2조(시정조치결과보고)건설공사허가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생산자등의 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영 제47조의3제4호에서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수입철근
2. 수입 에이치(H)형강

제24조(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영 제4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25조(건설자재의 표준납품서)영 제4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의 표준납품서는 당해건설자재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납품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시험의 실시의뢰등)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시험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시험대행의뢰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시험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시험대행실적 제출)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등)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정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험장비현황(시험장비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사본. 다만,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인이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시험실시대행자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대행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 6 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9조(단순공종 반복공사)영 제50조제2항 제5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제14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30조(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①영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감리용역계약서안(국문)
3.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용역에 종사할 감리원의 명단

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세부사업계획
3. 외국감리용역업무계획
4. 외국감리용역도입의 목적 및 동기
5. 도입기술에 관한 주요내용·공법 등
6. 도입기술의 국내보유현황
7. 감리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8.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9. 당해 용역도입에 따른 기술습득·개량이나 연관기술개발 등
10. 당해 외국감리용역입자의 선정경위·사유 및 선정방법
11.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학력·경력자의 교육훈련등)①영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매 5년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감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력·경력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학력·경력자에 대한 감리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학력·경력자는 감리교육훈련기간을 3주이상으로 한다.

③ 학력·경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학력·경력자의 감리교육훈련의 대행,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방법)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

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①감리전문회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감리원의 업무등)①영 제52조제1항 제1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분기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7.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영 제54조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설관련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감리전문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2.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술자 및 학력경력자현황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 사항 확인서. 다만, 학력경력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력증명서와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당해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증)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휴업·폐업)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 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의 감리원을 충원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등록증의 게시등)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41조(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의 인적사항 및 부실감리내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공사기준을 유상 보급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 7 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세부적 업무내용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4조(준공표지판의 설치) ①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중 건설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에는 공사명·공사기간·시공회사와 현장대리인·감리전문회사, 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 공사발주기관 및 설계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제 8 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등

제45조(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준공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중 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공평가총괄표와 공사건별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하자발생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시공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 별로 제45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 한다.

1.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하자발생율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 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최근 3년간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서 국산기자재 사용실적이 외산기자재 사용실적의 2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고,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감산할 것
5. 최근 3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하거나 감산할 것

②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대상 건설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2. 최근 5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최근 2년이내에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 이상이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학력·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이

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건설기술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사업비가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자		5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15) (15) (20)	

구 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일반 기술자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0	○상대평가 -최근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도		10	
	-부정당업자 지정도	(5)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재정상태 건실도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5. 업무량과 여유		10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참업참여 기간 및 건수
6. 전차용역과관련	-전차용역업자	(6)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전차용역 사업책임 기술자	(4)	

2. 사업비가 5억원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자		5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15) (15) (20)	

구 분	배점 합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일반 기술자	분야별 일반 기술자
계	50	20	20	10
자격증	15	5	5	5
경력	15	5	5	5
해당실적	20	10	10	-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0	○상대평가 -최근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도		10	
	-부정당업자 지정도	(5)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재정상태 건실도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5. 업무량과 여유		10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참업참여 기간 및 건수
6. 전차용역과관련	전차용역업자 -전차용역 사업책임 기술자	10 (6) (4)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7. 작업계획 및 수행	-수행계획 및 체제 -수행집근방법 및 기법 -보유장비 및 프로그램 등 기타자료	50 (20) (20) (10)	

3. 사업비가 3억원이상인 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자		60	○절대평가(자격증, 해당분야경력), 상대평가(해당분야용역참여실적)
	-자격증	(20)	-현장상주감리원과 본사직원기술자로 구분 평가
	-해당분야 경력	(20)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되 당해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적용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20)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0	○상대평가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3. 신용도		10	
	-부정당업자 지정도	(5)	○절대평가 -최근 3년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없으면(5점), 6개월미만(2점), 6개월이상(0점)
	-재정상태 건실도	(5)	○상대평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부여
4. 업무량과 여유		5	○상대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한 나머지 참업참여 기간 및 건수
5. 전차용역과관련	-전차용역업자 -전차용역 사업책임 기술자	15 (10) (5)	○절대평가 -전차용역시행후 : 3년이내(100%), 3-5년이내(70%), 5-10년이내(50%)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평가는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상대평가시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정한다.

나.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지경력을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실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은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우수용역업자에 대하여는 3 내지 5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사. 부실용역업자에 대하여는 3 내지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아.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용역의 종류별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품질시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토목

가. 선정시험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간 성용흙	함수량	KSF2306	1)토취장마다 2)토질변화시마다	
	입도	KSF2302		
	씻기	KSF2309		
	비중	KSF2308		
	액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실내CBR	KSF2320		필요시
	다짐	KSF2312	필요시마다	
	토질조사(보링)			
동상방지층및 보조기층용재료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302		
		KSF2502		
	씻기	KSF2309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다짐	KSF2312		
	모래당량	KSF2340		사질토
	비중 및 흡수량	KSF2503		굵은골재
	비중	KSF2308		흙
	실내CBR	KSF2320		
	액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마모	KSF2508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용재료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502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잔골재
		KSF2503		굵은골재
	안정성	KSF2507		
	마모	KSF2508		
	연석량	KSF2516		
	점토덩어리함유량	KSF2512		
	200번체 통과량	KSF2511		
	액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배합설계	KSF2329	1)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2)필요시	혼합물
경층용 혼합골재	함수량	KSF2306	1)골재원마다 2)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502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KSF2308		흙
	비중 및 흡수율	KSF2503		굵은골재
	액성한계			
	소성한계			
	안정성			
	마모	KSF2508		
	다짐	KSF2312		
	실내CBR	KSF2320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량	KSF2306	토취장마다	
	입도	KSF2302		
	비중	KSF2308		
	액성한계	KSF2303		
	소성한계	KSF2304		
	다짐	KSF2312		
	투수	KSF2322		
	직접전단	KSF2343		
	3축압축	KSF2346		

(2)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골재	체가름	KSF2502	생산지마다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잔골재
		KSF2503		굵은골재
	단위중량	KSF2505		
	모래의 유기불순물	KSF2510		
	안정성	KSF2507		
	마모	KSF2508		
	염화물함유량	KSF2515		바다모래인경우
물	수질검사		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당해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60	제조회사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적외선흡수스펙트럼	KSM002 4		
콘크리트주입줄눈재	침입도, 흐름, 접착성, 가사시간, 고화건조시간, 회복률, 내열성	시방서 또는 공인규격	제조회사마다	
콘크리트 플랜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품질시험포함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1)공사개시전 1회 2)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F2455		
철근및 강재(아연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제조회사마다	
PC강선 및 PC 강연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D7002	제조회사마다	
PC 봉강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D3505	제조회사마다	
콘크리트양생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40	제조회사마다	

(3) 아스팔트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골재	체가름	KSF2502	1)공사개시전 1회 2)생산지가 바뀔때마다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잔골재
		KSF2503		굵 은 골 재
	마모	KSF2508		
	안정성	KSF2507		
	피막박리	KSF2355		
채움재(석회석분)	입도	KSF3501	제조회사마다	기타석분은 별도 시험방법 적용
	수분	KSF3501		
	비중	KSL5110		
아스팔트콘크리트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배합 마다	아스팔트 품질시험 포함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믹서 성능시험		1)공사개시 전 1회 2)필요시마다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석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18	1)석산마다 2)필요시마다	점멸한암 분류시탄 성파시험 병행
	압축강도, 탄성파	KSF2519		
토목섬유(연약지반용 MAT)	무게측정	KSF2123	1)제조회사마다 2)Q마크 제품은 생략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봉합강도	KSK0530		
	투수	KSF2322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고
	혼용률	KSK0210		감별방법
	재질	〃		
토목섬유(Drain Board)	무게측정	KSF2123	1)제조회사마다 2)Q마크제품은 생략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특수	KSF2322		
	내약품성	KSM3506		
토목섬유(토목용부직포)	무게측정	KSF2123	1)제조회사마다 2)Q마크제품은 생략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봉합강도	KSK0530		
	특수	KSF2322		
	혼용물	KSK0210		
	두께측정	KSF2122		
터널용방수쉬트	재질	기기분석	제조회사마다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신축성상, 신장시 열화성상, 접합인장성능	KSF4911		
	두께측정	KSF2122		

나. 관리시험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고
노체	다 짐	KSF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사용불가
	함수량	KSF2306	포설후 다짐전 2,000세제곱미터 이상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2,000세제곱미터 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층별 450미터마다(층 다짐시) : 2차선기준	
	평판재하	KSF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노상	다 짐	KSF2312	토질변하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사용불가
	함수량	KSF2306	포설후 다짐전 1,000세제곱미터 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1,000세제곱미터 마다(폭이 넓은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평판재하	KSF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액성한계	KSF2303	필요시마다	
	소성한계	KSF2304		
	실내CBR	KSF2320		
	다 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체가름	KSF2302	1,000세제곱미터 마다 1회이상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두 께	KSF2311	1일 1회 이상	
	함수량	KSF2306	1)포설후 다짐전 500세제곱미터 마다 2)필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평판재하	KSF2310	2)층별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톤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5.6kg/cm²이상)통과	1)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 2)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멘트안정처리층	다 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시멘트함유량	KSF2327	필요시마다	
	압축강도	KSF2328	1일1회이상	
	함수량	KSF2306	1)500세제곱미터 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층별 200미터 마다 : 2차선기준	
입도조정기층	액성한계	KSF2303	필요시마다	
	소성한계	KSF2304		
	실내DBR	KSF2320		
	다 짐	KSF2312	재질변화마다	
	체가름	KSF2302	1,000세곱미터마다 1회이상	
	200번체 통과량	KSF2511		
	함수량	KSF2306	1)포설후 다짐전500세제곱미터 마다 2)필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현장밀도	KSF2311	1)500세제곱미터 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2)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평판재하	KSF2310	2)층별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톤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5.6kg/cm²이상)통과	1)기층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다 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F2311	3층마다	
	평판재하	KSF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함수량	KSF2306	1)포설후 다짐전 100세제곱미터 마다 1회이상 2)필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하천제방성토	다짐	KSF2312	재질의 변화시마다	
	현장밀도측정 또는 포화도측정(점질토)		축제는 2,000세제곱미터마다 1회. 다만, 토량이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3회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함수량	KSF2306	강우후 또는 함수비 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량	KSF2306	강우후 또는 함수비 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가능
	다 짐	KSF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F2311	1)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2)매층마다 3)용, 배수로의 간선은 연장 200미터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 고
			마다	
	투 수	KSF2322	필요시마다	
흙댐의 중심점토	함수량	KSF2306	토량 300세제곱미터 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다 짐	KSF2312	토질변화시마다	
	현장말도	KSF2311	1)토량3000세제곱미터마다 2)매층마다	
	투 수	KSF2322	필요시마다	

(2)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 고
시멘트 (포 틀랜트시멘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5201	제조일부터 3월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0톤 마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60	1)회사별 반입시마다 2)3월 이상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서
	적외선흡수 스펙트럼	KSM0024		
골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1)최대 치수별 1000세제곱미터 마다 2)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 마다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마다	잔골재
		KSF2503		굵은 골재
	200번체 통과량	KSF2511		
	모래의 유기불순물	KSF2510		
	마모	KSF2508		
	안정성	KSF2507		
	염화물함유량	KSF2515	바다모래 50톤 마다	
	체가름	KSF2502	산지별, 화대 채수별 1일 1회이상	
	표면수량	KSF2509 KSF2467	1일1회이상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	현장배합수정		아침작업개시전	
	슬럼프	KSF2402	1)배합이 다를 때마다 2)1일 1회이상	
	공기량	KSF2421	AE제 사용시 1일 1회이상	
	온 도		필요시마다	도로포장, 댐의 경우
	씻기분석	KSF2411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정될 때 마다	
경화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휨 강도	KSF2405 KSF2408	1)배합이 다를 때 마다 2)콘크리트 타설량이 • 0~100세제곱미터 : 50세제곱미터 마다 • 100~500세제곱미터 : 100세제곱미터 마다 • 500~1000세제곱미터 : 150세제곱미터 마다 • 1000~2000세제곱미터 : 200세제곱미터 마다 • 2000세제곱미터 이상 : 500세제곱미터 마다 3)석축뒷채움 배수관기초, 집수정 및 도수로등 주요 구조물이 아니고 1개소당 콘크리트 타설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산재시는 필요시마다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인 경우 150세제곱미터 마다
콘크리트 양생재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40	1)반입시마다 2)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콘크리트 주입 줄눈재	침입도, 흐름, 접착시험, 가사시간, 고착건조시간, 회복율	시방서 또는 공인규격	반입시마다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 여부	아침작업 개시전	
철근 및 강재 (아연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1)100톤 마다 2)용접이음부는 500개소 마다	
PC 강선 및 PC 강연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D7002	KS규정에 따라	
PC 봉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KSD3505	KS규정에 따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강	시험종목		라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F2432	1)작업개시전 1회 2)필요시마다	
	블리딩	KSF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F2433		
	압축강도	KSF2426		
시멘트 요업제품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KS규정에 따라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차선마다 전구간	

(3) 아스팔트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 고
노로포장용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2201	1)2000톤마다 2)생산시설으로 재질의 변화가 우려될 때	
컷백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2202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유화아스팔트		KSM2203		
포장타르		KSM2206	2000톤 마다	
채움재 (석회, 석분)	입도, 수분	KSF3501	반입시마다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아침작업 개시전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가열 후
	골재의 함수율	KSF2502	1일1회이상	가열전후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온도		운반차량 마다	
	아스팔트함유량	KSF2354	1일1회이상	
	골재입도	KSF2502		
	마샬안정도	KSF2337		
	피막박리	KSF2356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F2356	1)1일1회이상 2)20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F2367		
	평탄성 7.6m측정기	-	차선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	포설후 10아르당 1개소 이상	7.6미터 사용불가능시
침투식 마캐담 포장	아스콘트함유량	KSF2352	포설후 10아르당 1개소 이상	
	두께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석재	비중및 흡수율	KSF2518	1)재질의 변화 시마다	정 밀 한 압분류시 탄성파시험병행
	압축강도	KSF2519	2)필요시마다	
	탄성파속도			
보도용 콘크리트판	휨강도, 흡수율 치수(유색, 두께)	KSF4001	2000매마다	
콘크리트경계블록(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치수	KSF4006	1000매마다	
흄 관 (원 심 력 철 근콘크리트관)	외압강도 내압강도 압력관) 치수	KSF4403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하수도용 콘크리트관	외압강도 내압강도 치수	KSF4403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PC콘	인장 및 압축	시 방 서 또 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원심력 철 근 콘크리트말뚝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301	KS규정에 따라	
원심력 PC 말뚝	휨강도	KSF4303		
강관말뚝	인장	KSF4602		KSD 3566참고
교량용 교 무 (교 좌 장치)	경도, 인장강도, 노화, 압축영구줄음	시 방 서 또 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신 축 이음장치)	인장강도, 신장율, 경도, 압축영구줄음, 노화, 오존, 저항성, 회복율	시 방 서 또 는 공 인규격	각 교량마다	
인결염화비닐지수판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3805	반입시마다	
도로표지용도료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5322	필요시마다	
유칠식 도로표지용도료		KSM5333		
가열형 도로표지용도료		KSM5336		
호안용 블럭	압축강도	KSF2405	5000매마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콘 크 트및모르터)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럭	휨강도, 흡수율	KSF4419	·10,000개 미만 : 5개 ·10, 000 ~ 100, 000 : 10개 ·100,000개 초과시마다 : 5개추가	
이중벽합성수지관	강성	KSM3509	KS규정에 따라	
토목섬유 (연약반용 Mat)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1)20,000제곱미터 마다	
	봉합강도	KSK0530	2)1)2)마크제품은 생략. 다만, 재질변화가 의심될시는 20,000제곱미터 마다	
	투수	KSF2322		
	두께측정	KSF2123		
토목섬유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투수	KSF2322		
	두께측정	KSF2123		
토목섬유 (도목용 부직포)	두께측정	KSF2122	1)댐암거용 : 20,000미터마다	
	인장강도 및 신도	KSK0520	터널용 : 7,000미터마다	
	투수	KSF2322	2)2)마크제품은 생략. 다만, 재질변화가 의심될시는 댐암거용은 20,000제곱미터 마다 터널용 7,000제곱미터 마다	
터널용 방수쉬트	두께측정	KSF2122	1)7,000제곱미터 마다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신축성상, 신장시열화성상, 접합인장성능	KSF4911	2)재질변화시마다	

2. 건축

가. 선정시험

건설공사에 KS표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 및 시방에 그 품질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선정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토목공사 선정시험 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할 수 있다.

나. 관리시험

(1) 콘크리트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시멘트(포 틀랜트시멘트)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5201	제조일 부터 3월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0톤 마다	
유동화제	압축강도, 슬럼프	KSF4009	1)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2)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60	1)회사별 반입시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제외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M0024	2)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골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04	1)최대치수별 1000세제곱미터 마다	잔골재
		KSF2503	2)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굵은골재
	200번체통과량	KSF2511		
	모래의 유기불순물	KSF2510		
	마모	KSF2508		
	안정성	KSF2507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마다	
	염화물함유량	KSF2515	바다모래 50톤 마다	
	체가름	KSF2502	산지별, 최대치수별 1일1회이상	
	표면수량	KSF2509	1일 1회이상	
		KSF2467		
굳지않은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	환경비합수장		아침작업개시전	
	슬럼프	KSF2402	1)배합이 다를 때마다 2)1일1회이상	
	공기량	KSF2421	AE제 사용 시 1일1회이상	
	씻기분석	KSF2411	재질의 변화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경화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휨강도	KSF2405 KSF2408	1)배합이 다를 때마다 2)콘크리트 타설량이 ·0 ~ 100세제곱미터 : 50세제곱미터 마다 ·100 ~ 500세제곱미터 : 100세제곱미터 마다 ·500 ~ 1000세제곱미터 : 150세제곱미터마다 ·1000 ~ 2000세제곱미터 : 200세제곱미터 마다 ·2000세제곱미터 이상 : 500세제곱미터 마다 3)석축뒷채움 배수관기초, 집수정 및 도수로 등 주요 구조물이 아니고 1개소당 콘크리트 타설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산재시는 필요시 마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150세제곱미터마다 타설단수 마다
콘크리트 양생제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540	1)반입시마다 2)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자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콘크리트배치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아침작업 개시 전	
철근 및 강재 (아연도철선 포함)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	1)100톤 마다 2)용접이음부는 500개소 마다	

(2) 벽돌, 블록 및 타일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시멘트벽돌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004	10,000매 마다	
속빈시멘트블록		KSF4002	한무더기당	
점토벽돌		KSL4201	한무더기당	
규회벽돌		KSL4204		
타일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L1001	10,000상자 마다 1상자	
	접착력시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0.1.4검사	600제곱미터당 1매	·3층이상 또는 외장타일을 600제곱미터 이상 시공한 경우 ·접착제료에 따라 소요양생기간 후시험

(3) 방수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압축강도, 흡수비, 투수시험	KSF2451	1)제조회사별 2)제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때	
아스팔트펠트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901	제조회사별	
아스팔트루핑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902	제조회사별	

(4) 기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석재	비중 및 흡수율	KSF2518	1)제질의 변화시마다	
	압축강도	KSF2519	2)필요시마다	
보도용 콘크리트판	휨강도, 흡수율 치수(육색, 두께)	KSF4001	2000매마다	
콘크리트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치수	KSF4006	1000매마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4301	KS규격에 따라	
프리텐	휨강도	KSF4303		

종별	시험종목	시험 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선방식 원심력 PC말뚝				
강관말뚝	인장	KSF4602		KSD3566 참고
단열재	당해 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및 관련법규	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단열부재 포함
방화구조	당해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256 관련법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경우 1회이상	
방화문	당해 제품의 KS 및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시험종목	KSF2268 관련법규	500개마다	

*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토목공사의 품질시험은 토목부분 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3]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제17조 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규모	시험장비	시험실규모	시험요원의 자격	비고
토목, 특수공사 및 전문공사	5억원 초과 10억원미만	별표1 및 시방서에 따라 당해 공사약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중 1인이상	시험실은 필요시 설치
	10억원 -30억원		4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중 1인이상	
	30억원 -100억원		8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100억원 이상		120제곱미터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1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별표1 및 시방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중 1인 이상	시험실은 필요시 설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440제곱미터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건축기사	

공사의 종류	규 모	시험장비	시험실규모	시험요원의 자격	비 고
	1500제곱미터미만 또는 5층이상 10층미만 건물			1인이상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건물		80제곱미터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 기사1인 이상 또는 건축기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 가능사 1인이상	

비고 : 1.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은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2. 시험요원의 자격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는 국·공립시험기관(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에서 5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3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3.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또는 시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검사시험점검요령(제17조 제3항 관련)

1. 시험개요

검사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감 독 관	소 속 :	성 명 :	(인)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 명 :	(인)
공사개요			
첨 부 : 1. 공사진전현황(공정, 장비, 자재, 관리시험계획표) 2.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과표			
검 사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2. 점검사항

가. 공동사항

점 검 내 용	판 정
1)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의 적정 2) 시험계획서, 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 3) 시험사의 시험능력 4) 시험기기의 규격, 수량, 성능의 적합 5) 기타 품질시험 여건	

나. 시험점검표

구분	공종	종별 (재료명등)	시험종목	시험빈도 규정빈도	시험빈도 실시빈도	적가실시여부	시험결과조치	판정
○선정시험 ○관리시험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품질시험 유의사항 지적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내용	조치의견	비 고

라. 현장확인시험

공종	종별 (재료명)	시험종목	현장시험	확인시험	위치 또는 사용처	판정

비고 : 1. 중요한 재료 또는 시험종목에 대하여 현장 또는 외뢰시험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무작위로 추출시험을 시행함

2. 현장시험은 공사현장시험 또는 의뢰시험결과를 기입함

3. 확인시험은 검사사험자의 확인시험 결과치를 기입함

4. 위치 또는 사용처는 다음에 따라 기입함.

예) ○토공, 포장 등은 공사측점등 위치

○교량 등 구조물은 구조물명과 사용부위명등

마. 현장시공 품질확인

공 종	지 적 내 용	비 고

비고 : 공종별로 거푸집조립, 철근 배근등 시공상태가 시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기입함.

[별표 5]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 (제19조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frac{(\text{상각율}+\text{수리율})\times\text{기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times\text{내용년수}}\times\text{장비가동시간}$$

2. 제1호에서 "기계가격"이라 함은 구입가격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이라함은 2천시간을, "장비가동시간"이라함은 당해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내용년수"라 함은 기계류 및 계량기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등의 기구는 3년을 각각 말하며, "상각율"과 "수리율"은 다음과 같다.

장 비 구 분	상 각 율	수 리 율
모우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1
초자류	1.0	—
금속류	0.9	0.3
게이지	1.0	—

3.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인건비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품질시험비용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별표 6]

품질시험 적정성확인 점검요령(제20조 제2항 관련)

1. 확인개요

확인일 년 월 일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 급 금 액	
착 공 일		준공또는준공예정일	
발 주 자			
시 공 자			
입 회 자	공사감독자 :	소 속 : 성 명	(인)
	현장대리인 :	성 명 :	(인)
첨 부 : 참고자료			
확 인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2. 점검사항

구 분	확인내용	조치의견	비고
1.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2.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활용의 적정여부			
3.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여부			
4. 중앙건설기술설계심의 위원회 품질시험 유의 사항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			
5.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별표 7]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종류 및 방법(제24조 관련)

건설자재명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에 규정된 종목	KSF4009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F4009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각종시험결과는 기록을 유지하고 주문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훈만골재(간골재)와 바다모래의 경우는 염분농도가 0.04퍼센트 이하인 것과 0.04퍼센트를 초과한 것은 나누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KSF 2349에 규정된 종목	KSF2349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F2349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바다모래	염분농도	·자동염분측정기에 의한 염분시험 -염분농도는 0.04퍼센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용용도를 확인한 후 주분농도 이하로 할 수 있다. -염분농도측	·1일 3회이상 ·자동염분측정기의 보정은 월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자동 염분측정기 제작자의 사용설명서에 보정시기가 월 1회미만으로 명시된 경우는 설명서내용에 따른다.	

건설자재명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장은 상부·중부·하부등을 고르게 측정하고 어느부위에서도 기준농도 이하여야 한다.		
수입철근	KSD 3504에 규정된 종목	·KSD3504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D3504에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수입H형강	KSD 3502 및 KSD 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규정된 종목	·KSD3502 및 KSD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KSD3502 및 KSD3503 중 H형강에 관하여 명시된 각종시험의 빈도에 따른다.	

[별표 8]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장 비 명	기 준
종합및 건축감리 회사	○자동염분측정기	·측정범위 : 0.001-1.0%이상 ·측정온도 : 0-40℃ ·전 원 : 건전지 및 AC100V겸용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측정범위 : 100-600kg/㎠ ·측정 : 기록식
	○철근탐지기	·피복두께 : 100㎜이상, 철근간격측정
	○도막두께 측정기	·측정방식 : 전자식 ·측정대상물 : 금속 및 비자성금속피막, 콘크리트피막
	○소음측정기	·측정범위 : 40-110DB
	○목재함수율측정기	·측정범위 : 6-30% ·정밀도 : ±0.5%
	○타일인발시험기	·유압용량 : 1,500kg, 측정(Digital 표시) ·인발강도 : 90kg/㎠
토목감리회사	○종합 및 건축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별표 9]

건설공사감독자 업무 (제43조 관련)

1. 감독자는 다음서류 및 도표를 작성·비치할 것
   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시험대장
   나.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다. 별지 제35서식의 명령부
   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시부
   마.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품정리부
   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급자재수불부
   사.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시험계획서
   아.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시험실적보고서
   자.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정보고서 및 공정표
   차. 별지 제42호서식의 반입자재검사부
   카. 날씨, 온도, 조위 및 수위표등
   타. 품질시험관리도
   파.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대장
   하.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사용실적 관계서류
   가. 공사측량 성과
   나.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2. 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적합하여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독할 것
   가.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1)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부표의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할 것
      (2)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할 것
   나. 시공확인
      (1)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게 할 것
      (2)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등에 의하여 자재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에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3)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
      (4)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할 것
      (5)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

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할 것

다.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2)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할 것

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 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마. 설계변경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게 설계변경할 것. 다만, 구조물의 구조나 공업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의 경우에는 구두로 이를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할 수 있다.

바.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1) 상급자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부에 이를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할 것

(2) 시공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시부에 기록하여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사. 공사현장 정리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원상복구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할 것. 다만 현장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건사의 완료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세부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4. 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외에는 법 제24조, 법 제24조의 2, 영 제40조 내지 영 제45조, 영 제 47조의 3, 영 제47조의 4 및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결과를 기록·비치할 것

5. 감독자는 현장관리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할 것

6.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나.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은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라.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

7.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공사착수보고서

나. 공사시공측량 결과서

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라. 관급자재 입체 또는 대체사용신청서

마. 준공기한연기신청서

바. 준공검사원

사. 현장실정 보고서

아.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자.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차.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8.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공정

나. 관급자재 수불상황

다. 시험진도

라.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9.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가.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

(4)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한 지의 여부

(5)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장애요인 발생으로 7일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감독자는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 발생품정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3호서식의 발생품잉여자재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게 할 것

11. 감독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제출할 것

1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등의 경력에 대하여 별지제2호 서식의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중등록이 확인된 때 또는 공정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들을 교체하도록 명할 것. 다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감독자는 그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

14. 감독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제1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1994. 1. 7, 법률 제4,721호)

◇개정이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의 효율적인 억제와 수도권안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의 권역을 조정하고, 과도한 인구 등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대의 물리적·직접적인 규제방법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수도권정비에 관한 억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정비사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수두권의 권역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등 5개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함(법 제6조).

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위치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은 허용하도록 함(법 제7조).

다.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확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중소규모의 주택조성사업 및 관광조성사업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법 제8조).

라. 종전에는 도시권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법을 취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전환하며, 징수된 관리부담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마.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동시설을 신설·증축할 수 있는 총면적의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법 제18조).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도권안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지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설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10조(이전자에 대한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안에서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과금의 감면)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건설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시설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위원회등의 조직 등)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 등)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업종·토지이용·주용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현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축사 세무의 이론과 실제 (2)

Architect's Tax Affairs Theory and Practice(2)

黃龍顯/공인회계사 · 우진합동회계사무소
by Hwang, Yong-Hyun

목 차

(1회) (94년 2월호)
Ⅰ.머리말
Ⅱ.최근의 세무정책 방향
Ⅲ.건축사 세무상 특징
Ⅳ.수입금액 신고
Ⅴ.소득세 신고

(2회)
Ⅵ.법인세 신고
Ⅶ.토지공개념
Ⅷ.취득세 및 등록세
Ⅸ.세무 의사결정
Ⅹ.맺음말

Ⅵ.법인세 신고

1. 건축법인 세무의 특징

개인건축사사무소와 법인건축사사무소는 규모 및 운영방법 뿐만 아니라 세무상 처리방법도 상이하다.

첫째,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대표자의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둘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기간의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익년 3월말까지 신고하며 대표자가 타소득이 있을 경우 법인의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사업자는 자금의 인출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인출시 세무상 불이익이 초래된다.

넷째, 소득세는 세율이 5~50%까지의 누진세율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은 3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 건축법인 세무의 유의사항

(1) 수입금액 귀속시기

현실적으로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때와 세무상 수입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세무상 인식기준인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설계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수취하기로 한 때에 인식하여야하므로 현재 많은 건축법인들이 상대건축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어 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연도중에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연도가 바뀌어 대금수취가 일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되어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접대비 한도계산

접대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므로 회사는 회계년도초에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접대비 한도금액의 40%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하므로 카드사용 접대비 금액도 기중에 검토되어야 한다. 접대비 사용금액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게되면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성경비 과다지출법인으로 오해받아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중 접대비 사용금액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가지급금

건축법인의 경우 개인사무소와는 달리 자금인출에 제약을 받는다.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며 세무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수취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의 자금인출시 이자수취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연리 12%의 이자율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해당액만큼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속히 반제되어야 하며 만약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익년도에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주식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건축법인의 주주들은 형식적인 주주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을 간과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실질소유자가 주식양수를 하려고 할 때에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때 이러한 면을 시정해야하며 또한 서류상으로 주식이동이 있을 때에도 세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유상증자

건축법인이 필요한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들이 기존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즉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특수관계이고 1주당 주식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 이상이 되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증여하는 결과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상증자시에는 이러한 점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6) 잉여금의 자본전입

이익잉여금이 많은 건축법인의 경우 이를 임의적립금 또는 기타적립금등으로 치분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이를 자본금으로 대체시킬 경우(무상증자)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주주들에게 과중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배당이 없이 잉여금을 자본전입시킬 경우에는 세무상 배당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Ⅶ. 토지공개념

1. 개요

토지공개념제도는 1989년 8월 28일 대통령 주례방송에 의하여 가시화 된 것으

로 좁은국토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도	개 요	근거법령
토지초과이득세	· 각종 개발사업과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오르는 땅값의 상당부분을 사회로 환수 · 유휴토지에 대하여 과세함 · 토지소유자가 납부함	토지초과이득세법 (90.1.1 시행)
택지소유상한제	· 한가구가 도시지역에서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일정면적 이내로 제한 · 한도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면적에 대하여 매년 땅값의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징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90.3.1 시행)
종합토지세	· 모든 소유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함으로써 세부담 증가 · 시금까지 각토지를 필지별로 과세하던 「재산세」와 유휴토지(공한지)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대상으로 소유자별로 과세하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	지방세법 (90.1.1 시행)
개발부담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등 22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환수함 ·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가 납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90.1.1 시행)

2. 토지초과이득세

(1) 의의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과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의 보유자가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여 얻은지가 상승이익의 50%에 대하여 3년(정상과세기간)마다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1990.1.1부터 1992.12.31일 동안의 제1기 정상과세가 시행된 바 있다.

단 1년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의 1.5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여 1년(예정결정기간)마다 과세하는 예정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유휴토지의 범위

개인소유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법인소유 토지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사용여부에 의하여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토지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가소유토지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제방, 유지, 사적지 및 기준면적범위내의 묘지
-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
- 지상건축물이 멸실된 토지
- 개발사업지구내 토지
-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 상속받은 임야

유휴토지여부를 사안별로 살펴보자

가. 주택의 부속토지

①주택의 경계가 명백한 경우

경계안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적용배율〉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계획구역	· 전용주거지역	5배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배
	·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 녹지지역	7배
	· 미계획지역	4배
기 타		7배

②주택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되 계산결과 80평(특별시, 직할시는 60평)을 초과하는 것은 유휴토지로 본다.

③무허가주택

상기①, ②에 의해 판단한다.

④건축중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에는 공사완성도 비율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상기①, ②에 의해 유휴토지를 판정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유휴토지로 본다.

〈공사완성도〉

A. 공사기간 경과비율

$$= \frac{\text{공사경과기간(일수)}}{\text{공사예정기간(일수)}} \times \frac{50}{100}$$

○ 공사경과기간 : 착공일~과세기간 종료일

○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준공예정일

B. 소득세법상 작업진행률

$$= \frac{\text{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총공사비}}{\text{도급금액}-(\text{도급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C. 충족조건 : A<B(건축물로 간주)

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당해공장의 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휴토지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입지기준면적

$$= \frac{\text{공장건축물 연면적}}{\text{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이내토지(3,000㎡ 한도)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본다

다.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①적용범위

공장용 건축물, 연수원용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적용한다.

②판정기준

A. 면적기준

개인소유토지	법인소유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적용배율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적용비율 -건축물 연면적 ÷ 용적률 × 5 -상기중 작은 면적

B. 금액기준

-건물가액토지가액×10/100

-내무부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을 산정함

C. 기준의 해석

-금액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부속토지 전체가 유휴토지이며 금액기준을 충족하되 면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가 된다.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매년 변동되는 내무부 과세지기표준액에 따라서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라. 위험물 시설 및 자동차 정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①적용범위

석유, 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판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A. 면적기준 : 다음중 큰 면적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준면적

-인·허가 조건상 최소면적의 1.1배

B. 금액기준

-건축물가액≥토지가액×0.1%

-가액의 산정 :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C. 기준변경의 경우

건축물 취득시 상기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관계법령 및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되어 적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마. 임대용 토지

유상·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 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
- 89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직계존속비속간은 90년 이전)

바. 기타

이상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세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면적 및 시설기준과 수입금액기준등을 적용하고 있다.

- 주차장용 토지
- 연수원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
- 별장용 토지, 골재 채취장용 토지
- 농지, 축산용 토지, 나지
- 체육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염전·광천지, 지소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자동차 운전 및 정비학원용 토지

(3) 부과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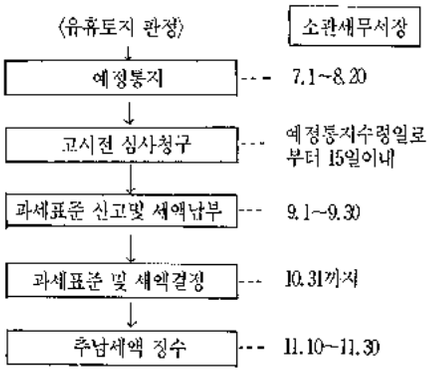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1) 의의

현재 서울시와 직할시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택지소유의 제한과 택지를 초과소유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두가지 구조로 되어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다음과 같은 택지이다.

〈택지의 범위〉

- ○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
- ○ 나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 ○ 개발택지

(2) 택지소유의 제한

1가구 단위로 소유할수 있는 상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소유상한면적	시행일
서울시·직할시	660㎡	
기타시	990㎡	미정
기타지역	1,320㎡	

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

(3) 초과소유부담금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와 허가되지 않은 법인소유 택지에 대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때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부과대상 택지	부과율
나대지등	11%
주택의 부속토지	7%
택지없는자의 주택취득	7%
처분·이용·개발 의무기간 경과	11%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 의의

개발사업의 시행등으로 토지가격이 증가할 경우의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2) 부과대상및 부과대상사업

개발사업중에서 다음면적을 초과하는 개발사업만이 부과대상이 된다.

- 6대도시 : 200평
- 도시계획구역 : 300평
- 기타지역 : 500평

개발사업의 종류에는 택지개발사업등 22개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건축법에 의해 단순히 지목변경이 되는 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3) 개발부담금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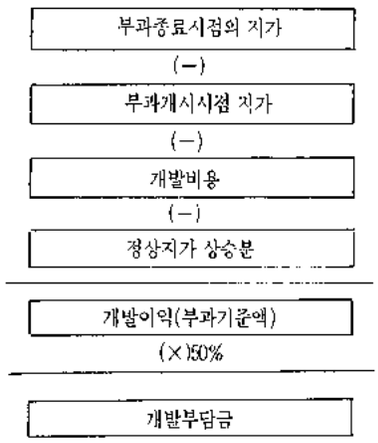

5. 사례연구

지금까지 논의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계의 방법을 살펴보자.

〈사례〉

- · 나대지 150평 · 용적률 : 500%
-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 토지등급 : 243등급(628,000원/㎡)
- · 건축물의 최소 바닥면적(M)은?
- · 건축물의 최소 연면적(K)은?

(1) 개인소유토지일 경우

가. 면적기준

M×3배150평=50평

⇨건축물의 바닥면적(M)이 최소 50평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금액기준

- 토지가액 : 628,000원×150평×3.3054=311,368,680원
- 건물가액 : 최소한 31,136,868원(토지가액의 10%)이상이 되어야 함.

다.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①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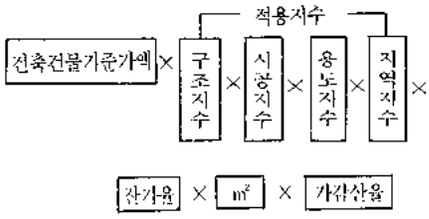

- 신축건물 기준가액 : 140,000원/㎡ (1994.1.1현재)
- 적용지수 : 구조별, 지붕형태별, 건물의 용도별, 지역별, 부속토지가격별로 가중치 적용
- 잔가율 : 건물의 경과년수별로 감가율을 적용하며 신축건물은 1임
- 가감산율 : 건물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함.

②가정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지역지수(104%)

③계산

140,000×100%×100%×125%×104%×1×K≥31,136,868

K>178㎡=54평

라. 종합

- 단층건물 :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최소 54평 이상이어야 함
- 2층건물 :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최소 50평 이상이어야함.

(2) 법인소유 토지일 경우

가. 면적기준

- M×3배≥150평=50평

⇨건축물의 바닥면적(M)이 최소 50평 이상이어야함.

- K÷500%×5≥150평=150평

⇨건축물의 연면적(K)이 최소한 150평 이상이어야함.

나. 금액기준 : 개인일 경우와 동일

다.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 개인일 경우와 동일

라. 종합

- 단층건물 : 토지면적 150평에 연면적이 150평 이상이어야 하므로 건폐율을 고려하면 불가능함.
- 2층건물 : 한층의 면적이 75평 이상이

어야함.

—3층건물 : 1층의 건물이 50평 이상이 어야함.

Ⅷ. 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1) 개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과 과점주주의 주식등에 대하여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구가 납세지가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며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며,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가. 사치성 재산 : 15%

-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고급주택,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

※ 고급주택의 범위

취득세	양도소득세
· 1구의 건물 연면적이 1백평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2백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단독주택 (지하실 면적은 1/2 합산)	· 주택의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50평 이상이면서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단독주택 (지하실 면적은 1/2 합산)
· 건물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9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	·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이 설치된 주택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5%

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 15%

라.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10%

마. 1세대 2대의 승용차 취득 : 4%

(2) 비과세, 감면 및 배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나. 비영리 공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다.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

마.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득

사.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

아. 근로자가 전용면적 12평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

한편 상기 이외에도 특정법인 및 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으며 근로자가 전용면적 12평 이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경감규정이 있다.

2. 등록세

(1)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동일하며 부동산 등기의 경우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다.

권리구분	등기요인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	상속	농지	3%
		기타	0.8%
	무상취득	일반	1.5%
		비영리법인	0.8%
	매매등	농지	1%
	유상취득	기타	3%
	소유권 보존		0.8%
부동산 전세권	설정 및 이전		0.2%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되며 1세대 2대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2배가 중과된다.

3. 조례에 의한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고 있다.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40%감면제도는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4. 사례연구

(1) 아파트 분양취득

- 분양가액 : 2억원
- 세액산출

—취득세 : 2억원×2%=4백만원

—등록세 : 2억원×3%=6백만원

—합계 : 1천만원

(2) 기존아파트 취득

- 실제취득가액 : 2억원
-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1억5천만원
- 과세시가표준액 : 6천만원
- 세액산출

—취득세 : 1억5천만원×2%×(1—0.4)=1백8십만원

—등록세 : 1억5천만원×3%×(1—0.4)=2백7십만원

—합계 : 4백5십만원

(3) 고급주택의 취득

- 취득물건(고급주택)의 개요

—연면적 : 1백2십평

—대지면적 : 1백8십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2천만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 : 2억8천만원

- 세액산출

—취득세 : 3억원×15%=4천5백만원

—등록세 : 3억원×3%=9백만원

—합계 : 5천4백만원

Ⅸ. 세무 의사결정

건축사는 흔히 건축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무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째,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소유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설계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부친명의의 땅이 있는데 아들인 본인명의로 건물을 지었을때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셋째, 빈 땅을 그대로 팔았을 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 땅에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지어팔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상기와 같은 질문은 자주 발생되는 유형의 세무의사결정문제로서 첫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은 Ⅶ. 토지공개념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그 기본방향을 설명해 본다.

1. 건축주의 명의

(1) 토지초과이득세

〈사례〉

·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남인 A씨(45세)는 부친(72세)이 지방 소도시에 빈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상가를 자기명의로 지어 임대하고자 한다.

· 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면적 : 150평(상업지역)

—공시지가 : 2백만원/평

· 건물연면적 : 200평

· 예정건축비 : 1백5십만원/평

· 가족현황 :

—모친 : 70세, 결혼년수 30년

—동생 2인(성년)

· 임대 보증금 : 2백만원/평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판정기준인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기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기간중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의 판정기준인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충족시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다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 : 200평×1백5십만원×2%
=6,000,000

등록세 : 200평×1백50만원×3%
=9,000,000

합계 : 15,000,000

(4) 증여세

가. 자금출처조사

건축비 3억원은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토지의 무상사용

부친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사업소득세

A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임대 개시후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6) 상속세

〈상속세율표〉

과 세 표 준	세 율
· 5천만원 미만	10%
· 5천만원~2억5천만원	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X 20%
· 2억5천만원~5억5천만원	4천5백만원 + 2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0%
· 5억5천만원~10억원	1억3천5백만원 + 5억5천만원 초과금액 X 40%
· 10억원 초과	3억6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50%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다음 계산과 같이 없다.

①상속재산가액 : 3억원
150평×200만원

②인적공제액

- 기초공제 : 1억원
- 배우자공제 : 4억6천만원
  1억원+1,200만원×30년
- 자녀공제 : 2천만원
  1,000만원×2인
- 공제합계 : 5억8천만원

③과세표준(①-②) : 0

2. 양도와 신축

〈사례〉

· 나대지 200평(상업지역)
· 공시지가
 -취득가액 : 3백만원/평
 -양도가액 : 2천만원/평
· 취득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 5십만원/평
· 도매물가공제율 : 50%
· 토지보유기간 : 5년초과
· 분양내역(오피스 빌딩)
 -건물연면적 : 1,200평
 -분양금액 : 600만원/평
 -건축비 : 1백5십만원/평
 -관리비 : 분양가액의 5%

(1)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율표〉

과 세 표 준	세 율
· 3천만원 이하	40%
· 3천만원~6천만원	1천2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X 45%
· 6천만원~1억원	2천55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X 50%
· 1억원~5억원	4천5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55%
· 5억원 초과	2억6천55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60%

①양도가액 : 40억원
②취득가액 : 6억원
③양도차익(①-②) : 36억원
④필요경비공제 : 7백만원
200평×5십만원×7%
⑤양도소득특별공제 : 3억원
200평×3백만원×50%
⑥과세표준(③-④-⑤) : 3,293백만원
⑦세율 : 60%
⑧산출세액 : 1,941,300,000원
⑨예정납부세액공제(⑧×10%) : 194,130,000원
⑩결정세액(⑧-⑨) : 1,747,170,000원

(2)사업소득세(서면신고, 부동산 매매업)

①수입금액 : 72억원
②서면신고기준율 : 20%
25%×80%
③서면신고소득금액(①×②) : 1,440백만원
④세율 : 50%
⑤결정세액 : 707,800,000원
※부동산 매매업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물신축판매시의 세금은 1,747,170,000원이된다.

(3) 종합적 결론

양도나 신축이냐를 결정할 때에는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분석해야하며 본사례의 경우 신축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금흐름 분석〉

구분	양도	신축
①수 입 금 액	40억원	72억원
②건 축 비	-	18억원
③관 리 비	-	3억6천만원
④세 금	17억5천만원	17억5천만원
⑤순현금흐름 (①-②-③-④)	22억5천만원	32억9천만원

일반적으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은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보다 현금흐름측면에서 불리하며 건물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보다 현금흐름면에서 불리하다. 그러나 신축의 경우는 양도와는 달리 분양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대한 단순비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분양의 용이성, 사업능력 및 자금조달력등의 수치화할 수 없는 점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X. 맺음말

최근의 경제여건변화는 건축사로 하여금 단순히 훌륭한 설계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문제도 보다 엄밀해 질 필요가 있으며 금년에 시행될 예정인 과밀부담금제와 같은 새로운 법령은 건축사의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사 관련제도가 금년부터 대폭 개정되는 바 이러한 여건변화도 건축사의 세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건축사로 하여금 세무컨설탄트로서의 역할을 추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도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최근의 세무행정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 건축주의 세무상 욕구를 해소하고 세무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수주 및 설계활동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건축사 관련 제도 개편시 세무상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1993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1천5백71만2천8백26㎡ 보다 25.4%(3백99만5천6백72㎡)감소 한 1천1백71만7천1백5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 누계 1억1천6백3만2천1백77㎡보다 7.0%(8백7만5천3백20㎡)증가한 1억2천4백10만7천4백9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 9백80만9천35㎡보다 19.5% (1백90만8천1백19㎡)증가한 1천1백71만7천1백54㎡의 실적을 보임.

全國 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광주	249,636	427,259	177,623	71.2%
	강원	382,842	393,552	10,710	2.8%
	충북	389,289	480,199	90,910	23.4%
	충남	454,231	1,133,785	679,554	149,6%
	전남	261,091	462,351	201,260	77.1%
	경남	1,004,557	1,015,531	10,974	1.1%
감소지역	서울	5,611,682	1,958,124	(3,653,558)	-65.1%
	부산	1,386,554	1,114,807	(271,747)	-19.6%
	대구	653,621	566,592	(87,029)	-13.3%
	인천	602,375	414,432	(187,944)	-31.2%
	대전	731,072	407,921	(323,151)	-44.2%
	경기	2,137,942	2,022,702	(115,240)	-5.4%
	전북	699,616	487,064	(212,552)	-30.4%
	경북	900,034	602,644	(297,390)	-33.0%
	제주	248,284	230,192	(18,092)	-7.3%
합 계		15,712,826	11,717,154	(3,995,672)	-25.4%

全國 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11월분	12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496,203	781,770	285,567	57.6%
다 세 대 수 택	242,540	216,419	(26,121)	-10.8%
연 립 주 택	98,383	208,182	109,799	111.6%
아 파 트	4,052,274	4,412,653	360,379	8.9%
근린생활시설	1,394,526	1,817,241	422,715	30.3%
종 교 시 설	76,333	143,445	67,112	87.9%
의 료 시 설	39,276	95,957	56,681	144.3%
교육연구시설	332,363	339,230	6,867	2.1%
업 무 시 설	560,002	550,645	(9,357)	-1.7%
숙 박 시 설	148,679	203,957	55,278	37,2%
공 장	1,066,535	1,376,941	310,406	29.1%
기 타	1,301,921	1,570,714	268,793	20.6%
계	9,809,035	11,717,154	1,908,119	19,5%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0,007	10,487	5,611,682	1,273	1,411	1,958,124	(8,734)	(9,076)	(3,653,558)	-65.1%	
부 산	1,004	1,428	1,386,554	853	903	1,114,807	(151)	(525)	(271,747)	-19.6%	
대 구	1,068	1,225	653,621	1,186	1,322	566,592	118	97	(87,029)	-13.3%	
인 천	815	841	602,375	362	365	414,431	(453)	(476)	(187,944)	-31.2%	
광 주	300	347	249,636	293	386	427,259	(7)	39	177,623	71.2%	
대 전	538	672	731,072	390	448	407,921	(148)	(224)	323,151	-44.2%	
경 기	2,341	2,672	2,137,942	1,797	2,143	2,022,702	(544)	(529)	115,240	-5.4%	
강 원	803	880	382,842	653	775	393,552	(150)	(105)	10,710	2,8%	
충 북	506	722	389,289	642	805	480,199	136	83	90,910	23,4%	
충 남	376	393	454,231	574	618	1,133,785	198	225	679,554	149,6%	
전 북	515	610	699,616	377	471	487,064	(138)	(139)	(212,552)	-30.4%	
전 남	455	596	261,091	567	851	462,351	112	255	201,260	77,1%	
경 북	756	1,012	900,034	661	892	602,644	(95)	(120)	(297,390)	-33.0%	
경 남	918	1,243	1,004,557	1,136	1,482	1,015,531	218	239	10,974	1,1%	
제 주	313	361	248,284	353	445	230,192	40	84	(18,092)	-7.3%	
합 계	20,715	23,489	15,712,826	11,117	13,317	11,717,154	(9,598)	(10,172)	(3,995,672)	-25.4%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2月 合計分)

구분 /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36,619	38,369	23,947,610	27,884	29,330	19,537,596	(8,735)	(9,039)	(4,410,014)	-18.4%	
부 산	15,619	19,584	12,095,569	11,075	14,140	12,739,947	(3,941)	(5,444)	644,378	5.3%	
대 구	10,334	11,300	4,881,381	14,400	18,609	7,637,187	4,066	7,309	2,755,806	56.5%	
인 천	5,666	6,925	5,200,709	6,669	6,907	5,858,980	1,003	(18)	658,271	12.7%	
광 주	3,851	4,475	3,138,601	3,617	4,213	3,389,424	(234)	(262)	250,823	8.0%	
대 전	4,939	5,746	5,392,444	4,279	4,734	4,068,732	(660)	(1,012)	(1,323,712)	-24.5%	
경 기	20,552	26,265	24,054,411	22,255	28,705	26,848,123	1,703	2,440	2,793,712	11.6%	
강 원	7,232	8,398	4,086,034	7,363	8,797	3,937,193	131	399	(148,841)	-3.6%	
충 북	7,851	9,717	3,760,716	7,778	9,795	4,880,484	(73)	78	1,119,768	29,8%	
충 남	5,847	6,236	4,591,516	6,111	6,563	6,940,204	264	327	2,348,688	51,2%	
전 북	5,040	5,808	3,848,586	4,270	5,167	4,757,964	(770)	(641)	909,378	23,6%	
전 남	6,355	8,057	3,898,420	5,914	8,014	3,942,368	(441)	(43)	43,948	1.1%	
경 북	8,874	11,057	7,052,618	8,902	12,703	8,216,026	28	1,646	1,163,408	16,5%	
경 남	12,600	15,843	8,936,842	13,274	17,033	10,209,449	674	1,190	1,272,607	14.2%	
제 주	2,815	3,145	1,146,720	2,380	2,871	1,413,820	(435)	(274)	(2,900)	-0.3%	
합 계	153,591	180,925	116,032,177	146,171	177,581	124,107,497	(7,420)	(3,334)	8,075,320	7.0%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9,300	9,404	1,987,489	3,183	3,265	781,770	(6,117)	(6,139)	(1,205,719)	-60.7%	
다세대주택	1,759	1,849	905,442	468	507	216,419	(1,291)	(1,342)	(689,023)	-76.1%	
연 립 주 택	107	145	198,942	92	135	208,182	(15)	(10)	9,240	4.6%	
아 파 트	183	1,331	5,642,004	230	762	4,412,653	47	(569)	(1,229,351)	-21.8%	
근린생활시설	6,520	6,668	2,847,445	3,687	3,809	1,817,241	(2,833)	(2,859)	(1,030,204)	-36.2%	
종 교 시 설	167	218	157,455	131	152	143,445	(36)	(66)	(14,010)	-8.9%	
의 료 시 설	27	31	119,226	19	22	95,957	(8)	(9)	(23,269)	-19.5%	
교육연구시설	169	252	663,513	162	207	339,230	(7)	(45)	(324,283)	-48.9%	
업 무 시 설	228	247	733,261	178	191	550,645	(50)	(56)	(182,616)	-24,9%	
숙 박 시 설	63	64	181,850	154	157	203,957	91	93	22,107	12,2%	
공 장	822	1,376	1,115,842	931	1,495	1,376,941	109	119	261,099	23.4%	
기 타	1,370	1,904	1,160,357	1,882	2,615	1,570,714	512	711	410,357	35.4%	
합 계	20,715	23,489	15,712,826	11,117	13,317	11,717,154	(9,598)	(10,172)	(3,995,672)	-25.4%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12月 合計分)

구분 /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63,175	65,667	10,872,139	52,464	55,261	10,428,086	(10,711)	(10,406)	(444,053)	-4.1%	
다세대주택	7,195	8,902	3,490,791	10,147	11,176	5,029,704	2,952	2,274	1,538,913	44.1%	
연 립 주 택	677	899	1,113,456	854	1,745	2,522,998	177	846	1,409,542	126,6%	
아 파 트	1,921	11,020	48,486,775	2,287	11,197	50,859,027	366	177	2,372,252	4.9%	
근린생활시설	50,029	52,242	18,177,200	44,458	47,015	17,420,799	(5,571)	(5,227)	(756,401)	-4.2%	
종 교 시 설	1,506	1,809	959,781	1,454	1,715	1,198,438	(52)	(94)	238,657	24.9%	
의 료 시 설	217	245	758,512	199	212	406,314	(18)	(33)	(352,198)	-46.4%	
교육연구시설	1,747	2,260	4,424,917	1,596	2,032	3,752,536	(151)	(228)	(672,381)	-15.2%	
업 무 시 설	1,985	2,180	5,968,946	1,633	1,797	4,550,055	(352)	(383)	(1,418,891)	-23.8%	
숙 박 시 설	461	480	823,850	1,388	1,476	1,877,719	927	996	1,053,869	127,9%	
공 장	8,272	13,592	10,682,420	9,389	15,157	12,028,484	1,117	1,565	1,346,064	12.6%	
기 타	16,406	21,629	10,273,390	20,302	28,798	14,033,337	3,896	7,169	3,759,947	36.6%	
합 계	153,591	180,925	116,032,177	146,171	177,581	124,107,497	(7,420)	(3,344)	8,075,320	7.0%	()=마이너스

제 3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2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본 협회 대 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사항 의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건축사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 건설부의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을 '94.2.7(월)까지 건설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화장서신을 전국 회원에게 보내기로 협의함.

○제2호 : 건축사업무 관련법령 분석에 대한 협의
- 건축사업무 관련법령 연구에 따른 중간결과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협의함.

○제3호 : 설계·공사감리업무 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의
- 설계·공사감리 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용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원의 회신이 접수되는대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협의함.

○제4호 : 감리지도반 운영지침(안)에 대한 협의
- 공사감리업무 운영지침(안)에 대한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 협의하기로 함.

○제5호 : 시·도건축사회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 협의

제 4회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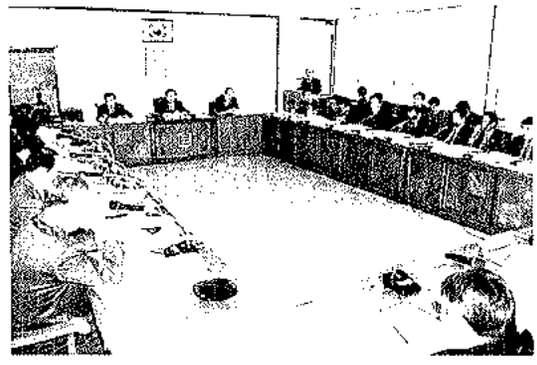

이사회 개최 광경

지난 2월 14일(월) 오후 2시 본 협회 제4회 이사회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등 부의사항 의결과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안 : 공사감리 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승인의 건
- 각 건축사회별로 회원의 의견 수렴후 별도 운영세칙을 마련, 4월 1일부터 자율 시행키로 협의함.

○제2호의 안 : 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95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 마련

본 협회는 지난 2월 14일(월)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지침(안)을 확정, 각 시·도건축사회별로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토록하여 자율, 사행하기로 했다. 이 공사감리업무 지도반 운영 지침은 지난해 말 건설부로부터 공사감리 업무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본 협회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공사감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법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지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건축물, 점검시기, 벌칙사항 등 전13조로 구성,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건축물 : 단독. 다세대주택(다가구 포함), 2층 이하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점검시기 : 1차 점검－기초구조물 설치완료 후(대지경계 측량여부 및 건물배치에 관한 사항)
2차 점검－지붕슬라브 공사 완료후(건물 바닥면적 증감여부, 평면변경, 일조권 침해 등)

○벌칙사항 : 당해 건축사회 회장은 각 시.도건축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비, 징계요구 가능

○기타 : 지도반원은 현장점검 결과 내용을 점검조사서에 기재날인 후 소속 건축사회 회장 및 당해 공사감리자에게 통보

『건축행정쇄신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 협회는 지난해 연말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 건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사 300명, 건축관련 공무원 200명, 건축주 250명, 건설업자 100명, 주택사업자 100명, 건축관련 교수는 50명 등 총 1천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는 불법 건축과 부실시공의 해결책, 건축 인·허가제도(응답자 중 47.3%)와 공사감리제도(응답자중 31.2%)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행정 및 법규
- 인·허가제도 : 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관계공무원의 증원 및 전문성 확보등의 검토 필요
- 공사감리제도 : 전문감리제도의 확대 및 감리자의 질적향상 도모, 주요 공정마다 현장방문 감리 실시 필요
- 건축법령의 모호성과 건축법규에 관한 공무원의 소신부족 지적

○건축물의 부실 및 위법건축
- 주된 원인 : 건축주의 이윤추구, 관계기관의 단속과 시정조치 소홀
- 대책 : 건축관계자의 의식개혁, 소규모 건축물 시공자의 자격부여 등

○건축부조리
- 원인 : 건축주의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요구와 건축행정상의 인.허가에 대한 편의추구
- 과정 : 허가과정, 준공검사 과정
- 대책 : 건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관계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재미 건축가 김진현 회장 내방

재미 시카고 한인 건축가협회 김진현 회장이 지난 2월16일 본 협회를 방문했다. 오응석 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金회장은 미국건축가협회 각종 규정집을 선물로 증정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과 건축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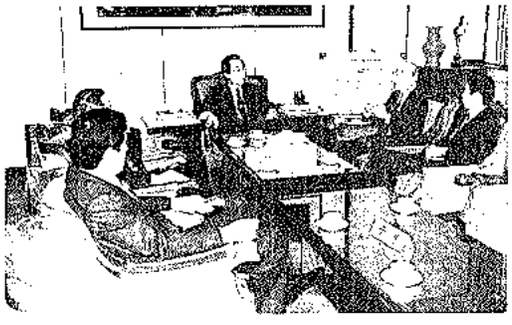

오응석회장과의 환담 광경

건축물 각종 신고서류 대폭 폐지

건설부는 지난 1월 27일(목) 건축허가를 비롯해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등에 관한 각종 서류를 일제 정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건축행정쇄신책의 일환으로 시행, 각종 서류가 폐지 또는 통합되므로서 건축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각종 허가 및 신고시에 폐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장비 및 부하계산서, 전기설비 계산서

—건축허가시 일괄 처리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건축허가시 일괄 처리되는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건축계획 사전결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허가서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용도변경

—복합건물의 용도변경동의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 이외는 징구 금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도서』와 중복되는 『소방설비도』추가 징구 금지

○소규모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신고

—건축물 단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첨부서류 일체,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이는 도면의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입면도, 단면도

○건축물 착공신고

—사토 및 잔재처리 계획서,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사본, 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법인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세 완납증명,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건설업 면허대여 방지를 위한 서류를 건설업 면허증 수첩사본 활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대장

—건축물 유지관리 조사보고업무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후 3개월까지 유예하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예토록 한다.

—건축물대상 덧붙임서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한다.

○건축물대상 말소

—건축물의 철지·멸실 신고시에는 동업무의 소관청과 건축물대장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관리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94년도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시행 예고공고

1994.2.25
대한건축사협회장

시험 시행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시행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최종 합격자발표	비고
		1차	2차	1차	2차			
'94.6	'94.6	'94.7	'94.9	○시험과목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사 ○시험방법 : 객관식	○시험과목 —건축계획 —건축설계 ○시험방법 —건축계획 : 주·객관식혼용 —건축설계 : 실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총점의 평균성적 6할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94.11	기타 사항은 건축사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부(건축행정과)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건설부(건축행정과) : 500—2861~2, 503—7357,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 581—5711~4

건축설계 · 공사감리비 현실화에 즈음하여

알리는 말씀

정부는 금년 1월부터 UR협상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건축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관행의 폐해를 없앰으로써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건축사 보수기준을 현실화 했습니다.

종전의 건축사 보수기준은 지난 1975년 개정이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묶여 18년동안 단 한차례의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인해 건축분야에서는 각종 부조리 발생과 부실감리라는 있어선 안될 상황까지 야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대가에 의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보수기준 현실화가 부득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보수기준의 현실화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평균 인상률에 있어선 설계비의 경우 52%, 감리비는 145%의 실질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고,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 구체화한 건축사 업무 내용에 비하면 아직까지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나, 물가와 공공요금 등의 인상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건설부문 보수대가 수준 정도로 조정된 것입니다.

설계 · 감리비 현실화가 일시적으로 보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듯 보이나, 실제로는 적정보수를 받게된 건축사가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감리행위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는 결국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비 절감 효과와 공사감리의 철저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게 되어 부실공사를 비롯한 각종 폐해들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사는 정당한 보수에 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건축주는 적정한 보수를 주고 우수한 설계도서와 감리서비스를 제공 받으므로써 보다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된 건축풍토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인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국의 건축사업무 대가 요율 비교

(단위 : %)

공사비(원) \ 국가	한국 (제3종 적용)	프랑스	유럽평균	독 일	미 국	일 본	영 국
1천만원 까지	8.61						
2천만원	7.83		10.7				
3천만원	7.57		9.80				
5천만원	7.07		9.43				12.50
1억원	6.03		8.60	11.20	11.22		11.34
2억원	5.27	7.70	7.92	11.15	9.84		9.45
3억원	5.10	7.50	7.70	9.72	9.02	9.90	8.98
5억원	4.62	7.25	7.23	9.03	8.27	8.50	8.20
10억원	3.97	6.25	6.72	8.25	7.35	7.06	7.36
20억원	3.66	5.25	6.25	7.72	6.83	6.0	6.60
30억원	3.39	4.72	6.02	7.45	6.49	5.68	6.25
100억원	2.88	4.03	5.46	6.62	6.03	4.69	5.47
200억원	2.76	3.53	5.07	6.13	5.85	4.31	5.58
300억원	2.72		5.0	5.94	5.74		5.40
500억원	2.67		4.8	5.60	5.67		5.30
1,000억원	2.63		4.8				5.19
대 비	100	144.75	161.92	209.27	194.33	172.35	186.86

註 : 위 수수료 1981년도 기준, 공사비 환산환율은 1987년도 기준.
— 자료출처 : 건설기술연구원

大韓建築士協會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예방대책 거푸집 받침 동바리(굴착 선행해)가 필요하지 않고 굴토공사 피해민원 인지말뚝(H-PILE)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틀(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을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틀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동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 품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한주변 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담

TEL: (02)594-8100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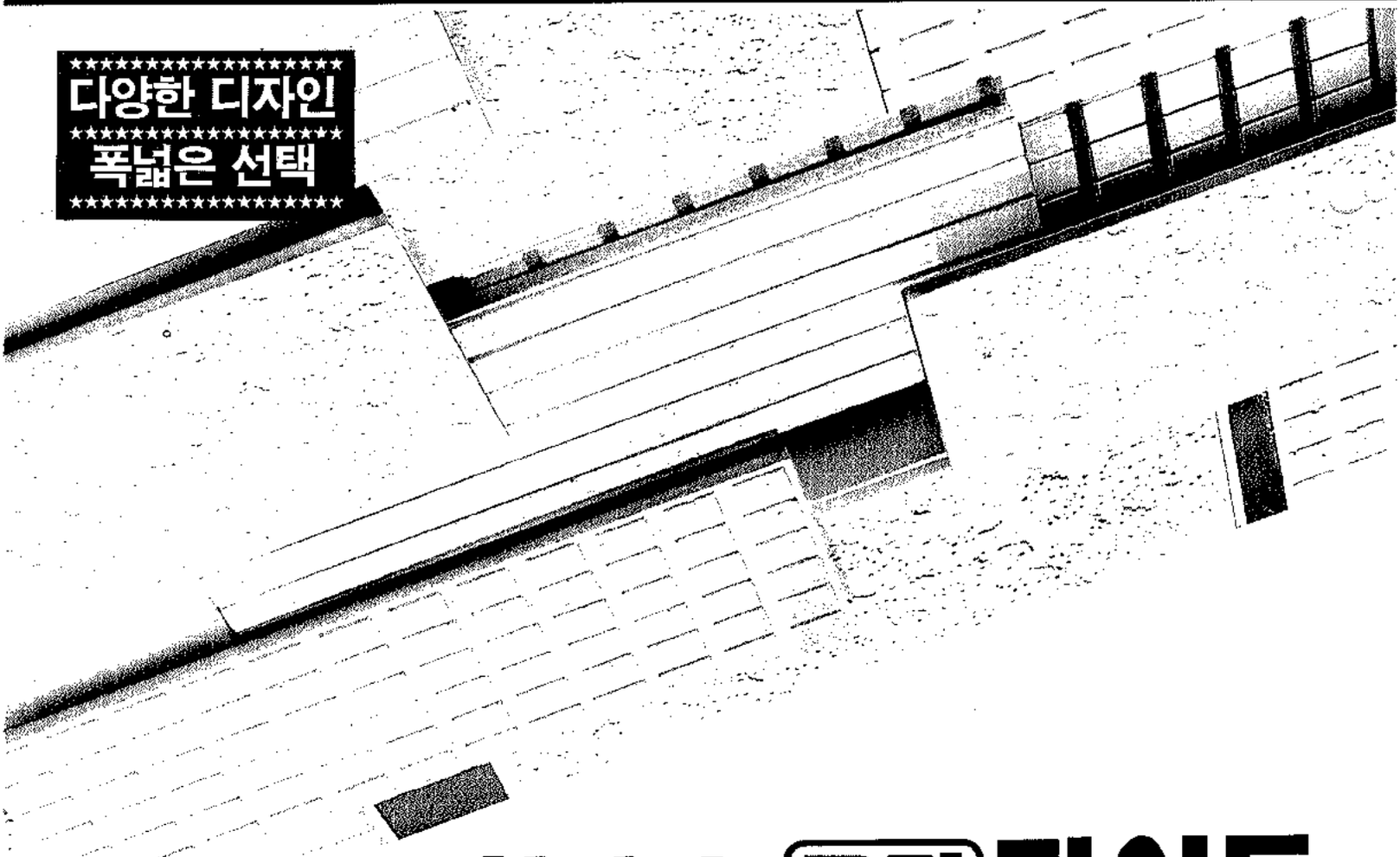

고급 천정판-금강 마이톤

품질과 디자인에서 앞서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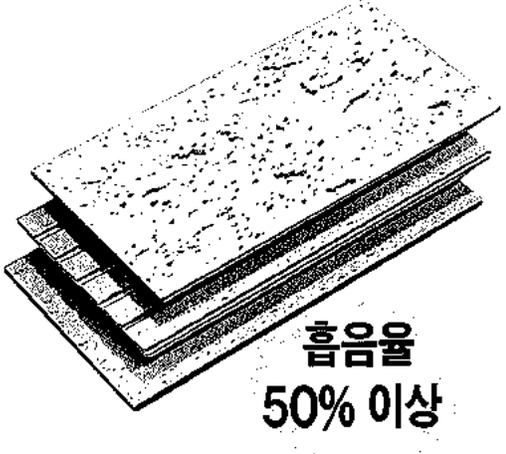

초고층,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현대건축 천정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급 천정판 금강 마이톤—
암면을 주원료로 만들어 흡음력이 뛰어나며
가볍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한 금강 마이톤은
실내분위기를 더욱 우아하게 연출합니다.

- 흡음력이 뛰어납니다.
-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 가볍고 시공, 보수가 간편합니다.

고급 흡음 천정판 ——

마이톤®
MITONE

주식회사 금강
Keumkang Limited

■본사 · 서울 543-2101 ● 부산 512-3211~5 ● 대구 252-4321~5 ● 대전 284-4934~5 ● 광주 523-1505~9 ● 전주 74-3005~7
● 마산 55-9583~5 ● 수원 35-5001~3 ● 인천 428-8451~3 ● 원주 44-5821~3 ● 안동 55-0555 ● 순천 741-8005~7
● 청주 52-2021~3 ● 포항 81-5138 ● 울산 92-2734 ● 강릉 43-8148 ● 진주 55-5800 ● 제주 52-8935